일반사업 2016-14-01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Inter-Korean Maritime and Fishery Relation
1945-2015

2016. 12.

박성준·이성우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일러두기

1. 각 연도의 표제어 및 서술에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음
2. 날짜별 사건 기재시 내용이 다를 경우 날짜가 동일해도 중복 표기함
3. 표제어 세부내용 설명, 각주의 설명문 등에는 마침표를 찍음
5. 항목 선택의 경우, 북한사의 해양수산 부문을 우선적으로 표제어에 포함함
6. 사건 발생 일자가 불확실하거나 미확인된 경우, 해당 사건이 일어난 월에 별도 표시
7. 연도별 주요 참고 사항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표시
8. 해양수산 분야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도 북한 해양수산 정책, 남북 해양수산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 사건들은 연표에 포함시킴
9. 인용 또는 참조 문헌의 쪽 번호 표기는 국문의 경우, 원서·번역서 구분 없이 '쪽'으로 통일, 영문 혹은 기타 언어의 경우 'p' 또는 'pp'(복수)로 통일
10. 한글로 된 공식 문건, 자료명은 「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문 기사 제목은 " "으로 표기함
11. 북한 기구명, 북한 인명, 조약명, 문서명 등의 공식명칭은 북한의 표기법을 따르되, '나진(항)' '나진선봉(나선)' 등은 공식문건에 기재된 명 외에는 적용하지 않음
12. 남북 행위 주체는 '남한' '북한', 남북 상호간 사항은 '남측' '북측'으로 표기하고, 남북한 각각의 대외 교섭 관련 사항은 '한국' '북한'('북')으로 표기함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박 성 준 전문연구원(연구 총괄)

〈연구진〉
이 성 우 연구위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정창현 민족21 대표(북한 체제 및 남북 관계)
성원용 인천대 교수(국제통학학부, 북러 관계)
원동욱 동아대 교수(국제학부, 북중 관계)
김영일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황기형 선임연구위원

발간사

올해로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언 70년을 경과하여 71년째로 접어들었다.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참화가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귀결된 이후 한민족 어느 누구도 이처럼 분단이 장기화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이 합의해서 발표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의 포화에 뒤덮여서는 안되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반드시 평화적이며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까지 해방으로부터 27년이 걸렸다. 1974년 8월 15일 한반도 평화정착, 상호 문호개방과 상호신뢰 촉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의 총선거 실시 등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 천명된 이래,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큰 줄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방향에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교류협력을 위한 협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는 늘 우선순위가 되어왔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가 남북 호혜의 측면에서 매우 접근하기 쉽고,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의 기초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최초의 대화시기 이후 현재까지 남북 어족자원 공동이용 및 수산물 교역이 협상 테이블에 맨 먼저 올랐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남북 대화에서 도로·철도에 앞서 남포항과 인천항 등 남북한 상호 항만개방과 항로 이용 문제가 의제로 올랐던 것 또한 남북한 상호간 이 같은 인프라 연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발효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대화와 협상은 비단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남북 협력의 촉진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들을 생산한 바 있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 동년 7월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그리고 2007년 12월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역사는 서해에서의 교전사태에서 확인되듯이 남북 관계 전체를 갈등과 불안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무모한 핵개발 야심으로 최근의 남북 관계는 2000년대의 화해기를 지나 또 다시 적대적인 대결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남북해양수산 70년의 궤적을 정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며, 해양수산 분야의 독립된 연표로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는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박성준 전문연구원의 오랜 자료 수집과 연구 및 초안 작성을 토대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길광수 선임연구위원과 이성우 연구위원의 내용검토, 해당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완성되었다. 연표작성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긴 시간과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좀 더 개선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분야 전문가와 독자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질정을 바라는 바이다.

2016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CONTENTS

1940년대

개관 / 3
1945년 / 5
1946년 / 8
1947년 / 10
1948년 / 11
1949년 / 13

1950년대

개관 / 17
1950년 / 19
1951년 / 24
1952년 / 25
1953년 / 27
1954년 / 31
1955년 / 33
1956년 / 36
1957년 / 39
1958년 / 41
1959년 / 44

1960년대

개관 / 49
1960년 / 51
1961년 / 53
1962년 / 56
1963년 / 58
1964년 / 60
1965년 / 62
1966년 / 64
1967년 / 66

1970년대

개관 / 75
1970년 / 77
1971년 / 80
1972년 / 83
1973년 / 88
1974년 / 92
1975년 / 97
1976년 / 100
1977년 / 103
1978년 / 109
1979년 / 112

1980년대

개관 / 117
1980년 / 119
1981년 / 121
1982년 / 123
1983년 / 125
1984년 / 127
1985년 / 131
1986년 / 135
1987년 / 138
1988년 / 140
1989년 / 142

CONTENTS

1990년대

개관 / 147
1990년 / 149
1991년 / 152
1992년 / 155
1993년 / 158
1994년 / 161
1995년 / 164
1996년 / 167
1997년 / 170
1998년 / 172
1999년 / 176

2000년대

개관 / 181
2000년 / 183
2001년 / 186
2002년 / 188
2003년 / 190
2004년 / 192
2005년 / 195
2006년 / 199
2007년 / 201
2008년 / 204
2009년 / 206

2010년대

개관 / 211
2010년 / 213
2011년 / 216
2012년 / 219
2013년 / 223
2014년 / 228
2015년 / 234

참고 문헌

239

CONTENTS

부 록

부록1 정전협정(1953.7.27.) ····· 265
부록2 7.4 남북공동성명(1972.7.4.) ····· 282
부록3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 284
부록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 285
부록5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 선언', 1973.6.23.) ·· 288
부록6 북한 조국통일 5대 방침(1973.6.23)(발췌 및 요약) ····· 291
부록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7.7선언', 1988.7.7.) · 292
부록8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1991.12.13) ····· 295
부록9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298
부록10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 301
부록11 남북해운합의서(2004.5.28.) ····· 307
부록12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04.5.28.) · 312
부록13 남북해상 항로대(남북해운합의서 이행부속합의서 수정보충 합의서) ·· 321
부록1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 ····· 322
부록15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5.7.27.) ····· 324
부록1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 회담 합의서(2007.11.16.) ····· 325
부록17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12.15.) ····· 331
부록18 북한「조선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1999.9.2.) ····· 333
부록19 북한「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명의의 중대보도, 2000.3.23.) ····· 335
부록20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1) · 337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1940년대

개 관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는 태평양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 해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물론 이보다 앞서 동년 2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열린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조지프 스탈린 등 연합군 수뇌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최종 결정되고, 연합군의 전후처리 방침이 결정되면서 종전과 그 결과의 일부로서 한반도 해방은 이미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얄타회담에 의해 태평양 전쟁 최후까지 소련을 중립화시켜 전세를 유지해보려던 일본의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단일 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한반도 해방은 그러나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의 경쟁 격화를 의미했고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자국 본토가 분할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항복시기를 늦추면서 한반도에서 미·소의 경쟁을 유도했다. 일본계 미국인 역사학자 고시로 유키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유사시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동군의 대부분을 동남아 전선으로 철수시켜 광대한 만주 지역을 힘의 진공 지대로 남겨주는 책략을 발휘했다. 소련이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지 불과 하루 만에 한반도에 진입하고, 불과 16일 만에 평양에 사실상 무혈 입성하는 등 전광석화를 방불케 하는 속도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일본측 '패전 전략'의 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대표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단독 정부의 부재와 연합국간 전후 처리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군사적 경쟁은 한반도를 빠른 속도로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한반도 특히 한반도 북부 연안의 주요 거점들은 이와 같은 열강간 군사적 경쟁 수요를 한반도에 분출·투사하는 초크 포인트 구실을 했다.

일본의 항복선언 사흘째인 8월 17일, 소련 제1 극동군사령관은 소련 스탈린에게 자신의 군대가 북중 변경의 투먼, 한반도 동북단의 나진·웅기·청진을 완전 점령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보다 조금 늦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 38선 이남의 군사 점령을 책임진 미 제24군단장 존 하지 중장이 미 제6, 7, 40보병 사단을 이끌고 인천과 부산에 상륙했다.

미·소 점령군은 각각의 방식으로 군정을 실시하면서 각각의 방식에 따라 새롭게 들어설 국가와 정부 수립에 영향을 줌으로써 6.25 전쟁과 분단 체제의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후 한반도를 일정 기간 신탁통치하기로 한 얄타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모스크바 3상회의와 1946년 및 1947년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는 한반도 내 주요 정치세력 간의 입장 차이와 미·소의 상반된 해법이 맞물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소는 각각의 군정 지역에 대해 각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정치 질서와 경제 체제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1946년은 주목할 시기이다. 북한은 토지 국유화(3월) 및 북한의 주요 공장시설 및 재산 국유화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윤곽을 형성했다. 또한 동년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제1차 당대회를 개최해 강령과 규약을 채택해 향후 70년간 지탱될 당 중심 정치 체제의 골격을 세웠다.

또한 1947년에 들어오면 이미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1946년 2월 수립된 북조선임시위원회에서 '임시' 자를 떼어버림)하여 당에 이어, '국가' 체제가 정비됐다. 아울러 동년 7월 소련의 스탈린은 북측 대표로 김일성과 남측 대표로 박헌영을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면담을 가진 결과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는 6.25 전쟁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한편 해방 후 전쟁 발발까지 약 5년간은 냉전 시기는 물론 냉전 이후까지도 이어질 북한의 대외 해양 관계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특기할 만한 사건은 북한이 공식 국가수립 및 이에 대한 소련의 승인이 있기 전 1947년 3월, 소련과 맺은 해운항만 관련 협정 체결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청진·나진·웅기 등 3개 항구를 조소해운주식회사(모르트란스)에 향후 30년간 임대했으며, 이어서 1948년에는 이 항구들 외에 남포항 및 선봉항과 소련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이전까지 소련은 북한의 주요 항만과 항로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45~1949년까지는 또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등장할 중국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중국의 천하통일을 놓고 마지막 혈투를 벌이던 시기이다. 당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북한은 중국의 동북지역 '남만작전' 수행에 남포, 신의주, 만포, 나진 등을 중국측 전략물자 수송의 중요한 우회 병참 보급로 및 거점으로 제공하여 향후 중국과 '피로써 맺어진 우의'의 기초를 닦았다.

소련으로부터의 조건부 지지 및 중국의 '대소 일변도' 정책에 따른 동의, 국공 내전 기간 다져진 협력 체제에 의한 중국측의 대북 병력지원, 남한 내부의 정정 등은 북한 김일성에 전쟁을 검토케 하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1945년 소련군의 북한 점령/ 북한 노동당 창건

2월 11일 얄타 회담
- 미국-루즈벨트, 영국-윈스턴 처칠, 소련-조지프 스탈린 참가
- 소련의 참전을 결정짓고 전후 극동 문제의 처리 논의
- 스탈린, 참전의 조건으로 1904년 러일전쟁 이전 (구) 러시아의 권리 회복 추구[1]
- 미 루즈벨트 대통령, 전후 한반도 신탁통치 제안. 스탈린의 동의[2]

7월 26일 포츠담 선언
- 독일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연합국 정상회의 개최, 일본에 무조건 항복 요구
- 미국과 소련은 신탁통치 기간 군대의 주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채 각자의 '조선 해방'을 위한 군사 계획을 개략적으로 밝힘
- 일본은 연합군측 무조건 항복 요구 거부

8월 6일 미국,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

8월 8일 소련, 대일 선전포고(대일전 참전)

8월 9일 미국, 일본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8월 9일 소련 제25집단군(사령관 :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 상장[3]) 한반도 진입

8월 10일 소련, 북한의 웅기와 나진 공격[4]
- 공격 당일 미 국무부·전쟁부·해군부 3부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38선 제안키로 결정[5]

8월 11일 미 전쟁부 작전국 전략정책단, 한반도 분할안 논의
- 전략정책단은 단장 조지 린컨 준장과 단원인 찰스 본스틸 대령, 딘 러스크 대령 등으로 구성됨

8월 12일 소련군, 나진 점령 완료[6]

---

1) 당시 스탈린의 관심은 극동 지역에서 소련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의 확보였음. Sergei N.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University, 1993, 제1장 참조.

2) Yukiko Koshiro, "Eurasian Eclipse:: The Japan's End Game in World War II." *American Historical Review*, April 2004, p. 440.

3) 치스차코프는 한때 조소 친선협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소련공산당 19차 당대회 대표 최고 소비에트 대의원 등을 역임함. 1979년 3월 사망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짐.

4) Bruce Cumings의 *North Korea: Another Country,* 2004 및 *Korea's Place in the Sun*(2nd edition), 2005 참조. 중국측의 공식 서술은 8월 10일 웅기 점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2005, 18쪽 참조. 한편 이 책은 중국측이 펴낸 『抗美援朝戰爭史』 전3권의 제1권임.

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 18~19쪽.

6)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 18~19쪽.

8월 13일 소련군, 청진 점령 완료[7]

8월 14일 소련 스탈린, 미국의 38선 분할안을 토론 없이 승인[8]

8월 15일 한반도 해방 (일본 항복 선언)

8월 16일 소련군 원산 점령[9]

8월 17일 소련 제1 극동군사령관(테렌티 스티코프), 도문(투먼), 유끼(웅기), 라신(나진), 세이신(청진) 완전 점령 사실을 소련 원수에 보고[10]

8월 21일 소련군 원산 진입[11]

8월 24일 소련군 함흥 진주, 평양 입성
- 선발대는 8월 25일, 본진은 8월 26일 평양 입성

9월 6일 서울에 좌파 주도로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 광복과 동시에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의 해체 및 분열에 따른 결과임

9월 8일 미 제24군단장 존 하지 중장, 미 제6, 7, 40보병 사단 이끌고 인천과 부산에 상륙

9월 19일 김일성과 항일유격대 동료, 원산항 입항[12]
-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소련 푸가체프호에 승선

9월 28일 미 해리 트루먼 대통령, 영해 이원의 대륙붕 및 연안어업 관할권 및 통제권 선포
- 국제 사회에서 해양법협약 논의의 기폭제가 됨

9월 소련, 제주도(Kvel'part Island), 부산(Tsinkai), 제물포(Dzinsen) 통제 및 쓰시마섬의 조선 양도 중요성 강조
- 아울러 라페루즈(소야), 산가르스키(쓰가루), 대한해협의 연합군 공동 관리안을 고려[13]

10월 8일 북한, 5도 임시인민위원회연합회의 개최

10월 10일~13일 북한,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개최

---

7)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 18~19쪽.

8) Kathryn Weathersby, "Dependence and Mistrust," p. 4.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쿠릴 도서, 사할린 남부, 만주의 러시아 건설 철도·항만의 회복 등에 관심 집중.

9)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18~19쪽.

10) 『소련과 북한의 관계』, 국토통일원, 1988, 33쪽.

11) Bruce Cumings, 같은 책.

12) 이종석은 북측 자료를 토대로 1945년 9월 19일로 기록.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2000, 36쪽.

13)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Nov. 1993, p. 14.

- 분국 책임비서에 김용범 선출[14]
- 북한의 공식 노동당 창건일로 지정

10월 23일 **조선로동당 북조선 분국 설치**[15]
- '북조선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의 결과임

10월 14일 **김일성, 소련군 환영 평양 연설**
-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 발언[16]
- 중국 모택동이 항일구국 전선을 형성할 때 썼던 문구[17]

10월 **소련군이 북한에 민정부(군정 기구) 설치**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의거 발생**

12월 13일 **북한 옌안파 귀국(증기기관차로 평양 도착)**
- 주요 인사: 무 정(조선의용군 사령관) 등[18]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안 결정 공개**
-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및 신탁통치안 결정
- 점령 직후 소련 군정은 북한 함흥의 제철소, 방직공장 및 **원산, 흥남, 청진의 부두 시설**, 기타 광물자원 등을 징발해서 소련으로 반출[19]

* 광복 전의 수산업 현황 : 1942년 기준 어로 71%, 양식 23%, 조선 6%. 1942년 어획량은 약 84만 6천 톤. 어업 가구 수는 약 20만 가구임. 한편 어선 세력을 보면, 1944년 기준 동력어선 1,999척 무동력선 41,748척이었으나 해방 직후인 1946년 동력선 2,003척, 무동력선 43,976척으로 동력선은 불과 4척이 늘었던 것으로 나타남.[20]

14)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는 김일성은 분국 설치 당시 분국 수반이 아닌 분국 위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약 2개월 후 위원장이 됐다고 주장.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 오름, 1999, 78~79쪽 참조.

15) 정창현에 의하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결성일은 10월 20일임.

16) 김일성,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1996 참조.

17) 김학준.『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문제연구소, 1995, 23쪽에도 보임.

18) 연안파의 상징적 지도자 김두봉 및 연안파 중심 독립동맹 지도자들은 1945년 12월 함께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함께 귀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19) Weathersby, 2008, pp. 5~6. 동년 11월까지 함흥의 제철소 및 직물공장, 원산, 흥남, 청진 부두시설 등에서 석탄 비료 비축분, 변압기, 발전기, 압록강의 전력시설 등을 '적산'이라는 명분으로 몰수해감. 소련의 물자 징발과 관련된 또 다른 설명은 기무라 미쓰히코 외, 『북한의 군사공업화』, 2008을 참조.

20) 『조선경제년보』(1948년 판), 조선은행 조사부, 1948 참조. 한편 이 연보는 당시 조사부장 박재욱, 조사부 차장 장기영(1954년 한국일보 창간, 1973년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공동위원장 대리 등 역임) 등의 주도 하에 발간된 것으로 보임.

1946년 북한 수산업 국유화/ 조선로동당 제1차 당대회

2월 8일 **북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발족**
- 이전의 5도 행정국 폐지 및 대체

3월 5일 **북한, 토지개혁 단행**
-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함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하의 첫 전국단위 대규모 행정 조치임

3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서울) 개최**
-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및 46년 1월 16일 예비회담 결과에 따른 것임
- 미국측 A. V. 아놀드 소장(당시 남측 군정장관), 소련측 테렌티 스티코프 중장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

4월 **김일성, 함경 남·북도 현지 지도시 수산업 발전 언급**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무기 휴회 선언)**

6월 3일 **이승만 정읍 발언**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은 당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총재의 자격으로 지방 순회강연을 하던 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우선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철수시키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할 것”을 주장

7월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을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부름**
- 표면적인 방소 이유: 북측 좌익 2당의 합당 문제와 남측에서의 3당 합당
- 이후 소련은 김일성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

7월 **중국, 동북지역의 ‘남만작전’ 수행을 위해 북한주재 동북국 판사처를 평양에 설치**
- 부상병 철수, 안치 및 전략물자 수송, 북한 도로를 이용한 남만주와 북만주의 연결 등의 목적
- 평양 외에, **남포, 신의주, 만포, 나진** 등 4곳에 분판사처 추가 설치[21]

8월 10일 **북한, 주요 공장 시설과 광산, 철도,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등에 대해 주요 산업시설 및 재산에 국유화 단행**
-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34개 주요 산업 시설 국유화
- 수산 분야의 경우, 일제와 민족반역자 및 예속 자본가들이 소유하던 **어장과 어항 및 일체 어업 시설**들을 몰수[22]

---

21)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2000, 54~56쪽 참조.

22) 『수산업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42쪽.

8월 28일~30일 **북한 북조선로동당 제1차 당대회**

-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문제 토론, 북조선로동당 강령 및 규약 채택
-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김두봉 선출, 김일성은 위원으로 선출

9월 **중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물자연운협정 체결**

- 중국 국공 내전시 동북지역 병참을 위해 북한은 긴급 상황 시 정규열차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중국측 물자를 운송토록 한다는 내용
- 육상의 도로 교통선 : 단둥(안동) -신의주 및 남양- 투먼(도문)-남양

10월 30일 **소련 군정, 북한 내 일본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 수력발전소, 은행 및 기타 대상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양하기로 결정**[23]

- 이 때 수산가공공장 73개소(67,254,301원)도 포함됨

10월 **남한에서 박헌영 주도로 '10월 폭동' 일어남**

-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남. 9월 총파업에 이은 조선공산당의 전술 전환에 따른 사건으로 당시 소련군정 총괄 책임자 테렌티 스티코프의 승인에 따른 것임

*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채택

23) 『소련과 북한의 관계』, 1988, 55~56쪽.

1947년 북한, 소련과 비밀협정 체결 / 북한 최초 국영수산사업소 창설

1월 북한, 소련과 비밀 협정 체결
- 소련에 북한산 양곡 제공, 소련은 무기 및 물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월 2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출범
- 1946년 2월 수립된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 자를 떼어버림
- 위원장: 김일성

3월 17일 북·소, 경제 및 문화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 주요 내용: 무역과 연안 이용에 있어 모든 현안에 대해 양국은 상대국에 최혜국 지위 부여[24]

3월 25일 북·소, 청진, 나진, 웅기를 「조소해운주식회사」(모르트란스)에 임대하는 협정[25]
- 3개 항구를 30년간 대여. 1949년 비밀협정 통해 3개항을 30년간 잠수함기지로 제공[26]

4월 5일 북한, 소련과 조소해운주식회사조직에 관한 협정의 집행을 위한 합의서 교환[27]
- 이에 따라 1948년 12월 '조쏘해운주식회사' 설립

4월 북한, 국영수산사업소 창설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동년 8월 21일까지 이어짐
- 인구 비례에 따른 대표 구성(미)과 남북 대표 평등(소) 주장 대립

6월 김일성, 국영수산사업소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 제시

9월 김일성, 함북 경성군 염분진 현지 지도시 수산합작사 조직 지시

12월 1일 북한 통화개혁 단행[28]

* 1947년, 북한, 신의주, 원산, 청진에 각각 수산 전문학교 설치

* UN 총회,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법제화(codification) 14개 주제 중 공해 레짐과 영해 레짐을 선정[29]

---

24) 나탈리아 바자노바(양준용 옮김), 『기로에 선 북한경제-대외협력을 통해 본 실상』, 한국경제신문사, 1992. 92쪽.

25) 기무라 미쓰히코 외, 『북한의 군사공업화』, 미지북스, 2008, 301쪽; 김일성종합대,『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63쪽.

26) 김학준, 『북한 50년사』, 두산잡지BU, 1995 참조.

27)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63쪽.

28)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에 따라 실시. 당시까지 통용되던 조선은행권 10전, 20전, 50전권을 제외한 모든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모든 화폐를 신화폐와 1 대 1 비율로 교환. 네이버지식백과 e뮤지엄 참조.

29)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2011, pp. 31-32.

1948년 북한 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회 / 남북한, 각각 단독정부 수립

1월 20일 북한 국영 원산조선소, 해방 후 최초의 '조경환 14호' 건조 및 진수

2월 8일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창설
- 총사령관에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였던 최용건[30]을 임명
- 훗날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4.15로 바꿈

3월 27일 북한, 북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회
- 당 규약 개정(3월 30일)

4월 19~26일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평양)
- 남측에서 김구, 김규식 등 요인 참가
- 이 회의에서 북한은 '외국군대의 한반도 철수'와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호소문' 발표(프라우다 보도)

5월 3일 북한 김일성, 김 구와 회담

5월 10일 남한에서 제헌의회 총선거(5.10 선거)
- 유엔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실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허 헌 선출

9월 9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선포
-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김책, 홍명희, 내무상 박일우, 외상 박헌영, 민족보위상 최용건,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선임

9월 20일 소련 내각, 북한 주둔 소련군 철수를 1948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성명

10월 12일 북·소 외교관계 수립
- 소련, 북한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
- 초대 주북 대사에 테렌티 스티코프 임명[31]

---

30) 1900~1976. 평북 염주군 출신으로 오산학교 중퇴. 1925년 중국 윈난군관학교 졸업후 황푸군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 1936~39년 동북항일연합군 제7군단장, 제2로군 참모장으로 항일무장투쟁. 1945년 8월 광복후 평안남도 자치준비위원회 중앙위원. 1948년 2월 북한 정규군인 인민군이 창설되면서 인민군총사령관 취임. 1950년 6.25 전쟁기 서울방위사령관 역임. 1953년 인민군 차수를 거쳐 1956년 당 중앙위원회 부장, 1961년 당 정치 위원, 1972년 국가 부주석 등 북한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역임.

31) 러시아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는 소련의 군정은 1945년 10월 구성된 소련 민정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책임자는 로마넨코 소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군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이었던 스티코프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은 것으로 주장함.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69쪽 참조. 와다 하루키에 의하면, 스티코프는 즈다노프 밑에서 레닌그라드 당비서를 역임했으며 군인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민정부 설치의 주역도 스티코프임을 밝히고 있음.

11월 25일 **북한 김일성 수상[32], 내각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중심 과업에 대하여」 결론**

12월 24일 북한 내 소련 점령군의 철수 완료

12월 북·소, 조소해운주식회사 설립(본사 평양)

- 창설 후 중국 다롄, 청진, 홍콩, 일본의 시모노세키 등에 화물선 운항[33]
- 선적항-블라디보스토크, 기항-**나진항, 청진항, 선봉항, 남포항**

32) 이하 1972년 주석제 이전까지는 당, 군, 국가의 직함, 직위, 호칭과 관계 없이 '수상'으로 통일해서 표기.

33)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63쪽.

1949년 중국, 대소일변도 정책 공식화/ 북한의 전쟁준비

3월 17일[34] **북한 김일성 수상, 소련 방문에서 조소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 협정 유효기간: 10년
- 남한 무력 침공 및 공산화 계획에 대해 스탈린의 의견 조회[35]
  (당초 북한은 조소우호조약 체결을 요구, 스탈린은 영구 분단화 비난을 의식해 거절)
- 「조소 물품 거래 및 대가 결제에 관한 의정서」(장비 및 군사 물자의 대북 제공 규정) 체결
- 이 외에 기술원조 협정 등 10여 건의 협정 체결[36]
- 장기 차관 2억1천2백만 루블을 북한에 제공(매우 혹독한 상황 조건을 전제로 함)
- **청진항에 대한 소련 해군의 잠정 주둔**
- 「조소경제문화협정」은 **1961년의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으로 이어짐

4월 **중국 공산당, 중국동북 정부 상업대표부를 평양에 개설**

5월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주임 김 일**[37], **중국 방문**

- 방문 목적: 중국 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구성부대의 반환 요청
- 이 요청에 따라 조선인 구성 2개 사단이 1949년 7월 반환되어 북한군에 편입[38]

6월 30일 **북로당과 남로당 통합, 조선로동당 출범**

6월 30일 **중국 마오쩌뚱, 「인민민주전정에 대하여」 논문을 통해, 대소 일변도 정책 천명**

8월 30일 **북한 원산조선소, 소련의 지원 하에 북한 최초의 해군 경비함(41호) 건조**[39]

9월 **북한 김일성 수상, 중국 방문**[40]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1987, 62쪽.

35)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지원 요청에 신중하게 반응, "남측이 먼저 침공하면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고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응수. Kathryn Weathersby, "Dependence and Mistrust," p. 7.

36) 김학준 등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협정에 군사협력 조항이 포함됨. 김형기(2010) 등도 같은 입장을 취함.

37) 1910~1984.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에 참가. 당 중앙위원회 비서, 내각 부수상, 정무원 총리, 부주석 등을 역임. 초기 북한 정권에서 김일성, 최용건에 이어 권력서열 3위를 지킴.

3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2005, 34쪽.

39) 기무라 미쓰히코 외, 305쪽. 구 조선조선공업 원산조선소;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편1), 1994, 32쪽. 이 직후 경비정51호를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북한의 공식 과학사는 서술하고 있음.

40) 북한 화보집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 2009 참조. 한편 이 화보집은 북중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기념으로 발간됨.

10월 3일 북한 내각결정 제143호 「개항에 관한 결정서」 채택
- **신의주, 남포, 원산, 흥남, 성진, 청진, 나진** 등을 대외 개방
- 이와 함께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 해사 법규와 항만 규칙을 제정

10월 6일 북·중 외교관계 수립 (대사급)

12월 22일 북한, 「어업에 관한 규정」(내각결정 제191호)

12월 25일 북·중, 우편통신협정 체결

12월 30일 북한 내각비준 115호 「**조소해운주식회사 규정**」 채택[41]

12월 중국 마오쩌둥,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소련 방문
- 1950년 2월까지 소련 체류, 중소우호동맹조약 체결(30년간 유효)

* 북한: 1949-1950년 2개년계획 기간 중, 신포, 원산, 어대진 조선소의 선박 건조능력 확장 및 항만 건설 촉진[42]

* 남한: 1949년 전체 수출량의 93.3%를 수산물이 차지(전무후무한 기록)[43]

41)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에 대한 최초의 법적 기초라고 주장.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63쪽 참조.

42)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1961, 46쪽.

43)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5쪽.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1950년대

개 관

1950년 6월 25일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한 '정화'(停火)가 있기까지 약 3년 1개월간 아군(한국군, 유엔군) 총 17만8천5백 여 명, 적군(북한 인민군, 중국군) 약 54만 명 등 전사 또는 사망자만 총 70만 명 이상을 낸 6.25 전쟁은 완전한 '종전'이 아닌 '정전'의 형태로 막을 내렸다. 6.25 전쟁은 이처럼 막대한 희생을 안긴 채 막을 내렸으나 막상 정전협정은 38선 중심으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한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뒤, 각기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토록 함으로써, 시계 바늘을 거의 전쟁 발발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았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단순히 한반도의 정치 질서를 전쟁 이전의 상태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질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분단 체제를 재구축하거나 강화시키는 제도적 여건을 형성했다. 전전 체제 구축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사회주의 맹주로 건재한 소련, 6.25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갖게 된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은 북한의 전후 복구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1950년대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했다.

김일성은 1953년 7월 전쟁의 포화가 멈추기 무섭게 소련측에 '원조 제공' 약속을 상기시켰으며, 이어서 동년 9월 김일성의 당정 대표단 방소를 통해 10억 루블 규모의 원조 규모와 내용, 절차를 확정지었다. 또한 북한은 동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6.25 전쟁 기간 중국에 의해 제공된 원조 물자와 비용을 무상공여로 처리하고, 1954년부터 1957년까지 3년간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무상 원조와 기술 원조를 제공받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1956년 8월 소련은 전후복구 원조 프로그램이 끝나자 다시 3억 루블 규모의 추가 무상 원조를 결정했다. 아울러 1954년 7월 동독의 함흥재건 지원 결정 이후 동독에 의한 대북 기술지원도 시작되어 196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권의 원조 덕분에 북한의 해양수산 생산력은 수산 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은 물론,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이를 넘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갔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북한 김일성은 이미 1954년 수산부문 지도일군협의회 연설을 통해 '어획고를 전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지시했다. 2년 뒤인 1956년 5월 북한의 수산상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측 어민의 북측 영해 어로 위해 남측 어민대표와 회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어장들의 상호 이용 및 관련 문제들의 협상을 위해 남북한 수산당국

또는 어민대표와의 예비회담을 제의하기에 이른다.

1950년대 북측의 이와 같은 공세적인 대화 제의는 1958년 12월, 한층 더 구체화된 대남 협력 제의를 통해 절정에 이른다. 즉 북한은 수산상·내무상 공동 성명 형식으로 "북반부 동해에서의 남반부 어민들 어로작업 실시"를 위한 남북 수산 기관 및 어민단체 대표 협상을 제의한 것이다. 이 제의에서 북측은 어로작업 허용이 가능한 어선의 능력과 규모, 남측 어선의 북한 동해 입어시의 절차와 방법(예컨대, 길이 1m, 폭 70cm 이상 크기의 흰색 깃발 계양 등) 등을 예시한 바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수산업을 중심으로 북한 해양수산은 특히 대외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1956년 6~7월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방문시, 김일성은 북한 수산업에 대해 "전쟁 전과 동일한 어려움의 존재"를 강조하는 등 우호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그 결과 소련·중국·베트남 등과 '서태평양 어업해양 및 호소조사협력협정'을 맺고 어법 개발, 어족 보호, 어로활동의 효율성 개선 등의 분야에서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원을 이끌어낸다.

또한 이 시기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패전이후 대미외교 중시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전후 동북아 정치무대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일본을 활용하기 위해 일련의 기민한 행동을 시도했다.

1955년 4월 북한 남일 외상의 대일 관계 개선 및 경제교류 제안 성명을 통해 진전되기 시작한 북일간 대화는 동년 10월 북일간 「무역촉진에 관한 의사록」 교환으로 이어졌다. 이에는 어업 분야에서 쌍방의 자유로운 어업활동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56년에 들어서면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북일간 다롄항을 경유한 간접무역이 시도되어 동년 9월 일본 동방상회가 북한산 무연탄 3천 톤을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서 선적, 자국으로 수입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어서 1957년 9월 북일은 비록 유효기간 1년에 불과하지만 일본과 공식 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며, 수년간의 물밑 접촉 결과로 1959년 12월 청진항과 니가타항간 전후 최초 재일교포 북송이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투입이 필요한 항만 인프라에 대한 복구 사업은 수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이 또한 소련 등 외부 원조에 의해 착수된다. 1958년 1월 북한과 소련 사이에 남포항만 복구를 위한 합의서가 체결된 것이 단적인 예이며, 이 공사는 1960년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천리마운동을 개시하는 한편, 김두봉 등 연안파 등을 단죄하여 반김일성파 숙청작업을 완료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수산업 전시동원 체제/ 중공군 참전

1월 12일 미국, 애치슨 라인 발표
- 한국과 타이완을 방어선에 제외시킴

1월 북한, 소련에 '통일'(전쟁) 지지 요청[44]

1월 25일 북한 김일성 수상, 농림·수산 부문 지도일군 연석회의에서 「농촌 경리와 임업·수산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연설

2월 27일 북한 김일성 수상과 박헌영 외무상 , 모스크바 비밀 방문
- 소련 스탈린,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조건부 승인[45]

2월 중·소 무역협정 체결
- 이 협정을 통해 소련은 중국에 3억 달러 차관 제공키로 합의
- 중국측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달러를 중국 해군력 증강을 위한 장비 구매에 사용키로 했으나, 이후 6.25 전쟁 참전 계기로 육군 무기 및 장비 구매로 돌림[46]

5월 13~16일 북한 김일성 수상, 중국 방문
- 남침 계획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얻음[47]

6월 7일 **북한 조국전선, 남한에 평화통일 제의**
- **위장 평화 공세 및 개전의 명분을 쌓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동시에 남측 교란 행위)**
- **이와 같은 선제 조치는 6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명의 '남북 입법기관 구성' 및 '평화통일 실현' 제의로도 이어짐**

6월 25일 북한 남침 개시, 6.25전쟁 발발
- 김일성은 내각회의 소집, "즉각 결정적인 반격 개시" 주장(남침의 호도)
- 보병 10개 사단, 1개 탱크여단, 약간의 공군, 해군, 경비부대(총 병력 13만 5천명)

6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군사위원회 조직
- 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우, 정준택 등으로 구성

---

44) 김일성은 특히 주평양 소련대사에게 설득을 위한 스탈린 회견을 강력하게 요구함(Weathersby 등). 이 때는 이미 남한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철수한 상황.

4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I) 등 중국의 공식 6.25 전쟁사 서술은 김일성 및 박헌영의 방문을 1950년 4월로 서술. 한편 스탈린은 북한이 남침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고 판단해서 남침 계획을 승인. 동시에 미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 파병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아울러 전투개시 전 마오쩌둥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

46)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2005, 264쪽.

47) 마오쩌둥은 전쟁 시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속전속결로 전쟁이 끝나야 함을 강조.

- 김일성을 위원장 및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6월 29일 미 트루먼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여 한국에서의 북한 인민군 폭격과 미 지상군의 한반도 파견 건의를 비준

7월 2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중국주재 소련대사 로신을 만나 "미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중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군 작전 지원" 언급[48]

7월 3일 북한군, 국군 방어의 핵심 지역인 한강 남단 영등포 점령(한강 방어선 붕괴)

7월 7일 중국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제1차 회의개최

- 중국 중원 주둔 국방기동부대 제13병단을 북상시켜 동북변방군 편성, 참전시 '지원군 깃발' 사용 결정[49]

7월 10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 극동군 총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

- 맥아더의 지시로 착수된 인천상륙 작전 계획 초안 완성(8월 12일 확정)

7월 10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로 평양에 중국 대사관 개설

- 차이쥔우, 차이청원의 평양 방문
- 방문 목적: 전시 김일성과의 연락 체계 유지

7월 12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한반도 외국군 철수 등 6.25전쟁 평화적 해결 5조건 제시

7월 13일 중국, '동북지역 국경방위에 관한 결정'을 통해 동북변방군 창설 및 부대 이동

7월 북한 김일성 수상, 전시 수산물생산 대책으로서 야간어로 작업 지시

7월 유엔군, 대북 해상 봉쇄 단행

8월 2일 북한 조선인민군 12사단, 포항 공격(낙동강 전투 본격화)

8월 13~14일 중국 동북변방군 고위간부회의(2차례. 선양군사회의)

- 참전 준비 확정(정치동원 및 군사훈련, 작전전술 결정)[50]
- 단 동북변방군 사령관 가오강은 참전 준비시간을 9월 말로 연장해줄 것을 마오쩌둥에게 요청

8월 15일 북한 김일성 수상, "8월에는 한반도를 완전히 해방시키자" 독려 명령

9월 10일 유엔군 대규모 반격 개시

9월 15일 유엔군, 인천상륙 작전 개시

- 인천상륙작전계획은 8월 12일 확정(미 해병 제1사단 및 유엔군 예비대 투입)[51]

---

4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97쪽.

49)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98쪽.

50) 예를 들면, 승산 있는 전투를 하고, 우세한 병력을 집중, 양익과 측후로부터 공격개시, 접근전 중시 등.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140~141쪽. 모의 전투훈련에서는 '삼맹전술'(맹타, 맹충, 맹추) 등을 훈련함.

51) 이 작전에 대해서는 유엔사령부 내부에서 실패 가능성 때문에 반대가 많았으나 맥아더는 오히려 바로 이 때문에 승리

9월 28일 유엔군, 서울 탈환·점령('9.28 수복')

9월 28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 정치국 긴급회의를 통해 소련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 통과

- 주요 내용: 적들(유엔군 지칭)이 북한에 대한 진격을 획책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기 힘들므로 적군들이 38선 이북을 넘을 때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대단히 기대함(어떤 이유들에 의해 이러한 원조가 불가능하다면 중국 및 다른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지들로 구성된 지원부대로부터의 군사적인 원조 요청)[52]
- 김일성, 박헌영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은 9월 30일 북한 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에 전달됨

9월 29일 유엔군, 모든 전선에서 38선 향해 진격

- 북한 조선로동당 정치국 긴급회의, 스탈린에게 소련 및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지원 요청 서한 통과
- 중국에 출병을 요청하는 서한은 10월3일 박일우 내무상이 마오쩌둥을 회견한 자리에서 전달

9월 30일 소련 스탈린, 중국 주재 소련대사에 전보를 보내 중국측 부대의 파견 및 군사 지원을 요청

10월 2일 중국 마오쩌둥, 가오강(동북군구 사령관 및 정치위원) 및 덩화(제13병단 사령관)에 전문을 보내 참전준비 지시

10월 3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중국 주재 인도대사 파니카를 불러 '미군의 38선 이북 전쟁 확대시 개입' 경고

10월 4~5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 6.25전쟁 참전 결정회의 개최. 참전결정[53]

- 참전의 내부 논리: 항미원조 및 보가위국
- 이후 동북변방군을 인민지원군으로 개칭, 사령관에 펑더화이 임명 등 수뇌부 인사 단행

10월 7일 유엔 총회, 6.25전쟁에 유엔군 파병 결의

10월 8일 중국 마오쩌둥, 인민지원군에 진격 명령 하달[54]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다른 상륙작전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됨. 한편 중국 군부는 인천상륙 작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전 예측한 것으로 중국 공식사는 서술. 중국 최고지도부는 인천 상륙 가능성에 대해 8월과 9월 이미 북한군에 경고했다고 서술.

5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220쪽.

53) 출병을 둘러싸고 중국 군부 내부에서 논쟁 발생(찬성론과 반대론). 참석자 및 결정과정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234~246 쪽 참조. 당시 린뱌오는 개입 반대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짐. Yu Bin, "What China Learned from its 'Forgotten War' in Korea," Mark A. Ryan et al., eds., *Chinese War Fighting: The PLA Experience since* 1949, p. 124.

54) 이 무렵 북한의 최고 군사지휘부는 덕천으로, 정부기구 및 외국대사관은 신의주로, 총후방 기지는 강계로 이동함.

10월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군 참전 관련 유엔 총의 결의 비난 성명[55]
- 한편 중공중앙은 당일 회의를 열어 추후의 병력동원계획 확정[56]

10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6.25전쟁 참전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회의
- 모택동, 10월 19일 지원군을 전부 북한으로 출동시킬 것 결정

10월 16일 중국군 정찰분대, 지안(집안)의 압록강 하구로부터 도강하여 북한 내 30여 km 진입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 제13병단, 구성 태천 구장 덕천 영원 오로리 일선을 장악하여 기본 방어진지로 삼기로 하고 저녁에 압록강 도강, 참전[57]
- 1990년대까지 10월 25일을 참전개시일로 잡기도 했으나 김학준 등은 10월 19일 설 주장[58]

11월 6.25 전쟁에 참전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모안영) 전사
- 평안남도 회창군 렬사릉 조성 시 합장[59]

11월 소련 공군의 최초 참전(전투기 150~200 대)

12월 3일 북한 김일성 수상, 극비리에 중국 방문해 모택동과 6.25 전쟁을 협의하고 연합사령부 구성에 합의[60]
-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작전지휘권은 중국 지원군측으로 이관됨
- 김일성은 가오강과 함께 중난하이의 모택동 집무실을 방문
- 중조연합사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펑더화이, 부사령관은 북측 인민군 총참모장 김웅, 부정치위원은 박일우가 맡게 됨

12월 21일 북한, 자강도 만포군 별오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3차 전원회의(별오리회의)

---

55) 중국 저우언라이는 소련을 방문, 스탈린과 회견하며 소련 공군의 출동 및 중국군에 대한 무기장비 제공 등을 소련측에 요청. 이에 대해 스탈린은 '약 2개월 간 불가능' 답변 (중국측 공식 설명은 이와 같은 스탈린의 반응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점, 즉 식언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킴. 한편 소련측은 무기장비 제공 요구에 대해 신용차관 형태로 중국군대에 대해 군사장비 제공에 동의함.

56) 1950년 10월 상순, 중국 저우언라이와 린뱌오가 소련 방문. 스탈린 몰로토프 불가닌 등과 회담을 갖고 신용대출 방식으로 인민지원군에 비행기, 대포, 탱크 등 무기와 장비 제공받기로 합의. 아울러 10월 말, 모택동을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 해군 3개년 건설계획 및 해군 장비 구매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 한편 동북군구 후근부는 북한지역 내 지원군의 전투 예상지역에 각종 물자와 기자재들을 수송하고 저장.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 295쪽. 중국의 공식 문헌은 1950년대의 마오쩌둥 전략을 '해륙병중'이라고 서술. 중국 해양안보 인식변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張万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 軍士科學出版社, 1999(중국어), pp. 123~129 참조.

57) 중국은 6.25 전쟁 참전 조건을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 저우언라이를 소련에 보냄. 1950년 10월 10~11일 양일간 저우언라이는 흑해의 한 별장에서 스탈린과 회담.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중국측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 이상의 내용은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p. 58.

58) 김학준의 설은 10월 13일 베이징에서의 작전회의시 마오쩌둥 지시와 일치.

59)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참조. 마오안잉의 '렬사릉' 안장 사실은 냉전 시기에는 극히 일부의 북중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만 알려진 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60) 이종석, 2000, 169-170쪽.

- 김일성, 6.25 전쟁 평가 및 실패 책임자 처벌(연안파 무정 등)

* 중국: 황해와 동중국해의 중국측 연안을 따라 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일명 **모택동 라인**) 설치.[61] 동 구역은 군사경계수역, 군사항행금지수역, 군사작전수역 등 3개 군사수역 포함. 발해만 일원에는 군사경계수역 설정, 중국 허가 없이 선박 항행 금지. 아울러 타이완과 북위 27도선 사이에 군사작전수역 설정, 어로행위 위험권고수역으로 정함.

61) 최종화, 「중국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한국수산경영학회』, 제24권 1호, 1993, 49쪽 참조. 이에 따르면, 모택동 라인 내에서는 기관 출력 600마력 이상의 중국과 일본 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은 금지되며, 이 구역선 외측을 따라 설정된 휴어구에서는 일정 기간 조업이 금지된다.

1951년 북한 수산업 전시동원 체제 지속/ 휴전협상 개시

1월 유엔군 퇴각

4월 중국, 뤼순의 해군기지에서 소련함대로부터 훈련받기 시작
- 체계적인 해군 육성작업 개시(275명의 해군장교 훈련)[62]

7월 1일 북·중, 북한 김일성과 중국 펑더화이 공동 명의로 개성 휴전 협상 제의

7월 10일 **개성 휴전회담 본회담 개시**
- 북한 대표: 남 일, 중국 대표: 펑더화이, 미국 대표: 찰스 터너 조이 제독[63]
- 유엔군과 공산군은 상호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전투가 가열됨

8월 22일 북한, 내각결정 제316호를 채택하여 내각 농림성에서 수산관리국과 수산부를 분리하여 내각 직속의 수산국을 조직

8월 25일 휴전 회담 재개
- 이 때 중국측 수석대표가 덩화[64]에서 비엔장우로 교체됨

10월 20일~11월 29일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일본 도쿄)
- 미국 연합군 총사령부(일본 군정 당국)의 종용에 따라 개최됨
- 주요 의제: 재일 조선인 법적 지위 및 기타 한일 관계 정상화 관련 사항
- 회담 수석대표: 한국측 양유찬(주미 한국대사), 일본측 이구치 사다오(외무차관)
- 한국은 '선박의 반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65]

10월 25일 휴전 회담 속개

11월 23일 정전협상 분과위원회, 군사 분계선에 공식 합의

11월 27일 정전협상 속개(의정 3항 토의)

* 국제: 1951년, UN 총회결의에 의한 국제법위원회 '영해 레짐' 연구 시작[66]. 영해의 폭, 인접수역에서의 연안국 권리(항해권, 공해 어업, 해저자원 이용권) 등 쟁점

---

62) 아울러 해군 장교 166명을 소련에 파견(2년간). 1952년 중국 칭다오에 최초의 잠수함 기지 건설 개시. 이상의 내용은 John W. Lewis and Xue Litai, *China's Strategic Sea Power*, p. 47.

63) 일본의 항복시 수륙양용군을 지휘했으며, 6.25전쟁의 최초 2년간 유엔군 해군 지휘.

64) 동년 7월 10일 첫 회담 이후 덩화는 이때까지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을 맡았음.

65) 이동준 편역,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삼인, 2015, 86~99쪽 참조.

66)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p. 32.

1952년 산티아고선언(200해리)/ 한국 이승만라인 설정/ 클라크 라인

1월 18일 **이승만 정부,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포**[67]

- 주요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대륙붕)의 상하에 기지(이미 알려짐)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해...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1조). 대한민국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의 확정(3조)

  * 특히 해양 주권선 안에 독도 포함
- 일본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때까지 큰 영향을 줌(한일 어업분쟁)
- 이 평화선 선포 이후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위반한 일본 어선을 나포. 1953년 11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일한어업문제해결촉진 국민회의'가 개최되기도 함[68]

1월 28일 **일본 외무성, 주일 한국 대표부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상서 제출**

2월 8일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라인'의 설정 취지 성명 발표**

- 요지: 해양의 획정선을 설립한 주요 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 유지에 있고, 일본도 물론 이에 응할 것으로 기대함

2월 15~20일 **제1차 한일회담 개최(도쿄)**

- 회담 대표: 한국 수석대표 양유찬(주미 대사), 일본 수석대표 마쓰모토 슌이치(일본 외무성 고문)[69]
- 주요 의제: 우호조약, 재산청구권, **어업협정, 선박에 관한 현안** 등
- 결과: 이승만 라인 및 청구권 문제 등에 이견으로 협상 결렬[70]

2월 22일 **북한 외무상 박헌영, 미국의 세균전 비난 성명**

3월 12일 **중국평화위원회 회의 개최, 북중국 및 전선에 미국 세균전 관련 조사단 파견 결정**

---

67) 공식 명칭은 동년 1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무원고시 제14호로 발표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선언」. 평화선이라는 이름은 1953년 2월 8일 자 외교성명 통해 "주권 선언의 주된 목적은 한일 양국의 평화 유지"라고 해명한 데에서 유래. 이상의 내용은 최종화, 『현대한일어업관계사』, 세종출판사, 2000, 20-28 쪽 및 이동준 편역,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2015, 99~101쪽 참조.

68) 『日本近代漁業年表』, 水山社, 1980, p. 17.

69) 양유찬 수석대표 외에 한국측 대표로는 김용식(교체 수석대표. 주일 한국대표부 공사), 임철호(변호사), 유진오(고려대 총장), 임송본(식산은행 은행장), 홍진기(법무부 법무국장)이 포함되었으며, 전문위원으로 유태하(주일 대표부 참사관), 김동조(외무부 정무국장), 최규하(주일 한국대표부 일등서기관), 김태동(주일 대표부 일등서기관), 이상덕(한국은행 조사부장 대리), 황부길(교통부 해운국장), 지철근(상공부 수산국 어무과장) 등이 포함됨.

70) 최종화, 「중국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1993, 34쪽; 『日本近代漁業年表』, 1980, p. 11.

4월 1일 **북한, 조선수산협동조합 제1차 중앙대회 개최**

4월 소련, 북한에 밀가루 5만 톤 지원

6월 22일 미군, 수풍발전소 폭격

6월 25일 북한, 동독(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차관협정
- 북한 정부 대표단(단장 이주연) 동유럽 순방

8월 10일 미국, 중국측 포로 2만7천 명을 이승만 정부에 인도 결정

8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남태평양해양자원 개발및보호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9월 27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북한에 휴전협상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방위수역' 설정(클라크 라인)[71]
- 동 경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의해 동년 8월 27일 폐지

12월 15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 산티아고선언: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200해리에 대한 자주권 및 관할권 주장(200해리 경제수역 주장의 시초). 이는 1970년 5월 몬테비데오 선언 및 동년 8월 '해양법에 관한 라틴아메리카회의'의 '리마선언'으로 이어짐

71) 자세한 좌표는『日本近代漁業年表』, 1980 등 참조. 북위 42도5분·동경 130도 37분, 북위 38도·동경130도, 북위 35도15분·동경130도, 북위 33도·동경 126도47분, 북위 33도·동경 126도47분, 북위3 33도·동경 126도, 북위 34도·동경 125도, 북위 36도·동경125도, 북위 39도37분·동경 124도의 좌표들을 이은 선으로 구성됨.

1953년 정전협정 및 NLL 설정/ 전후 복구 계획 발표/ 소련 및 공산권의 대북 원조

1월 5~7일 **이승만 대통령 방일**
-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초청에 의한 개인자격 방문
- 한일 회담 재개 가능성 및 한일 양국 우호 증진에 대한 견해 피력

3월 5일 소련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 겸 내각 총리 사망
- 교착상태에 있던 6.25 전쟁의 정전협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3월 18일 **북한, 국제운수항만및어업노동자직업연맹 가입**

4월 15일 **제2차 한일회담 개시**
- 회담 대표: 한국측 수석대표 김용식(주일 한국대표부 공사), 일본측은 공식 대표가 없는 가운데 구보타 간이치로(외무성 참여)가 실질적 대표로 참가
- 동 회담은 7월 휴회 전까지 본회의 3회, 기본관계 회의 2회, 어업 문제 회의 13회, 청구권 문제 회의 3회, 선박 문제 회의 4회, 국적처우 문제 회의 6회 등으로 진행

4월 21일 **이승만 대통령, 정전협정 협상장에서 남한 대표 철수 명령**[72]

6월 **북한 정부대표단(단장 리주연 상업상[73]) 동유럽 순방**
- 동 해외 순방은 6월 하순부터 이후 5개월간 이어짐

7월 27일 정전 협정 체결
-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를 대표로 하여 서명함. 당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미 육군 대장 윌리엄 K. 해리슨은 각각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수석대표, 유엔군 수석대표로 참석함
- **육상 군사분계선만** 설정
- 제60조: 정전협정 조인 및 효력 발생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협의
- 문제점: "상대방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지역에 인접한 해역을 존중하고 여하한 봉쇄도 하지 못한 다"는 규정 외에 **서해 5도 주변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 규정이 빠짐**

7월 30일 **북한, 소련과 벌목에 관한 협약 체결**[74]

---

72) 셸리그 해리슨(이홍동 외 옮김), 『코리안 엔드게임』, 삼인, 257쪽.

73) 함경북도 단천 출신. 1949년 중국 주재 북한대사로 부임. 1952년 북한 내각상업상, 1957년 재정상, 1958년 부수상, 1960년과 1964년 무역상, 1967년 부수상 역임. 한국민족대백과 참조(북한 자료에 따르면, 1954년 재정상 겸 부수상).

74)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로에 선 북한경제-대외협력을 통해 본 실상』, 1992, 158쪽.

7월 30일 북한, 리승엽 등 남로당파를 반역죄 등으로 기소
- 박헌영은 노동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됨

7월 31일 북한 김일성 수상, 소련에 정전협정 서명 관련 전문을 보내 소련측이 약속한 '조선 인민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제공'을 상기시킴

8월 3~6일 북한 최고재판소 특별군사법정, 이승엽 등 남로당파 주요 인물에 사형 등 중형 선고

8월 5일 **북한 김일성 수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통해 전후복구 계획 발표**
-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연설
-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 및 농업 발전 동시 진행(3단계) 등을 제시
- **수산 부문에서는, 현대적인 수산가공공장 건설 등 수산업 전반의 발전 언급**[75]

8월 25일 북한 외무성 성명 통해 한반도 문제 정치회의 제의

8월 27일 한·미 상호방위협정 체결[76]
-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제2조)
- 동맹 관계의 공식화 및 클라크 라인 철폐

8월 28일 UN, 정전협정 제60조(쌍방 정치회의 소집)의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 결의 711호 채택

8월 30일 **유엔사령부, 서해 5도로부터 북쪽으로 북한 점령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에 해당되는 북방한계선 설정**
- 북한은 당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
- 이는 정전협정 규정("1개월 내 해상봉쇄 금지")에 따라 클라크라인을 무효화한 데 따른 조치임
- 북방한계선의 당초 이름은 '북방초계한계선'[77]

8월 **소련, 북한에 전후 복구를 위해 10억 루블 규모 무상원조 결정**

9월 1~29일 **북한 김일성 수상을 대표로 한 당정 대표단, 모스크바를 방문해 전후 복구 원조 합의**[78]

---

75)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1961, 57쪽.

76) 서명일 미국 워싱턴에서 1953년 10월 1일, 발효일은 1954년 11월 18일임.

77) 북방한계선이 정전체제의 일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북방한계선이 정전체제의 일부라는 우리측의 가장 이른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배제식(1977) 참조. 이에 따르면, '북방경비한계선'(북방한계선)은 "북한측과 충돌을 피하고 휴전 이후 20년간 이 한계선을 관례적으로 준수해옴으로써 이 선은 휴전체제의 일부로 구성"되었다는 것임. 이후 '정전체제 일부'설은 우리측 주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음. 한편 서해 5도의 경우 '대한민국 영토로서 국제법상 도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 자체 영해를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임.

- 북한 김일성 수상, 소련 몰로토프 외무상을 단장으로 함
- 수풍발전소, 성진제강소, 김책제철소 등 대기업소 외에 농기계, 비료, 가축, **어선** 등 포함, 총 10억 루블 규모의 원조 제공
- 2년 안에 전액 제공(54~55년), 총액 중 2/3를 1954년도에 집행[79] (53. 12. 20. 김일성의 보고)
- 1949년 협정에 의한 차관: 북한이 진 채무액 절반 이상을 삭감, 나머지는 지불 개시 기한 연기
- **어선의 경우는, 북한의 긴급 요청 원조 품목에 포함됨[80](23척의 어선을 무상 제공)**

9월 13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전문을 발송, '모든 외국군의 한반도 철수를 위한 정치 회담 개최' 주장

9월 20일 북한 신포조선소, 침몰했던 '건국-91호'를 인양수리 및 진수
- 9월 26일. '민주-63' 수리·진수

10월 6일 제3차 한일회담
- 회담 대표: 한국측 김용식(훗날 외무장관 역임), 일본측 구보다 간이치로
- 한국측 주요 주장: 기본 관계, 어업문제, 재산청구권 문제, 재일한국인 국적 처리문제, 선박반환 문제 등 일괄 해결
- 일본측 주요 주장: 어업 문제 중심 협의[81]

10월 15일 일본 구보다 망언으로 제3차 한일 회담 결렬
- 주요 발언 내용: "병합 후 불과 30여 년 사이 오늘날과 같이 일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일본 지도의 결과"

10월 26일 한반도 정치회의 소집을 위한 쌍방 예비회담

11월 12~25일 북한 김일성 수상을 단장으로 중국 방문(한국전쟁 원조시의 물자와 비용의 무상 공여, 1954~1957년까지 무상 원조 제공, 기술원조 제공 등에 합의)[82]
- 회담은 11월 14일과 22일 두 차례 있었음
- 북한의 전후 경제복구를 위해 8억 위안을 공여키로 함[83]
- 6.25 전쟁기간 중국의 대북 원조를 무상 공여로 처리하기로 결정

---

78) 웨더스비는 소련측 보고를 인용하여, '54~'56 3개년계획 기간 중 소련 등 공산권이 북한 자본의 75% 조달한 것으로 기술. Weathersby, 2008, p. 11.

79) 「1953. 12. 20. 김일성의 보고」, 『소련과 북한의 관계』, 143~146쪽 참조.

80) 조명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003, 57쪽

81) 이상의 내용은 최종화, 「중국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39쪽.

82) 강근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1987, 194쪽.

83) 북한 노동당 출판사에서 펴낸『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1960)에서도 일부 인정. "공업 및 농업의 복구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극히 필요한 기계 설비, 석탄, 직물, 량곡, 건축 기자재, 운수 기계, 어선 지류 및 문방구 등과 기타 일용 필수품을 받기로.."(115~116쪽). 수산업 부문의 지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11월 23일 **북·중, 경제 및 문화합작에 관한 협정 조인**

- 계기 및 의의: 김일성의 방중 기간 중 조인. 이후 중국의 대북 원조 기초가 됨

12월 20일 **북한 김일성 수상, 최고인민회의 제6차 회의에서 소련 방문 성과 보고**

- 10억 루블 원조금 사용 방법에 합의, 그 내용 중 **농수산 부문에서 '어선' 제공** 포함

* 남한 : 1953년 기선저인망 근해 출어단을 조직, 해군 경비정과 정부 지도선의 보호 하에 북위 38도 이북 수역에 출어[84]

84)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4쪽 참조.

1954년 3개년계획(54~56) / 북한, 수산부문 '만선운동' / 제네바정치협상

1월 9일 중국, 정전협정에 따른 정치 협상 회의 개최 재촉구

1월 25일 북·중, 철도 협정 체결(중국 베이징)

2월 미, 소, 영, 프 4개국 외상회의(베를린) 통해 한반도 문제 토의 합의

3월 11일 북한, 내각 결정 제42호를 통해 함흥을 포함한 6개 전쟁피해 도시의 재건 결의

3월 11일 북한,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수산물 공급사업 개선강화에 관한 내각결정 제43호」 채택

3월 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내각 수산국을 폐지하고 수산성 신설**

4월 **북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4월 27일 **북한 남 일 외무상,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방안 제의**
- 총선에 앞서 외국 군대의 동시적이고 균형 잡힌 철수 주장

5월 20일 북·중, 「조중환율협정」 및 「조중국경에서의 화폐 교환 의정서」 체결

6월 24일 북한, 「선박건조 부문 사업 개선을 강화할 데 관한 결정 제92호」채택

6월 **북한 김일성 수상, 수산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어획고를 전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 지시**[85]

7월 6일 동독 사통당, 함흥 재건 지원 결정[86]
- 주요 내용: 총 원조금액 2억4백만 동독마르크, 실행기간 1955~64년

7월 12일 **북한 김일성 수상, 함북도 당열성자회의에서 '수산 생산량 확대' 독려(교시)**[87]

8월 30일 북한 남 일 외무상,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법적 박해를 반대 항의하는 성명」 발표

9월 5일 중국 인민지원군 대변인, 총사령관이 펑더화이에서 덩화(부사령관 양더지 등)로 교체됨을 발표

9월 28~ 북한 김일성 수상,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5주년 기념 중국 방문

---

85) 『광명백과사전』 18(수산업), 2009, 745쪽.

86) 성상환,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구 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서울대 통일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발표 자료, 2009. 2. 5.

87)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1961, 59쪽

* 소련: 1954~55년, 북한에 23척의 어선 제공, 북한 수산업 지원[88]
  - 이는 53년 북한 당정대표단의 소련 방문시 합의에 따른 것임
  - 1953년 12월 20일 김일성의 최고인민회의 제6차 회의 보고

* 북한: 1954-56년 3개년계획 기간, 공산권 원조는 북한 자본투자의 75% 차지[89]

88)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로에 선 북한경제-대외협력을 통해 본 실상』, 162쪽.

89) Kathryn Weathersby, "Dependence and Mistrust," 2008, p. 11.

1955년 북일 간접무역 합의/ 북한 영해 12해리 채택/ 북한, '주체' 최초언급/ 한일 수산관계 약화/ 북한, 남북수산협상 제의

1월 27일 북한-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 과학기술협조협정 조인

1월 일본 하토야마 이치로[90] 총리, 연두기자회견에서 중국·소련과의 국교정상화 및 북한과의 경제관계 개선 의사 표명

2월 5일 북·소, 과학기술협조 협정(유효 기간 5년 및 자동연장)
- 주요 내용: 과학기술 정보 교환, 기술원조 제공, 전문가 파견

2월 25일 북한 남 일 외무상, 대일 관계 개선 및 경제교류 제안 성명 발표
- 남 일의 발표는 1955년 1월 하토야마 내각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관계개선 용의 표명에 따른 공식 반응임

2월 북한 조선로동당, 전국수산부문 열성자대회 소집, '증산과 절약' '선진기술 도입' 등 결의

3월 5일 북한 내각결정 25호(「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규정」)를 통해 12해리 영해 채택
- 이 사실은 외부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다가 1968년 푸에블로 호 사건을 통해 공개됨

3월 25일 중국, 북한 주둔 인민지원군 중 일부 병력 철수 발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제안 의사 표명

4월 15일 중·일 어업협정(민간) 베이징에서 체결
- 협상 주체: 일측-일중어업협회, 중국측-중국어업협회
- 주요 내용: 1년간 유효, 서해(황해) 및 동중국해를 대상
- 황해의 기선저인망어업금지선(일명 모택동 라인) 인정[91]
- 1975년 중일 정부간 어업협정 체결 때까지 중일어업협력의 골간이 됨[92]
- 일본측의 협정체결 의도는, 중국 당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잦은 납치 및 몰수 방지[93]

---

90) 鳩山一郎. 일본 제35대 총리. 요시다 시게루의 뒤를 이어 일본 총리에 오름. 2009년 일본 총리가 된 하토야마 유키오의 친조부. 2009년 손자인 하토야마 유키오도 총리에 올랐으므로 1950년대의 하토야마 내각과는 구분되어야 함.

91) 최종화, 「중국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33쪽.

92) 『日本近代漁業年表』, p. 21 및 주55(연도별 연장 등 현황) 참조.

93) 1950년 12월 7일 발생한 일본 어선 '다이니치운젠마루'호의 피랍 이래 1954년까지 총 158척, 1909명의 어부가 중국측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그 중 104척이 귀환되지 못함. 백충현, 『일·북괴 민간어업협정 체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997. 56쪽, 주24의 설명 내용.

4월 18~24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 중국대표로 저우언라이("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성을 찾는 회의"[94]) 참석
- 중국 '평화공존 5원칙' 공식화: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호혜평등, 평화공존

4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북한 김일성에 현물세 징수, 양곡수매사업, 농업협동화 정책의 시정 권고

5월 26일 북한 수산상, 남북한 수산당국자 회담 제의
- 주요 내용: 남측 어민의 북측 영해 어로를 위해 남측 어민대표와 회담할 용의, 남북한 어장들의 상호이용 및 관련 문제들을 협상하기 위한 남북한 수산당국자들 또는 일반 어민대표들의 예비회담을 남북한의 임의의 지역에서 소집 제의 등[95]

5월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7월 22일 북한, 중국 선양에 총영사관 및 투먼 영사관 개설 결정

8월 17일 이승만 정부, 재일교포의 한국 방문 당분간 금지, 대일교역과 일본여행 금지[96]

10월 18~20일 일본 사회당(단장: 후루야 사다오古屋貞雄)[97] 대표단 방북

10월 19일 북·일, 「무역촉진에 관한 의사록」 교환(평양)[98]
- 수산 관련 내용: 어업분야에서 자유로운 어업활동 보장 등 포함
- 북한측 조선무역촉진위원회 위원 김최선, 일본측 와코교역 대표 고쿠분 및 일소무역회 전무이사 다나베 포함
- 북한 거래항으로 **청진항** 이용 합의[99]

10월 20일 북·일 공동성명 (국교 정상화 및 양국 연안공해에서의 자유로운 어로 활동 보장 등)

10월 24일 일본, 한국 정부의 항의를 이유로 들어 대북 무역 등 불인정 결정

10월 26~29일 일본 사회당(단장 호마시 하카루) 제2차 방북[100]

---

94) '구동존이.'

95) 『남북관계연표』(1948~2011), 통일연구원, 2011, 15쪽.

96) 최종화, 「중국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1993, 40쪽.

97) 후루야 사다오(古屋貞雄, 1889~1976). 일본 메이지대 법과대학 졸업 후 변호사. 제1차 조공사건 때 이 인, 김병로 등 조선인 변호사와 함께 공판에 참여. 전후 사회당 의원 등 정치인으로 활동. 정치적 신조에 따라 대북, 대중국 관계 개선에 노력. 1950년대말 재일동포 북송사업 때 이를 적극 지지. 후루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김효순, "굿바이 평양과 후루야 변호사"(한겨레, 2011. 2. 20) 참조.

98)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오름, 2004, 57쪽.

99) 홍성걸 외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 어업협력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이찬우,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9년 가을호 참조.

100)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2004, 56쪽.

12월 3일 북한, 박헌영을 특별법정에 회부
- 재판장: 최용건
- 박헌영에 대한 사형판결일은 12월 15일임

12월 5일 일본 어민 대표, '이승만 라인 배격행동대회' 개최

12월 18-21일 동독 내각수반 오토 그로테볼, 북한 방문
- 평양 및 동독이 재건을 지원하고 있던 함흥 방문[101]

12월 북한 김일성 수상,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연설

12월 28일 중국 외교부, 한국 해군의 (공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사격 및 나포 비난 성명

* 남한: 수산업 진흥을 위해 상공부의 외청으로 해무청 설치[102]

* 남한: 기선저인망 선단, 해군경비정과 정부지도선 보호 하에 북위 38도 이북 수역에 출어[103]

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 200~201쪽.

102)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4쪽.

103) 이찬우,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9 참조.

1956년 북일, 중국 다롄항 경유 간접무역 개시/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 / 소련20차당대회

1월 일본 적십자사 대표, 신의주 경유 평양 방문. 재일 교포 및 북한 체재 일본인 상호 송환 관련 첫 회의[104]

- 일본측 대표로는 이노우에 마츠다로, 카사이 요시쓰케, 마야코시 키스케 등이 참가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

-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의 비밀 연설을 통해 스탈린 격하운동(개인숭배와 독재 비판)

2월 **서해 NLL 수역에서 북한에 의한 남측 공군기 피습**

3월 6일 일본, 일조무역회 결성(1993년 해산,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통합됨)[105]

4월 25일 중국 마오쩌둥, '10대 관계론' 발표

- 공업과 농업, **해안 지역의 산업과 내륙 지방의 산업**, 경제 건설과 국토방위, 생산 단위들과 개인 생산자들, 중앙과 지방, 한민족과 소수민족, 당과 비당, 혁명과 반혁명, 옳음과 그름, 중국과 외국 등
- 10대 관계론을 통해 1960년대에 본격 제기되는 내륙 방어 중심의 '삼선(싼시엔) 정책' 시초 제공[106]

4월 23~29일 북한 3차 당대회

-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논의**[107]
- 해외원조 대폭 감소로 계획 확정에 난항
- 김일성은 당의 단결 강조하면서 자신의 항일 빨치산 활동으로 시작되는 당의 역사 연구 당부
- 소련측에서 **브레즈네프가 대표단장으로 방북하여 연설**(20차 당대회 홍보)

4월 29일 일·소 어업교섭 개시(모스크바)

- 1956년 3월 21일 소련이 북대서양 서북부 어류 자원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어업제한 수역 문제 및 어업협정, 해난 구조 등을 의제로 함[108]

5월 14일 **일·소어업조약 체결(모스크바)**

---

104) Tessa Morris Suzuki, *Exodus to North Korea*, pp. 101-102. 이 때의 방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최초의 방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105) 이찬우, 2009, 48쪽.

106) John W. Lewis et al., 1994, pp. 88-89.

107) 이태섭, 2009, 28쪽.

108) 『日本近代漁業年表』, 23쪽.

- 주요내용: 북서태평양 어업자원의 규제 조치, 일소어업위원회의 설치 등
- 서경 175도 이서의 북태평양 공해에서의 일본 어업 규제-일본은 공해어업자유의 원칙 고수[109]
- 1978년 4월 30일 종료(200해리 수역과 연관)

5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북한원조 활동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

6월 1일 ~7월 19일 **북한 김일성 수상, 사절단 이끌고 소련 및 동독 등 동유럽 방문[110]**
- 소련 방문시, 「조소 공동성명」(7.12): 남한과 문화교류 촉진, 자유왕래 등 북한제의에 의견일치[111]
- 김일성 동독 방문시, **북한 수산업에 대해 "전쟁 전과 동일한 어려움 존재"** 설명
- 동시에 1956년 목표치인 34만4천 톤 제시(1957년 전쟁 전 수준 도달 예상)[112]

6월 12일 **북한, 동독과 경제문화협조협정**

6월 12일 **북한, 소련·중국·베트남과 더불어 「서태평양 어업해양 및 호소조사협력협정」 조인(베이징)**
- 조소 공동코뮤니케를 동시 발표
- 체약국 접경수역의 어업, 해양학 및 소호학 공동연구 활동 협력
- 동해(일본해), 서해(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을 대상
- 수산업의 경우, 어법 개발, 어족 보호, 효율적인 어로 활동 보장 등을 위한 연구 포함[113]

6월 **일본 토코물산, 토호상회, 와코교역, 미나토상점 등 무역상사 대표단 북한 방문, 조선무역 회사와 중국 다롄 경유 거래계약 체결[114]**

7월 3일 **북·중, 인명·선박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구난협정 체결**

8월 30~31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8월 종파 사건')**
- 당시 옌안파는 1955년 4월 조선로동당의 기본 노선이 된 '급진적 공업화' 정책, 김일성 개인 숭배 등을 비판

8월 **북한 수산성 부상 김영수, 수산대표단장으로 소련 어업 시찰**

8월 **소련, 북한에 전후 복구를 위해 3억 루블 추가 무상 원조 결정**

---

109) 최종화, 「중국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1993, 33~34쪽.

110) 방문 성과는 빈약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111) 『소련과 북한의 관계』, 185쪽(「소련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간 회담과 관련하여 발표된 소조 공동 코뮤니케」).

112)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통일연구원 편, 2006, 2쪽. 이 자료집 수록 자료는 1954~1986년 기간. 작성일자 1956. 6. 8. 김일성의 동독 방문 중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 울브리트를 만나 북한 경제 현황 직접 설명.

113) 나탈리아 바자노바, 1992, 162쪽. 정확한 날짜 및 협정 주요 내용은 『日本近代漁業年表』, 1980, p.23 및 주64(pp. 86-87) 참조. 한편 김찬규,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국토통일원, 1977에도 간략한 설명 있음.

114) 이찬우, 2009, 48쪽.

- 대북 무상원조는 공업원자재, 운수설비 및 기타 설비, **어선**, 농기계, 화학비료, 가축, 식량과 기타 상품

9월 4일 **북한 내각결정 제88호(「서해수산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채택**

9월 23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8월 전원회의' 결정 번복**

- 소련과 중국은 8월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아나스타스 미코얀과 펑더화이를 각각 대표로 평양에 파견, 압력 행사[115]

9월 27일 **북·일 무역, 중국의 다롄항을 경유한 간접 무역 방식의 형태로 시작**

- 일본 토호상회(동방상회), 북한산 무연탄 3천 톤을 중국 상사 명의로 다롄항에서 선적 수입

10월 19일 **일·소 관계회복 공동성명(모스크바)**

12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2월 전원회의) 통해 '천리마 운동' 발표**

- 실제 시작년도는 1958년임[116]
- 핵심 구호는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117]
-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내에서 친소파와 친중파에 대해 광범위한 숙청 작업을 진행

* 북·소: **태평양 서북수역 수산자원 이용협정 체결**

* 동독: 동년 12월. 동독 에리히 레셀, 북한 건설단의 일원으로 함흥에 도착

* 북한: 전체 어민 총수(국영 부문 제외)의 93.7%가 협동 경리에 망라[118]

* 북한: 담수어연구소 설립[119]
  - 동독은 이 무렵 북한 수산업에 대해 **"전쟁 전과 동일한 어려움 존재"** 평가[120]

* 일본: 재일교포 송환(북송)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

* 남한: 참치연승어업으로 원양어업 첫 조업

---

115) Kathryn Weathersby, "Dependence and Mistrust," p. 12.

116) 이태섭에 따르면, 1956년 12월 당시 대중 운동은 '천리마 운동'으로 명명되지 않았으며, '천리마'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 회의에서였음.

117) 그 배경에 대해서는,『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의 발전』, 1960에 따르면, "전후 3개년 계획기간에는 형제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소비품들이 원조로 수입되었으나 1957년부터는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더 많은 소비품을 생산하는 과업을 엄격히 수행..." (183쪽); 이태섭,『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2009, 40~42쪽.

118)『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1961, 61쪽.

119) 장창익,「북한의 수산업현황과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1993, 351쪽; 김준회,『북한의 어로실태 조사』, 1982, 121쪽.

120)『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통일연구원 편, 2006, 2쪽. 이 자료집 수록 자료는 1954~1986년 기간. 작성일자 1956. 6. 8. 김일성의 동독 방문 중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 울브리트를 만나 북한 경제 현황 직접 설명.

1957년 제1차 5개년 계획(~61)[121]/ 북일 공식무역협정 체결 / 사회주의권 대북 원조 격감[122]

4월 18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4월 전원회의. ~19일)
- **김일성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연설을 통해** 생산 증대 및 수산물 가공업 강조
- '수산물고지 점령 투쟁'

5월 **북한 김일성 수상, 청진수산사업소 현지 지도하면서 포경산업 독려**

6월 7일 북중, 우편협정 갱신(평양)

6월 소련 공산당 후르시초프 제1서기, 북한 방문
- 방문 당시 함흥도 방문함

7월 20일 **소련, 피터대제만에 대해 내해 선언**
- **내해 선언의 근거로 '역사적 만' 주장**
- 동시에 이 경계선을 소련 영해측정 기선으로 발표[123]

7월 26일 **중국, 동중국해에 금어구역을 새로 설정**
- 종전 북위 29도 이남을 북위 27도 이남으로 축소

7월 28일 **북·일, 어업촉진을 위한 전문 교환**

9월 20일 북한 김일성 수상, "1958년에는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경제 건설" 주장[124]

9월 27일 북·일, 무역협정 체결(평양)
- 유효기간 1년. 1958년 9월 실효
- 무역 규모는 3,400만 달러이며, 동 협정 체결후 1958년 일본 실업단 북한 방문
- 1958년 5월, 중일 무역 중단과 더불어 실질적인 북일 무역도 중단

10월 14일 **북·소, 국경문제조정협정**
- 주요 내용: 국경 질서유지 및 분쟁 방지

---

121) 제1차 5개년계획의 지도원칙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임. 이 때 수산업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와 인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수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 그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으로 규정. 이상『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63~64쪽 참조.

122)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2005, 61쪽. 1956년까지 원조금액의 예산 비중이 16% 이상, 그러나 1957년 1.2%로 떨어짐.

123) 『日本近代漁業年表』, pp. 24-25.

124) 김일성,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 1957. 9. 20)」, 『김일성 선집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10월 폴란드, 헝가리 기술자들 **함흥 복구** 사업에 합류[125]
- 동년 말까지 북한의 공업 생산량은 전전 수준에 육박. 그러나 **식량난은 계속됨**

11월 3~23일 북한 김일성 수상, 소련 방문 및 모택동 회담(모스크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합의

12월 31일 북·중, 과학기술합작(협조) 협정
- 동시에 양국 사이에 수문협력협정도 체결

12월 31일 한·일 상호석방각서 조인

* 북한: 김일성, 청진조선소, 남포조선소, 선포선박수리공장, 원산선박수리공장 현지 지도
* 남한: 수산부와 해무청 및 중앙수산시험장의 공동시범사업 형식으로 제동산업(주) 소속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참치 연승시험조업 실시(**원양어업의 효시**)[126]
* 남한: 85개 농업협동조합에서 150 정보의 논에 시험적으로 양어사업, 130kg의 잉어 생산[127]

125) 백승종,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 2000, 160쪽.

126) 『한국원양어선30년사』, 1990. 84~85쪽.

127) 장창익, 1993, 355쪽.

1958년 북한 정권수립 10주년, 사회주의 완성 선언 /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북한 제1차 5개년계획 / 북한, 남한에 수산협상 제의/ 중국 대약진 운동 시작

1월 27일 북한 **남포항만** 복구를 위한 북·소 간 합의서 체결[128]
- 남포항만 복구공사는 1960년 완료됨

2월 5일 북한, '외국군대 철수와 중립국 감시하의 한국자유선거' 통일방안 주장

2월 7일 중국,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성명
- 2월 14~21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일행, 북한 방문**
- 김일성은 저우언라이와 동행하여 택암협동농장 및 **함흥 방문**[129]
- 중국은 연간 면화 1만 톤 공급 약속, 운봉수력발전소 합작건설 지원 제의[130]

2월 16일 북한 무장괴한 6명, 대한항공 DC-3기 납치
- 비행기 억류, 탑승객 귀환

2월 19일 김일성·저우언라이 공동성명
- 북한 주둔 중국군의 일방적인 완전 철군에 합의
- 방문 기간중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는 김일성의 안내로 흥남화학비료공장 등 함흥 시찰

2월 24일 ~4월 29일 **국제 해양법회의, 제네바 개최**
- **영해 및 접속수역, 공해, 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 대륙붕 조약 등 4개 협약 조인**
- 논쟁점에 대해서는 의정서 채택
- 영해의 폭, 각 연안 해역에서의 어족자원 규제 권리에 대해 합의 실패

3월 3일 **북한, 제1차 당대표자회**
- 「**인민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하여」(계획기간: 1957~1961) 결정(**북한 최초의 장기전망계획**)
- **천리마운동 개시(공식화)**
- 1956년 종파사건 이후 반김일성파 숙청작업 완료(김두봉 등 연안파 공식 단죄)
- 동 대회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실각

3월 22일 **북한, 내각결정 제33호(「서해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하여」) 채택**

4월 15일 **제4차 한일회담(일본 외무성)**
- 한국측, 기본관계 등 4개 의제 및 대일 청구권 우선 교섭 주장

---

128) 나탈리아 바자노바, 1992, 47쪽.

129)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참조.

130) Zhihua Shen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NKIDP, May 2012, p. 22.

5월 북·중, 압록강 어업 자원보호를 위한 합동조사단 활동
- **합동조사단의 활동은 동년 12월까지 진행**

6월 5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6월 전원회의)
- 주요 결과: 모든 시, 군에 한개 이상의 지방산업 공장을 건설한다는 과업 제시

6월 13일 일·중 (민간)어업협정 실효
- 일본 어선의 중국 금어구역내 불법 조업, 5월 2일 나가사키의 중국국기 사건 등 발단[131]

6월 북한 김일성 수상, 강원도 현지지도 시 '수산가공 부문 강화' 강조

8월 북한 김영수(태평양서부어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대표단으로 중국방문

8월 북한, 사회주의 협동화 완수 선언

9월 4일 중국, 12해리 영해 선언(영해선언)
- 이 때 보하이만(**발해만**)을 '역사적 만'(historic bay)으로 간주[132]

9월 16일 북한 외무상 성명, 귀국 재일동포에 대해 귀국 후 생활안착과 자녀교육 보장 용의 표명[133]

9월 16일 북한 김일성 수상, 전국 생산혁신자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며」 연설

9월 27일 북·중, 1959~1962년 상품 교환 협정 및 중국의 대북 차관(2건) 협정 체결(베이징)

10월 11일 북한, 농업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협동화)하는 내각결정(제125호)
- **이 결정 이후 수산협동조합의 통합 조치도 동시 진행**

10월 18일 북·베트남, 과학기술협조협정 체결

10월 28일 중국군, 북한으로부터 완전 철수 발표(「조중 공동성명」)

11월 21~28일 북한 김일성 수상, 중국 방문

12월 2~10일 김일성은 2차에 걸친 중국 방문 사이, 베트남도 방문
- 중국 관영 런민르바오, 북·중 관계를 '순망치한'에 비유[134]
- 김일성은 이 때 5개년계획의 장애로서 '노동력 부족' 언급[135]

---

131) 『日本近代漁業年表』, p. 27.

132) 최종화, 「중국 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수산경영론집』, 1993.

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 252쪽.

134) Zhihua Shen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NKIDP, May 2012, p. 23. 순망치한(脣亡齒寒)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줄여서 '순치'라고도 함.

135) Zhihua Shen and Yafeng Xia, p. 24.

11월 24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내각 공동결정서(「천해양식과 담수양어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하여」) 채택, 천해양식과 담수양어 생산목표 제시**[136]

11월 27일 **북한 김일성 수상(박정애, 남 일, 김광래),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펑더화이, 허롱, 천이)와 회담**

- 펑더화이는 김일성에게, **남한 어선이 38선을 넘어 조업**하는 상황을 질문
- 김일성은 '올 봄 9척, 약 40명이 38선을 넘었다'고 답변(중국외교부문서)[137]

12월 27일 **북·중, 화폐교환율 및 비상업적 지불관련 결제 협정**

12월 29일 **북한, 수산상·내무상 공동성명 형식으로 남측에 남북 수산 기관 및 어민단체 대표 협상 제의**[138]

- **북반부 동해**에서의 남반부 어민들의 어로작업은 목선과 범선 혹은 30마력 이하 발동기를 설치한 기관선으로 함
- 어로 목적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길이 1m, 폭 70cm 이상의 크기를 가진 흰 깃발 계양하고, 야간에 푸른 등을 켜야 함
- 북반부 해역에 들어온 어선들은 (북) 강원도 내무기관에 와서 선박 종류와 선원 명단 제출
- 상기 어선들의 무장 금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목적 이용 금지 등

*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 접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음에도 주변국에 차관 확대

* 국제 해양: 유엔해양법협약 협상 실패(영해 문제). 아이슬란드, 영국 트롤선의 대구어업을 막기 위해 12해리 배타수역 선포

* 북한: 태평양서부어업연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평양 개최

* 북한: 청진조선소에서 북한 최초로 50톤짜리 냉장운반선 건조

* 미국: 미군, 남한에 전술핵 배치

---

136) 장창익(1993)에 따르면, 이 때 곤포의 수하식 양식방법을 중국으로부터 도입(장창익, 1993, 356쪽).

13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Chinese Prime Minister Zhou Enlai and North Korean Prime Minister Kim Il Sung,"(1958. 11, 27), NKIDP. 중국 외교부 자료. 이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조선 어부들이 최근 38선을 넘었는가"라는 펑더화이의 질문에, '봄에 9척 약 40명이 있었다'며, "우리는 그들을 북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많은 배에 가득 차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한 뒤 돌려보냈다"라고 답함.

138) 『남북관계연표』(1948~2011), 통일연구원, 20쪽. 한편 우리측은 북한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없고 실체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1960년대까지 일관함(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1959년 북·중, 어업협정 협상/ 북한 포경업 모색 / 북·일 무역재개 및 재일동포 북송 개시/ 북한 수산업 발전 / 북한, 제1차 5개년계획 초과 달성

1월 **북한, 주중 대사관을 통해 「조중어업협정」 제의**
- **동년 3월 북한은 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제의**

1월 21~ 2월 7일 북한 김일성 수상, 모스크바 방문
-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식 경제노선 찬양("우리는 늘 소련 집단화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배워왔다")[139]

2월 6일 김일성-후루시초프 회견

2월 16일 북한,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을 영접할데 관하여」(내각결정 제16호)
- 북송 교포 직업 알선, 생활 안착, 자녀 취학 보장 등을 제시

2월 21일 북·중, 문화합작협정

2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월 전원회의")
- 교통운수 부문에서 1959년 내에 선박 7백만 톤 이상 수송능력 도달 목표 제시[140]

3월 8일 북한, 천리마운동 발기

3월 10일 북한 김일성 수상, **청진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면서 포경업 및 원양어업 재독려**
- "고래를 1년에 1천 마리만 잡으면 고기는 통졸임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 기름은..."

3월 16일 **북한 김일성 수상, 함북 웅기군(현 나선시 선봉군) 방문, 종합농장 구상발표**
- **낙농, 담수양식, 천해양식 포함**[141]

3월 17일 **북·소, 새 경제협력 협정 체결**
- 산업 장비 기술원조 등 1억2천5백만 달러어치(5억 루블)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 김책제철소 및 평양비단공장 확장 등을 포함

3월 **북한 수산성 조사단을 조직, 동서해 양식 적지 및 내수면 양식 적지 조사 사업(50일간) 실시**

---

139) Zhihua Shen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NKIDP, May 2012, pp. 25-26.

140)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 앙양과 운수 문제』, 조선로동당출판사, 16쪽.

141) 나카가와 마사히코, 「북한 연합기업소의 특징」, 54쪽.

4월 13일 북·일, 재일교포 북송 문제 회담 개시(스위스 제네바)[142]

6월 **북한 김일성 수상, 수산업 발전에 관한 교시(「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143]
- 강원도열성자대회를 통한 교시
- 원해어업(원양어업)과 중소어업의 배합, 여러 가지 어로방법 적용 등을 지시

6월 **북한 김일성 수상, 고래포 20문과 포창 200개를 청진수산사업소에 직접 보내 포경업 독려**

6월 북·일 간 간접무역 재개(홍콩 경유)
- 일본 동방상회가 배선한 노스브리즈호가 일본에서 화물을 싣고 **청진항** 입항

6월 18~29일 **북한 평안북도-중국 랴오닝성, 양국변경지방 수풍저수지 공동이용 양어 의정서 서명**
- **동 의정서는 1971년 5월 27일 기간 만료로 실효**

7월 17일 남한, 부산에 억류 중이던 일본 어선원 124명 집단 탈출(처우 개선 및 조기 송환 요구)[144]

8월 4~10일 **북·중, 어업협정 협상**
- **동 협상은 동년 1, 3월 북한측의 제의에 따라 이뤄진 것임**

8월 25일 **북·중, 황해어업협정(「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 황해어업협정」) 조인**
- 양국 어업인의 어로 활동에 대한 규정, 상호간 어로기지 및 배후공급지 제공, 긴급피난과 연락 방식 등에 대한 합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중국: 수산부 부부장 쓰민(史敏)을 대표로 함

8월 30일 북·일, 「재일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체결
- 협정 조인식은 제3국인 인도 캘커타에서 개최됨
- 협정 조인 후 3개월 내 북송선 출항시킬 것 약정

8월 31일 **북한, 동력화학공업성 신설**
- 상업성에 수매양정성을, 경공업성에 수산성을, 사법성에 지방행정성을 각각 통합

9월 7일 북·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

9월 25 ~10월 2일 **북한 김일성 수상, 중국 방문**
- **방문의 표면적인 이유: 신중국 수립 10주년 기념식 참석**

1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 255쪽.

143)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80쪽.

144) 『日本近代漁業年表』, p. 29.

9월 **북한 원산수산대학교 개교**[145]

10월 26~2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 1959년 8월 소련 후루시초프의 미국 방문 및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지지 입장 표명

-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통일 문제 토의를 위한 상설위원회 조직 제의(이 위원회에서 군축을 포함해 경제 문화 과학 예술 체육 부문 상호 교류 제의)[146]

11월 7일 북한, 중국 상하이에 총영사관 설치 결정

12월 16일 **일본 니가타 항 출항한 첫 재일조선인 북송선 청진항 도착(12월 14일 출항)**

- **1960년 12월 18일까지 연 51차에 걸쳐 5만1,978명 북송**[147]

12월 23일 중국 주더(주덕) 전인대 상무위원회 의장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국가위원회 의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최용건에 북측 통일안 지지 서한

* 북한: 수산 생산량 증가, "인구 1인당 어획고 해방 전의 38kg에서 1959년 76kg으로 장성"[148]
* 동독: 북한 경제에 대해 "인민 경제의 발전에 있어 급격한 악화까지는 아니지만 잠정적인 정지 상태"로 평가[149]

145) 김정봉,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 수산협력 방안」, 『농촌경제』, 제16권 제4호, 105쪽.

146)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I), 1990(증보판), 43쪽.

1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 259쪽. 일본 적십자사 대표가 신의주 경유, 평양에 도착 첫 회담을 가진 지 약 4년 만에 처음 북송이 실현됨.

148) 『해방후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발전』, 255쪽.

149)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1959. 10. 20. 주북 동독 대사 피셔의 보고),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20쪽.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1960년대

개 관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1960년대는 주체를 확립한 북한이 김일성의 안정된 리더십 하에 한편으로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 무력도발을 강화해 북한 주도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꾀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제의했다. 이 제의를 통해 북한은 안정된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물자 교역 및 경제건설 협력을 위한 남북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기도 했다. 남한에서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일성은 연방제 제안을 백지화하지는 않았으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보다는 무력에 호소한 통일방안에 기울어졌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전국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을 천명했으며, 이듬해부터 일부 공장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될 정도로 군민을 전국적인 진지체제와 지하갱도 건설에 동원해 동독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남 정책의 변화는 때마침 중소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로부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1961년 북한은 중소간 경쟁심리를 십분 활용하여 소련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을 동시에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1962년에는 백두산 부근 영토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등 유리한 조건 하에서 조중국경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동년 9월 열린 제4차 당대회에서 야심찬 제1차 7개년계획을 발표했으며, 동년 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해 '수산물 고지 80만 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3년부터 약 3년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공세적으로 변모했다. 북한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를 통해 '남조선 민족해방 혁명'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대 정강'을 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규정, 수령체제를 공식화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이처럼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간간이 남한을 현혹시키는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1964년 3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3기 3차회의를 통해 남북 합작 실현의 일환으로 남한에 쌀 2백만석(30만 톤), 강재(10만 톤), 화학섬유(1만 톤), 시멘트, 목재 등의 대규모 원조를 제의하기도 했다.

1960년대 내내 북한은 국력 신장의 상징으로 원양어업 확대에 주력했다. 1961년 김일성은 수산성 책임일군을 직접 불러 소련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사할린, 캄차카 등지로 원양어업의 진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동년 7월 북한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원양어

선단이 오호츠크해로 처음 시험출항에 나섬으로부터 북한의 원양어업 시대가 열린다. 1962년 6월에는 제2차 원양어선단이 출발하여 시험 조업을 실시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호츠크해 등지에서 본격적인 원양어업이 이뤄진다.

한편 남한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남북 관계에서 수세에 몰려 있었다. 1964년 6월 한국 정부는 북한과 인접한 경계해면 어장에서 우리측 어선의 피랍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로 한계선'(농림부예규 제32호)을 설정했다. 또한 1967년에는 내무, 국방, 농림부 3부 장관 합동고시로 어로한계선을 재조정하는 조치도 이뤄졌으며, 이 때 어로한계선 외에 '특정 수역'이 설정됐다.

1960년대 중반 이뤄진 대일 관계 정상화는 남한의 해양수산 분야 특히 남한의 수산 분야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대일 관계 정상화의 첫 분수령은 1962년 11월 대일 청구권 문제를 타협한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통해 나타났으며, 이후 협상은 지속되어 1965년 2월 한일기본조약으로 귀결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남북한 수산 관계에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과 더불어 한일어업협정도 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구권 무상자금 3억 달러의 일부가 한국의 시험선과 어선의 도입, 어선 건조 등 수산업 분야에 흘러들었으며, 어업협정의 발효에 따라 일본 어선의 평화선 출어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1967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는 '수산진흥 5개년 종합계획'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수산 분야에서 남북한간 본격적인 경쟁의 여건이 마련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정책은 베트남에서의 '구정공세' 등 대외정세에 민감하게 영향 받으며 더욱 호전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68년 1월의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습격기도 사건('김신조 사건'), 같은 달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에 대한 전격적으로 나포 사건, 동년 10월 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 공비단 침투사건 등은 대표적이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북일 관계는 1968년 하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해 이듬해 1월 북일은 쌍방 무역협회를 통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한편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었던 북중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1969년 9월 최용건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당정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관계 조정이 이뤄졌다.

1960년 UNCLOS-II/ 북한 원양어업 시도 / 북한 연방제통일방안 제의

1월 26일 북한 내각결정 제3호(중공업위원회와 경공업위원회 신설)에 따라 경공업성(수산성을 포함)이 경공업위원회 지도와 관리 아래 들어감

3월 17일 ~4월 26일 **제2차 유엔해양법 회의**
- 영해 폭의 결정 등 1958년 회의에서 미해결로 남은 문제의 해결 목적. 그러나 합의도출에 실패
- 4월 26일 결의안 채택("어업에 직결되는 국제법 발전은 많은 국가들의 관행과 의무에 변화를 초래")[150]

4월 19일 남한, 4.19혁명

5월 23일 **북·중, 국경하류항운합작 협정**
- 두만강 및 압록강을 대상. 북한 리영호, 중국 于眉를 대표로 함
- 전문 11조 및 부록: 체약 일방 선박이 상대방 항구 출입시 선박내 선원과 여객에 대한 공급, 선박 관리유지에 필요한 비품의 반출입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등 규정
- 부록(중조 국경하천 선박항행 규칙)의 주요 내용: 항행시 충돌 방지를 위한 선등 계양, 사고 방지를 위한 고정어망 설치 금지 등 규정

6월 22일 **북·소, 무역과 항해에 관한 조약 체결**
- 무역에 있어 최혜국 대우 규정
- 수출입시 항만 화물에 대한 최혜국 대우 규정
  (세금, 계류, 항구와 정박지에서의 선적과 하역, 시설 이용 등)

7월 30일 **북·중, 평양에서 어업협정 후속 문제 해결 위한 회담('회담 기록'에 서명)**

8월 14일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첫 제의**[151]
- 물자 교역 및 경제건설 협력을 위한 남북실업계 대표로 구성된 **경제위원회** 구성 제의[152]

8월 20일 **북한, 쿠바공화국과 국교 관계 수립**
- 북한-쿠바 간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8월 **북한 조선로동당 확대 전원회의**
- 수산부문 등 전체 산업분야 기술기능 향상 강조

8월 **북한 조선인민군, 서해 NLL 수역에서 남한 초계정 피격**

---

150)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p. 36.

151) 자세한 내용은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49~51쪽. 한편 북의 연방제 제의는 남의 장 면 정부 수립과도 관련 있음.

152)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7, 90쪽 도표.

10월 13일 **북·중, 대북 차관공여 및 장비기술지원 공급협정**

- 1961~1964년 5년간 북한 정부에 장기차관 4억2천만 루블 공여 및 산업시설 건설 지원이 주요 내용

10월 25일 **제5차 한일회담 개시**

11월 22일 **북한, 제2기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 통해 남북 경제문화 교류 제의(공동어로 제의)**

- 수산부문 주요 제의 내용: 남북한 어민들의 자유로운 어로활동 보장, 남북어장과 어항들의 상호개방 및 공동이용[153]
- 이와 함께 파괴된 남조선의 민족공업 부흥 주장

12월 24일 **북·소, 상호물자공급에 관한 장기협력 체결**

12월 27일 **북한 용암포수산사업소 소속 어선 2척, 서해 원양어업 시험 조업 출발(70일간 어로전)**

12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확대 전원회의**

- 심해와 원해(원양) 어업의 적극 발전 토의[154]

* 북·소: 동해 연구 및 어로 조사를 위한 공동 조사단 구성(각종 어류자원, 수중생태, 수질 연구)[155]

* 북한: 1960년까지 북한은 5개년계획 성공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음[156]

153) 『남북한통일대화제의비교』(II), 59쪽.

154)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86쪽.

155) 나탈리아 바자노바, 162쪽.

156) 이태섭, 『북한의 경제 위기와 체제 변화』, 133~138 쪽.

1961년 한국, 5.16 군사정변 / 북한, 오호츠크해 어업진출 및 노동당 4차당대회 / 북한, 제1차 7개년계획 시작년도 / 한일 관계회복 시작

*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은 실패하여 1970년까지 연장됨

1월 1일 북한 김일성 수상, 신년사 통해 원양어장 진출 강조

1월 5일 북한 내각 1차 전원회의를 통해 수산성 독립
- 경공업성에 통합한 지 약 1년 만에 원위치
- 산하 기관에 도 수산관리국 설치[157]

1월 13일 북한 김일성 수상, 수산성 책임일군을 불러 소련과 어업협정 체결하고 사할린, 캄차카 원양어업 진출 추진 지시

2월 8일 북한, 간석지연구소 설치(조선로동당 중앙위 상무위원회 결정)

3월 북한, NLL 지역에서 남한 해군함정 피격

4월 일본 이케다 내각, 대북 직접무역 인정
- 1956년 간접무역 개시 5년 만에 직접무역으로 전환

5월 12일 북한 김일성 수상, 함경북도 내 수산부문 관계 일군 회의에서, 바다 양식, 양어 사업 강조

5월 13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족

5월 16일 박정희 소장, 군사 쿠데타

6월 17일 북·중, 베이징에서 어업협정에 따른 후속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개최
- 1960년에 이어 '회담기요'에 서명

6월 29~7월 15일 북한 김일성 수상 소련 및 중국 방문

7월 6일 북한 김일성 수상 소련 방문 중, 「조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체결(군사동맹 조약 포함)
- 주요 내용: 어떤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무력침공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제1조)
- 이 시기 북·소, 북·중 간 우호조약 체결은 남한의 5.16 군사혁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 김일성은 방문 기간 중, 모스크바, 키예프, 이르쿠츠크의 산업시설 시찰

7월 11일 북한, 중국과 「조중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 7월 15일, 조약 체결 사실은 조중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확인됨
- 서명 주체: 북한측 김일성 수상, 중국측 류샤오치(유소기) 국가 주석

157) 『조선수산사3(현대편2)』, 42~44쪽.

7월 12일 남한, 수로국 설치
- 1999년, '해양의 날'로 지정

7월 21일 북한, 일본대삼해운공사 화물선 '金岡丸'과 일부 선원을 간첩혐의로 억류
- 선원들은 동년 10월 21일 석방됨

7월 27일 **북한 청진수산사업소 소속 심해6호선, 7호선, 탐색선 등으로 원양어업 시험 출항**
- **이후 오호츠크해 횡단, 캄차카 어장 항로 개척 및 어장 탐색**[158]
- 당시 참가했던 선장 김학순의 전국수산부문열성자대회 토론이 북한 로동신문 1962년 2월 15일 자에 소개될 정도로 이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됨[159]

8월 29일 북한, 황태성[160]을 남한에 밀사로 파견

9월 11~18일 **북한, 제4차 조선로동당 당대회(제1차 7개년계획 발표)**
- **제1차 7개년계획의 수산 부문: '현대적 수산업' 목표 설정**
- 제4차 당대회를 통해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확립
- 중앙위원회 정위원에 빨치산파 혹은 관련자들이 80% 진출
- '미제 남조선 강점에 대한 반대와 평화 통일 위한 투쟁 궐기' 선동[161]

9월 8일 **북한, 평북 용천군 앞바다에서 어로 중이던 일본 선박 '泰安' 제11, 12호를 나포**
- **해당 선박들은 동년 10월 21일 석방됨**

9월 28일 남북 최초 비밀 접촉
- 접촉 장소: 서해안상 북한령 용매도

9월 30일 공해조약 발효(1958년 채택)

10월 14일 북한 김일성 수상, 소련 방문 및 소련공산당 제22차 당대회 참석
- **제22차 당대회는 중소 분쟁을 공식적으로 봉합한 당대회로 중국 공산당도 참가**

11월 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일본 이케다 총리 수뇌회담 개최(일본 도쿄)

12월 8일 한·일,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어업자원 등 7개 의제 토의

---

158) 『조선수산사3(현대편2)』, 72쪽, 74쪽.

159) 장창익은 1961년 11월 14일부터 30마력짜리 안강망선에 소형저인망을 설치하여 공해로 나가 대형 어로작업을 행했다고 기록(장창익, 1993, 355쪽). 한편 북한 원양어선단(먼바다어선대)는 1만톤급 가공모선, 5천톤급 냉장운반선, 3750톤급 대형선미트롤선, 450톤급 중형트롤선으로 구성.

160) 월북 공산주의자로 1954년 북한 내각 무역상 부상을 역임한 바 있으며, 박정희 군사정권 수반과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남파되었으나 1961년 8월 검거되어 1963년 간첩죄로 사형당함.

161) 『남북한통일대화제의비교』(I), 65쪽.

12월 12일 북한, 일본 청화해운공사(대표 米倉勉)와 정기 선박 배선(15일에 1차, 월 2회)에 관한 계약 체결

12월 북한 지도부, 대안의 사업체계 전국 전파를 위해 주요 시설 시찰

12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확대회의, '수산물 고지 80만 톤' 제시

* 북한: 태평양서북수역 수산자원이용에 관한 협정에 의거, 오호츠크해 조업 진출
  - 가공모선, 중형트롤, 만능선, 저예망선 등 22척으로 원양(먼바다) 어선단 조직(날짜 미상)

* 북한: 손동광 외.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이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됨

* 북한: 7개년 계획 최초 3년간, 신포시의 봉태산부터 마양도까지 깊은 바다에 내항을 조성, 원양어업기지화(북한 로동신문 게재 최용진 수산상의 논문)

1962년 중·인국경분쟁 / 북한 친중으로 기울어짐 / 쿠바 미사일 위기/ 한국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작

1월 7일 북한 최용진 수산상「수산물 80만 톤 고지점령을 위한 전투적 과제」논문 발표

3월 26일 북한 로동신문,「천해양식업의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게재

4월 28일~5월 8일
중국 전인대 대표단 북한 방문

5월 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훈 어부' 칭호와 '어부절' 제정·공포**

6월 15일~7월 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중국 방문

6월 2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2기 11차 회의, 남북한 정권당국자간 무력불사용 협정 체결 제의
- 남한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대해 제의한 것임

6월~9월 27일 **북한 제2차 원양어선단 출발**
- **3차에 걸쳐 태평양 서북부어장 진출, 어장 탐색, 시험 조업 실시**[162]

8월 북한 김일성 수상, 창성에서 지방 당 및 경제일군 연석회의 개최, **지방공업 육성 역설**
- 북한 당국은, 이 날의 회의를 '**창성연석회의**'로 부르며 지방공업 육성을 도입한 역사적인 날로 기념해왔음

9월 30일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공해조약 발효**

10월 12일 김일성·저우언라이,「조중국경조약」조인
- 백두산 경계 문제 해소(중국측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됨)
- 북중간 공동국경측량위원회 구성, 조사. 조약체결 사실은 비밀에 붙임[163]
- 제3조: 압록강과 두만강 상의 국경의 너비는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모두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함. 양국 간의 경계하천은 양국이 공유하며, 양국이 공동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여기에는 **항행, 어업**과 **강물 이용** 등을 포함[164]

---

162)『조선수산사3(현대편2)』, 74쪽.

163) Fravel은 회담이 1962년 6월, 저우언라이의 북한 주중대사 면담 이후 9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설명. Fravel, *Strong Borders*, p. 113.

164) 이종석,『북한-중국 관계』의 부록「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중조 국경에 관한 의정서」, 321~324 쪽

10월 미·소 간 쿠바 미사일 위기 발생[165]

11월 5일 북·중, **통상항해조약**(발효: 동년 12월 5일) 및 주요물품 상호공급협정(1963~67년) 체결

11월 12일 한·일 간 김종필-오히라 메모, 대일 청구권 문제 타협

11월 13일 일본, 아오모리현 경찰이 북한 간첩선 '왕치산'호를 나포

11월 19일 **북·일 간 정기화물선 취항 및 제1차 정기선 청진 입항**
- 1961년 12월 협정에 따른 것임

11월 북한 김일성 수상, 대안전기 공장을 현지 지도함

12월 10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4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4대 군사노선**(전국 요새화, 전민무장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을 채택, 국방자위노선을 공식화
-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정책임

* 북·소: 「조소문화및과학협력협정」 체결

* 북한: 원산수산사업소, 1962년 이른 봄부터 포경에 나섬(포경선 301호, 306일 출어, 15마리 포획)

* 북한: 20여 개소의 양식사업소를 건설, 양식어종으로 김, 굴, 미역, 꼬시레기, 다시마, 우뭇가사리, 대합, 섭조개 등[166]

165) 웨더스비 등 일부 전문가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됐다고 함. Weathersby, 2008, p. 13.

166) 장창익,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1993, 356쪽.

1963년 북·소 관계 악화[167]/북한의 친중 경향 지속

1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64년 도쿄올림픽의 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남북 회담 개최
- 이는 1962년 북한의 단일팀 구성 체육회담 제의에 따른 것임

2월 27일 북·일, 「양국 상사간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 체결

2월 **북한, 정치에서 자주 노선 천명**[168]
- 1962년 10월 경제 자립노선, 동년 12월 국방 자위노선 천명에 이어 동년 12월 '주체 사상' 개념의 등장에 따른 것임

3월 북한, 전국적으로 진지 체제와 지하갱도 건설 강화
- 1962년 12월 제5차 전원회의 결의 사항 결과이며, 일부 공장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부작용 초래[169]

4월 **북한 청진수산사업소 포경선단, 청진 기지 출발**
- **동년 10월까지 동 포경선단은 고래 21마리 포획**

5월 16~17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

5월 북·중, 공동국경측량위원회 활동 개시
- 주요 활동 내용: 백두산 국경측량, 국경표지 설치 등[170]

6월 5~23일 북한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171], 중국 방문
- 류사오치 국가주석과 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러시아의 **평화공존 정책 비판** 등 중국 입장에 동조

8월 10일 북한, 소련 W급 잠수함[172] 2척 도입

---

167) 이 무렵 북소 관계의 악화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해서도 포착됨. 1963년 1월 28일 자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 작성 「북한 인민군 당위원회 제5차 확대 전원회의 평가서」(당시 북한 노동당 위원회는 "쿠바 미사일 사태에 있어서의 소련 정부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현재 동맹관계에 대한 소련의 신의를 전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 당시 동독은 소련 입장에 동조.『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43쪽 참조.

168) 이태섭,『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2009, 146쪽 참조.

169) 이와 함께, **동년 1월과 2월 서해지역과 동해지역, 북부, 북동부 등 예비부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도 벌어짐. 북한주재 동독대사관, "북한의 군사정책에 관한 몇 가지 문제"(1963. 3. 24),『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50~51쪽 참조. 한편 이 보고는 북중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북중 사이 연합 함대사령부의 구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함(실제 구축되었는지는 미확인).

170) Fravel, *Strong Borders*, p. 115.

171) 최용건은 1958년 무렵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수행했으나, 1960년대 초반 한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함으로 활동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의 최용건 중국방문 관련 서술은 1963년 당시 최용건의 직함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 한편 같은 책 39쪽, 캄보디아지지 서한 명의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직함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의장'과 '위원장'을 겸임한 것으로 보임.

172) 1950년경부터 대량 생산되어 200척 이상 건조된 것으로 알려짐. 배수량 1,500t, 디젤 기관과 전동기 추진식으로 속력 15~17 노트, 최대 잠수 심도 140m, 어뢰 발사통 6문을 갖춤. 두산백과 참조.

9월 15~27일 중국 류샤오치 국가주석, 북한 방문

9월 8일 북한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9절' 15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남북 협상과 남북 합작 추진' 및 '남북 불가침 조약 체결' 제의

9월 20일 북한 로동신문, "소련과학아카데미가 조선 역사 왜곡" 비난

10월 20일 북한 로동신문, 사설 통해 소련을 '현대 수정주의'로 비난

10월 28일 북한 로동신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발표

- "사상리론 분야에서 의견 상이가 있다하더라도 공통점을 찾아 단결을 이룩해 가야..."[173]

11월 9일 일중어업협회(일)와 중국어업협회(중), 일중민간어업협정 체결[174]

12월 20일 북한, 400마력 디젤기관 선박 '자력갱생'호 생산

- 선박용 엔진은 **8월8일공장에서 생산됨**

* 북·중: 태평양서부어업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황해북부 어장 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 압록강 하구의 조기 어장과 황해 북부 고등어·전갱이·대구 어장을 대상으로 함(동 공동조사는 **1966년까지 이뤄짐**)[175]

* 북한: 원양어선에 고래포 설치, 원양어장에서도 포경업 시도

* 북한: "무장 항일투쟁 기간 축적된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이라는 당 내부용 소책자 간행(동독 측은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김일성 동지의 개인숭배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 평가)[176]

* 동독: 1963년 초반, 북한의 민족주의 강화 경향에 대해 **과거 평화통일 및 연방제 통일정책 주장과 비교할 때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

* 북·일: 1963년 초반 북한의 대일 관계 진전 상황을 분석, '오늘날 일본은 비사회주의 국가로서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고 평가함[177]

---

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11쪽.

174) 김찬규,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1977, 24쪽

175) 중국측 자료 '朝鮮半島周邊漁業資源及經濟合作現狀'(http://tieba.baidu.com/p/2185143064) 참조.

176) 「무장 항일투쟁기간에 축적된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이라는 당 내부용 소책자에 대한 입장」(1963. 5. 16),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81쪽. "항일투쟁 역사 서술과 그 역할 평가는 역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김일성 역할의 지나친 강조는 막스레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제 속박에서 조선 해방시킨 소련의 역할...북한 발전과 평화통일 상의 소련 존재 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77)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 경제상황 및 독일민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경제관계 지속적인 조성과 확장에 관한 정보」(1963. 4. 20),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70~79 쪽. 한편 이 보고문에는 이 무렵 동독이 대북 경협 확대를 위해 **광산·어업분야** 투자를 제안했던 사실이 담겨 있음. '제안 2항 b': **어업 분야(조선공업, 어로 및 가공에 있어서의 기술 원조, 항만시설과 어로 장비). 동독은 기술제공 대가로 금속 가공 반제품 및 어분 등 동물성 단백질 수입.**

대륙붕협정, 영해협정 등 발효 / 북한 3대혁명역량 / 남한, 대북 제의

1월 27일 북한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소련을 겨냥) "현대 수정주의자" 비판

2월 27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회의 통해 3대 혁명역량 강화 주장
- 3대혁명역량: 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선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

2월 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채택

3월 20일 북·중, 국경 의정서(「중조변계의정서」) 체결[178]
- 1962년 조중국경조약에 따른 것이나, 세부 내용은 공식 발표되지 않음
- 중국 베이징에서 류샤오치와 저우언라이, 북한 박성철 등이 각각 참석
- 실제 의정서 서명은 중국 천의 및 북한 박성철에 의해 행해짐
- 백두산 천지를 북한이 54.5%, 중국이 45.5% 점유키로 함

3월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3기 3차회의, 남북 합작 실현의 일환으로 경제합작 제의
- 남한에 쌀 2백만 석(30만 톤), 강재(10만 톤), 화학섬유(1만 톤), 시멘트, 목재 등 제공 제의

5월 5일 북·중, 평양에서 국경하천 공동이용관리 상호협력협정 체결

5월 9일 북·중, 기술협력협정

5월~6월 중국 마오쩌둥, 국방상의 이유로 '3선' 건설 제창[179]

6월 10일 대륙붕협정 발효

6월 19일 북한 김정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시작
- 1964년 6월부터 매년 중앙보고대회 개최

6월 29일 한국 정부, 북한과 인접한 경계해면 어장에서의 어선 피랍방지를 목적으로 '어로 한계선' 설정(농림부예규 제32호)

8월 4일 베트남 통킹만 사건 발생

8월 북한 김 일 제1부수상, 루마니아 방문

8월 31일 북한 로동신문, 소련을 겨냥 「사회주의 진영 분열시키는 세계공산대회 소집 반대」 발표

9월 7일 북한 로동신문, '소련이 국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상품을 팔고, 금이나 비철금속은 훨씬 더 싸게 사갔다' 폭로

---

178)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의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중조 국경에 관한 의정서」, 325~343 쪽 참조.

179) John W. Lewis et al., 1994, p. 89.

9월 24일 북·소 벌목 관련 교섭 결렬, 1953년부터 실시해오던 북한의 소련 벌목 중단

9월 29~10월 8일

북한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 중국 방문(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5주년 기념)

10월 17일 소련 브레즈네프·코시긴 체제 등장(후루시초프 실각)

- 후루시초프 실각 후 브레즈네프와 코시긴, 포드고르니를 각각 소련공당산 서기장, 소련 내각 수상, 소련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으로 한 집단지도 체제를 지칭
- 북한과의 관계 회복 희망 의사 피력

10월 27일 **한국 국회결의안 통해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북한에 제의**

11월 29일 **한국, '유엔감시하 자유총선거' 통한 통일방안을 북한에 제의**

11월 북한 김일 제1부수상, 소련 방문

12월 3일 북한 로동신문, 중국 교조주의 노선 추종 압력에 '내정 간섭' 비난

12월 3일 제7차 한일회담

12월 24일 북한, 일본 동해선박과 북한-홍콩-일본간 정기 항로 개설협정 체결

* 북한: 원양어선단이 오호츠크해 넘어 캄차카 서부연안 진출

* 북한: 북한 주재 동독 대사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관련 정보 보고를 통해, "평양 밖에서는 현재 쌀이 없고 옥수수 배급… 평양에서는 80% 쌀과 20%의 다른 곡식 배급" 보고[180]

* 북중: 중국 상해와 북한 남포간 해상항운이 개시됨

180)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136쪽. 1964년 10월 19일 자 작성. 이는 북한 공식 주장과는 달리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예. 강호제는 『북한 과학기술형성사』에서 북한이 이미 1960년대 초반, 질적 성장 이룩했다고 주장. 약 10년 뒤인 1974년 7월 김일성은 **6개년계획의 실패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동력 원료 자금 타산과 함께 기술 타산을 잘못했다고 자인.**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4-3), 312쪽.

1965년 북한, 주체를 대외에 천명/ 한국,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 어업협정/ 북한, 대소관계 개선/ 한국 베트남 파병

1월 18일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1월 일본 사토 총리, 존슨-사토 회담을 통해 한일 조약의 체결 필요성 재확인

2월 11일 소련 코시긴 수상, 북한 방문
- 북·소 관계 회복 노력의 일환
- 코시긴은 북한의 통일 노선에 대한 지지 표명
- 한일 외교 정상화 움직임에 대해 "침략적 블록 형성" 비난
- 이후 8월 알렉산더 셸레핀 소련공산당 정치국원[181]의 방북 때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제스쳐로 치스챠코프 대장, 레베제프 소장, 로마넨코 소장 등 과거 김일성 지도체제 출범에 공헌한 소련 군정기 관련 인사들이 동행[182]

2월 25일 북한 외무성, 한일 수교와 관련해 한일간 어떤 합의도 무효라고 성명

2월 27일 중국, 북한의 한일 회담 및 기본조약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

2월 일본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 한국에서 한일기본조약 가조인

2월 북한 대표단, 모스크바 방문
- 방문 목적: **소련측의 대북 석유제공**에 관한 교섭[183]

3월 26일 북한, 북베트남의 요청 시 지원군 파견 제의

4월 9~21일 북한 김일성 수상, 인도네시아 방문
- 이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통해 주체 4원칙 천명).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 연설, 4. 15.)[184]
- 아울러 1964년 발표한 **3대혁명 역량** 강화 되풀이

4월 20일 북한 주재 동독 대사관은 북한 경제운용 방식의 '과도한 중앙 집중'을 비판하는 보고를 본국에 제출[185]

5월 31일 북·소, 군사협정
- 북한의 군비 강화를 위한 자금원조 협정[186][187]

---

181) 알렉산더 셸레핀은 후루시초프 집권시 KGB 의장을 역임했으며, 후루시초프 실각에 가담한 바 있음.

182) 김학준, 『북한 50년사』 참조.

183) 와다 하루키, 『북한 현대사』, 154쪽.

1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16쪽.

185)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148쪽. 아울러 무역 불공정 지적(「동독은 1톤의 강철 값으로 소련에 1500루블 지불, 북한은 이보다 300루블 더 요구」).

5월 북한 김정일, 강원도 수산부문 사업 현지지도[188]

5월 북한 평양에서, 평양일본상품 전시회 개최

6월 22일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및 한일어업협정 체결**

- 북일 관계 및 무역에 일시적 영향(1968년 이후 회복 및 확대)
- **어업협정 주요 내용: 12해리 어업전관수역 및 공동규제수역 설치, 잠정규제조치, 기국주의, 어업공동위 설치 등**
- 한편, 청구권 무상 자금(3억 달러) 중, 2천7백17만 달러가 한국에 의한 **시험선 도입, 어선도입 및 건조**에 쓰임[189]
- 한편,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 어선들의 평화선 출어가 가능케 됨[190]

6월 26일 중국, 한일 기본조약 승인 거부 성명

8월 14일 일본 경시청, 북한 간첩 2명 체포 발표

11월 9일 북·중, 보건협정 체결

11월 9일 북·폴란드, 공동해운회사조직에 관한 협정 체결[191]

* 북한: 한·일 협정, 한국의 베트남 파병 등이 이뤄지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전쟁 공포감 확산(동독 대사관의 정보보고)[192]

186) 와다 하루키 등의 논의에 근거.

187) 한편 북소 외교 문서집인『소련과 북한의 관계』에는 조소 군사협정이 누락되어 있음. 동독측 자료는 이 협정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 "소련 측의 납품은 1966년 중 이뤄질 것...북한은 특히 영공방위 영역에 있어서의 무장과 장비 조달이라는 긴급한 일련의 문제해결 가능...특히 부품 공급은 이 협정에서 중대한 의미...북한 전투기 부대의 상당 부분, 탱크 부대 및 육군의 일부분이 부품 부족으로 투입 불가능...". 이상은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군사정책 문제」(1966. 1. 11),『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171쪽.

188) 이 무렵 김정일은 북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일함.

189)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 백서,」(1976. 12.).『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1992, 114쪽에서 재인용.

190) 신영태 외,『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17~18쪽.

191)『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63쪽 참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주식회사 형태의 합작 해운회사가 창설운영된 것은 1948년 창설됐던 조소해운주식회사의 창설 이후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함.

192)『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152쪽.

1966년 북한, 대외 정책의 자주노선 채택/ 북한, 대소 관계 개선, 대중 관계 악화/ 중국 문화대혁명

1월 북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무상원조 경제 협정 체결
- 김일성은 베트남에 전투병력 파견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 2011년, 북한 공군이 베트남전 당시 실제 전투에 참가했다는 자료 공개됨 (NKIDP)

4월 1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용건, 소련공산당 제23차 당대회에 참석
- 중국측은 참석하지 않음

4월 **북한, 백두산호와 평화호를 모선으로 한 원양어선대 오호츠크해 진출, 7천 톤 어획**

5월 2일 주북 동독 대사관, 「북한 경제발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 통해 북한 경제현황 보고
- 국방 과업에 과다 지출 지적
- **수산업: 선박 수 13,537척(3만 BRT), 11,387척은 돗대나 젓는 노를 동력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 소련 영해 상 조업 진출을 위해 소련과 협상 중[193]

5월 20일 북한 어선, 일본 어선 政榮丸에 충격

5월 27일 일본 사카다 농무상, 북한과의 민간 어업 협정을 권장

6월 1일 북·중, 동물검역및질병예방에 관한 상호원조및협력 협정(평양)

6월 20일 북한, 소련과 「조소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 서명 주체: 북한측 내각 부수상 이두연, 소련측 내각 부수상 V.N. 노비코프
- 어업분야 **어로 활동의 협력 및 어선의 상호 기항 허가 등 규정(제13조)**
- 이와 동시에 조소, '어선 조난구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상대방 항구에 피난어선을 정박하게 하고 화물의 적하역, 식수, 연료, 식품 공급 및 **조선소에서의 어선 수리** 등의 협력 합의
- 1967년 10월, 북한측 요청으로 1969년까지 연장(1차). 1969년 9월 재연장(2차)
- 북·소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소련의 대북 경제 지원 재개
- 이 협정에 의거, 「어업에 있어서의 조소 협정에 관한 의정서」도 채택[194]

193) 주북 동독대사관, 「북한의 경제발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1966.5.2),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179~180쪽.

194) 정확한 내용은 미상. 그러나 별도의 의정서 채택 사실은 1966년 6월 22일 자 북·소 경제회담의 결과로 나온 「조소 코뮤니케」로 확인됨. 『소련과 북한의 관계』, 1988, 332쪽. 의정서의 주요 내용: "양국의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8월 12일 **북한 로동신문, 「자주성을 옹호하자」 제하 논설 게재**
- **일방적 친중 노선 수정, 중소 등거리 노선 표방**

8월 백경호(380톤), 북양 시험조업

9월 15일 북한 로동신문, 트로츠키즘 비판이라는 형태로 문화대혁명 비판[195]

9월 28일 일본 정부, 나포했던 북한 평신정 선원 4명을 한국으로 송환

10월 5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표자회 개최**
- 당 총비서 및 비서제 신설(김일성을 총비서에 선출)
- **경제-국방 병진정책 재확인** 및 강화 및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결정**
- 자주 노선 채택(「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 **미군철수, '파쇼정부 전복', 남조선 혁명역량 보존 장성 및 결정적 시기 준비(선 남조선혁명)**[196]
-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국제정세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전쟁 위험 과대 평가)**[197]

10월 9일 박정희 대통령 예산교시를 통해 수산청 신설 예고

* 소련: 대형 수산물 운반선 차이코프스키호와 타슈켄트호를 북한에 제공[198]

* 남한: 수산청 발족(수산행정 일원화)

* 북한: - 1963년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경제는 1966년 마이너스 성장 기록[199]
  - 오호츠크해 북쪽 수역에서 청어잡이 개시. 5천 여톤 어획
  - 동년 1월 동독측은 한일협정 및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평화통일 정책과 민족문제의 군사적 해결이라는 비공식적 불일치 존재"한다며 비판적인 평가[200]

에서 어업을 하는 양국의 어부들에게 천재로부터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연료, 음료수, 식량 등을 보급함에 있어 상호원조" (앞의 자료, 333쪽).

195) 와다 하루키, 김학준 등의 논의에 근거.

196) 『남북한통일대화제의비교』(I), 93쪽. 박정희 정부에 대한 태도를 굳힘. 특히 월남 파견 결정과 관련.

197) 주북 동독대사관,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1966. 10. 5-12)에 대한 정보」(1966. 12. 7),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183쪽. 한편 동독 대사관측은 이 보고에서, 북한의 7개년 계획 연장 사실과 함께, 북한이 이와 같은 연장에 대해 "사회주의 형제 정당의 탓으로 돌렸다"(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견해 차이가 난관에 봉착하였고 북한 경제발전에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

198) 나탈리아 바자노바, 162쪽.

199) 이태섭, 2009, 205 쪽.

200)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부의 군사정책 문제」,『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168-172쪽.

북·중 관계 악화/ 북한 원양어업 본격화/ 베트남 사태 격화 / 북한 유일사상 확립운동 / 한국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년도(수산진흥5개년종합계획 포함)[201]

1월 4일 북한, 「담수 양식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내각결정 15호」 채택[202]

1월 19일 **해군 56함(당포호)이 2척의 북한 고속정에 의해 피격, 공해상 침몰**
- 동해 해상 휴전선 인근 명태어장의 어로보호 임무 중(어로한계선에서 명태잡이 어선 북상)

1월 28일 **북한 김일성 수상, 수산성일군협의회에서 김책항을 원양어업 중심지로 꾸릴 것 지시**

1월 중국 홍위병, 김일성 비난 공격
- 1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의 항의 성명 야기(북·중 관계 악화의 계기)

2월 28일 대통령령 제2427호로 수산청 신설[203]

2월말~3월 북한 김 일 제1부수상 등 대표단, 모스크바 방문
- 이 때 북소간 원조협정 체결(소련 2억3천만 루블 차관, 10년 거치 상환조건으로 제공)
- 소련은 군사원조 차관을 별도 제공(2억~2억5천만 루블): 미그21, 로켓 고속정, 해안발사 로켓, 탱크, 반탱크 로켓, 대포 등의 구매에 쓰임[204]

3월 17~24일 북한 김일성 수상, 「당 사업을 개선하며 당 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 연설
- 이는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 **국방-경제 병진정책에 대한 저항**이 있음을 시사[205]

3월 북·소, 경제기술협정(57년 조인)의 실시협정 체결

3월 북한 김일성 수상, 쿠바 대사를 위한 오찬에서 중국 비난
- "중국이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반조선 선전을 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행동에 불과" 등 주장[206]

---

201)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18쪽.

202) 김준회, 1982, 122쪽.

203)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17쪽.

204) 동독측의 파악에 따른 것임. (동독) 평양 주재 무관, 「북한의 군사정치적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1967. 9. 27),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209~210쪽.

205) 이 무렵 김일성 경제 정책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에 대해 **갑산파의 공개적인 불만**이 표출된 시기. 이태섭, 2009, 212~213쪽 참조. 북한 최고권력 기구 당 정치위원회 상무위원 6명 중 절반이 김일성 리더십에 반발.

4월 15일 **북한 원산수산사업소 원양어로선대, 원산 출항**[207]
- 항해 도중, 미 항공모함 및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과 조우

5월 14~18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4기 15차 전원회의(「**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 문제**」 토론)
- 갑산파(박금철, 이효순) 숙청
- **원양어업을 확대할 데 한 결정을 채택**[208]

7월 1일 북한 김일성 수상, 이라크통신 회견에서 **'남조선 정부전복 후 통일문제 협상'** 주장[209]

7월 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 수령론 제기 논문 게재

8월 12일 북·베트남, 무상군사원조협정 및 무상경제원조협정 조인[210]

8월 26일 재일동포 북송사업 연장을 위한 북·일 간 적십자회담(모스크바)

9월 중국, 북한을 공개 비판
-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조중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문화혁명의 핵심 중 한사람인 야오원위안(요문원)이 상하이 혁명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반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고 공개 비판)

10월 16일 북·소, 경제과학기술문제협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체결
- 상호 상품교역의 증대를 위한 제의를 준비
- 설비 플랜트의 조달 협력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문제 검토
-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제의 작성
- 부록을 통해 사업계획은 최소 연 1회 회의 개최 규정

10월 18일 주한 유엔군사령부, 북한 대남도발 급증 발표

10월 23일 북·소, **해상조난** 인명선박항공기 구조 협정 체결(1968년 1월 1일부로 발효)

10월 북한측 요청에 의해 북·소, 어선조난구조에관한합의서 연장(1969년까지)
- 동 합의서는 1969년 재연장됨

11월 1일 **몰타의 유엔대사 아비드 파도, 유엔총회 연설**

---

206) 이는 주북 헝가리 대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보낸 보고 내용.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March 9, 1967.

207) 이와 관련하여 장창익은, 원양어업에 필요한 각종 어선과 장비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해줄 물증은 제시되지 않음. 장창익, 1993, 355쪽.

208) 『북한의 어로실태 조사』, 136쪽. 동 책자는 제4기 15차 전원회의가 4월 개최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오기임.

209) 대내적 불안을 대외적 강경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줌. 당시 북한 경제는 위기 상황임.

210) 1967년과 1969년 사이 북한 공군 87명이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전(14명 사망, 미군기 26대 격추). 이와 같은 사실은 2011년 11월 처음 알려짐. 북한은 직접 참전 사실을 오랫동안 부인해왔음.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Pilots in the Skies over Vietnam*, NKIDP, November 2011 참조.

11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의장 최용건, 소련 방문**

- 10월 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방문으로, 방문 기간 소련 찬양 연설
- 북한은 11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공동명의로 축하 전문 보내면서 "소련 인민과의 전통적 우호와 단결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강조, 대소 우의를 강조[211]

12월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10대 정강 발표('남조선민족해방혁명으로 통일달성')**

- 이 회의를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규정(**수령체제 공식화**)

12월 **남한 내무·국방·농림 부 3부장관 합동고시로 어로한계선 재조정**

- **어로 한계선의 재조정과 함께 '특정 수역' 설정**[212]

* 북·소:「조소경제공동위원회」창설
  - 동 위원회는 1990년 2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됨

* 북한:
  - 1964년 통일전선 전략 채택 이후 성과가 없자 1967년부터 남한정부 전복 위한 폭력투쟁 선동 및 대남 도발 강화(전년에 비해 도발건수 거의 10배 증가)[213]
  - 일소 협상(항공협정, 대외무역, 미키 수상의 모스크바 방문)의 발전에 대해 우려 표명
  - 1967년 국방력 강화에 국가예산의 30% 지출

211) 『소련과 북한의 관계』, 351쪽.

212)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병기, 1990, 91쪽.

213)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2010, 53쪽.

1968년 북한 정권 수립 20주년 / 원양어업 지속 확대 / 북한 대남 도발 강화 / 베트남 구정공세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 및 청와대 습격 사건(김신조 사건. 1.21 사태)[214]
- 베트남에서 구정공세(Tet Offensive)와 때를 같이 해 일어남[215]

1월 23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나포**
- 북측은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범하여 **청진, 김책, 마양도, 원산항**을 정탐했다고 주장[216]
- 한편 일본은 이 사건으로 동해 저인망어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음[217]

1월 26일 소련 코시긴 수상,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미국이 북한영해 침범사실 시인하면 문제해결 실마리 풀릴 수 있어..." 시사[218]

1월 28일 중국,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 입장지지 성명

2월 6일 소련 대륙붕 선언
- 핵심 내용: 소련 연안 대륙붕의 천연자원은 소련 소유, 탐색 및 개발은 국가적 권리임을 주장

2월 북·미 간 푸에블로호 송환을 위한 협상

4월 22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4기 17차 전원회의(4월 전원회의),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 확립
- 경제정책으로는, 공업 총생산 24% 증가 과제 설정(외부는 남한을 의식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평가)[219]

6월 4~5일 **북한 김일성 수상, 동해지구 수산부문 일군협의회에서 원양어업 발전 및 신포를 원양어업 기지로 건설 지시(「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8월 26일 북한, 억류했던 일본의 '제23반 슈마루'와 동 선원 5명을 남포항에서 석방 예정이라고 발표[220]

---

214) 당시 위기 상황에서 김일성은 브레즈네프에 동맹조약 발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나, 모스크바측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 웨더스비, p.16.

215) 웨더스비는 간접적으로 김일성이 베트남 사태에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제 정세의 변화가 김일성의 행동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Weathersby, p.14 참조.

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62쪽.

217) 『日本近代漁業年表』, p.44.

218) 김찬규,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국토통일원, 1977, 30 쪽. 한편 소련은 푸에블로호 사건 초기 사태의 조속 해결을 위해 북측에 미국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체와 승무원을 송환할 것을 권고함. 미첼 러너(김동욱 역), 『푸에블로호 사건: 스파이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 높이깊이, 2011, 228쪽.

219) 주북 동독대사관, 「1968년 북한의 경제발전에 관한 정보」,『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240쪽.

10월 8일 **미국, 푸에블로호의 북한 관할수역 침범 인정 성명**[221]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통해 "영해 침입...정탐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사죄" 보도

10월 24일 **북·소 라디오통신조직 및 조선영토에 있어서의 라디오중계선건설협력 협정 체결**
- 양국간 쌍무적인 라디오 중계통신 조직
- 이를 위해 "소련 기관은 조선의 영토에서 지선과 텔리번 재중계소를 포함, 평양으로부터 소련-조선 국경에 이르는 라디오 중계간선 건설을 위한 기술원조 제공"(제1조)

10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 소탕작전 결과: 110명 사살, 7명 생포, 13명 도주[222]

11월 25일 **남한 정부, 국방상의 경비 목적과 어선의 납북방지 및 안전조업 지도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의 어로한계선 남쪽 일정 범위의 수역을 일방적으로 '특정 해역'으로 설정**

* 남한: 어획량 66만 톤 달성(60년에 비해 2배 증가)[223]
* 북한: 김일성은 북한의 농사가 가장 잘 된 해로 말함[224]
* 북·중: 1968~1969, 북·중 국경 분쟁

220) 이 해 8월 27일 자 동독 외무성 차관이 발터 울브리히트 등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보낸 정보 보고 내용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은 북중 관계에 대해 "무역을 제외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완전 정지상태"라고 말했다고 함.

2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66~67쪽.

222) Hannah Fischer, CRS Report. 북한은 남한의 혁명적 무장유격대가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주장.

223) "67년도 대통령연두교서 요지" 동아일보, 1967년 1월 17일 자.

224) 그러나 1968년에는 가뭄이 들어 전력 생산 감소, 전력난을 겪음.

1969년 북·중 관계 조정 / 동북아 국제관계에 변화 조짐 / 중·소 분쟁 격화

1월 12일 북한 선미트롤 룡악산호(3750t) 진수(청진조선소)

1월 20일 미국 닉슨 대통령 취임 연설
- 마오쩌둥은 닉슨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중국 내 공개를 지시(1980년대까지 알려지지 않음)

1월 북·일, 양측 무역협회를 통해 무역협정 체결

2월 4일 북한, 소련과 「조소 과학아카데미간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공동연구, 과학자 상호교환, 과학문제 해결시의 공동협력, 과학간부 양성을 위한 원조 제공, 과학서적 및 정보참고서와 기타 출판물의 교환 등

3월 북·중, 백두산과 압록강의 접경 지대에서 교전 사태

3월 중·소 국경분쟁(전바오다오/다만스키)

4월 15일 북한, 미국 공군 첩보정찰기 EC-121기 격추
- 당시 미군은 B-52를 괌에서 출격시킴[225]

5월 14~19일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 N.V. 포드고르니, 북한 우호방문
- 방문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소련측 '박정희 단죄'에 동조,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북한의 '영토보전과 주권에 대한 도전을 가한 데 대해 이를 단죄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입장지지' 천명[226]

5월 22일 일본, 북방영토문제대책협회법 공포[227]

6월 5일 북한 무산철광석 1969년도 분 485,000톤 대일 수출 계약

6월 27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운동 전개 토론[228]

6월 북한, 흑산도 무장공비 침투, 15명 사살[229]

7월 11일 북한, 선미 트롤선 은파산호(3750t) 진수(청진조선소)

7월 25일 미국 닉슨 대통령, 괌 연설을 통해 닉슨 독트린 발표

---

225) 셀리그 해리슨, 314쪽.

226) 『소련과 북한의 관계』, 367 쪽.

227) 『日本近代漁業年表』, p. 48.

228) 『북한경제리뷰』, 2010, 7월호.

229) Hannah Fischer,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CRS, April 20, 2007.

- 핵심 내용: 미국은 향후 (아시아에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 회피, 아시아 각국과의 조약 의무를 지키지만 핵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것, 향후 미국은 직접적·군사적 개입은 자제할 것이며 아시아 각국은 자조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9월 5일 **「북서태평양 어업협력에 관한 조소의정서」 체결**

9월 30 ~10월 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을 단장으로 한 북한 당정 대표단 중국 방문(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

- 이 때 북한 대표단은 베트남 하노이의 호치민 장례식[230] 참석 후 귀국 중 중국 방문
- 북·중 관계 조정의 분기점으로 평가됨[231]

9월 **북한 어선, 베링해로 진출해 어장 및 어군 탐색(229일간)[232]**

11월 **닉슨-사토 공동성명**

- 동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타이완이 일본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확인(이른바 '한국조항')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YS-11기) 납북**

- 당일 오후 12시 25분경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했으나 15분 뒤 납북되어 원산비행장에 착륙
-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탑승자 중 승객 39명만 판문점을 통해 남측 송환[233]

* 중·소: 우수리강에서 무력충돌, 분쟁 격화

* 북한: 포경선 291호, 40일간 고래 49마리 포획

230) 베트남 통일을 실현시킨 호치민은 1969년 9월 2일 사망함.

231) *Overconfidence Shattered*, NKIDP, p.4.

232) 『조선수산사3(현대편2)』, 79쪽.

233)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12월 11일)」, 국가기록원.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1970년대

개관

1970년대는 남북 관계에 큰 전환이 있었던 해로 기록된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비록 대리인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분단 이후 최초로 당국자 회담을 열었다. 당국자 회담 결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적 통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불의의 군사적 충돌 방지'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합의했다.

특히 '다방면의 교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후 1980년대는 물론 19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는 남북 해양수산 협력 분야의 협상 의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제들은 1972년 11월 및 1973년 3월과 6월 등 3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통해 제기되었다.

남한의 밀사 이후락을 면담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 동해의 풍부한 명태자원을 예로 들면서 경제 분야의 주요한 합작(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어로합작'을 제의한 바 있다. 이는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으로도 이어져 제1차 회담에서 북측은 다방면의 협력을 제의하면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북측 어장의 남측 어민에 대한 개방'을 제의하기도 했다. 남측은 이와 같은 제의를 이어받아 제2차, 3차에서 경제사회문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물자교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을 거듭 제의하기도 했으나 정치군사 문제의 논의를 앞세운 북측과의 입장차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970년대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를 갖지만 '짧은 대화' 뒤에는 '긴 반목'이 이어졌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 전인 1972년 10월에 이미 남한에는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유신 헌법이 등장했다. 동년 12월 남한에는 다시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으며, 북한은 제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일성을 '주석'으로 내세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했다.

더욱이 1973년 6월 남북은 통일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천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한의 선의의 경쟁'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골자로 한 '6.23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김일성은 '군사대치 해소' '단일국호 남북연방제' '단일국호 유엔가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국통일 5대방침'을 천명했다. 1974년 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은 1960년대 후반의 호전적인 태도로 되돌아 갔다. 동·서해 해상경계선 부근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나포·공격이 자행되었으며, 1974년 8월에는 남한 대통령을 직접 암살하려는 사건도 발생했다.

1973년 6차 회담 이후 남북 대화가 중단됨으로써 남북 해양수산 협력은 더 이상 협상 의제로 채택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측 경비정

이 남측의 북방한계선(NLL)을 대거 월선 침범하면서 NLL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북한은 동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회의에 출석하여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개 도서 주변 해역을 북측의 영해로 주장하는 한편, 북방한계선을 '불법'이라고 강변했다.

남북한의 해양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은 때마침 유엔해양법회의의 논의와 맞물리면서 격화됐다. 유엔해양법회의가 기존의 영해 외에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관할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쪽으로 나아감에 따라 1970년대 후반 동북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국가간의 어업협상이 줄을 이었다.

소련은 1976년 12월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법(EFZ)을 채택한 데 이어, 1977년 3월 이를 선포했다. 동년 6월 북한은 200해리 경제수역과 50해리 해상 군사경계수역을 선포해 이와 같은 EEZ 경쟁에 가세했으며, 곧이어 7월 일본 또한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제정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했다. 동북아 각국의 EEZ 선포 여파로 기존의 어업협정 개정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1977년 7월 북한과 소련간에 체결된 「어업분야협력에관한의정서」도 그러한 시도의 하나였으나 EEZ에 대한 양국의 이견으로 협상은 1986년에 가서야 타결된다.

1970년대 초반 이후 남북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 수산협력은 소련과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74년 북한 수산부 김윤상 부장과 소련 수산부 아바 이슈코브부장간에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및 이를 통한 어획량 조정(소련 수역내 어획쿼터 무상할당 포함)과 어업규제' 등을 골자로 조소어업협정이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자 일본도 북한에 접근해 어업협정을 체결하고자 했다. 협상은 1977년 8월 일조의원연맹 측이 방북하는 것으로 개시되었으며, 이는 동년 9월 5일 「일조 어업협력에 관한 잠정 합의서」로 결실을 보았다. 이 때 일본은 남북한 관계를 의식해 '민간에 의한 잠정협정'을 추진했다.

한편 북한의 본격적인 항만개발은 197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뤄지기 시작했다. 1976년 6월 김일성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남포항 확장 및 송림항 정비를 지시했으며, 1973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주항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를 당분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1972년 남북 대화기 때 의제로 올랐던 수산협력과는 달리 해운과 항만 분야의 협력은 1970년대 내내 의제화되지 못했다.

1970년 북한 6개년계획 관련 대중, 대소 관계 개선 / 북한 제5차 당대회

2월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1969년 12월 피랍 KAL기 관련 성명, 승무원 일부 송환

2월 27일 북한 김일성 수상, **지방공업** 육성 관련 연설(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

3월 26일 **미국 닉슨 대통령, 주한 미군 2만 명 철수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
- **1969년 닉슨 독트린에 따른 것임**

3월 30일 일본 적군파에 의한 요도호 납치사건 발생
- 주모자 다미야 다카마로 등 납치범 9명은 비행기를 납치하여 평양으로 갈 것을 요구
- 김포공항에 착륙 탑승객 전원을 석방하는 대신, 야마무라 신지로 당시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을 인질로 잡고 북한으로 향함

3월 **북·소, 제1차 「조소어로공동위원회」 회의(평양)**[234]
- 해상어로 작업 조직, 어로장비 사용법, 어로기술, 수산물 가공저장수송, 어선수리 분야에서 협력
-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소련 해역에서 연간 6천 척의 각종 트롤어선으로 **20만 톤**까지 어획 가능

4월 5~7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북한 방문, 냉각된 양국 관계 복원**
- 1969년 10월 최용건 방중의 답방 형식
- 관계 복원 내용은 195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임
- 중국, 김일성의 경제군사 원조 요청에 응해 잠수함 조선소 설비를 제공[235]
- 저우언라이 총리, "중조 관계는 피로 맺어진 군사적 우의" 발언
- 기타 국경하천의 공동이용 및 수풍발전소 공동운영 등 양자간 현안 논의[236]

6월 5일 **북한, 연평도 8마일 지점에서 대한민국 군함(대북 심리전 방송선) 나포 사실 보도**[237]
- 당시 20명이 승선해 있었음

6월 13일 **북한, 조선육운및해운협회 결성**

6월 28일 **북한 간첩선 침투**
- **인천항 근처에서 육해공군 합동 작전으로 격퇴**

234) 연구자에 따라서 '어업공동위원회'로 사용.

235) 함경남도 신포가 대상지로 알려짐.

236) 주북 헝가리 대사관의 정보 보고, NKIDP, p. 52.

237) 박정희 정부 당시 자주 국방 사업의 산파였던 오원철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서해 해군력 증강 박차.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7), 1999 참조.

7월 6일 미국 닉슨 행정부, 주한 미군 7사단 철수를 한국 정부에 통고
- 동년 7월 8일 공식 발표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북한에 '선의의 경쟁' 제의(평화공존 시사)
- 북한에 도발행위 즉각 중단,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포기 등 주장

8월 11~26일 일본 사회당 대표단(단장 나리타 중앙위원장) 북한 방문

8월 23일 북한, 선미트롤 냉동선 대덕산호(1000t) 진수

9월 15일 북·소, 경제및과학기술협정
- 차량제조공장, 자동차 축전지, 에나멜 전선, 마이크로 전기모터, 카바이트, 철도 화차 등 북한의 공업 기업 건설에 대한 기술원조 제공
- 10년 거치, 연리 2%의 1억9천5백만 루블 차관 제공

10월 1일 박정희 대통령, 자주 국방 중요성 강조(국군의 날)

10월 8일 북한 김일성 수상, 비공식 중국 방문

10월 17일 북·중, 「조중주요물자상호공급협정」 체결
- 협정 의도: 중국의 대북 화학공장 지원용으로 추측
- 협정 기간: 1971-76년

10월 북한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 개최를 11월로 연기(제1차 7개년 계획의 차질과 연관)

11월 2~13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238]
- 제1차 7개년 계획(1961-67) 3년 연장 끝에 완료 및 6개년 계획(71~76) 목표 발표
- 동 대회를 통해 '4대 군사노선' 완성 공언
-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는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와의 투쟁 강조
- 6개년 계획 기간의 **수산 생산 목표: 1백80만 톤**(70년 시점 1백60만 톤)[239]
- 당대회 개최 기간 중, 제5차 당대회 기념으로 냉장운반선 봉화산호(5000t) 진수[240]

11월 14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파키스탄 대통령 야히야 칸에 대만 문제 해결 전제로 미국과의 협상 제의 의향 전달

12월 14~1971년 2월 5일
재일동포 송환을 위한 북·일 적십자사 회담 재개(모스크바)

---

238) 당초 일정대로 하면 1967년에 개최되었어야 함. 1970년의 경우에도 10월 예정을 11월로 다시 연기. 3년 연기 배경에 대한 미국측 분석은 미 국무부 정보평가국 "North Korea: Party Congress Postponed Again," October 23, 1970 참조.

239) 6개년 계획 보고는 당비서 및 제1 부수상 김 일이 발표.

240) 5차 당대회에 대한 미국측 정보당국의 분석으로는 CIA 동북아국의 "Fifth Congres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I)"가 있음

12월 17일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 개최 시기를 1973년으로 결정

12월 28일 북한 김일성 수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한 연설을 통해 "100만 톤 수산고지 달성" 선언

- 원양어업 발전의 결과라고 풀이
- 그 외 **육대조선소**[241] 육성,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 강조

12월 29일 **중국 런민르바오, 한-중(타이완)-일 '해양이용및연구 공동위원회' 회의(12월 21일 도쿄 개최) 비난**

* 북·중: 상호 차관제공에 관한 협약 체결

* 북한
  - 내각 체제에서 정무원 체제로 전환, 수산성을 수산부로 개칭
  - 베링해 진출

* 국제: UN 총회, 심해저원칙선언(Declaration of Deep Seabed Principles) 채택. 이와 더불어 해양법회의 소집결정

241) 함경남도 신포시 육대서리에 위치.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 해군 함정 전용 조선소임.

1971년 북한 6개년계획 시작년도(71-76) / 남북 비밀접촉 개시 / 미·중 화해 신호

1월 2일 북한 김일성 수상, 전보 지시를 통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100일 전투' 개시할 것 지시

1월 22일 북·중,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 제1차회의 합의서」 체결

2월 3일 북·소, 「조소장기통상협정」(1971~75) 체결
- 유효 기간: 1971. 1~1975. 12.
- 협정의 주요 목적: 양국간 상품교역의 규모를 증대하고 상품 품목 및 종류의 확대
- 납입된 상품에 대한 대금지불은 각각의 대외무역은행을 통해 루블화로 지불(제5조)

2월 25일 소련 공산당 브레즈네프 서기장, 소련 방문한 허 담 외무상 영접(면담)
- 허담은 북한의 통일 정책 설명(미군 철수, 외부 간섭 없는 민주주의 하 평화통일 추진)

2월 27일 북한, 전국수산부문일군대회 진행

4월 12일 북한 외무상 허 담, 통일방안 8개항 발표(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
- 연방제, 주한 미군 철수, **남북경제위원회** 구성,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제의
- 북한은 이 통일방안 8개항이 7.4 남북공동성명의 기초가 됐다고 주장

4월 16일 박정희 대통령 후보, 남북고속도로 및 금강산 합작투자 개발 용의 천명

4월 19~23일 북한 김일성 수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수산물 증산 위한 공작기계 공급 독려(선박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

4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

5월 18일 일본, 재일동포 북송 재개후 제1차선 청진 도착

5월 19일 북한, 5천t급 대형 여객선 만경봉호 진수(청진조선소)

5월 27일 북·중간 「조중수풍저수지양어 공동이용협정」 실효
- 동 협정은 1959년 체결된 것임

6월 10일 북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일성-차우세스쿠)
- 김일성,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 사건 등을 예외로 주장하며, 평화통일 노선 불변성 강조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 등 경제군사 원조를 이용해 때가 되면 북침할 것이라 주장[242]

7월 3일 북·중, 「조중해상구조협력협정」(중국 베이징)

7월 3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교로 교체 제의

7월 9일 **미국 닉슨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 베이징 방문**
- 7월 15일, 닉슨의 중국 방문 계획 공표

7월 중국 리셴녠 부총리, 북한 방문(조중우호원조조약 체결 10주년 기념)

8월 10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뉴욕타임스 제임스 레스턴과 인터뷰하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제의
- 평화협정 주장에 대한 북한 입장 반영

8월 12일 한적 총재 최두선[243], 기자회견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논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월 14일 북한, 한적 회담 제안 수용

8월 15일 **북·중, 경제협력협정 조인(베이징)**
- 미중 관계 정상화에 따른 중국의 북한 회유책 일환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문호 개방 천명

8월 **북한 8월8일공장**, 2500마력 대형 선박용 디젤기관 생산

9월 9일 **북한, 중국과 무상원조협정 조인**
- 이전까지 15년간 협상을 진행하며 난항을 겪었던 조약(군사 원조 내용 포함)

9월 10일 박정희 대통령, 미국 닉슨 대통령에 친서
- 닉슨의 베이징 방문에 환영 표시(긴장 완화 및 평화)
- 사전 협의 없이 방중 결정 발표된 데에 간접적인 유감 표시 및 향후 문제 협의 요청
- 상호방위 체제의 강화 및 한국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군 현대화 사업 지원 요청[244]

9월 20일 **남북 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판문점)**
- 이후 본회담 합의한 1972년 6월까지 20회
- 8월 12일/ 8월 14일 참조

10월 15일 북·중, 「조중방송및텔레비전협력협정」(평양)

11월 1~3일 북한 김일성 수상, 비밀리에 중국 방문

---

242)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pp. 134-135.

243) 육당 최남선의 동생. 1960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

244) 친서 전문은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pp. 140-143.

11월 16일 일본,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회장대행 자민당 구노 주치 의원) 결성[245]
- 당초 1970년 후반 아카마츠 사회당 부위원장이 창설 제창

11월 17일 **북·중, 선박검색협력 협정**

11월 20일 남측 적십자사(한적) 정홍진-북측 적십자사(북적) 김덕현 판문점 비밀 접촉 개시

12월 **소련, 나진항 개건과 두만강-나진항 사이 교통망 확충을 위한 차관 제공**[246]

* 북한: 6개년계획의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방측과의 접촉 활용 시도
(70년대 초반 선진국들로부터 총 5억 달러 이상의 30개 공장 설비 도입)[247]

245) 이에 대항해 1972년 봄 한일의원간담회가 결성됨. 결성 배경과 전후 효과에 대해서는 신정화, 132쪽.

246) 조명철, 2003, 59쪽.

247) 나탈리아 바자노바, 253쪽.

1972년[248] 7.4 남북공동성명/ 남한 유신헌법/ 북한 사회주의헌법 / 북한, 대외개방 강조 / 미·중 화해/ 일·중 화해

1월 7일 미·일, 닉슨-사토 정상 회담

1월 10일 북한 김일성 수상,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 ("닉슨의 방중은 미국측 패배의 인정")

- 김일성은 이 날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1월 23일 북한, 일본과 각서무역 조인(1976년까지 연간 1억5천만~2억 파운드 상당의 거래)

- 일본측은 조일우호촉진의원연맹 및 조일무역회 공동으로 방북
- 북한, 이를 위해 **조일수출입상사** 설립[249]

1월 27일 **북·중, 어업호조합작협정 및 중국항구와 조선수산부문 운수선에 연료유제공에 관한 협정 합의**

- 어업협정의 경우, 황해어업협정의 만료에 따른 것임. 동 협정은 1977년 4월 5일 부로 기한 만료
- 동 협정기간, 북한측 어선이 중국 옌타이, 스타오(석도)항에 8천 여척 입항[250]

2월 11일 북한 제의에 따라 북·중간 수풍저수지어류자원보호 문제 회담(베이징)

2월 12일 **김용식 외무장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 위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북한에 제의**

2월 16일 북한, 11월 중 평양에서 일본 기계 전시회 개최계획 발표

2월 19일 북·중, 수풍저수지어류자원 공동번식 및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2월 21~28일 미국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2월 26일 북한 외무상 허 담, 소련 모스크바 방문

- 북한 대표단을 영접한 자리에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는 한반도 평

248) 7.4 남북공동성명 직후인 9월 동아일보는 '북한 이모저모'란 "직장생활: 어민의 구성과 활동" 제하의 기사(1972년 9월 11일자, 작성자 김남식)를 통해, 북한 수산업의 경영형태를 일반 현황과 더불어 비교적 자세히 소개. "중앙에서 경영하는 수산사업소 및 어민들의 협동체인 수산협동조합... 대부분의 경우 수산사업소가 기본경영 형태며 수산협동조합은 해선을 낀 각 군마다 1, 2 개 정도에 불과" "수산사업소는 규모에 따라, 3급, 2급, 1급, 특급 기업소로 구분되고 있으며...독립채산제 원칙을 도입..." "근해어업으로는 동해안의 명태 낙지 서해안의 조기 갈치가 주된 어획물" "천해양식물로는 원산지방의 해삼을 비롯해, 각 해안의 굴 미역 약간의 김(해주 부근) 등이 있으며..." "원양어업에 동원되는 배는 보통 3천 톤급 이상이며 '백두산'호 같은 어선은 1만 톤이 넘는다. 1회 출어기간은 보통 2,3개월. 어획물은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련 중공 등으로 수출되거나 가공선을 이용, 가공품으로 수출되며 수송선에 의해 육지로 운반" "어민들의 연간 출어일수는 업적으로 3백일 이상" "수산사업소의 관리 책임자로는 지배인..기사장, 3명의 부지배인..." "수산사업소는 준군사체제로 편제...1개 선단이 중대편제에 해당되며 선단장은 중대장..."김일성의 수산협력 제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49) 동 회사는 자본금 24억 엔으로 출범했으며, 일본 조총련을 통해 설립되었음. 경향신문, 1972. 2. 14 참조.

250) 협정의 핵심내용은 중국측 자료 '朝鮮半島周邊漁業資源及經濟合作現狀'(http://tieba.baidu.com/p/2185143064).

화협정 체결 및 남북 대화 개최를 비롯한 북한의 입장지지 표명

2월 28일 **미·중 상하이공동성명**

2월 28~30일 **국가관할권 한계이원의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이용 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중국 참석
- 제2차 회의: 동년 7월 17일~8월 18일(2차 회의에도 중국 참석)

2월 일본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도쿄 도지사[251], 북한 관리 5명 초청

3월 5일 중국, 1953년 이래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군사 원조 재개

3월 7~9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평양방문

3월 18일 북한, 1350t급 백마선호 진수

3월 31일 한적 **정홍진, 북적 김영주·김중린·김덕현과 회담(평양)**

4월 5일 **북·중, 어업호조협력협정 발효**
- **유효기간 5년으로, 1977년 실효됨**

4월 6일 **박정희 대통령, 북한의 해상 위협에 경고**

4월 27일 북한 김일성 수상 연설, '북의 지하자원과 중공업, 남의 경공업과 농업의 종합적인 경제협력 필요' 강조[252]

5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비밀리에 김일성 수상 면담(5월 2일 방북)**
-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1968년 1.21 사태에 대해 사과**
- **김일성, '조국통일 3대 원칙' 제시**

5월 29일~6월 1일
북한 박성철 부수상, 비밀리에 박정희 대통령 면담

5월 26일 미국 저널리스트 해리슨 솔즈베리, 셀리그 해리슨 북한 방문 및 김일성 회견
- 미국인으로서는 6.25 전쟁 이후 최초[253]

6월 16~20일 남북적십자 회담 20차 예비회담, 본회담 개최에 합의

6월 21일 **북한 김일성 수상, 미 워싱턴포스트 특파원 셀리그 헤리슨에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한 평화협정 문제 제기**
-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 2명과 김일성의 회견은 1972년 5월 31일 자로 뉴욕타임스에 보도[254]

---

251) 1967년 일본 도쿄 도지사로 당선되었으며, 1971년 일본의 현직 도쿄 도지사로는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면담함.

252)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7, 90쪽 도표 참조.

253) 북한이 발간한 통일관련 김일성 어록 영문 책자, *For the Independent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에는 1972년 5월 26일 회견한 것으로 되어 있음.

254) *Overconfidence Shattered*, p. 9.

6월 북한 김일성 수상, 함경남도 소재 **신포항** 현지 지도

7월 1~6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255]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

-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통일 3원칙 △ 중상, 비방 금지 △ 남북간 다방면의 제반 교류 실시 △ 적십자 회담 성사 △ 돌발 군사사고 방지를 위한 상설 직통전화 설치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 7개 항 합의**
- 박성철 부수상, 남한 경제발전상에 큰 충격, 서방과의 경협 추구 결론
-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발표

7월 13일 신민당 김대중 의원, 3단계 통일(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 통일) 제창

8월 11일 북한, 5천t급 대형 냉동운반선 비로봉호 진수(청진조선소)

8월 22~25일 북한 김일성 수상, 비밀리에 중국 방문(북한 외교 정책과 통일 전략 설명)

8월 29~9월 2일 **제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9월 3~11일 소련 공산당 서기 카주세프, 북한 방문

- 방문 기간 소련 대표단은 함흥과 원산 방문
- 대안전기기계공장, 흥남화학비료공장, 비날론공장, 용성기계제작공장 등을 시찰함

9월 17일 북한 김일성 수상,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회견 통해 남북연방제 실시 주장

9월 29일 일본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 중일 관계 정상화 공동 성명에 서명

10월 9일 북·중, 「조중경제기술협력」 협정

10월 12일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자유의 집)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전국에 계엄령(유신 체제 등장)

10월 21일 **북한 경제 대표단(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도착**

-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석진을 단장으로 함[256]

10월 23~26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

- "경공업 제품 일부를 자본주의시장에서 사들이자" "외화를 더 벌기 위한 대책 세워야"
- "중앙공업에 속하는 큰 공장에만 자재를 대주겠다" "당 중앙위 위원과 상, 부상은 대외활동 능력 길러야"

10월 23~26일 제3차 남북적십자 본회담(평양)

---

255) 당시 주동독 북한대사 리장주가 8월 4일, 제4차 전원회의 및 남북 공동성명 후 한반도 정세 브리핑(7.4 남북 **공동성명은 김일성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강변(아울러 남한 고립 정책 지원 요청)**. 낙슨의 북경 및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백기 투항,' 남한의 남북 대화 수용에 대해서는 '남북간 격차' 및 '남한 정부 고립'으로 주장.

256) 신정화, 119쪽. 다나카 내각의 대북(대한반도) 정책 전환.

11월 2~4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평양)

- 동 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동 조절위원회 기능으로서, 경제 문화 사회 교류 및 긴장완화 군사적 충돌 방지 등 실행보장

11월 3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북한 김일성 수상 면담**

- **이 때 김일성, 수산협력 언급**[257]

11월 22~24일 제4차 남북적십자사 본회담

11월 30~12월 1일

남북조절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서울)[258]

- 북측은 이 때 선결문제로서 군비경쟁 중지, **다방면의 합작 구체화**를 위한 각 분야별 합작투자위원회 구성, **최고위급 회담** 조속 개최 등을 제의

11월 북한측 제의로 북·중, 수풍저수지 공동이용 논의

12월 4일 **북한 박성철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대리, '남북간 다방면적 합작' 강조(내외신기자회견)**

- **경제 분야에서 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어장 개방 제의**[259]
- 이외 정치, 문화, 군사, 외교 분야의 제의

12월 5일 **북한 김일성 수상, 자연과학부문일군협의회에서 자립경제 및 수산물가공사업의 중요성 강조**

-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 관련 영해 문제 언급[260]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12월 12일 북한, 제5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12월 25일 북한 제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 채택

- 국가의 지도사상을 주체사상으로 명시
- 중앙인민위원회 신설(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
- 내각 기능을 축소시켜 정무원 체제(최고 주권 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로 전환[261]
- 주석제 신설(주석의 연임 관련 조항을 규정하지 않음)[262]

---

257) 김일성,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293쪽.

258)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2010, 76~79쪽.

259)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남북한통일대화제의비교(I), 136~137쪽.

260)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령해 가까이로 다른 나라 유조선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령해를 200마일로 넓히기 위하여 투쟁...이것은 다 자기 나라 령해에서 물고기 자원을 보호하려는데 주되는 목적...," 김일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1972. 12. 5),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1993, 192쪽.

261) 내각이 정무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내각 산하 수산성은 수산부로, 외무성은 외교부로 개칭됨.

262)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주석'은 '국가 수반'이자 '국가주권을 대표'.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서 동 위원회 직접

12월 19일 **북·중, 수풍저수지어자원의 공동 증식보호이용 협정 체결**

- 어로구역의 산업적 어류 산란을 위한 금어기간(매년 6월1일~7월 15일) 설정
- 1976년 1월 1일부터 수풍호 내에서 조업 동력어선 10척 이하로, 목선은 1972년 수준 유지 등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

12월 북·중, 「조중무역의정서」(1973년도) 조인

* 북·소: 소련의 원조를 받아 건설한 **승리화학공장** 완공(러시아 나호트카의 석유를 정유. 1970년대 말 이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함)

* 국제: 동년 7월 카메룬의 야운데에서 열린 해양법 관련 아프리카 지역토론회에서 '전관수역'의 명칭을 '경제수역'으로 개칭, 정식화.

지도, 필요에 따라 정무원 회의 소집 및 지도,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 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무력을 지휘통솔, 법령·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함.

1973년 북한 NLL 문제 제기/ 북한 3대혁명소조운동/ 김대중납치 사건/ 오일쇼크/ 김정일의 부상/ UNCLOS III 개시

1월 2일 북한 김일성 주석[263],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발표

1월 17일, 22~23일
북한 김일성 주석, 황해남도·평양시·평안남도·평안북도 농업일군협의회에서 남한의 새마을 운동 비난

1월 23일 **파리 평화협정(베트남 문제) 체결**
- **핵심: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2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성공을 위한 **자재 공급의 중요성** 역설

2월 10일 북한, **3대혁명소조운동** 개시
- **김정일 후계체제 기반 확대 작업이 개시된 것임**
- 같은 날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하여" 제하로, '공업부문 3대혁명 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연설

2월 21일 북한 김일성 주석,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하여」를 통해 3대혁명소조운동 측면 지원("농촌에 3대혁명소조 파견키로 한 당의 조치는 매우 시기적절")

2월 26~3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 국제회의 개최

3월 1일 북한 조선로동당 비서 김동규, 소련 방문 및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면담

3월 8일 북한 조선로동당 비서 김동규,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국가평의회 의장 면담
- 북한 경제 양호, 사회주의 헌법 채택 등 국내외 상황 설명
- 대남 정책과 관련, **통일을 위한 평화공세를 1971년부터 시작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의 평화통일 입장이 국제 사회에 잘 전달, **남한 고립화** 등의 측면에서 평화공세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
- 동시에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논의시 북한 입장지지 주문[264]

263) 1972년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주석제가 신설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주석'으로 표기.

264) "Minutes of Conversation Taken on the Occasion of the Audience Granted by Comrade Nicolae Ceausescu to the Deleg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s Parky of Korea,"(March 8, 1973), *DPRK Perspective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NKIDP, July 2012. 북한은 1971년부터 평화공세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1960년대 말 일련의 도발로 얻은 호전성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음(남북 대화에 임한 북한의 의도 및 동기 중 하나임이 명백).

3월 14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평양)

- 남측, 경제인과 물자 및 과학기술 교류, 자원공동개발 등 제의[265]
- 특정 부문 합동개발 및 합동작업
- 북측은 이에 대해 '군사문제 5개항 우선 해결' 주장

3월 14~16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 북측 기조 발언문 통해 남북평화협정 제의(3. 15.)

-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 철수 등을 전제로 한 것임
- 조절위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분과위원회 설치 제의[266]
- 경제인과 물자 및 과학기술의 교류, 자원공동개발, 상품전시회의 교환개최, 상사의 교환상주 제의[267]

3월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의 해저 자원개발(해외석유회사의 시추 허용) 비난

3월 17일 한국, 중국과 대륙붕 확정에 관해 협의할 용의 표명

3월 27일 북한, 일본과 무역사무소 설치 합의

3월 소련, 200해리 어업수역 실시

- 이에 따라 동 수역 내에서 북한의 조업허가와 어획량 할당, 선단 규모 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268]

4월 2일 중국, 해양탐사 5원칙 제시

6월 12~14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 북측은 군비경쟁 중지 등 긴장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위한 5개항 우선 토의 주장
- 남측은 중상비방 중지 및 경제사회문화분과위원회 우선 설치 주장

6월 18일 북-중, 「조중경제기술협력 협정 및 부속서」 체결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6.23선언

- **주요 내용: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제의**

6월 23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발표[269]

- 주요 내용: 군사대치 해소, 다방면 교류합작, 통일문제 애국사업(대민족회의), 단일국호 남북연방제, 단일국호 유엔가입

6월 24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김일성 주석의 5개 통일방안 지지 천명

---

265)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7;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2011』 참조.

266) 이상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 북측 기조 발언문, 「남북평화협정체결 제의」, 통일부자료집, 1996, 109~112쪽 참조. 109~112쪽. 약 1년 뒤 1974년에는 입장을 바꿔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으로 선회함.

267)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7, 90쪽 도표 참조.

268) 『북한의 어로실태 조사』, 136쪽.

269) 남북 군사대치 해소와 긴장 완화, 남북 다방면의 합작과 교류,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연방제,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 포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121쪽.

7월 23일 **북한, 선미트롤선 정방산호(3750t) 진수(청진조선소)**

7월 26일 **북한 김일성 주석,「자원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주석명령 1호) 발표**[270]

- 주요 내용: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바다새번식보호구 및 수산자원보호구 지정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1974년 안으로 끝낼 것 지시

8월 8일 **중앙정보부,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암살 시도**

8월 9일 전국농업부문 열성자대회에서, "농업 분야의 외화벌이" 강조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남북대화 일방 중단 선언**

- 김대중 사건 및 두 개의 한국 정책 빌미

8월 29일 정부, 국적선의 비적대 공산권 국가 기항 허용 및 비적대 공산권 선박의 국내 기항 허용

- 「6.23 선언」구체화 조치의 일환으로「선박 기항에 관한 교통부 훈령」을 통해 실시[271]

8월 **김정일, 함경남도 수산부문 현지지도**

9월 4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을 조직·선전 담당 비서로 비밀 선출**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논의 (~17일까지)

9월 19일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이와나미서점 총편집장 미도리가와 도오루와 인터뷰**

- 완전한 자립적 민족경제 완성 선언. 남한의 유엔동시가입 제안에 대한 '두개 조선' 비난, 남북 전면 합작교류 제안 되풀이

9월 29일 일·중, 상하이 공동성명 발표

10월 1일 북한, 제28차 유엔총회에 '조선 문제' 토의 제의

10월 7일 일본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 소련 방문

10월 9일 북·중,「조중철도협정」(북중간 횡단철도) 조인

10월 15일 북한 조선로동당, 일본 사회당과 합의서 조인

10월 23일 **북측 경비정, 북방한계선 월선 침범**

- **이 사건 이후 동년 연말까지 43회 월선**[272]

---

270) 박성준 외,『해양포유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남북합의서 추진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60~61쪽.

271) 이를 통해 비적성 공산권의 기항이 허용됨.『한국외교 40년』, 219쪽.

272) 이를 '서해 사태'라고 함. 미치시타는 북한이 서해 사태를 일으킨 배경에는 영해의 폭에 대한 불분명성 외에 북한의 해군력 증강도 한몫했다고 분석. 1973년 말까지 한국 해군은 기어링급(Gearing-class) 구축함 2척을 주력 전투함으로 운용(상대적으로 속력이 떨어지고 로켓포도 탑재하지 못했음. 따라서 이 무렵 서해상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에 유리). 이상은 Michishita, p. 65. 한편 서해 사태 도발의 평가 중 가장 큰 항목은 '영해권 주장' 공식화 및 NLL 무실화, Michishita, p. 67.

11월 14~21일 유엔, 제28차 총회에서 '조선 문제' 토의

11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3067호 채택(해양법회의 참가의 보편성 천명)
- 배경: 1960년대 탈식민(decolonization)을 통해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 탄생[273]
- 1960~70년대는 또한 비동맹(블럭불가담) 시대, 개도국 중심으로 불만(1958년협약) 점증
- 특히 오일쇼크 등으로 자원의 중요성 대두(자원민족주의)

11월 30일 북·소, 제10차 조소 경제과학기술협의회 개최(평양)

11월 북측 경비정, 남측 북방한계선 대거 월선 침범

11월 북한 김일성 주석, 홍남지구 현지지도
- 북한의 연합기업소 결성의 기점이 됨

12월 1일 북한,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회의에서,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 목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도서가 북한군 통제 하에 있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 우리측(북한측) 영해에 있는 5개 도서에 출입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할 때는 응당한 조치를 받을 것' 주장
- 당시 이를 주장한 북측 인물은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대표 김풍조

12월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측의 서해 해군활동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12월 7일 정부, 북측의 경비정이 백령도에 근접하여 남측 수역을 '침범'했다고 발표

12월 10일 북측 경비정, 남측 소청도 서남 방면 3.6해리까지 접근하여 약 2시간 머무름
- 남측 해군은 북측 경비정이 남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

12월 24일 유엔사, 군사정전위 제347차 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비난

12월 3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 "당의 유일사상 체계 강화" 등 3대혁명 성과 평가

12월 유엔해양법 제3차 회의 개시(미국 뉴욕)
- 1970년 12월 유엔 결정 사항에 따라 개최
- 1974년 6월까지 예비회의 진행

273)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pp. 39-40.

1974년 북한, 김정일을 후계자 확정/ 북한, 외채상환 능력악화 및 생산독려운동/ UNCLOS / 오일쇼크 여파 / 조소어업협정

1월 3일 북·중, 「조중무역협정」 체결
- 중국, 북한에 국제원유시장 가격의 절반에 해당되는 우호가격으로 원유공급 결정

1월 3~5일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274], 중국 방문

1월 5일 일·중. 무역협정 조인(상호 최혜국 대우 규정)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 국내 정정 불안을 이유로 긴급조치 발령(제1호 및 제2호)**

1월 8일 북한 로동신문, "천리 동해어장은 계속 명태잡이로 흥성거린다" 제하 동해 명태풍어 선전

1월 11일 **북한 수산대표단(단장-김윤상 수산부 부장, 김성호 부부장) 소련으로 출발 (조선중앙통신)**

1월 12일 북한, "미제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은 무모한 전쟁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주장[275]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 이와 함께 상호 내정불간섭 및 휴전협정 효력유지 등 제의

1월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남측이) 지난 1월 2일부터 매일 같이 2척의 구축함을 비롯한 7~8척의 각종 전투함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보도**[276]

1월 18일 북·소, 「조소어업협정」 조인(모스크바)
- 유효 기간: 10년
- **"우리나라 수산부 김윤상 부장과 소련 수산부 아바 이슈코브부장...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이 협정은 조쏘 두 나라가 수산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고기자원의 합리적 리용 분야에서 협조를 한층 강화..."(노동신문 1월 21일 자 보도)**
- 해상어로작업 조직, 어로장비 사용법, 어로기술, 수산물 가공, 저장 및 수송, 어선의 운용과 수리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함
-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어획량 등 어업규제조치)
- 기술 장비 조업 어선 수리 등에서 협력

---

274) 1972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나카 가쿠에이를 지지했으며, 이후 다나카 내각에서 외상으로 중일 국교 정상화 교섭, 중일 항공협정 교섭, 김대중 사건을 둘러싼 한일 교섭 등을 이끈 바 있음.

275) "11월 27, 28일 구축함, 고속로케트함, 쾌속부대수송선 등 각종 해군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지난해 210여 차례에 걸쳐...정탐 행위..."

276) 같은 날, "대륙붕 자원에 대한 매국과 침략의 흥정은 용납할 수 없다" 제하, 한일 대륙붕 공동탐사 협정 체결(예정)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자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비난 보도.

- 부속 합의서는 1977년 7월 28일 추가**(유효 기간 10년)**
- 어획쿼터 북한에 무상 할당[277]

1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제의**
- 북한은 1월 26일, 박대통령 제의 거부

1월 21일 북한 로동신문, "청진조선소, 1만 톤급 이상 큰 배를 무어낸다" 보도
- 북한 만경봉호 일본 요코하마항 도착 보도(1월 19일 발)

1월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200마일 령해권을 행사하기 위한 삐루의 조치" 보도 (관심표명)**

1월 24일 북한 외교부[278], 서사군도·남사군도분쟁 관련 중국 입장지지 성명

1월 26일 북한 로동신문,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에꽈도르" 보도

1월 30일 한·일, 한일대륙붕공동개발 협정 조인
- 동중국해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정

1월 31일 **북한, 한·일 대륙붕 협정 비난. "대륙붕협정은 침략과 매국의 협잡문서" 주장 (북한 로동신문)**

2월 1일 북한 로동신문, "미제 침략군 에쓰아르-71 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상공에 침입시켜 공화국 북반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또다시 감행" 보도

2월 4일 **중국, 한일 대륙붕 협정 비난**

2월 4일 북·일 수출입상사 대표단 및 북한의 조선석재주식회사 대표단 평양 옥류관 연회(조선중앙통신)

2월 10일 북한 로동신문, "동해의 물고기잡이 전투장에 충정의 열정이 끓어 번진다" 보도
- "'동해지구 수산전사들' 1974년 40일 동안 1973년 동기 대비 2.1배 어획"

2월 11~13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 "당면하게 힘을 집중하여 지원하여야 할 전선은 기본건설 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이다" 결정(10대전망목표)**
- '500만 톤 수산물 고지'(강철 1200만 톤, 시멘트 2000만톤 등)

2월 13일 **북한 김정일 비서[279],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에 피선, 김일성 후계자 확정**

277) 『북한의 수산업실태와 남북협력 방향』, 2002, 36쪽; 어업협정 전문은 『소련과 북한의 관계』, 428-432쪽. 이때의 정확한 무상 할당량은 조소어업협정상에는 나와 있지 않음.

278) 1972년 내각을 정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외무성'이 아닌 '외교부'로 표기.

279) 이하로부터 총비서에 취임한 1997년 이전까지는 '비서'로 표기, 1998년 강화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국방위원장'으로 표기 통일.

2월 14일 북한 로동신문, "박시형동무가 일하는조선소에서 1만4천톤급 대형화물선 2척 무어낸다" 보도

2월 15일 **북측 해군 함정, 백령도 서북방 30해리 지점의 NLL 북측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수원33호와 수원32호 등 남측 트롤어선 두 척 공격**
- **수원 32호 격침, 수원33호 납치**

2월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성명, "2. 15. 박정희 괴뢰도당 장산곶 서북쪽 북위 38도 14분, 동경 124도 28분 우리측 연해 침범" 주장[280]

2월 19일 북한 김정일 비서, 북한 조선로동당 선전부문일군 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제기('2.19 선언')[281]

2월 25일 박정희 대통령, 율곡사업 및 8개년국방계획(74~81년) 승인[282]

2월 북한 김정일 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283]

3월 7일 북한 김일성 주석, 전국공업대회 연설에서 "지하자원 많이 생산, 수출하면 외화 벌어들여" 주장
- 동시에 수산업 발전 위한 어선 대형화, 마력 큰 엔진 생산 독려

3월 25일 **북한 부총리 겸 외교부장 허담, 최고인민회의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284]
- "군사 통수권을 갖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남조선에 미국 군대를 그냥 남겨둔 채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할 수 없는 빈말공부"[285]
- 북한은 **이전까지는 '북남평화협정' 주장**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및 제4호 발동**

4월 9~5월 2일
유엔총회 6차 특별회의에서 중국 덩샤오핑 부총리, "세계는 미소의 1세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3세계, 그리고 기타 선진국의 2세계로 구성" 발언

5월 **중국, 1958년과 1960년대 투자 차관으로 생긴 북한 채무를 면제**

---

280) 북한은 공산권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같은 주장 되풀이 함. NKIDP 자료 중 루마니아측에 브리핑한 자료가 있음.

281) 정영철, 211~212쪽.

282) NKIDP, *After Detente*, 연표 참조.

283) 이 시점을 전후해 북한 공식 매체는 김정일을 '친애하는 동지' '당중앙'으로 칭호. 본 연표에서는 이상의 김정일 관계는 물론, 김일성 관계 공식 호칭은 채택하지 않음.

284)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 때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을 파리평화협정 체결에 영향받은 것으로 해석. 일본측 북한 전문가 Michishita, pp. 58-59.

285) 「북한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미국 의회 앞 편지,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한반도 평화체제문제 관련 주요 문건집』, 통일원, 1996, 113~116쪽.

6월 2일 북한 김일성 주석, 페루 Express 지 주필과 가진 회견에서 '200해리 영해권' 지지 주장

6월 28일 북한, 동해 NLL 부근에서 남측 해경 경비정 863호를 공격해 침몰시킴(26명 사망)

6월 북한 김일성 주석, 함경남도 신포항 현지 지도
- 동년 10월까지 1만 톤급 선석 부두 완공을 지시

7월 10~1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제2차 7개년계획 작성방향에 대하여」를 통해 선박공업 육성 강조
- 수산업의 경우, 원양어업(먼바다물고기잡이)용으로 가공모선과 냉동운반선(50척), 선미트롤선(3,750 톤짜리 200척)의 목표 건조량 제시[286]
- 물고기 생산을 낮추는 대신 양식사업 발전 강조("인민들 부식물로는 연간 300만 톤 이상 잡을 필요 없다")[287]
- "사회주의 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 나라들,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을 많이 해야" 강조[288]

8월 5일 북한, UN 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 회의(카라카스)에서 '200해리 영해권' 지지 입장 재확인

8월 9일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자민당 의원 우쓰노미야 도쿠마 회견[289]
- 같은 날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 후임으로 포드 대통령 취임

8월 15일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
- 박정희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 상호불가침 재론(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시)
-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사망

8월 24일 북한, 대형 선미트롤 오가산호 진수(원산조선소)

8월 북한, 루마니아 특사를 통해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 직접 대화를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에 제안

8월 중국, 공격형 핵잠수함 09-I 취역[290]

10월 21일 북한 김정일 비서 발기로 '70일 전투' 개시

---

286) 김일성, 「제2차 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에데 대하여』(4-3). 349~350 쪽.

287) 김일성, 「제2차 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4-3), 349-350쪽.

288) 김일성, 「제2차 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355쪽. "사회주의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문제를 원만히 풀 수 없다"는 이유임.

289) NKIDP, *After Detente*; 『연표』 관련 항목.

290) John W. Lewis et al., 1994, p.

- 김일성은 전보 지시를 통해 김정일의 속도전 측면 지원[291]

11월 15일 **국군,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에서 북한 땅굴 최초 발견**

12월 15일 북한, 「강원욱동무가일하는조선소」에서 5천t급 화물선 '황금산'호 진수

11월 27일 북한 김일성 주석,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대하여**」 발표(최고인민회의 제5기 4차회의)

12월 17일 유엔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3333호) 채택

12월 일본수출입은행, 대북 수출융자 제공 거부(통산성 수출보험업무 중단)[292]

* 남한: 수산업사상 최초로 캄차카 근해어장에 출어

* 북한: - 1974년 가을부터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293]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 식으로" 슬로건 등장

291) 더 자세한 내용은 정영철, 277~279 쪽. 정영철에 의하면 속도전은 1970년 '한 자위단원의운명'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에 의해 제창된 새로운 방침. 북한 당국은 1974년 초부터 '당중앙'(김정일 지칭)이 제시한 속도전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독려함.

292) 이찬우, 50쪽.

293) Charles Armstrong, Working Paper, p.2. 한편 북한의 항만시설 부족도 이와 같은 경제 실패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음. 나탈리아 바자노바, 255쪽 참조.

1975년 베트남 공산화/ 남한 인혁당 사건 및 긴급조치 / 한국 핵개발 시도 / 쇼세이마루호 사건 / 북한, 비동맹운동 가입 / 일본 수출입은행, 대북 차관 중단

1월 1일 북한 김정일 비서, 수산부문 책임일군에게 물고기잡이 전투 독려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의 담화를 통해, '전군의 주체 사상화' 방침 제시[294]

1월 28일 북·소, 제12차 조소 경제과학기술협의회 개최(평양)
- 같은 날, 일·소 사할린 개발협정 조인(대륙붕 석유 등)

1월 28일 남한, 서해 조업자제선 설정

2월 4일 일본, 전관수역 침범혐의로 한국 어선 1척 나포

2월 26일 남측, NLL 넘은 북측 선박 2척을 부딪쳐 침몰시킴
- 남한해군 작전수역에서 검색에 불응, 도주를 꾀하다 충돌, 침몰됐다고 공식 성명
- 북한은 이에 대응, 해군함정 및 미그 전투기를 85회 출격시킴[295]

2월 28일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 "NLL은 국제법 위반" 취지의 기밀전문을 주 한국대사관에 보냄
- 2010년 12월 국내 언론 보도로 공개

3월 24일 북한 전투기, 남한 서해 영공 침범

3월 27일 미국 리처드 스나이더, 브렌트 스코프크로프트 등 한반도 사태 논의

4월 17~26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방문, 마오쩌뚱(저우언라이, 덩샤오핑)과 회담
- 김일성, '혁명의 대고조기' 언급하며 남한에 혁명 발생시 중국 지원 요청.
- 4월 26일 공동성명(발표는 4월 28일) 채택
-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잃은 것은 군사분계선, 얻을 것은 조국 통일" 발언**[296]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한 베트남 통일
- 곧이어 4월 17일, 크메르 항복함으로써 인도차이나에서 공산화 도미노

5월 8일 북한, 일본 사절단에 땅굴 시인

5월 13일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9호 선포
- 주요 내용: 유신헌법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 주장 또는 청원, 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294) 정영철, 259쪽.

295) 아울러 북한은 "박정희 괴뢰도당의 간첩선이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 공산권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설명.

296) 북한 정무원 주최 연회, 김일성 주최 연회의 연설. 내용의 일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96~97쪽에 소개.

5월 22일 북한 김일성 주석, 루마니아 방문
- 5월 26일, 알제리 방문. 5월 30일, 모리타니아 방문

6월 2일 북한 김일성 주석, 불가리아 방문

6월 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유고슬라비아 방문

6월 7일 일·소, 어업조업협정 체결
- 주요 내용: 일본 근해에서의 소련 조업, 어업 분쟁 방지

6월 14~21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항만 발전** 언급[297]

6월 20일 북한, 어선 백금산호 진수(신포조선소)

6월 28일 **중국 덩샤오핑 부총리, 북한에 남침 만류 표명**

7월 1일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30주년에 즈음, '100일 전투' 개시

7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자민당 우쓰노미야 도쿠마 의원 회견

8월 22일 **미국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 휴전당사국 회담 제안**
- 실제 내용은 4자 회담(최초)

8월 25일 리마외무장관회의, 북한을 비동맹운동의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

9월 2일 **북한 압록강 하구 신도 근해에서 어로 조업 중 나포된 일본어선 쇼세이마루(松生丸, 사가현 소속) 사건 발생**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의 영해를 12해리로 간주하는 결과 발생, 훗날 북일어업협정 조인의 계기가 되는 사건[298]
- 49톤짜리 **복어잡이** 어선에 선원 9명 승선
- 압록강 하구에서 영해침범에 의해 북한 경비정 총격 받고 2명 사망[299]

9월 17일 일본 서부어협, 쇼세이마루 사건 관련 북한에 사절단 파견

9월 22일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 남·북, 미, 중의 4자 회담 제의**
- 북한과 중국은 거부 의사 표명
- 교차 승인론 함께 제기[300]-제30차 유엔총회

297)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64쪽.

298) 홍성걸 외; 『日本近代漁業年表』, 62쪽; 백충현, 『일북괴 민간어업협정 체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23쪽. 한편 쇼세이마루호는 동년 9월 14일 일본으로 귀환함.

299) 『日本近代漁業年表』, p. 62.

3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87쪽.

10월 13일 **북한, 대일 민간 어로협상 개최에 동의**

- 당시 조선로동당 국제부장 김영남이 방북 중인 요미우리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안전 조업을 위한 일본 어민의 민간어업 협정 체결은 타당성이 있으며, 협정을 맺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견해 표명[301]

11월 17일 **유엔 30차 총회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전환 결의안 통과('한국문제 결의')**

-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4자 회담' 재차 제의**
-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의 1976년 1월 1일 자 해체 희망,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의사 표명[302] (유엔사 해체를 기정 사실화)[303]

11월 19일 북한 5기 11차 전원회의(1976년 인민경제계획 논의)

11월 **북한, 검덕광산에서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시작**

12월 1일 소련, 신형 유도미사일 장비 구축함 동해항진

12월 남한 트롤선, 일본 홋카이도 어장에 본격 출어

- 대규모 출어로 홋카이도 어민의 어구 피해. 이로 인해 대일본수산회는 1976년 3월, 어구피해교섭단을 한국에 파견

* 북한: 대외 무역 촉진을 위해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봉화총국 설립

301) 백충현, 『일북괴 민간어업협정 체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24쪽.

302)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 관련 주요 문건집』 통일원, 1996. 71~74쪽.

303) 『현대국제법연구』, 167쪽.

마오쩌둥 사후 북·중관계 악화 / 북한 대일채무 문제 / 각국 EEZ 선포 움직임 / 소련 어획고 1천만 톤 돌파 / 팀스피리트 훈련 시작 해[304] / 북한 항만개발 착수

1월 7일 **북·중 송유관 완성 및 개통[305]**
- 노선은 중국 단동에서 북한 평북 석하리를 거쳐 봉화화학연합기업소(정유공장, 평북 피현군 의주 소재)까지임

1월 8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 사망

1월 **북한 공군기, 남한 백령도 상공 침범**

2월 북·소, 「조소경제기술협력 합의서」 체결
- 1980년대 초 소련은 이 합의서에 따라 기술관계 자료, 공업상품 견본, 농산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
- 북한은 차관 1억1천7백만 루블과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4천만 루블 도입

3월 2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일본 『세카이』지 편집국장 야스에 료스케 회견

4월 8일 중국 덩샤오핑 실각

4월 15일 **UN 해양법회의 제3차 제4회 회의에서 북한 "소도서가 타국 영역 내에 있거나 근접해 있을 경우, 경계획정시 이들 소도서 무시해야" 발언(북한 유엔 대표부 권민준)**

6월 2일 서울에서 민간협력 형태로 「대한민국-일본국 어업문제협의회」 개최 합의(실무자회의)

6월 8일 북·소, 제13차 조소경제과학기술협의회 개최

6월 14~21일 북한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북한 항구 낙후성 지적

6월 22~23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명태잡이 기간이 50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500톤짜리 선미트롤선 건조 지시
- 청진조선소와 신포조선소에서 3,750 톤짜리 선미트롤선 건조 지시
- **남포항 확장 및 송림항 정비 지시, 반면 해주항은 건설을 당분간 중단할 것 지시[306]**

6월 북한 김일성 주석, 신포항 현지 지도를 통해 신포 항 개발 강조

---

304) 1980년대까지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 전쟁"이라는 것임. 『현대국제법 연구』, 165쪽.

305) 이후 연간 100만 톤씩 중국으로부터 원유 도입, 1987년 경 125만 톤으로 증대됨.

306) 해주항은 1973년 무역항으로 지정. 해주항 확장공사는 1978년 재개됨.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68~169쪽 참조.

6월 북한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에서 국가부주석 김동규, 김정일 비서의 정책 비판[307]

- 간부 정책, 계급 정책, 후계 체제 확립 작업 등에 대해 비판

7월 5일 **북한, 안전보장(경비)수역 50해리 설정**

7월 30일 주한 미군 **커시만 한미 1군단장, "북괴 남침 시 9일 이내 격퇴" 발표**

7월 북한, 40개 공장을 산하에 둔 **은하무역총회사** 설립[308]

8월 18일 **북한,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 참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309]

8월 23일 미국,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해 항공모함 미드웨이 한반도 파견·무력 시위

8월 30일 북한, 동해 군사분계선 북방으로 표류한 어선 '신진호'를 포격 끝에 나포

9월 10일 **중국, 마오쩌둥 사망**

9월 30일 **제31차 유엔총회 연설 통해 미 국무장관 핸리 키신저, 북한에 4자회담 제의**[310]

10월 12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5기 12차 전원회의**

- 알곡 1천만 톤 고지 점령 제시
- 자연개조 5대 방침: 밭 관개, 다락밭 조성, 토지정리 및 개량, 간석지 개간, 치산치수 등

10월 12일 중국, 4인방 체포

10월 24일 **북한 김일성 주석,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데 대하여」(주석명령 제7호)**

- 연해 어장에서 정해진 수산자원 보호시기와 크기, 어구와 어로방법, 보호구역을 엄격히 지킬 것 등을 규정
- 가자미, 게, 해삼은 자망과 낚시, 잠수어업으로만 잡도록 할 것 등 규정[311]

11월 2일 **중국 덩샤오핑 복권(두번째)**

11월 3일 **북한 김일성 주석, 「수산업을 적극 추켜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몇 가지 문제」(선박기계생산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1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 「담수양어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함경남도 담수양어부문 일군협의회 연설)**

11월 10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앙 및 함경남도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행한 연설(「함경**

---

307) 정영철, 292~294쪽.

308) 나카가와 마사히코, 「북한 연합기업소의 특징」, 2003.

309) 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비판받고 자숙함. 정영철, 289~290쪽 및 294~296쪽. 이에 대해서는 서대숙, 정창현의 연구도 있음.

3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189쪽.

311)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및 『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4-3) 참조.

남도의 농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서, 어선대형화 및 어구생산 강조

- 이 연설에서 수산업 발전의 목표에 대해 설명: 식생활의 시급한 개선(부식물로서 고기를 먹는 문제), 알곡사정의 긴장한 조건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알곡을 돌릴 수는 없음

11월 14~15일 북한 북한 김일성 주석,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동해지구 수산부문열성자대회 연설)

- 정어리떼가 동해 앞바다에 많이 몰렸으나 많이 잡지 못했다며, 어선 동력화, 현대화, 배수리, 어로의 과학화를 강조
- '1년 3백일 출어'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
- 수산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수산대학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 촉구

11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공진태, 소련과 어업공동위원회(소련대표와 회견)

12월 10일 소련, 배타적 어업수역법(EFZ) 제정(200해리 선포)

- 1977년 3월부터 시행
- EFZ는 1984년 2월 28일, 최고회의 간부회의 포고령에 의해 EEZ로 명칭 변경[312]
- 이후 북한의 러시아 수역 내 어획규모를 연간 20만 톤으로 제한[313]

12월 북·일, 상환기간 넘은 8천만 달러의 차관을 연리 10.45%로 상환기간 2년 연장에 합의

- 채무연장합의서 조인. 일본 상사 및 은행 채권단의 방북 교섭 결과임

* 한·미: 연례 훈련인 한미 합동 팀스피리트 훈련 시작

* 소련: 어획고 1천만 톤 돌파(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기록)[314]

312) 송경석, 「WTO/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부, 235쪽 각주25.

313) "식량난 타개 위해 수산업 독려," 경향신문, 1992. 5. 4.

314) 『日本近代漁業年表』. p. 65.

1977년 각국 EEZ 선포 및 해양영토 확보경쟁 / 북·일, 잠정어업협정 조인 / 북한, 중·소간 등거리 외교 유지

1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 통해 경제건설 6개년 계획(71~76) 실패 자인**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통해 대북 식량원조 용의 표명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농수산부 연두순시 시 "연근해어업 진흥방안 수립" 지시**

- 협업양식 등 어촌새마을운동, 대형어선 획기적 증선, 어항개발,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315]

1월 24일 북한 박성철 총리 소련 방문(1972년 이후 고위직으로는 최초)

- 당시 북한은 대소 채무상환 기한을 여러 차례 연기,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소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1월 31일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김관섭 위원장, 일본 구노 주우치(자민당)와 대담에서 "북한은 영해 12해리와 안전경비수역 50해리를 이미 시행하고, 이를 사후 법제화하는 문제를 검토 중" 발언**

1월 **북·소, 1974년 체결된 조소어업협력협정의 부속합의서 체결**

- **해상 어로작업의 조직, 어로장비의 사용법, 어로기술, 수산물 가공, 저장 및 수송, 어선의 운용과 수리 등에 대한 상담 교환**

2월 8일 북한 인민군 창건 28돌기념 중앙보고(김익현 부참모장)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정전협정을 조미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을 논의할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제의

3월 1일 **소련, 배타적 어업수역 선포**

- 북·소간 특별협약에 따라, **6천 톤** 대형트롤선과 수척의 중간 규모 어선이 연간 20만 톤까지 소련 해역에서 어획 가능(상호입어 방식으로 소련 어선도 북한수역에서 조업 가능)
- 동년 2월 24일 소련 내각 결정에 따른 것
- 동 선포의 영향으로 한국도 타격받음(캄차카 근해와 오호츠크해의 황금어장 상실)
- 미국도 소련의 선포에 대응,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

3월 9일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한국과 협의하여 주한미군 4~5년간에 걸쳐 철수" 발표**

- 1981년까지 전술 핵무기 부대와 함께 2만6천 명의 지상군 전투 부대 전원 철수(계획)[316]

315)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19쪽.

316) 셀리그 해리슨, 286쪽. 이와 같은 철수 계획은 오히려 한반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킴. 일례로 한미연합사 창설을 들 수 있음.

3월 10일 한국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에 한소 어로협정 중재 요청**

3월 13일 북·중, 조중장기무역협정 체결(베이징)

3월 2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서해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해지구 수산부문 열성자대회)**

- 1976년 동해지구에 이은 서해 수산업 발전 시도. 여기서는 서해 지구에 수산기지를 정할 것과 동해안과 달리 세소어업을 중심으로 특화시킬 것 제시[317]
- 양식사업 발전을 강조(간석지를 이용한 숭어, 새우 양식 언급)

3월 24일 북한 정무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7호 수산자원을 적극보호 증식할데 대하여를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정무원 결정 제9호) 채택

- 1976년의 주석명령 후속 조치임

3월 29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전관수역) 200해리 선포

4월 5일 **중국, 북한과의 사이에 1972년 체결된 조중어업호조합작협정 실효 통지**

- 공식 명칭: **중조어업호조합작협정 실효후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4월 29일 소련, 일소어업협정 폐기를 통고

- 200해리 어업수역의 설정에 따라, 이전 협정은 의미가 없어짐
- 1954년 체결, 이 통고에 따라 협정은 1978년 4월 30일자로 실효됨[318]
- 이에 따라 일소잠정협정이 체결됨(5. 27.)

4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토지법 채택

-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포함시킬 것" 규정(17조 8항)
- "연안령해 관리기관 등 해당 기관에 **수산자원 보호증식** 사업을 조직할 것" 규정(제62조)

5월 11일 북한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단장 현준극),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과의 공동성명

5월 23일 일소어업협정 가조인

5월 북·일,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과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와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의 공동성명

일조의원연맹 요청에 따라, 조일잠정어업합의서 합의

- 외채상환을 위한 외화벌이 성격이 강함

6월 21일 **북한, 경제수역 200해리 선포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 50해리 해상군사경계선 설정[319]**

---

317)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5), 34~58쪽.

318) 『日本近代漁業年表』, p. 66. 경제수역 및 해상군사경계선 선포의 결과, 동 수역 내 조업을 통해 연간 6만 여 톤을 어획하던 일본 어선이 축출됨(조일 어업협상의 주요 계기).

- 6월 11일 정령, 동해는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서해는 조중간 경계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320]
-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바다를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바다의 반분선" 주장[321]
- 수중, 해저 및 지하를 포함하는 동 수역 내의 생물, 비생물 자원에 대해 자주권[322] 행사
- 사전승인 없이는 외국인들과 그 선박, 항공기 등의 어획, 시설물설치, 조사, 개발 등 행위 금지
- 동년 5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뉴욕)
- 해상군사경계선의 핵심: 이 수역 내 수상, 수중, 공중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의 군용함선 및 군용항공기 활동 금지

7월 1일 일본,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제정, 공포(EEZ 선포)

- 1996년 7월 20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법률 시행을 통해 폐지됨

7월 3일 김일성, NHK 취재단과 회견 시 200해리 어업수역 선언에 대해 언급하며 '주변국에의 대응조치'라고 설명

7월 13~24일 북·소, 조소어업협정 교섭 진행

- 북한은 당시 캄차카 근해에서 연간 203톤의 입어 허가를 받음[323]

7월 15일 일본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회장 구노 추우지, 자민당 중의원 의원), 대북 어업교섭 천명

7월 15일 한국 외무부 대변인, 북한의 EEZ 불인정 성명

7월 22일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공동위원장 대리 민관식, 북측에 200해리 경제수역 관련 성명[324]

- EEZ 문제 토의 제의
- 이를 위해 늦어도 7월말 이전 판문점에서 부위원장회의 개최 제의
- 남북 직통 전화의 즉시 재개통 촉구

---

3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대하여」공포,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령해와 경제수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민족적 리익과 나라의 안전 및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취해진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 견지. 김영철 외,『현대국제법 연구』, 1988, 100쪽. 1990년대까지 경제수역 선포일은 7월 1일로 알려져 왔음.

320) 1970년대 일부 국내 문헌은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시점을 7월 1일로 표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6월 21일, 대외적인 선포는 7월 1일인 것으로 판단됨.

321) 북한측『현대 국제법 연구』, 106쪽. 북한은 '바다의 반분선' 규정까지를 포함한 경제수역법에 대해 "자주성의 시대와 현대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그 내용을 새롭게 규제한 주체의 해양법"이라고 주장(같은 곳).

322) 북한은 경제수역 내 국제법에서 쓰는 '주권적 권리' 용어 대신 '자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이 자주권 용어에 대한 1970년대 해석은 김찬규,『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국토통일원, 46~47쪽 참조.

323) 백충현,『일북괴 민간어업협정 체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977, 55쪽 주21 참조.

324)『사진으로 보는 남북교류 20년: 서울사람 평양사람』(신년호 별책부록), 조선일보사, 1989. 1.

7월 28일 북·소, 「조소어업분야협력에관한의정서」 체결(모스크바)

- 이는 7월13일 블라디미르 카멘세프 제1어업차관과 김윤상 수산부장 사이 모스크바 교섭 개시의 결과이며, 양측 EEZ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임[325]
- 1974년 1월 18일 체결 어업협정의 수정[326]
- 소련 EEZ 내 조업시의 어업허가 신청서 제출 요령 등 규정(나호트카 연안어업검사국으로부터 허가증 발급)
- 단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에 관한 이견은 **1986년**에 가서야 해결됨
  * 양측 EEZ 선포에 따른 결과
- 이 의정서에 영해 관련 사항은 일체 검토하지 않을 것을 규정(별도의 협상)
- 1977년도 어획할당량은 20만 톤(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 인용)[327]

8월 1일 한·일 정부, 북한 군사수역의 불법성 비난

- 북한 인민군최고사령부, "**군사경계선** 50마일을 설정할 데 대한 보도" 발표

8월 3일 유엔사, 북한 해상군사경계선은 휴전협정 사항을 침해할 수 없음

8월 12~18일 중국 11기 당대회, 덩샤오핑 복권

8월 26~9월 5일

일본 일조의련 방북, 북·일 간 어업교섭(북측 대표-현준극)

- 「조일어업협정」에 대한 일본의 정부 차원 보증 및 북한 군사경계선에 대한 인정 요구
- 일본측은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 대표단(자민당 하야시 요시로[328] 의원 등 포함)[329]
- 1977년 10월 1일부터 1978년 6월 30일까지 일본 어선의 잠정 조업 허용
- 합의서 체결 당사자: 북한-동해수산협동조합, 일본-일조어업협의회[330]
- 주요 합의 내용: 북한 군사수역을 제외한 경제수역 내 일본 어선 조업보장, 호혜평등 원칙 하의 어업 협력 강화, 잠정어업 수역내 북한 조업질서 준수, 항행 안전 보장, 천재시 긴급 피난 및 해난구조협력 등[331]

9월 5일 북·일, 「조일어업협력에 관한 잠정합의서」 체결(제1차)

- **동년 10월 1일 발효. 효력 1년. 북-조선동해수산협동조합연맹, 일-일조어업**

---

325) 김찬규,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국토통일원, 1977, p. 5.

326) 의정서 전문은 『소련과 북한의 관계』, 501~505쪽.

327) 김찬규,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국토통일원, 1977, p. 5.

328) 하야시 요시로(林義郞): 1927-2017.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 역임. 일본 정부 대장상 역임.

329) 국내에 알려진 것은 동년 9월 11일 자 하야시 요시로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음. 백충현, 『일북괴 민간어업협정 체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1997, 12쪽. 한편 경제수역과 군사수역의 정확한 좌표표시를 나타낸 지도는 당초 국토통일원 보고서에 도표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반 공개 시점에 삭제됨.

330) 민간 어업협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측이 한국으로부터 반발을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북한은 협상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 대형 어업단의 쓰가루 해협 통과 허용을 요청.

331) 이상 백충현, 『일북괴 민간어업협정 체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1997, 26쪽 내용 참조.

협의회)[332]

- 주요 내용: △ 일본어선의 조업범위를 북한 군사수역 밖의 경제수역 내로 함 △ 어선 규모, 200톤 이하로 함 △ **일본은 북한에 조업기술 및 어업기자재 도입에 협력** △ 상대측 어선의 안전보장 및 긴급구호[333]
- 북한은 오징어, 붉은대게, 연어 등을 일본에 개방(명태의 경우, 북한어선이 어획한 명태를 일본의 공모선이 해상에서 인수)[334]

10월 북·일, 제2차 채권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서 체결

- 동년 11월에 평양에서 공식 조인

10월 북한 김일성 주석, 국가수산과학원 창설 지시

10월 북한, 김정일 비서의 권력 세습에 반대한 김동규를 숙청

11월 11일 북한, 제6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 경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중앙인민위원회도 개편(6개년 계획의 부진 영향)

11월 21일 북한, 겨울철 물고기잡이와 가공전투 혁신대회 개최(함남 신포시)

12월 8~11일 동독 국가수반 호네커 북한 방문

- 동독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
- 김일성은 환영 리셉션에서 과거 문혁 기간 북·중 관계가 매우 악화됐던 사실 공개("북·중 국경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우리를 '수정주의자'라고 선동했다")
- 중소 논쟁에 대해서는 **"불개입" 선언**[335]

12월 17일 북한 김일성 주석,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 연설을 통해 2차 7개년계획 분야별 목표 제시

- 수산 생산목표: 3백50만 톤(이 중 어획량 2백70만 톤)[336]

12월 31일 한국 영해법 공포(영해 12해리, 단 대한해협은 3해리)

* 북한: 1977년 말, 78년 초 동한만(동조선만) 명태의 여름-가을철 회유와 어장에 대한 연구 진행

* 한국: 1977년 2월말까지, 소련령 캄차카반도 근해어장과 오호츠크 해에 57척 출어(연간 34만 톤)하고 있었음

---

332) 이와 같은 잠정협정 결과(즉 군사경계수역 바깥에서만 조업하게 된 결과), 일본은 2만 톤 상당의 어획량(1976년 예상 어획량의 약 25% 수준)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짐. 특히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업과 복어주낙 어업이 크게 타격을 입음. 이상 내용은 Tsuneo Akaha,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Fishery Relations in the Sea of Japan,"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1, No. 2, Summer 1992, pp. 256~257.

333) 최정윤·최종화,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 체제의 구축과 운영방안」, 『수산경영론집』, Vol. 30, No. 2, 1999. 12 참조.

334) 김기수·정형찬, 「남북한 공동어업정책의 과제」, 『수산경영논집』, 24권 1호, 1993,

335) 찰스 암스트롱의 논문 부록(NKIDP 자료. 동독의 당문서보관소 보관 자료). 1977년 12월 13일 자 동독 공산당 정치국 비망록. "Report on the Official Friendship Visit to the DPRK by the Party and State Delegation of the GDR, led by Com. Erich Honecker, 8-11", December 1977.

336) 1974년 '10대 전망 목표'의 수산물 **생산목표 5백만 톤에서 하향 조정한 수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계획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 국제: UNCLOS 영향
  - 한국, 77년 이후 북태평양 트롤어업 생산량 대폭 감소[337]
  - 한국에서는 어장의 안정 확보 노력이 본격화하여 남빙양어장에 대한 시험조업 등 신어장 개척 노력이 시작됨
  - 소련 EEZ 선포 여파는 일본에서도 크게 작용

337)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의 기초연구』, 21쪽. 한편 신영태 외 등은 1962-1970년대를 '수산업 고속 성장기'로 지칭.

1978년 북한 제2차 7개년계획(78-84) 시작년도 / 중국의 개혁개방 (대미관계 정상화 우선추진) 원년/ 북한 무역제일주의 등장 / 북한 항만확장/ 북·소 나진항 사용협정

2월말~3월초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 회의에서 10개년 경제발전계획 발표

2월 북한 김일성 주석, 수산부문 일군협의회에서 어선 증산 강조

3월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3자 회담에 대한 관심 표명

3월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3자 회담 제의

3월 4일 남측 민관식 남북조절위원장 대리, '남북의 자원, 기술 활용' 북측에 제의[338]

3월 11~24일 북·중간 어업대표단 평양에서 회담
- 수풍저수지공동이용 관련 협정의 이행상황 검토 및 협정기간 연장

3월 21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 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발표
- 제24조 3항: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과학연구를 하는 외국 기관과 사람은 바다 환경의 어느 부분이나 자원에 대하여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339]

4월 4일 북한, 해주항 부두 확장공사 완료

4월 21일 일·소 어업협정(유효기간 1982년 12월 31일까지)
- 소련은 1977년 4월 29일,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에 따라 구 일소 어업협정 폐기 통고[340]
- 일·소는 같은 기간 연어송어 어획절차및조건에 관한 의정서 체결

4월 22일 KAL기, 소련에 강제 착륙[341]
- 4월 20일 파리 출발, 경유지인 알래스카로 비행하는 도중 소련 영공 침범. 무르만스크 남쪽 200마일 지점 얼음호수에 비상 착륙해 승객 2명 사망, 13명 중경상
- 소련은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

4월 30일 한국, 12해리 영해 선언

5월 5~1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화궈펑(화국봉) 주석, 북한 방문
- 1976년 이후 소원해진 양국 관계 개선 시도

5월 12일 한국, 한미연합사 연내 발족 발표

---

338) 『동북아 세력균형 구조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979 부록 연표.

339) 『현대국제법 연구』, 102쪽.

340) 『日本近代漁業年表』, p. 66.

341) 통일뉴스, 2009. 2. 12.

5월 19일 북한 김정일 비서,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연설을 통해, '100일 전투' 제기[342]

5월 29~9월 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지시에 의해 '100일 전투' 진행

5월 **한국, 수협 명의로 동해 대화퇴 어장 근처에 '조업자율규제선' 설정 ('남북한공동어로수역')**[343]

6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 **남포항 현지지도**[344]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6.23 5주년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 경협 제의

6월 30일 **북·일, 제2차 잠정어업협정(유효기간: 78.7.1~80.6.30. 2년)**

6월 30일 북·중, 압록강및두만강 수문협력 협정
- 압록강 및 두만강 홍수 방지 목적

7월 일본, 12해리 영해 선언

8월 12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공포(정무원 결정 제160호)**[345]
- 북한 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과 외국배가 어로행위를 할 경우, '물고기잡이 허가신청서'를 한달 전에 자원감독기관에 제출할 것 등을 규정
- 별도의 협정 또는 협의 없이는 송어, 연어, 정어리, 게, 물개, 고래의 어획 금지(제15조)

8월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9월 8~13일 중국 덩샤오핑 부총리, 북한 방문
- 방문 기간 중 북한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오랜 시련을 이겨낸 친근한 전우" 발언

10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함경남도 수산기지 현지 지도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수산업 지도체제의 전면 개편 방침 천명**
- 북한 **정무원 결정으로 12월 30일, 산하에 수산위원회 설치**

10월 17일 **한·미,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미국 샌디에고) 조인**
- 이는 제30차 유엔총회의(1975)의 유엔사 해체 결의에 따른 것임

---

342) 정영철, 314~315쪽.

343) 이병기, 1990, 91쪽.

344)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65쪽.

345) 시행 일자는 1980년 1월 1일임.

10월 31일 북한 김일성 주석, **해주항 확장공사장 현지 지도**[346]
- 서해항만건설사업소 중심. 78년 안에 200m 부두 및 140m 호안공사 완료함

11월 2~3일 북한 김일성 주석, 황해남도당위원회 집행위 확대회의를 소집해 해주 확장공사를 연내에 끝낼 것 지시[347]

11월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7차 전원회의에서 **남포항 확장 지시**[348]
- 서해항만건설사업소 및 6.2항만건설사업소 중심

11월 한·미, 한미연합사 창설

11월 23일 북한, 1만4천t급 화물선(짐배) 두만강호 진수(청진조선소)

12월 28일 북한 김일성 주석, **남포항 확장공사 현지 시찰**
- 확장공사는 1년 남짓해 제3호부두로부터 8호부두까지 총연장 길이 6백m 이상 규모의 새 부두 건설, 투호천 호안공사 동시 완공

12월 31일 **북·소, 나진항 사용에 관한 협정 체결**
- 이는 1947년 조소해운주식회사 설립 건과 관계가 있음[349]

12월 중국 공산당 3중전회, 중국의 개혁·개방 개시 선언

12월 북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구호 등장
- 중국 개혁개방 조치에 대한 부정적 반응

* 중국: 북한에 대해 대부분의 무역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전환할 것 요구

* 소련: 일본을 통해 한국에 소련산 명태를 사도록 제의[350]
  - 아울러 이 무렵 한국 정부는 캄차카 수역 내 어로권 확보를 위해 소련과 항공 및 선박 직항로 추진. 대신 소련은 소련해군의 대한해협 통항권 확보 의도

* 남한: 주요 연안 어장에 수산자원보전지역(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351]

346)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69쪽.

347)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69쪽.

348)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65쪽.

349) 기무라 미쓰히코, 302쪽.

350) 『동북아 세력균형 구조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03쪽.

351)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25쪽.

1979년[352] 박정희 대통령 사망 / 북한 외채문제 대두 / 미·중관계 정상화/ 북·중관계 악화 / 중·일 협력

1월 1일 미·중 관계 정상화

1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 통해 **외채 문제** 언급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 당국자간 무조건 대화 촉구

1월 23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4개항 통일방안' 성명 발표
-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으로 복귀, 비방중상 즉시 중단, 적대시 및 위협적 군사행동 무조건 중지, 전민족대회 개최 등 주장[353]

2월 16일 일·중 어업협정 개정

2월 17일 **남북 변칙 대좌**
- 접촉 대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접촉을 위한 남측 대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결성문제 협의를 위한 북측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354]

2월 20일 북한 체육지도위원장 및 탁구협회장, 제35회 세계탁구대회(평양) 남북단일팀 구성 제의
- 이후 동년 3월 12일까지 남북 탁구회담 개최

3월 3일 한적 총재, 북한 적십자 손성필 위원장에게 1.22 이후 실종된 제6, 7 해왕호 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협조 방송통지문 발표

4월 1일 소련, **나진항** 사용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 노력 발표(아태 지역 주요 수송기지)[355]

5월 2일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북한방문(5.3. 김일성 면담)

5월 31일 북한, 함흥에서 저우언라이 동상 제막식(덩잉초우 참석)[356]

7월 1일 **박정희-카터 정상회담 공동성명, '3당국 회담' 제의**
-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 당국대표 회담**
- 7월 10일, 북측 3당국 회담 제의 거부

8월 28일 **북한 여객선 삼지연호 니가타 항 첫 입항**

---

352) 1979년 기준, 동북아 각국 어획량 순위 일본-세계 1위, 중공-3위, 한국-9위, 북한-16위. "연근해어업의 개선방향" 매일경제, 1981년 11월 3일 자 기사 참조.

3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196쪽.

354)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93쪽.

355) 『동북아 세력균형 구조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부록연표 참조.

3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167~168쪽.

9월 6일 타이완,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9월 6일 **북한, 남포항 벨트컨베이어 준공**

9월 8일 남한, 소련과 관계 개선 희망 표명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살해됨('10.26 사태')

11월 9일 북한 로동신문, 사설 통해 '북과 남의 다방면 합작 실현' 주장

12월 6일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수상, 중국 방문
- 25억 달러 대중국 차관 공여계획에 공식 합의

12월 8일 **북한, 「수산자원 보호증식 및 단속에 관한 규정」(정무원 결정 제109호)**[357]

12월 12일 남한, 12.12 쿠데타

357) 1976년 10월 24일 주석명령 7호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 데 대하여」의 후속 조치임.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1980년대

개 관

짧은 대화기와 긴 반목으로 1970년대를 마감한 남북한은 각각 어려운 국면에서 상황을 맞았다. 북한은 1979년 1월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외채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 세습이란 과제를 앞두고 있었다. 남한은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0.26 사태') 및 군부에 의한 쿠데타인 '12.12 사태'로 매우 긴장되고 혼란한 상황 속에 1980년대를 맞았다.

북한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을 공식화하는 한편, 1960년에 제기한 연방제를 좀 더 발전시켜 '고려연방제' 및 이를 위한 「10대 시정방침」을 발표해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더욱이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은 랑군 폭탄테러(1983.10) 등으로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와 5.18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정권은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된 여건 마련과 취약한 정통성 보완을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1981. 1),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발표(1982. 1) 및 이에 따른 '20개항 평화통일시범실천사업' 제의 등 남북 관계의 진전 및 통일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기회는 1984년 9월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청권 일원에 큰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찾아왔다. 동년 9월 4일 북측 적십자회가 남측에 수해물자 제공을 제의한 데 대해 열흘 뒤인 9월 14일 우리측이 북측 제의를 수락하며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한 것이다. 이로써 동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 톤 및 기타 의약품이 남측으로 전달됐다.

북한의 수재 구호물자 제의는 남북 해양수산 협력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구호물자는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동해항) 등 크게 세 경로로 남측에 전달됐다. 해상을 통해 북측 선박에 의해 수송된 북측 화물은 북방한계선상에서 우리측 호송선단과 상봉하여 인계되었으며, 이는 분단 34년만에 이뤄진 최초의 남북간 물자교류로 기록된다. 동년 9월 30일에는 시멘트를 실은 장산호가 북한 선박으로는 최초로 인천항 제4부두에 접안하기도 했다.

더욱이 남측은 수재물자 수송이 끝난 직후인 1984년 10월 12일 북한 최영림 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 경제협력 기구 설치를 논의하는 틀로서 남북 경제회담을 역제의했다. 나흘 뒤 북한 정무원 부총리는 이같은 남측 제의에 호응하고 나옴으로써 남북 분단사에 '제2의 남북 대화기'가 열렸다.

제1차 남북경제회담은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렸으며, 이 때 남측은 북한

으로부터 명태 반입을 희망하는 한편,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남북 공동의 새 어장 공동개발 및 이용 등 일련의 수산협력 사업을 제의했다. 또한 교류물자 수송과 관련해 북측의 남포항 및 원산항, 남측의 인천항 및 포항항을 이용할 것도 동시에 제의했다.

이후 남북경제회담은 1985년 11월의 마지막 회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1990년대에 전개될 남북 해양수산 협력 논의의 기반을 제공했다. 먼저 남북경제회담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상호 교류희망 품목들을 제시했다. 남측은 무연탄, 철광석, 선철 등 지하자원 외에 누에고치 명태 등을 포함한 농수산물을 제시했다. 북측은 남측으로부터 구입희망 품목으로 철강재, 중석광, 나프타 등 공업제품과 남해 어족 및 소금, 감귤 등 농수산물을 제시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남북은 모두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이용,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등의 동의했다. 1985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경제회담에서 남측은 교류물자 수송을 위해 경의선 철도 연결과 인천항·포항항 및 남포항·원산항의 상호 개방을 제의했다.

이와 같은 회담이 개최되는 사이, 남북한의 특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기도 했다. 또한 재개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가 협의됨으로써 1985년 9월 20일에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방북 인사에 민간인이 포함된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실현되기도 했다. 제2의 남북대화기는 1986년 1월 북측이 제기한 남측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주장을 우리측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끝났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긴장된 냉전 체제에 이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의 강제 불시착 사건은 기체 반환과 승객 송환을 위한 한중 당국간 교섭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냉전 이후 한중간 최초의 외교교섭 계기가 됐다. 1985년 3월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 이후 미소간 중거리핵전력 철폐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으로 신데탕트 시대가 열렸으며, 동북아에서 중소 분쟁이 완화될 조짐이 보였다.

198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난이 완연해지는 가운데 남한 주도에 의해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1988년 7월 7일 한국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 교역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7.7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대담한 조치를 통해 1970년대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현대종합상사가 북한산 무시조개 40kg을 반입하고, 1989년 2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980년 북한 제6차 당대회 / 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 북한 김정일 후계 공식화

1월 11일 북한, 남북정치협상회의와 남북당국자회담(총리회담) 제의
- 북한 당비서·부주석 겸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김 일 및 정무원 총리 이종옥 명의의 대남 편지 형식

1월 24일 남한,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의
- 신현확 총리 대북 서한 형식
- 판문점 내 자유의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를 접촉장소로 제의[358]

1월 26일 서해상에서 해왕 6, 7호 납북(북한 평양방송 보도)
- 해왕 6.7호는 동년 11월 송환됨

1월 27일 북한, 1만4천t급 컨테이너선(짐배) 관모봉호 진수(청진조선소)

2월 6일 남북 총리회담 위한 실무접촉 시작
- 남측 대표단: 김영주(수석대표), 정종식, 이동복
- 북측 대표단: 현준극(수석대표), 백준혁, 임춘길[359]

2월 18일 북한 선봉항 확장공사를 위한 궐기모임
- 6.2항만건설사업소에서 개최

3월 2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전국수산일군대회 소집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연설
-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 노선으로 제시

4월 1일 소련, 나진항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여 아태 지역으로의 주요 수송기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공개[360]

4월 11일 중국, 중소 우호동맹상호협력조약 폐기(시효 만료)

5월 5일 북·일, 제3차 조일어업잠정합의 체결
- 조약 유효기간 2년. 1982년 6월 30일부로 실효

5월 18일 한국, 광주민주화 항쟁

5월 29일 북한, 1만4천t급 화물선 염분진호 진수(청진조선소)

7월 2일 북한 김일성 주석, 미림갑문 준공식 현지방문

7월 14일 북한, 2만t급 대형 화물선(짐배) 장자산청년호 진수

---

358) 북측은 1월 29일 정무원 총리 이종옥 명의로 남측 제의를 수락.

359)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I), 1990(증보판), 216~217쪽.

360) 『동북아 세력균형 구조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979의 부록II(한반도 주변정세 사건표II) 참조.

7월 18일 **북한 김일성 주석, 미국 스티븐 솔라즈 하원의원(민주당) 접견**
- 김일성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위한 북미간 협상을 제의
- 동시에 "필요시 남한 당국자의 옵서버 자격 참가도 고려 가능" 발언[361]

7월 21일 **북·소, 조소상호공급 및 지불에 관한 정부간협정 체결(무역량 증대에 합의)**

8월 1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해운법 채택**
- 북한 국적선의 인공기 게양 의무화 및 외국 국적선의 경우도 관리운영의 위탁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가 북한에 있고 북한 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 인공기 게양(제33조)

8월 **북한, 대형 기중기선 제조(남포조선소)**

9월 5일 **소련, 억류 중이던 한국 어선과 어부 석방**

9월 16일 **신현확 부총리,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금리 2% 인하, 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 달러당 수출금융 지원단가 15원 인상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 10.26 사태 이후 물가 상승, 국제수지 악화, 성장 둔화의 '3중고'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362]

9월 22일 **북한, 1만4천t급 절임가공모선 룡남산호 진수(원산조선소)**

9월 28일 **북한, 1만4천t급 컨테이너선(짐배) 베개봉호 진수(청진조선소)**

10월 1일 **소련 프라우다 지, 대북 수산업 분야 기술지원과 협력 강화 사실 보도[363]**

10월 10~14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 후계자 공식 등장
- 당 규약 개정,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전환하고 정치국 안에 상무위원회 설치
- 김정일은,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됨
- **사회주의 10대 전망목표 제시(명태 250만 톤 포함 500만 톤 수산물 고지)**

10월 10일 **북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및 '10대 시정방침' 제의**
- 제3항에, 남과 북의 경제적 합작, 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등 명시[364]

12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1981년을 '수산물 가공의 해'로 규정**
- 김일성, **양화수산사업소 현지지도**

---

361) "김일성-솔라즈 첫 대화록 공개," 연합뉴스, 2001. 8. 31.

362) 남덕우,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2009, 248~249쪽 참조.

363) "대북과 협력강화 소, 수산기술 지원," 경향신문, 1980년 10월 3일 자. 북한 최대 어항인 동해안 신포시를 방문한 프라우다 평양 특파원의 현지 보도 형식. 북한의 제6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 주민 표정을 전하면서 북한 수산업 현황 보도.

364)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I), 227쪽.

1981년 365) 북한, 누적 채무로 무역 위축 / 남한, 남북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

1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를 통해 수산물 생산 목표를 5백만 톤으로 제시[366]

1월 10~14일 북한 리종옥 총리, 중국 방문(자오쯔양 총리와 회담)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1.21 제의')**

3월 1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중앙인민위·정무원 연합회의에서 "물고기 어획 2백만 톤" 목표 제시

4월 1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선양에서 덩샤오핑과 회담
- 이 무렵 덩샤오핑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실권 장악

4월 24일 북한, 신포수산연합기업소를 **원양어업총국으로 변경**

5월 1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수산양어 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연설**
- 양어생산량 증대 지시

5월 22일 북한 김일성 주석, 남포갑문건설관계일군협의회에서 남포갑문 건설 독려
- 공업용수 및 먹는물 문제 해결, 남포항과 송림항의 항 능력 향상 언급
- 1984년 5월까지 3년 안에 공사 완료할 것을 지시
- 남포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갑문 밖으로 이전할 계획수립 지시[367]

6월 4일 **북한 김일성 주석, 「천해양식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연설(동해지구 수산부문)**
- 다시마, 미역, 조개, 해삼 양식 강조("많이 양식하면 인민들 식생활 윤택...건강 증진...외화를 많이 벌 수 있어..")[368]
- "3-4년 안에 다시마와 미역 양식장을 1만 정보 조성하고 100톤 생산"
- 아울러 당 차원(당 중앙위 제2경제사업부 담당 비서)에서 동해안 천해양식면적 조사 지시

---

365) 이 무렵 국내에서는 연근해 어장의 경쟁적 이용과 이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의 심화 등이 우려됨. **"연근해어업의 개선방향" 매일경제, 1981년 11월 3일 자 기사.**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수산정책협의회(1981. 11. 3) 회의석상에서 주우일 농경련 수산개발연구실장의 발언(수산 발전의 정체 현상 지적. 주요 원인으로 오일쇼크, 2백해리 경제수역 설정 여파 등).

366) **"수산업은 제2 식량산업," 경향신문, 1991. 8. 26.** 이 기사는 1988년 FAO 발표를 인용해, 1986년 북한의 수산물 총생산량이 1백70만 톤으로 세계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 북한 당국의 수산물 생산 장려의 주요 동기로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 및 외화벌이 두 가지를 들고 있음. 이 무렵 통일원이 발간한 『북한개요』는 북한 수산업의 낙후성을 지적하며, 그 단적인 예로 1990년 5월 일본 어선이 북한 선적으로 위장,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소련측에 나포됐던 사건을 들고 있다고 보도.

367) 김일성, 「남포갑문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1993, 231~232쪽 참조.

368) 이상 김일성, 「천해양식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1993. 339~356 쪽.

6월 5일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재론)

6월 11일 **북한, 남한의 제1공영호 납치**

7월 21일 북·소, 상호공급 및 지불에 관한 정부간 협정

7월 29일 **북한 정무원, 담수양어사업 관련 결정 제99호 채택**

8월 12일 **북한 정무원 결정 제41호(바다가 양식의 새로운 전환)**

9월 30일 독일 휴양지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에서 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 선정

10월 5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간석지 개간과 새땅 찾기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자' 결의

11월 12일 북측에 억류 중이던 제6,7 해광호 선체 및 선원 23명 귀환(사망선원 유해 1척 미인도)

12월 20~24일 중국 자오쯔양 총리, 당정 대표단 인솔 방북

* 북·중: 「조중경제협력협약」 기간(1977-1981) 만료로 협약 실효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369]/ 북중 관계 밀착 / 중국어선 서해 진출

1월 22일 **전두환 정부,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 천명**

- 주요 내용: 호혜평등 상호관계, 대화협상 통한 분쟁해결, 상대방 상호인정 및 내정불간섭, 휴전체제 유지, 상호교류협력 통한 사회개방 추진, 통일까지 각기 체결한 국제조약·협정존중, 서울·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2월 1일 손재식 통일원장관, **20개항 평화통일시범실천사업** 제의 발표

- 주요 제의내용: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인천항 및 진남포항 개항**,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9항)**, 설악·금강산 자유 관광 등[370]

2월 10일 북한 조평통, 20개항 시범사업 거부 및 남북정치인 1백인연합회의 소집 제의

2월 1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통해 물고기 양륙 시설 및 가공 시설의 부족 지적

- 아울러 '물고기 180만 톤 생산' 독려
- **서해와 관련해서는 '서해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잡고 있다' 한탄(주인다운 태도가 없다고 질타)**

3월 31일 **북한 김정일 비서, 「주체 사상에 대하여」 발표**

4월 4일 북한, 과거 정무원 소속이던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를 조선로동당 비서국 산하로 옮김

-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를 김정일의 직접 통제 하에 놓기 위한 조치

4월 6일 북한 김일성 주석, 정무원 제1차 전원회의에서 대외 무역, **냉동수산물 수출, 외화벌이 강조**[371]

4월 14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쌀은 곧 공산주의"** 언급[372]

4월 17일 **한국, 동해 조업자제선 설정**

4월 27일 북한 정무원,**「대합조개잡이를 금지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26호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정무원 결정 제39호) 채택**

- **평안남도 온천군 종계장(80정보) 설립, 함경남도 금야군 산란장 관리**[373]

---

369) UNCLOS의 성립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2011, 2장 참조.

370) 김형기, 105~106쪽 및 정출조, 『20개대북시범사업세부실천방안』, 국토통일원, 1982 참조

371) 「정무원 사업방향에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6).

372)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6), 66쪽.

4월 26~30일 중국 덩샤오핑[374], 후야오방 총서기와 함께 비공식 북한 방문[375]
- 동년 9월, 김일성의 중국 방문 기간 김일성에 의해 확인됨

4월 **남한, 내무·국방·농림·교통 4부 합동부령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정**
- **북한의 남한 어선 나포 사건에 대한 대응임**

6월 북·일 어업협상 결렬되어 조일어업잠정협정 실효

6월 25일 일본 일조어업협회, 북한에 대해 북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에 대해 30일까지 철수 지시[376]

7월~12월 북한, **청진동항** 방조제 보수 작업[377]

7월 23일 북한 김정일 비서, '80년대 속도' 창조운동 지시
- 1980년대 전망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전에 군중 동원

9월 15~2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방문**
- 중국, 김정일 권력 승계 인정(후야오방은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업무수행" 찬양)[378]
- 북한이 서방세계에 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신규차관 1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
- 김일성, 후야오방과 함께 섬서성 시안 방문(9월 23일)
- **북한, 중국·일본 3국간 청진항 이용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379]
- **중국 대외해운공사와 북한 대외해운공사 사이에 철도, 창고, 항만시설 이용협정**

9월 중국 공산당, 12차 당대회(12전대)를 통해 덩샤오핑 중심 실용주의 체제 확립

10월 28일 북·중, 「조중장기경제협력협정」 체결
- 기간: 1982~1986년. 교역량 확대 및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량 확대에 합의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12월 10일 **북한,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 북한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음. * 남한은 1983년 3월 14일 서명**
-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정(이전까지는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각자 폭을 정함)
-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 350마일 대륙붕, 심해해저자원의 이용 레짐 확정 등

---

373) 『국토관리사업의 위대한 변혁』, 1992, 175쪽.

374) 1982년 덩샤오핑은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으로 물러앉았으나 1983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라 실권을 장악.

3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210쪽;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쌍변관계")

376) "북한 경제수역서 일 어선 철수지시 어협기한 끝나," 동아일보, 1982. 6. 26.

377)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171쪽.

378) 이홍구 외, 『북한과 오늘의 세계』, 1987, 85쪽.

379) 오용석,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전략」, 83쪽 이하에 보임. 배경은 대련항의 포화상태 극복 및 중국의 대일무역 촉진 등이 지적됨.

1983년 북한 랑군 테러/ 한·중 첫 비공식접촉

2월 1일 북한,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해 전군 준전시 상태 돌입

3월 14일 남한,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5월 7~10일 중국 민항기, 한국 영내 불시착

- 대한민국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 최초 공식 외교 교섭 전개
- 션 투(중국 민항국 사무총장) 서울 방문, 협상 끝에 5월 10일 중국민항기 상하이 회항
- 동 사건은 이후 한중 접촉 및 교류(특히 스포츠 교류)의 계기가 됨

6월 1일 북한 김정일 비서, 비공식 중국 방문(~6. 12)

- 방중 기간, 김정일은 덩샤오핑, 자오쯔양 등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회견. 후야오방과 4차례 회담
- 베이징, 칭다오, 난징 등을 여행 후 다시 베이징을 방문, 자오쯔양·완리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남
- 김정일 방중은 오진우(인민무력부장)가 수행

6월 29일 이범석 외무장관, 6.23선언 10주년 기념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북방 정책' 용어 사용

-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 제하의 특강을 통해 "향후 우리 외교가 풀어나가야 할 최대 과제는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북방정책의 실현"이라고 발언[380]

7월 일본 자민당 구노 주지 의원 및 사회당 요네다 도코(米田東吾)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단, 평양 방문

- 방문 목적: 실효된 조일어업협정을 대치할 새 어업협정 교섭

7월 북·중, 청진-길림-흑룡강성 사이 화물운송 협정 체결[381]

- 중국측 해외무역운송협회 부주임 우빙쯔, 북한측 해외운송협회 부회장 손기평이 협정에 서명

8월 14일 국립수산진흥원 관계자, 한국 관리로는 최초로 중국 방문

- 중국 장수성 무석에서 열리는 UNDP 및 FAO 공동 주최 농업 관계 세미나 참석[382]

8월 19일 북한 김일성 주석,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 전선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에서, 청진시와 나진시의 개방 및 국제도시화 노력 촉구

380) 『한국외교 40년』, 외무부, 1990, 197쪽.

381) 오용석,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전략」, 83쪽 이하.

382) "한국 관리 첫 중공 방문," 동아일보, 1983. 9. 1 및 『한국 외교 40년』, 209쪽 참조.

- 이 연설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청진항**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과 무역 거래를 하기 때문에 청진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밝힘[383]

9월 1일 **소련 전투기,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007기 격추(KAL기 격추사건)**

9월 1일 **중국, 해양어업 발전의 일부 문제에 대한 보고**

- **황·발해 등에서 과도한 어획으로 경제성 어류의 고갈 현상 및 대책**[384]

10월 9일 **북한, 미얀마 랑군 폭탄테러**

- 중국은 북한 소행에 불쾌감 표시

11월 1일 **북한, 일본 후지산마루 18호 나포**

- 북한 병사 한명이 남포항을 떠나는 화물선 한 척에 숨었다가 일본 기항 즉시 망명 요구. 이 병사의 즉시 송환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자 남포항에 정박해 있던 후지산마루와 승무원을 나포

11월 4일 **미얀마, 랑군 폭탄테러 사건으로 북한과 단교**

11월 6일 **중국, 랑군 테러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경고**

11월 11일 **북한 김정일 비서, 밥조개(가리비) 및 전복 양식 연구사업 강화 지시**

- 함북 **나진만, 낙산만, 노창만** 및 함남 **흥원군, 낙원군** 등의 앞바다 자연밥조개어장을 특별보호구로 정하고 밥조개를 일정기간 잡지 못하도록 지시

11월 29~12월 1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 전원회의

- 1984년 과제로 **순천지구, 청진지구, 함흥지구, 안주지구, 남포지구** 등을 **'5개 전선'으로 명명**(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385]

12월 16일 **북한, 일본 후지산마루호에 대해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 조사 중이라고 발표**

* 북·중: 1983년 중국, **청진항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획득. 아울러 청진항과 중국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두만강 횡단철교 건설 착공, 1985년 개통

* 북·러:
  - 북한은 **나진항 사용권을 소련에 양도**
  - 소련은 북·소 어업협력에서 '등량주의'를 엄격하게 적용(소련 선박의 북한수역 어획량만큼 북한선박의 소련측 어장 무상입어 허용, 나머지는 시베리아 벌목작업 진척 정도에 맞추어 유상입어 허용량 조정)

* 북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동유럽 등에 수산물 30만 톤 수출[386]

* 소련: 제2시베리아횡단철도(바이칼-아무르간 3,145km) 완공(BAM 철도)

---

383)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6), 284~285쪽 참조.

384) '해양어업 발전의 일부 문제에 대한 보고'(중문 자료) 참조.

385) 이재기·서정익, 『신북한 경제론』, 신론사, 2007, 119쪽.

386) Dzurek, "Deciphering the North Korean-Soviet (Russian)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3-1. 1992. p. 34.

1984년 제2차 남북대화기 / 북·중, 북·소 관계 개선 / 중·소관계 개선 조짐

1월 10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를 통해 3자회담 및 평화협정 논의 제의
- 북·미 평화협정 우선 체결 및 서울 당국의 동등한 자격 참가 인정[387]
- 북·미 사이 평화협정, 남북간 상호불가침 선언 주장
- 이에 대해 한·미는 '4자 회담' 수정 제의
- 1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허 담 보고를 통해 재차 3자회담 수용 촉구
-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 불가침 선언 채택 문제의 토의를 제안[388]

1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남남 협력 및 대외경제관계 사업강화' 강조[389]**
- **"대외경제교류는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주성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것"**
- **2차7개년 계획을 실패책임을 물어 리종옥을 해임하고 대외경제 전문가인 강성산을 신임 총리로 임명[390]**

2월 9일 **소련, 피터대제만을 중심으로 한 직선기선 재천명**

2월 10일 진의종 국무총리, 북한 강성산 총리에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수용 촉구

2월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연설
북한 김정일 비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연설
-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고기배의 현대화, 만능화, 과학적인 어로방법 등 강조**

2월 28일 소련, 과거 배타적어업수역(EFZ) 명칭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변경

2월 북한 김영남 정무원 외교부장, 중국 방문
- 상하이, 선천 경제특구 참관

4월 2일 제1차 남북체육회담

4월 11일 북한 김정일 비서, 남포갑문 현지지도

4월 26일 **북한 김일성 주석, 수산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칠색송어를 대대적으로 기를 데 대하여")**

---

387)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명의 편지, 3자회담 제의」『한반도 평화체제문제 관련 주요 문건집』, 1996, 91~98쪽.

388) 김영철 외, 『현대국제법 연구』, 1988, 172쪽.

389)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6), 303~320쪽 참조.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채택됨.

390) 김상겸,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6~17쪽.

- 칠색송어 외에 은어, 새우, 섭조개, 게, 까나리, 뱀장어 등의 양어 종목을 전반적으로 언급

4월 30일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5월 4~11일 중국 공산당 **후야오방 총서기, 특별열차편으로 방북(양상쿤 동행)**[391]
- 김일성(5일과 6일 2회)과 회담(김정일, 오진우, 허 담, 현준극 배석)[392]
- 후총서기, 대 사회주의권 협력 증진을 북한에 권유
- 김일성, **후야오방의 원산, 함흥, 검덕, 청진 방문** 동행
- 후야오방은 청진을 방문시, **청진**을 북중간 우호의 '새로운 가교'로 지칭[393]

5월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 당 및 국가대표단 인솔해 소련 등 동구권 공식 친선방문
- 특별열차로 청진 출발, 투먼, 무단장, 하얼빈, 만저우리역 통과
- 모스크바에서 김일성-체르넨코 회담("국제활동분야에서의 공동행동" 강조)
- 북한 오진우, 강성산, 김영남 등 수행[394]
- 귀국길에 소련 재차 방문. 이 때 소련 태평양 함대에 **나진, 원산, 남포** 방문 개방

5월 16 ~7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소련 및 동구 방문. 소련과 무역협정에 합의
- 당시 김일성 방문은 23년만의 공식방문임

5월 17일 북한 김정일 비서, 5월24일수출품수산사업소 등 산업 현장 현지지도

5월 30~31일 김일성-(동독) 호네커 정상회담
- 김일성은 회담에서, 동월 방북한 후야오방이 소련과 관계 개선 의사가 있음을 소련 공산당 지도부에 전달해줄 것을 자신에게 요청했다고 밝힘
- 김일성은 또한 후야오방을 1982년 덩샤오핑으로부터 소개받았고 좋은 인상을 가졌다고 회고[395]
- 김일성 연설 중,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공장을 비공식 라인을 통해 사들인 사실 공개(그 후 부품 조달 어려움 겪음- 김일성 이를 위해 동독 반도체 공장 제공받기로 함)
- "1975년 이래 북한은 비동맹 회원이었으나 최근엔 더 이상 아님"을 강조. 남남 협력만으로는 산업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396]

6월 4일 중국 톈안먼(천안문) 사태 발생

---

39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小此木政夫(오코노키 마사오), 『經濟から見た北朝鮮』(일문) 참조.

392) 日中經濟協會, 『中國お 中心に 見る. 國際關係』, 1986(일문), p. 205.

393) 오용석,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전략」(중국 런민르바오 84년 5월 11일 자 인용).

394) 이상 小此木政夫(오코노키 마사오),, 위의 책.

395) Document No. 115, NKIDP, p. 369

396) Charles Armstrong, "Juche and North Korea's Global Aspirations," Working Paper No. 1, NKIDP, September 2009의 부록(「1984년 6월 1일 호네커와 김일성 대화비망록」) 참조.

8월 5~10일 북한 강성산 총리, 중국 방문(자오쯔양 총리와 회담)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 교류' 제의

8월 **소련 태평양 함대 대형 대잠함 및 호위함 2척 등 원산항 입항**[397]

9월 4일 **북한, 합영법 제정**(제8기 최고인민회의)[398]

9월 4일 **북한 조선적십자회, 남한에 수해물자 제공 제의**
-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 등

9월 14일 **남한, 북한의 구호물자 제공제의 수락**
- 수재물자 인도 및 인수 관련 실무대표 접촉 제의

9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 통지문
- 대표단 명단: 수석대표-이영덕(부총재), 조철화(사무총장), 송영대(재해구호협의위원), 최은범(구호봉사부장), 이준희(사회사업 자문위원)

9월 18일 일본 사회당 이시바시 마사시 위원장 방북

9월 29 ~10월 5일 **북한 적십자사 수해지원 물자, 북방한계선 선상 등에서 상봉 인수인계**
-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399]에서 등에서 물자 인수
- 인천항: 장산호, 평화호, 금수산호, 집삼호
- 북평항: 연풍호, 향산호(이상 흥남 출발), 염분진호, 동해호(이상 원산 출발)[400]

10월 12일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북한 최영림 부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 경제협력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 협의를 위한 경제회담 제의**

10월 15일 북·일, **제4차** 조일어업잠정합의서 서명
- 범칙행위 처리를 위한 양자 기구(조일민간어업공동위) 설치

10월 16일 **북한 최영림 부총리, 경제협력 기구설치를 위한 남북경제회담 개최 제의에 호응**

10월 17일 북·소 외상 회담(김영남-그로미코)

10월 **미 스탠포드대 존 윌슨 루이스 교수, 베이징의 한 학술회의에서 동해안 남북경협 제기**[401]

11월 12~27일 소련 외무부 제1차관 **미하일 카피차, 평양 방문(국경조약 교섭 목적)**
- 국경 문제와 관련된 실질 협의는 11월 19일 종료

---

397) 자세한 내용은 日中經濟協會, 1986(일문), p. 201.

398) 일부 문헌은 9월 8일로 나와 있으나, 북한 당국은 9월 4일로 표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

399) 북평항은 동해항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름. 1983년 동해지구 제1단계 항만 건설공사 준공.

400) 『사진으로 보는 남북교류 20년: 서울사람 평양사람』, 조선일보사, 1989년 신년호 별책부록.

401) J. W. Lewis, 1986, p. 37.

- 카피차는 11월 23일 김정일 회견
- 미그 23기 북한 제공, 그 대가로 남포항 제공 및 북한 영공 개방[402]

11월 15일 **제1차 남북경제회담(판문점)[403]**

- 회담 대표: 남측 수석대표 김기환[404], 북측 이성록 단장
- **남측, 북한으로부터 명태 반입 희망,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등 공동어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제의와 함께 공통안으로 제시[405]**
- **북측,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더불어, 새 어장의 공동개발이용 및 수산합영회사 설립운영 제의[406]**
- 북측, 교류 물자 수송 관련해 **남포항-원산항 및 인천항-포항항** 이용 제의

11월 20일 남북 적십자사 제8차 본회담 예비접촉

11월 23일 DMZ 총격 사건(남북 대화 일시 중단)

11월 23일 소련 외무성 부상 북한 방문, 김정일 면담

11월 26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비공식 방문(~11. 28.)

- **덩샤오핑, 후야오방, 천윈, 펑전, 덩링차오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
- **김일성, '피로써 맺어진 조중 전통적인 친선' 강조[407]**

12월 10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수산물 생산 확대 강조**

- **"큰 투자를 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먹일 수 있는 부식물은 수산물밖에 없다" 재확인**

* 중국: 북한에 4억 달러 규모 차관 추가 제공

* 중국: 투먼-청진-동해를 잇는 '소대륙교' 운수선 운영

---

402)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6, 81쪽. 저자는 198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북한의 대소 접근에 대해 당시 진행 중이던 대한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일정한 견제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

403)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 이후 1985년 11월 20일까지 5회 개최.

404) 훗날 세종연구소장을 역임.

405) 장창익, 1993, 371 쪽. 남북경제협력위원회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현됨; 『북한경제개관』,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179쪽.

406)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I), 1990, 297~298쪽.

4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204쪽.

1985년[408] 북·소 관계 진전 및 북·소 해양경계협정/ 남북, 첫 이산가족 상봉/ 소련 고르바초프 집권 / 북한 수산물생산량 80년대 최고

1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 통해 조건부 남북 고위급회담 실현용의 시사

1월 17일 북·중,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제공에 관한 협정(베이징)[409]
- 북한 대표는 북한 대외경제위원장 공진태임[410]
-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원유 지원, 경공업 시설 제공 등 약속

1월 22~25일 남북 적십자 회담, 11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재개(제8차 본회담)[411]

3월 23일 중국측 어뢰정, 한국 해상서 실종(사실 발표 후, 송환 요청)
- 3월 28일, 한국측 중국측 어뢰정과 선원 전원을 공해상에서 인도

4월 2일 소련 공산당 국제부 제1부부장 라흐마닌, 북한 김일성(김정일 비서 배석) 주석 회견

4월 3일 소련 공산당 국제부 제1부부장 라흐마닌, 북한 김정일 비서 회견[412]

4월 16~23일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소련 방문, 소련 그로미코 외무장관과 회담
- **공동성명 통해 극동지역 미군의 전쟁준비, 일본의 재무장, 한미일 3각 안보동맹 책동, 미군의 남한 군사점령,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비난**[413]
- 국경선 통과에 관한 조약 및 영사협약 체결[414]

4월 17일 **북·소, 두만강하구의 영해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체결**
- 서명 주체: **북한측 김영남 외교부장, 소련측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무장관**

5월 4~6일 중국 공산당 후야오방 총서기, 비공식 신의주 방문[415]

---

408) 제2차 7개년계획(1978~84)은 실패로 돌아감.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동독 외무성 평가. 이에 따르면, 북한은 1985년을 경제에 있어 부채 청산의 해로 선포. 새 경제계획은 1987년에 가서야 시작될 것으로 동독측은 전망. 동독 외무성,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외교정책위원회를 위한 정보」(1986. 1. 6), 『독일 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276~278쪽. 여기서, 보고는 "동물성 단백질의 수요는 앞으로도 주로 수산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

409)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1987, 84쪽.

410) 1927년생.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북한 정무원 부총리 역임.

411) 국토통일원은 이에 즈음해 남북한 국력을 비교한 경제현황 분석 발표. "남북한 국력 비교(상) 경제력" 매일경제, 1985년 1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 실적에서 한국 총어획량은 2백79만3천 톤, 북한 2백7만 톤. 따라서 이 때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어획량은 비슷한 수준. 이 외에 각종 차량: 한국 78만5천대, 북한 18만9천대, 항공기: 1백1대, 북한 17대, 외항선: 한국 7백3만 G/T, 북한 62만 G/T 등임.

41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232쪽.

413) 小此木政夫(오코노키 마사오), 200쪽.

4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233쪽. 여기서 영해경계협정 체결 사실은 적시하지 않음.

4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211쪽.

5월 17일 **제2차 남북경제회담**
- **남측은 공동어로 구역설정,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합의서에 명시하자고 주장**
- **북측은 이에 대해 자연자원의 공동이용부터 시작하자는 입장**[416]
- **경의선 철도연결 제의(1개월 이내 철도 실무자 접촉 포함)**

6월 북한 조선로동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겸 대외문화협회장 김우종 일본 방문, 일본 수산성 차장 접촉
- 당시 북한 EEZ 내 조업 일본 어선은 1천8백 척에 이름[417]

6월 20일 **제3차 남북경제회담**
- 장소: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
- 남측,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 제의

7월 15일 남한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교환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7월 23일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제1차 예비 접촉
- 예비 접촉대표: 남측 권정달 수석대표, 북측 전금철 단장

7월 30일 북한 정무원 부총리 정준기, 담화를 통해 88서울올림픽 공동주최 주장

8월 7일 북·소, 조소국경통과조약 및 영사조약 비준서 교환(평양)

8월 13일 소련 제1부총리 말리예프 평양 방문
- 이와 동시에 소련 전함 3척 원산항 기항
- 태평양함대 소속 대형 대잠함 및 호위함 2척으로 구성

8월 24일 중국 군용항공기 칭다오 동남해역에서 훈련 중 항로 이탈로 전라북도에 불시착
- 8월 30일, 중국측 이와 같은 사실 공개 후 한국 정부에 기체 및 승무원 송환 요구

9월 4일 **북한 허 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한시해 부부장 등 일행 5명 서울 방문, 전두환 대통령 면담**
- 남측 안기부장 장세동, 안기부장 특보 박철언 등과 서울 쉐라톤 호텔에서 비밀 접촉
- 전두환 대통령은 9월 5일 경기도 시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별장에서 이들을 접견

9월 11일 소련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 평양 방문

---

416) 『북한경제 개관』, 국토통일원, 1989, 180~181쪽 표('남북경제회담에서의 쌍방주장 비교') 참조.

417) 동아일보, 1985. 6. 19. 보도 내용 참조.

9월 16일 **일본 가와가츠 남해전철회장과 조선 아시아무역촉진회 회장간 기술제휴 및 합작사업 비망록 교환**

- 1984년 북한의 합영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북한 노력의 일환
- 정어리, 명태의 대량가공 기술, 전복·해삼·송어 등 근해양식기술 제공
- 일본측이 어선, 어구, 연료, 기술자 보장, 북측이 어장, 노동력, 기타 자재 공급
- 북한 동서해에서 어획한 도미, 게, 북어, 광어 등 어류, 다시마양식 분야
- 대일본 수출 합작회사 조직운영[418]

9월 18일 **제4차 남북경제회담**

- 장소: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
- 남북 경제협력 기구(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합의에 합의 (단 실현되지는 못함)
- 희망 교류품목: **남측, 남해 수산물의 판매. 북측, 명태 판매**

9월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 실현

- 지학순 주교, 홍성철 전 내무장관 등 분단 역사상 민간인 최초 방북

9월 25일 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

- 접촉 대표: 남측 박준규 수석대표, 북측 전금철 단장

10월 2일 북·소, 조소경제과학기술협정 의정서 체결

10월 6일 북한, 제2 계영호를 백령도 서해상에서 나포(선원 12명)

10월 15일 남한 장세동 안기부장과 박철언 특사 등 일행 5명 평양 방문, 김일성 주석 면담(10월 16일)[419]

- 10월 18일 계영호 송환 결정 발표(당시 남북최고위급회담 협상실무 박철언 극비방북)

11월 19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연설을 통해 **연합기업소 조직 취지를 설명**[420]

11월 20일 **제5차 남북경제회담**

- 제4차 회담에서 합의된 대체토론 9개항 중 각 3항에 대한 양측 입장 설명

12월 2일 북·소, 조소경제수역및대륙붕 경계조약 가조인(평양)

12월 12일 북한, 소련의 종용으로 NPT 가입(핵 개발 포기 유도 목적)

12월 24일 북·소, 조소무역경제협조발전의정서 조인(모스크바)[421]

- 1986~1990년 기간, 양자 무역량 확대 합의

---

418) 배정호, 1998, 11쪽. 이 비망록을 근거로 작성한 자세한 표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1992), 102 쪽; 다마키 시토이, 61쪽.

419) 일부 자료는 10월 17일로 표기.

420)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6) 참조.

4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 234쪽.

12월 26일 **북·소, 「조소경제및기술협조에관한 협정」 및 「조소원자력발전소건설경제기술적협조협정」 체결**

-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를 대표로 함
- 이 때 소련은 북한에 미그23을 26대 공여키로 결정
- 2개 협정(1986~90년 사이 경제기술협력 내용 규정: 북한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422], 북한 서해안 대륙붕 대상 석유가스 매장량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

* 북한: 1985년 어획고는 242만 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423]

* 북·소
  - 바다 성게잡이 전문 합작회사(나호트카와 함흥시 소재 수산물가공공장 협력) 존재[424]
  - 북·소 수산협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오호츠크해 등에서 조업할 소련 어선을 북한에서 건조할 것을 새로이 합의[425]
  - 1985년 10월, 모스크바 방송은 북한의 청진, 나진 항 등이 소련 어선들의 어로작업을 위한 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항구들에서는 소련을 위해 여러 가지 형의 보조선과 어선들이 건조되고 있다고 보도[426]

* 북한: 청진항 확장공사 완료(대형냉장운반선 및 작업선 접안 가능)

4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II)는 원자력발전소 협력 사실만 언급. NPT 관련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423) 한국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1993 참조.

424) 나탈리아 바자노바, 166쪽.

425) "소, 북한서 어선건조," 동아일보, 1985년 12월 27일 자(모스크바 방송 인용 보도). 이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합의는 '최근의 86년도 어업협조의정서의 조인(모스크바)'에 의한 것으로, 이 밖에 소련의 보조선, 기술선, 견인선 등도 북한에서 건조키로 합의.

426) "소, 북한서 어선건조," 동아일보, 1985년 12월 27일 자.

1986년 북한, 일본측에 입어료 요구 / 북·소, EEZ및대륙붕협정

1월 12일 중국, 북한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주장 지지 성명

1월 20일 중국 어업법 채택[427]

1월 22일 **북·소, 「조소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서명**
- 서명 대표: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소련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 (당시 소련 외무장관으로는 최초 북한 방문)**
- **협정 비준서는 동년 5월 7일 교환**
- 아울러 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북측 주장에 동조
- 북한이 이 협정에 동의한 중요한 이유는 대륙붕 매장 자원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되어 있음

2월 5~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합영회사를 조직해 앞선 기술 받아들일 것' 강조[428]
- 정어리 110만 톤 어획 목표를 제시하며, 정어리 가공시설의 문제점 지적[429]

2월 2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총련 부의장 전연식과 그의 동생 전진식에 "재일조선인 실업가에 의한 합영회사의 추진 요청"(2.28 교시)[430]
-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동년 8월, 북한과 조총련이 각각 60만 달러씩 출자해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함

3월 **북한, 원산 앞바다 비단섬 일대에 대규모 천해양식장 조성**
- **양식기술 습득을 위한 시범단지로 운영**[431]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환경보호법」 채택
- 핵무기, 화학무기 개발·시험·사용금지 원칙 천명(제7조)
-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등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정류의 지정 기관(내각)을 규정(제11조)
- 선박의 오염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제27조), 선박으로 인한 오염방지 규정(제28조)

---

427) 원문(영문) 및 자세한 해설은 Guifang Xie, 2005, 참조

428)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금속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6), 여기서 김일성은 "남조선처럼 외자를 끌어들이는 합영은 절대 하지 않을 것" 단언.

429)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원산수산사업소가 김책 앞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부리지 못해 원산수산사업소까지 운반하다 다 썩혀 버린 일을 개탄해 함.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금속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참조. 이 때까지 북한의 **수산물 집하 및 보관이 원활치 못함을 보여줌.**

430) 와다 하루키, 231쪽.

431) 경향신문, 1992. 5. 4. 보도.

4월 10일 북한 김일성 주석,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연설
- 환경보호법 채택의 의의 강조
- **령해와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배들이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고 다니도록 하며, 항과 포구, 갑문, 부두들에서 오염물질 처리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해야 할 것 강조[432]

5월 4일 중국 공산당 후야오방 총서기, 특별 열차편으로 평양방문
- 5월 6일, 김일성과 2차례 회담

5월 6일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가입

5월 18일 북·중, 「조중해양과학기술협력의정서」 체결
- 서명 주체: 북한측 기상수문국, 중국측 국가해양국
- 중국, 북한에 기술과 인원의 훈련 양성 제공 규정

6월 17일 북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미국과 남한에 군사 당국자간 3자회담 제의
- 제의 내용: 인민무력부장(북), 국방부장관(남), 유엔사령관(미) 3자를 주체로 한 회담으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중지 문제 등 의제

6월 23일 북한 정무원 성명,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협상 제의
- 이를 통해 핵무기 불시험, 불생산, 불저장, 불반입 등 실현할 것 주장

7월 4일 소련 태평양함대, 「조소우호협조조약」 체결 25주년 기념 원산항 입항(~7.6.)[433]

7월 27일 소련 공산당 고르바초프 서기장,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통해 새 태평양 전략 발표
- 태평양 연안국 회의 제창 및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가 의사 표시
- 동 연설을 통해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및 대중국 관계 회복의지 표명

7월 일본 삿포로 수산 전문가, 조선동해천해양식연구소 방문[434]

9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1호로 항만법 채택
-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항만건설계획을 세우고 항만을 현대적으로 건설할 것 규정(제9조)
- 외국 선박의 북한 항만 입항시 인공기 게양 규정(제38조)

9월 5일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인민군 병력 경제건설에 투입

9월 8일 북·중, 「1987~1991 주요물품 상호공급에 관한 협정」 체결

---

432) 김일성, 「환경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86. 4. 10),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1993.

433) 『日朝關係: その歷史と現在』, 世界(임시증간본), 1992. 4, p. 198(연표) 등 참조.

434) 2002년 7월 14일 부경대 수산과학대학 남북수산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단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일본 홋카이도 수산연구소 전 소장 長谷川由雄 발표문(국문번역) 참조. 동 발표문은 『북한의 수산업실태와 남북협력 방향』, 2002에 수록.

9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동시가 회담을 개최, 「조중쌍방어민상호월경어업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회담기요」에 서명**

10월 3~6일 중국 리셴녠 국가주석, 북한 방문

10월 22일 북한 김일성 주석, 소련 방문(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의중 확인 목적)

10월 24일 중국 리펑 부총리, 북한 방문

10월 30일 이규효 건설부장관 성명,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계획 중지 촉구

10월 말 동독 호네커 서기장 북한 방문

11월 28일 **이규효 건설부장관 대북방송 서한, 남북 수자원 회담 제의**
- 남북 공유하천 개발이용 문제 협의 해결
- 북한측이 제기하는 문제도 함께 토의
- 대표단 구성: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7명 대표

12월 16일 **북·소, 「1986~1990 상품교역지불협정」 체결**
- 1986~1990년 사이 소형 어선, 자동프로펠러 장치의 강 탱커, 강과 바다 양용 화물선, 청어연어 등 바닷물고기 운송을 위한 거룻배 등을 소련 발주에 의해 북한에서 건조키로 함[435]

* 북·일
- 북한의 대일 채무에 대해 일본측 채권자들이 북한의 채권 회수 10년 유예기간 부여키로 결정함 (1979년 지불 약속의 불이행 불구)
- 북·일간 어업협력 협상 결렬, 조일어업협력잠정합의서 효력 정지(일본, 북한의 명태수입쿼터 증량요구 거절)[436]
- 조총련 공동 출자, 조선국제합영회사 설립
- '개인농'을 주장하는 논문을 썼던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박철, 개인농 도입에 찬성했던 농업부장 겸 부총리 김환, 중앙당 농업담당 비서 서관히 등이 김정일에 의해 비판받고 좌천됨[437]

435) 나탈리아 바자노바, 80~81쪽.

436) 이병기, 1990, 84쪽.

437) 전홍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9쪽.

1987년 북한, 자력갱생간고분투 구호 / 북한, 제3차7개년계획시작 / 북·소 장기어업협정

1월 3일 북한 김일성 주석, 경제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사회주의국들의 개혁개방을 '수정주의'로 비판

1월 10일 북한 정무원 총리 리근모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명의로 대남 서한을 보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 1989. 2. 8. 평화의집에서 첫 예비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열림

1월 16일 북한,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동진27호 나포
- 김만철 사건[438]과 연루되면서 미귀환

3월 11~20일 **북·중, 어업대표단 평양 회의**

3월 **북한 김일성 주석, 정무원책임일군협의회에서 바다가양식 강조**

4월 24일 북한 정문산 정무원대변인, 남북대화 전면 거부 성명 발표

4월 27일 북한, "동진27호 선장과 어로장이 공화국 영해에 침입, 정탐행위한 고용간첩임을 자백" 발표

4월 30일 **남한 수산청 생산국장, 북측에 동진27호 관련 대화제의 성명**
- 북측은 허위자백으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우는 비인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억류 중인 동진호 선원들을 지체없이 송환해줄 것 촉구

4월 **일본 조총련 계열 사업가 전진식, 모란봉합영회사 평양 공장 조업**

5월 21~2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방문
- 중국 자오쯔양 등과 회담

5월 **북·소, 수산 분야 협조에 관한 장기협정(블라디보스톡)**
- **제1차 어업공동위원회(어업 회담)**
- **이후 매년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 **EEZ 내 어획 쿼터 조정, 조업 어선 수 및 공동 어업관련 사업 등 협의[439]**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6.29 선언

7월 1일 중국, 북한 청진에 총영사관 공식 개설

8월 6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남-북-미 3자 외무장관회담 제의
- 군축 등을 의제로 함

438) 1987년 1월, 북한 청진에서 탈출한 김만철 일가가 일본 후쿠이현 미쿠니항에 도착했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 당시 일본에서 조사를 받던 김만철씨가 "따듯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바 있음.

439) 엄선희 외, 2010, 75쪽;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9. 12.

9월 일본 사회당 도이 다카코 위원장 방북
- 어업협정 교섭 재개 등에 합의

9월 14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폭발사건

9월 25일 **북한 김정일 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원조와 시장경제 비판**[440]
- **"자본가들은 ...썩어빠진 부르죠아 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당을 건설해야 하며..."**

10월 북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제31진영호 피격·침몰

11월 9~14일 북한 리근모 정무원 총리, 중국 방문

11월 29일 대한항공 KAL858편(바그다드-서울) 보잉 707 여객기 폭발, 추락('KAL기 폭파사건')
- 미얀마 안다만 해 상공에서 공중폭발(승무원 20명 및 승객 95명 탑승)
-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미국 정부의 테러국가 명단에 오르게 됨
- 이 무렵 중국은 미-남-북 3자 회담을 미국측에 제안, 추진 중

12월 16일 **북·일 제5차「조일어업잠정합의」**
- 유효기간: 1987. 12. 16~1989. 12.31
- 최초로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방식 채택(당초 일소 어업협정에 적용되던 방식)[441]
- 북한으로부터 명태 5만 톤을 해상 구입하는 과거의 잠정조약 조항을 재확인[442]
- 북한, 입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업용 기자재 구입 및 현물 제공하는 형태 요청

* 주로 다시마 가공 설비 요구

* 북·중: 중국 관리가 조중 사이에 황해자원과 관련해 2개의 조약이 존재한다고 보고

* 북·일: 사쿠라그룹(창업자 전진식)이 평양에 **모란봉합영회사** 설립

* 남한: 러시아와 공동어로사업 시작[443]

---

440)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김정일 주요 논문집』, 142~167쪽.

441) 톤당 230달러 수준. Tsuneo Akaha,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Summer 1992, p. 257.

442) Tsuneo Akaha,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Summer 1992, p. 257.

443)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25쪽.

1988년 북한 경제난 지속 및 식량사정 악화 / 남북 최초 수산물 직교역

1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신년사 통해 '인민의 먹는 문제 미해결' 실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정무원 변경 후 경제사업 잘 안됐다" 비판

1월 미국 국무부, 북한을 수출통제법상 테러지원국으로 규정

3월 7~11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8차 전원회의에서, '수출제일주의' '농사제일주의' 강조
- 수산 부문에서는 **'바닷가 양식'** 강조

3월 29일 북·소, 조소문화및과학협조계획서 조인(평양)

3월 **북·소, 평양과 모스크바에 각각 수산대표부 설치**[444]

4월 북한, 신의주 개방
- 중국인의 경우 북한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

5월 8일 이홍구 통일원 장관, 남북한 고위 접촉 진행 중임을 시사

5월 12일 소련 태평양함대(사령관 게니디 알렉산드로비치 호바토프 상장) 원산항 입항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6개항 특별선언」('7.7 선언')**
- 주요 내용: **남북한 교역 문호 개방,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왕래 상호방문, 남북한 교역의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445]

7월 29일 북한 김일철 해군사령관 인솔 해군전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입항

9월 8일 일본 **야스에 료스케**[446] 등 일본 지식인들, 다케시타 총리에 대북 정책 전환 촉구 성명

9월 중국 양상쿤 국가주석[447], 북한 방문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 남북정상회담 및 상호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 합의 제의

---

444) 이병기, 1990, 82~83쪽.

445) 남북 동포간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 자유 남북 왕래,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호방문, 남북간 교역 문호 개방,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의 북한 교역 용인, 남북간 대결외교 종결 및 국제무대 협력, 북한의 미 일 등과의 관계 개선 협조 등 제의를 포함하고 있음. 후속조치를 통해 납월북 문인 작품 해금조치(1988. 7. 19), 납월북 미술음악인 작품 해금 조치(1988. 10. 27), 해외 거주 우리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 보장(1988. 7. 19) 등이 이뤄짐.

446) 1972년부터 16년간 일본의 이와나미 서점에서 발행하는 『세카이』지의 편집장 역임했으며 훗날 이와나미 서점 사장을 역임. 일본 도쿄 도지사를 지낸 미노베 료키치의 특별 비서를 지낸 바 있으며, 수 차례에 걸쳐 김일성을 단독 회견한 바 있음.

447) 양상쿤은 1988년 5월 중국 국가주석에 올라 1993년까지 동 직책 수행.

11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 계획부문책임일군협의회 연설(「국가계획기관들의계획단위를바로정할데대하여」)

- **신포·양화·흥원 수산사업소 등 동해안의 대형 사업소를 연합기업소로 조직**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도수산관리국에서 관리토록 할 것 지시

11월 북한 김영남 정무원 외교부장, 중국 방문

11월 **현대종합상사, 북한산 모시조개 40kg 반입(최초의 수산물 직교역)**[448]

12월 1일 박철언 대통령정책보좌관 방북, 한시해[449] 대표와 만남

* 남북: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한에 북한산 수산물(오징어류) 소량이 반입

* 북·소: **제2차** 조소 어업회담

* 북한 – 1988년 FAO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170만 톤 어획고, 남한은 2백70만 톤 어획고[450]
  – 어획량 30% 감소, 1인당 수산물 공급량 60~70 kg이 연간 35~45 kg으로 감소[451]
  – 서해에서 유전 개발을 위해 11개 공 시추

448)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8쪽.

449)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정무원 외교부 국장(1973. 4), 주 유엔대표부 대사(1974. 10) 역임. 1985년 허 담의 비밀 서울 방문시 수행.

450) Valencia의 발표문 인용해서 Dzurek, 1992, p. 33.

451) 지그프리트 슈라이베, 20쪽.

1989년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 /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 / 북·일 접촉모색

1월 일본 자민당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 대북 관계 개선 의지 표명

1월 11일 **수산청, 명태 등 북한산 수산물 반입을 국내 수급안정을 고려해 허가하고 수입 수산물 판매는 수협이 전담, 창구 일원화 방침 발표**[452]

1월 23일~1월 31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정부 허가로 북한 방문

-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자원 공동개발, 원산 선박수리소 및 철도차량공장 합작 등 3개 사항 의정서 체결[453]

1월 28일 남한 어선 제37, 38태양호가 북한에 피랍

1월 30일 **북한 채희정 합영공업부장**,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 정치, 군사 대치 상황 제거를 통한 기존 긴장상태 해소, △ 모든 남북 분단 영구화 기도의 중단 및 포기 등 2개 기본조건 충족 주장[454]

2월 1일 북한산 무연탄, 남북 교역사상 최초로 직항로 거쳐 인천항 입항[455]

- 반입화물: 효성물산이 수입하는 무연탄괴 2만 톤(파나마 국적 콘치호 운송)
- 남포항 출발, 서해 공해상 경유, 인천항 도착

2월 2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한 방문 귀환 후 북한과 합의 사항 발표

- 주요 내용: **금강산 공동개발, 시베리아 개발 공동 참여**, 합작투자회사 설립

2월 8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위한 1차 예비회담

2월 일본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 시정연설 통해 "대북 관계 개선 노력" 피력

3월 20~21일 **북한 김일성 주석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 연설(「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소금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에서, 양어사업 발전 강조**

- **양어총국을 수산위원회에서 떼어내 정무원 직속으로 변경**
- 염주청년양어장 사례 소개
- 대동강-백련어, 초어, 청천강-은어, 냉수성의 산천어, 칠색송어, 송어, 정장어, 열묵어(열목어) 등의 특성을 일일이 설명[456]

---

452) "북한산 수산물판매 수협서 전담" 한겨레, 1989. 1. 12.

453) 정주영회장 방북을 알선한 사람은 재미교포 박경윤(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 회장으로 알려짐. 재미동포 대북 사업가 김찬구의 증언에 따름. 박경윤 회장은 1992년 금강산국제그룹 설립(홍콩).

454) 경향신문의 '일문일답' 형식 인터뷰("긴장해소돼야 남북경협 가능", 1989. 1. 31). 여기서 '채부장'은 북한이 지난 50년대부터 남북 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제의, 노력해왔다며 특히 김일성이 1972년 천연자원공동개발, 관개사업, 투자, 어장공동 이용, 수산업 공동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 교류를 제안해왔다고 주장.

455) 이하의 내용은 "북한 무연탄 첫 직접 도입," 한겨레, 1989. 2. 1.

456) 경향신문(1992. 5. 4.) 이 기사는 북한이 이 같은 담수 양어사업을 통해 연간 11만6천 톤 정도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3월 25일 문익환 목사 밀입북(~4. 3.)

3월 북한, 러시아 연해주에 천해양식 합작 기업소 설립[457]

5월 11, 13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기능 강화 방침 천명

- 수산 부문에서 칠색송어, 뱀장어, 숭어 등 양어(양식) 사업 강조

6월 23일 정부, 통일행정체계 재조정

-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장관급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 통일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관계 장관회의 상설화

7월 1일 대학생 임수경, 전대협 대표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 동년 6월 30일 평양 도착

7월 13일 재미교포 김찬구(화인통상 대표), 북한(대성무역 제3상사-사장 김호만)과 나진 배수리공장 참관 및 (어선) 선박수리 합영회사 설립 합의[458]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의

11월 2일 북·중 국경협정상 분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459]

11월 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방문(비공식)

- 중국 공산당 장쩌민 총서기는 "한국과 무역확대" 언급
- 11월 6일, 김일성-덩샤오핑 회담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12월 25일 북·일, 제6차 조일어업잠정합의

- 합의 대표: 북한 조일우호친선협회, 일본 일조우호위원회.
- 유효기간: 1990년부터 2년간
- 오징어 채낚기의 입어료 지불(어구 등 현물) 대가로 일본 어선은 북한 해역 입어가 허용됨
- 일본 해조류 가공 기계와 장비 이전

* 북·소: 제3차 조소 어업회담. 소련은 매년 20만 톤 무상 어획량 쿼터 유지[460]

* 북한: 천해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1백6만7천 톤 추정[461]

있다고 보도.

457) 경향신문(1992. 5. 4.) 이 기사는 북한이 천해양식 발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연근해 어로작업에 비해 시설 및 자금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많은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미역 다시마 등 해초에서 요품 및 경공업 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 외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 이 당시 매일경제는 "소(련)와 수산업 공동연구"(1989년 4월 1일 자)를 통해, 북한과 소련이 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일환으로 흑해 지역 수산자원 이용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모스크바방송을 인용해 보도. 북한의 원산수산물연구소 및 동해연구소와 소련의 게르치시 어업연구소 학자들이 공동 참여. 북한 동해에서 재배되는 각종 해초의 흑해 이식 시험 등이 주류라고 소개.

458) 합의서 전문과 상세한 내용은 김찬구, 『아 평양아: 한 재미교포의 16년간 북한사업 체험기』, 비봉출판사, 2005, 107-114 쪽. 자재공급을 책임진 대성측에서 철판을 조달하지 못해 무산됨

459) Dzurek, p. 32.

460) 김찬구, 2005, 17쪽.

461) "군사분계선 남북 공동어로" 경향신문, 1992. 5. 4. 한편 1989년 북한 수산업 현황에 대한 증언은 김찬구, "골뱅이 잡으러 갔다 골병든 이야기," 2009. 2. 3. 참조(당시 동해안 붉은대게의 일본 수출 현황 등 설명).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1990년대

개관

1980년대 후반부터 균열되기 시작한 냉전 체제는 1990년대 들어서자마자 급격한 속도로 붕괴됐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냉전 체제 붕괴의 서곡이었다면 1990년 10월 독일 통일에 이은 1991년 8월 소련공산당 활동의 정지, 동년 12월 독립국가연합의 창설은 냉전 체제 붕괴의 절정이었다. 이와 같은 대외 정세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체제 위기에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존의 길로 나간다.

1990년 1월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195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증산과 절약'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잘 투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정일 또한 1991년 5월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임을 외쳤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불리한 대외 정세와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은 '투쟁'의 내용을 '타협'으로 바꿔놓았으며 북한을 다시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북측은 1988년 정무원 총리 명의로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바 있다. 동년 12월 강영훈 당시 국무총리가 상호비방 중지 등 몇 가지 조건을 걸고 남북 총리회담을 수정제의해 예비회담까지 열린 바 있다. 그 예비회담이 열린지 1년 반만인 1990년 9월 분단사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4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에 걸쳐 개최되며 이후 10년 이상 남북관계를 규율한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의 「부속합의서」를 탄생시켰다. 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짓는 한편,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할 것"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할 것"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의 실시" 등에 합의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시도가 행해졌다. 1991년 삼선해운은 대북 지원용 쌀 5천 톤을 싣고 목포를 출발해 나진항에 입항했다. 1992년 윤옥영 당시 수산청장은 남북간 수산물 직교역 및 남북 공동어로 등이 포함된 '수산진흥정책'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동년 7월에는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했으며, 동년 10월에는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민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평양의 관문항인 남포를 돌아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3년 5월에는 ㈜한성선박이 인천-남포 항로에

첫 취항하고, 다시 1994년 4월에는 삼선해운 소속 세인트 빈센트 국적선 '할리부트'호가 부산에서 한신공영 레미콘 시설 및 기자재를 싣고 청진항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에 접어들면서 화해의 조류는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전환했다. 1990년 9월의 한러 수교, 1992년 8월의 한중 수교 등으로 냉전 시대 양대 동맹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등을 돌리면서 수세에 몰린 북한은 핵개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둘러싸고 갈등이 가열되는 와중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제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6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2차례 회담을 갖고, 김주석으로부터 '핵개발 동결 용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 등을 이끌어내면서 가까스로 진정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가 이뤄지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1995년 발생한 수해와 이로 인한 북한의 기아사태 및 경제난 등은 김영삼 대통령의 제1차 경협활성화 조치(1994. 11)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남북 대화 단절을 초래했다. '파산한' 국가를 물려받은 김정일은 1995년부터 '3년상'이라는 명분과 '유훈통치'라는 구호 아래 대외적인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으며, 19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기까지 3년간 내치 및 권력기반 강화에 주력했다. 북한 김정일은 이듬해 9월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공식 무대에 재등장했다.

때마침 남한에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남북 해양수산 분야에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북 정책 3원칙'을 천명했다. 곧이어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추진,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동년 6월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이에 이은 동년 11월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의 역사적인 장전항 입항 등 협력 사업들이 마침내 실현되기 시작했다.

한편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서해교전)을 계기로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 잠복해 있던 서해 NLL 문제가 좀 더 극적인 형태로 대두되었다. 1999년 9월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 형식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1990년 제3차 남북대화 국면 / 한반도 대외환경 급변 / 북·일 국교 정상화 예비교섭/ 한러 수교 및 어업협정

1월 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증산과 절약' 강조[462]

-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잘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
- "흰 쌀밥에 고기국 먹으며, 기와집을 쓰게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 주장
- 향후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나는 주로 국가사업 전반, 당 사업은 김정일 동지, 경제 사업은 정무원총리"로 역할분담 천명

3월 12일 북한산 반입화물, 중국 통해 인천항 첫 입항

- 1989년 한중 해운정기항로가 개설된 이후 이 항로를 이용한 첫 입항

3월 14일 중국 공산당 장쩌민 총서기 방북

3월 DMZ 부근에서 제4 땅굴 발견

5월 17일 농수축산업과 국제교류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수산물 등 남북교역 방안 토론[463]

5월 21일 북한 어선 12척, 북태평양에서 소련에 의해 나포

- 소련 하천의 산란기 연어 불법 어획 이유[464]

5월 31일 북한,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한반도 평화 군축안 발표

-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 금지 등을 포함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뉨[465]

5월 북한 어선, 소련 수역에서 소련 규칙을 어겨 구류[466]

6월 4일 노태우-고르바초프 정상회담(미국 샌프란시스코)

7월 민간단체 사랑의쌀보내기운동, 비공개로 북한에 쌀 8백 톤 운송

---

462) 1956년 12월 전원회의 때에도 김일성은 '증산과 절약' 강조.

463) 김운근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중앙대 교수 등 참석. 북한의 경제 실태 외에 남북한간 교역의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이 강조됨. 수산 분야에서 남한의 김 미역 굴 멸치 등과 북한의 명태 청어 연어 대구알 대합 등의 교역, 서해안 황해도 옹진까지 김 양식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양식기술 지원의 가능성이 지적됨. "서로 실익 큰 부문부터 차근차근", 한겨레, 1990년 5월 18일 자.

464) Dzurek, p. 34. 이외 Dzurek은 북한여권 소지한 일본 국적 어부 170명이 북한 국적 어선에 승선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이를 북한 원양어업의 낙후성과 연관지어 소개한 것으로는 경향신문 북한부, 1991년 8월 26일 자의 기사 "수산업은 제2 식량산업"이 있음.

465) 남북회담사무국,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통일원, 1995, 58쪽. 해당 부분은 전성훈의 연구 보고서(『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를 인용한 것임.

466) 엄선희 외, 2010, 37쪽.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8월 29일 소련 공산당 활동 정지

9월 2일 소련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북한 방문
- 방북 목적은 한·소 수교에 관한 소련 결정 통보

9월 3일 **북·소, 조소영해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1985)의 시행을 위한 부속의정서 체결**[467]

9월 5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9.6. 서울)**
- 남북한 최초 총리 회담
- 회담 대표: 남측 강영훈 총리, 북측 연형묵 총리
- 9월 5일, 6일 2회 회담.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설치 제의(남측)
- **기타 금강산 등 관광자원 공동개발, 자연자원 공동이용,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수산협력방안**[468]
-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군비통제안 발표(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원칙)[469]

9월 11~13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선양 비밀 방문(중국 지도부와 대책 협의)

9월 24~28일 일본 가네마루, 타나베 자민·사회 합동방문단 북한 방문
- 3당 공동선언 발표
- 가네마루, 김일성과 묘향산에서 단독회견

9월 30일 **한·러 수교. 한·러 어업협정 체결**

10월 3일 **독일 통일**
- 북한 김정일은 같은 날짜로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자 향도자이다"라는 논문 통해, '당의 통일단결' 강조

10월 16~19일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북측은 '북남 불가침에 관한 선언' 초안 제시
- 북측 제기 '3대 긴급과제'에 대해 남측은 '3대 당면과제'의 선해결 주장

* 3대 긴급과제: 유엔 단일의석 가입,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방북 구속자 석방

* 3대 당면과제: 대남혁명노선 포기, 이산가족 고향방문 조속 실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10월 서동권 안기부장 북한 방문

11월 3~4일 1차 북일 국교정상화 예비회담(베이징)

11월 17일 2차 북일 국교 정상화 예비회담(베이징)

---

467) Dzurek, p. 32.

468) "남북 총리 5, 6일 두 차례 회담," 동아일보, 1990. 8. 31. 이 기사에서는 논의키로 했다는 보도.

469) 남북회담사무국,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통일원, 1995. 12.

12월 15~17일 3차 북·일 국교 정상화 예비회담

12월 30일 **북한 정무원 수산위원회 위원장 최복연, 황해도에서 실종된 북한 어선 1척에 대해 남측에 귀환 요청**

12월 일본, 북한의 평양다시마종합가공공장 현지 기술지도

* 북·일: 일본인 170명이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북한 국적 어선에서 작업(FEER 보도)

* 북·러: 제4차 북·러 어업회담

1991년 북한 대외무역 강조/ 북·소 관계 악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 한·러 어업협력 시동

1월 10~21일 한·러 어업위원회 제1차 회의(서울)

1월 30~31일 북·일 국교정상화 1차 회담(평양)

2월 5일 한·중합작수산회사 소속 남해006호, 선원 18명과 함께 피랍

2월 북·소 어업협상에서 소련측, 북한에 무상 어획할당 중지[470]

3월 11~12일 북·일 국교 정상화 2차 회담(도쿄)

3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 장성으로 임명

5월 5일 북한 김정일 비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발표[471]

5월 16일 중·소 동부국경 협정 체결
- 이중 두만강 하구 17km 상류의 북·중·소 3국 교차점 이북 5.5km 분쟁 지역도 타결함[472]

5월 20~22일 북·일 국교 정상화 3차 회담(베이징)
- 북한, 일본에 '선 수교, 후 배상'안 제시

5월 중국 리펑 총리, 북한 방문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논의[473]

6월 17일 중국 첸치천 외교부장 북한 방문
- 방문 주요 목적: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문제 후속 논의[474]

6월 북한 한시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 미국 워싱턴 방문

6월 북한 로동신문, 남한 청년, 학생, 시민에 "노태우 파쇼정권의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선동

7월 27일 삼선해운 제3국 수송선 콘돌호(6천3백 톤), 대북 지원용 쌀 5천 톤을 싣고 목포 삼학도 부두를 출발, 나진항에 수송[475]

---

470) 『북한의 수산업실태와 남북협력 방향』, 23쪽.

471) 『김정일 주요 논문집』, 210~252쪽.

472) 사후 러시아측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의 협정으로 당초 러시아령이었던 영토 약 360~370ha가 아무런 보상 없이 중국령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함.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성종환 옮김),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동북아역사재단, 2010, 220쪽 참조.

473) 중국 전 외교부장 첸지천의 회고록 『外交十記』, 2003을 참조.

474) 錢其琛,『外交十記』, 2003 참조

475) 김봉규, 『분단 한국』, 눈빛, 2011, 33쪽 및 관련 보도 참조.

8월 5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 같은 날, 한국 정부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

8월 31~9월 2일
북·일 국교정상화 4차 회담(베이징)

9월 16일 통일원,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3단계 방안 발표

9월 16일 한·러 수교 및 한러어업협정 체결(15개조)
- 한국 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
- 어류 가공 분야 합작 및 어선 건조수리 쌍무협력 등 명시
- 이 협정 체결 결과, 동년 12월 한국 어선이 오호츠크해 러시아 EEZ로 출어 9월[476]

9월 17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10월 4일 북한 김일성 주석, 중국 방문(~10. 13)
- 김일성-덩샤오핑 회담 * 중국 참전 41주년

10월 23일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합의.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10. 24. 평양).
- 단일 문건으로 「남북사이 화해와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채택키로 합의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1월 18~20일 북·일 국교정상화 5차 회담(베이징). 북한, 전후 45년간 피해문제 거론하지 않음

11월 23,26일 북한 김일성 주석,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 연설(「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 동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 없어져 무역을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할 수 없게 됐다"며, 2차가공공업의 발전, 수출품종의 다양화, 포장개선, 무역가격의 효율적 통제 등을 강조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기본합의서)
- 쌍방 총리 서명

12월 21일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 알마티에서 '독립국가연합' 창설 선언

12월 24일 북한 김정일 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2월 28일 북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정식 선포

476) 한겨레, "남북한 합작투자 추진 활발" 제하의 기사(1991. 9. 11.)에서, "남한쪽이 선박과 연료를 대고 북한 선원이 조업하는 방식으로 수산업 분야에서의 합작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보도. 당시 보도에 따르면, '냉동 조기 3백 톤과 냉동 홍어 1천1백 톤의 반입을 승인' 등 1991년 9월말까지 모두 2천9백47만 달러어치의 반입이 승인되었음.

- 나진, 선봉(웅기) 지역 621㎢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
-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12월 20일 북·일, 제7차 「어업잠정합의」에 서명(유효 기간 2년 연장)

12월 북한 김일성 주석, 수산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수산부문 기업관리 강조

* 북러: 제5차 북러 어업회담. 1990년까지 북한에 주어졌던 무상 어획할당량제 중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 한중수교 북중관계 악화 / 북한핵사찰 / 북미고위급회담

1월 20일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월 16~25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평양 방문, 남북협력사업 3개 분야에 원칙적 합의[477]
-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남포 지역에 **경공업단지** 조성 방안 제의

1월 22일 **북·미, 첫 고위급회담(김용순-아놀드 캔터) 뉴욕에서 진행**

1월 24일 **윤옥영 수산청장,[478] 노태우 대통령에게 △ 남북간 수산물 직교역과 공동어로 등이 포함된 '수산진흥정책' 보고[479]**

1월 30~2월 1일
북·일 국교정상화 제6차 회담(베이징)

2월 17일 **노태우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언 문건에 서명**
- **2월 19일 평양에서 문본 교환(발효)**

3월 재미교포 김찬구 주선으로 북한 동해대학 및 동해수산연구소와 (재미)부산수산대간 북한 수산과학 부문 현대화 협력 합의[480]
- 최종적으로 합의는 이행되지 않음

4월 중국 양상쿤 국가주석, 북한 방문
- 명목은 김일성 생일 축하사절로 방북한 것이었으나 한중 수교 문제 거론[481]

4월 9일 **북한 사회주의헌법 수정(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

5월 11~18일 IAEA 사무총장 일행 북한 방문

5월 13~15일 북·일 국교정상화 제7차 회담
- 북한: 일본측이 제시한 '휴전선 이북 관할권 명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 일본: 북한 핵 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교 관계 수립 불가 입장 천명

5월 25일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1차 임시사찰 실시

---

477) 김찬구의 증언에 의하면, 이 때 김회장의 방문도 박경윤 회장이 주선. 김찬구, 2005, 288쪽.

478) 경북 청송 출신.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해사 수학과 교수, 교수부장 거쳐 1984년 소장 예편. 1985년 2월~1990년 3월까지 국정원(당시 안기부) 기조실장 역임. 1990년 3월~1993년 3월 수산청장 역임.

479) **"군사분계선 남북 공동어로"**. 경향신문, 1992년 1월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수산청은 군사 분계선 주변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상호조업을 하거나 동해의 연어자원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겠다고 보고. 이밖에 1991년 9천 톤이던 수산물 반입량을 1992년 2만 톤으로 늘리고, 남한의 김, 미역, 멸치와 북한의 명태, 청어, 홍어 등 상호보완 품목의 직교역 방침도 보고. **공동어로 수역의 설정 및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90년 이병기에 의해 수행됨.**

480) 김찬구, 2005, 97~102쪽 참조.

481) 錢其琛, 2003, p. 156.

6월 2일 북한 만경봉92호 일본 니가타 첫 입항

7월 15일 중국 첸지천 국무원 외교부장 북한 방문, 김일성 주석에 한중 수교 설득
- 이에 대해 김일성은 무응답

7월 15일 북한, 화폐개혁 단행

7월 북한 김달현 부총리 서울 방문
- 서울 방문 중, 남북한에 모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핵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제의[482]

8월 24일 한·중 수교
- 서명 대표로 한국측 이상옥 외무장관, 중국측 첸지천 외교부장(중국 다오위타위 영빈관)
- 한중수교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 중국은 '한반도 조기 평화적 통일이 한민족 염원임을 존중' 선언

9월 15일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9월 17일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및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채택
- 남측 협상단 내부의 이견 및 입장 차이로 훈령 조작사건 발생[483]

10월 5일 북한, 합작법 및 외국인투자법 채택
- 합작법: 북한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 투자, 생산 및 경영은 북한측이 함[484]

10월 6일 남한 남포조사단 방북(~10. 9.)
- 조사단 방북을 위한 쌍방 연락관 접촉은 9월 2일부터 이뤄짐

10월 14일 북한, 대만에 무역사무소 개설

11월 북일 국교정상화 8차 회담-결렬

12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연형묵 총리 경질
- 후임 총리에 강성산 임명

12월 12일 북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거부
- 4개 공동위원장 연합 전통문으로 통지

* 북·일
  - 일본 어선이 북한기를 달고 위장조업 중 러시아 당국에 나포되는 사건을 계기로 대북 무상어획 할당량 중지

---

482) 셀리그 해리슨, 101쪽.

483)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경위 설명은 임동원, 『피스 메이커』, 2008, 284~296 쪽 참조. 사건 발생 이후 일정 시점에서의 언론 논조는 "훈령 조작사건의 교훈," 동아일보, 1993. 12. 23 등 참조.

484) 이에 비해 합영법(1984년)은 공동 경영으로서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이 경영할 수 있음.

- 일본 사카이미나토항(돗토리현)과 북한 원산항이 자매 결연[485]

* 북·러: **제6차** 북러 어업회담. 러시아, 북한에 유상 3만 톤, 무상 3만 톤 합계 6만 톤 할당량 배정[486]

* 북한: 1992년 5월 현재, 북한은 황해남도 부포, 옹진, 평화, 몽금포, 구미포, 쌍교 등 18개 지역에 천해양식사업소를 조직, 1백 여 개 천해양식장 운영. 아울러 동해안 신포에서 양화에 이르는 40여 리 구간에 1백 여 정보의 천해양식장 조성, 다시마를 정보당 1백50톤 생산[487]

485) 경향신문, 2006. 4. 12. (기획기사 중 당시 사카이미나토시 통상과 이토 겐타로와의 인터뷰).

486) 송경석, 2003, 234쪽.

487) **"군사분계선 남북 공동어로"** 경향신문, 1992. 5. 4. 보도; 이병기 외, 1993, 21쪽의 서술 내용과 거의 일치함.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오호츠크 공해조업협의 등 한러해양협력 / 북러 수산협력/ 북한, 식량배급중단 / 북한, 혁명적 경제전략 채택

1월 3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채택
-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 지역 설정(제2조)
-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 대책 수립(제9조)
-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제23조)
-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북한 기업소에 위탁 가능(제24조)
-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에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통과하는 다른 나라 무역화물에 대해 관세 면제(제26조)

2월 15일 북한 손성필 주 러시아 대사, IAEA 특별사찰 거부의사 표명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통일 문제에서 민족 우선 강조 및 3단계 통일 방안 제시

3월 8일 북한 김정일 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준 전시상태 선포
- 한미 합동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대응

3월 10일 한·러 동해오염 공동조사 전문가회의 개최(모스크바)

3월 12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 이에 대한 UN 대북결의안 통과

3월 23일 이병태 국방부 장관 국회 답변 중, 작계5027-92 내용 일부 공개
- 동 계획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전제
- 작계5027의 개정은 1991년 미국 로버트 개스킨 공군대령의 미 국방부 순평가국 연구 보고서가 원인제공[488]

4월 7일 북한 김일성 주석, 조국통일 10대강령 제시

4월 9일 북한 김정일 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489]

5월 3일 (주)한성선박, 인천-남포 항로 첫 취항

5월 13일 한·러 오호츠크 공해조업 관련 회의(모스크바)

---

488) 셀리그 해리슨, 219쪽.

489) 이하 권한과 기능이 확대, 개편, 격상된 1998년 국방위원회의 국방위원장 시대와 구분하기 위해 직함 표기시 사용하지 않음.

5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발표
- 제1단계(1993~95): 기존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정비해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기능과 역할 제고
- 제2단계(1995~2000): 수출 주도형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본격 유치
- 제3단계(2001~10):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 거점도시화

8월 북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방러, 나진항 개발 합의

8월 러시아 함대, 한국 방문
- 같은 달, 러시아 함대는 중국 칭다오도 방문(1994년 5월에도 방문)[490]

9월 7일 북한 김일성 주석, 축산·수산·양어 부문 일군협의회에서 수산물 생산 감소 원인을 부문 일군들의 적극성 부족으로 질타(동남아, 아프리카 원양 진출 지시)[491]
- 한편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것은 우리 인민의 숙망' 강조

9월 27일 제37차 IAEA 총회, 핵사찰 수용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9월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정치국 상무위원, 정전협정 40주년 기념 방북
- 한·중 수교로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풀기 위한 시도
- 북한 주재 신임 대사로 차오종하이(1970년대 유엔에서 북한 이해를 옹호했던 차오관화의 아들)를 발령

10월 2일 북한 강성산 총리,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개최 제의
- 이후 10월 5일, 10월 15일, 10월 25일 등 3차에 걸쳐 실무접촉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 SBS 방송 회견에서 북한 핵개발 저지 입장 천명

12월 2일 북한, 북·미 접촉에서 6개항의 핵문제 일괄 타결안 제시
-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문서 보장
- 남한 내 핵무기 불배치 선언
-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단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 미국의 대북 테러국가 지정 철회
- 고려연방제 지지 등

12월 8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 제3차 7개년 계획 실패 자인
- "제국주의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아무리 책동해도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강조

490) Valencia, 1996, p.4.

491) 김일성, 「축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고기와 수산물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7)』, 464~465쪽 참조.

-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천명[492]
-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제3차 7개년계획 실패 후 94년부터 3년간 조정기 설정[493]
- 수출, **농업, 경공업 제일주의를 기조로 한 '혁명적 경제 전략' 채택**[494]

12월 **제7차 북·러 어업공동위원회 회담(평양)**

- 북한은 어획 쿼터 유지, 북한 지역 내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카스피해 및 북해에서의 어업협력, **북한에서의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러측의 지원문제** 등을 제의
- 아울러 북한이 잡은 어류를 러시아산 석유와 맞바꾸는 구상 무역 진행(연합통신, 모스크바방송 인용 보도)[495]

* 한·러: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1994년도 분 명태 5만5천 톤 어획량 할당받음(2만2천 톤을 러시아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명태 어획량을 포함 1994년도 전체 어획쿼터는 7만7천 톤. 반면 북한의 어획쿼터는 4만 톤임

* 북·일: 재일교포 사업가로서 대일 투자를 주도했던 전진식이 일본 방송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판

492) 김일성,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1993. 12. 8), 『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7), 1997, 501쪽 이하 참조.

493) 한국은행 조사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1쪽.

494)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2009, 316쪽.

495) 연합뉴스, 1993, 12, 17.

1994년[496]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남한, 평시 작전권 이양/ 남북한간 최초 선박 운항 위기 고조/ 남한 감척 사업/ UNCLOS 발효

1월 20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채택
- 주요 내용: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북한 내에 합영기업 창설, 공동운영

1월 북한, 정무원 명의로 금강산국제그룹 박경윤 회장에 금강산관광지개발 총권한 위임[497]

2월 15일 북한, IAEA 요구 핵사찰 수용키로 합의

3월 3~14일 IAEA 사찰단, 북한 영변 7개 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종료

3월 19일 북한 박영수 조평동 부국장, 특사교환 위한 제8차 실무접촉(이 과정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

3월 19일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 관련 유엔안보리 회부 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3월 31일 유엔안보리, 북한 핵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4월 20일 남한 삼선해운 소속 세인트 빈센트 국적선 '할리부트'호의 부산-청진항 왕복 1회 직운항
- 한신공영 레미콘 시설 기자재 등 장비 선적, 오후 8시 청진항으로 출발[498]

4월 28일 북한 정무원 결정 제20호로 「자유무역항 규정」채택
-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제2조)
- 외국 투자가에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창설 허용 부두, 창고, 배수리소 등의 운영 허용(제6조)
- 자유무역항 입항 선박은 '배길안내지점' 도착시 북한 인공기 게양 의무화(제11조)

4월 28일 북한, 군사정전위의 북측 성원을 모두 송환
- 동시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

496) 이 해 2월 한겨레는 "일본 대북한 투자 압도적"(1994. 2. 19)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당시까지 과거 10년간 일본 외에 북한에 투자한 나라로서 소련,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 4개국이 있으며, 소련은 수산업과 기계 부문에 4건을 투자한 것으로 상공자원부를 인용하여 소개. 또한 한겨레는 "명태 정어리가 어획량 70%"(작성자 강태호 기자, 1994. 3. 8.)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북한 수산업의 현황 소개, 1990년 이후 국내 언론의 북한 수산업에 대한 소개 기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북한의 1965년 '어부절' 지정 사실, 86년 9월 중앙인민위 정령을 통해 '수산부문 영예훈장' 1.2급의 상훈 제도 신설 등 북한 당국의 수산물 생산 독려 노력도 소개(기사에는 통일원의 「북한 개요」가 주요 출처로 언급되고 있음).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 국내 언론의 북한 수산업 현황 보도의 정부측 자료 출처로는 『북한경제개관』(1989년)이 대표적임.

497) 김찬구, 2005, 295쪽 및 정창현, "금강산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것"(박경윤 금강산국제그룹 회장 인터뷰), 『민족21』, 133호, 2012. 4. 1 참조.

498) "부산-청진항 직항 건설장비 싣고 출항 어제 삼선해운 선박," 경향신문. 1994. 4. 21.

- 외교부 성명을 통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 협상 재차 제의

5월 **한국특수선협회(박종규 회장), 베이징에서 중국 길림성 및 북한 청진시 개발위원회와 3자 회동 통해 청진항 개발 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499]

5월 18~24일 IAEA 사찰단, 북한핵 사찰 활동 시작

6월 3일 북한, IAEA 탈퇴 선언

6월 4일 미국 언론인 셀리그 해리슨 북한 방문

- 김일성 주석 회견은 6월 9일 이뤄짐(온천군 여름 별장)[500]

6월 14일 북한 김일성 주석,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발전소관계 부문 일군협의회에서, 나진선봉의 유리한 조건을 잘 이용해 무역 및 투자 진흥할 것 강조[501]

6월 15일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북한 방문**

- 이 무렵 미국 셀리그 해리슨도 북한 방문, 김일성 회견
- 같은 날 미국 국가안보회의 통해 한반도 전쟁시 '행동 계획' 논의
- 카터 방북은 전 미국 대사 제임스 레이니의 강력한 권유가 영향을 줌[502]

6월 28일~7월 2일

남북정상회담 예비 접촉(7월 24~37일 평양 개최 합의)

7월 6일 북한 김일성 주석,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전력난, 비료난 극복, 비날론·시멘트 생산 정상화 강조, **선박공업 발전 강조(대외무역 관련)**

7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 중국 덩샤오핑 조전, "친밀한 전우를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 및 김정일에 대한 승인
- 북한 당국의 김일성 사망에 대한 공식 발표는 7월 9일에 이뤄짐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핵 합의(기본합의)**

- 주요 내용: 영변 핵시설 동결, 경수로 제공 및 중유 제공

11월 8일 **김영삼 대통령,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제2차 경협활성화 조치는 1998년

11월 16일 **UNCLOS III 발효**

- **수산업 분야**에서는 연안국의 외국 어선 조업규제가 강화되는 등의 영향 발생

---

499) "북한 청진항 개발 한국자본 유치 구체화," 매일경제, 1994. 5. 22.

500) 셀리그 해리슨, 350쪽.

501) 이는 추후 나진항 확장공사로 이어짐.

502) 셀리그 해리슨, 338쪽.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안 49호(부수어획 및 폐기로 인한 해양생물자원의 영향 문제 제기)[503]

* 북·러: **제8차** 조러어업공동위원회 회담(대북 어획 쿼터 4만 톤 확정)
* 북한: 각 기관, 기업소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림[504]
* 국제: UNCLOS 발효의 영향
  - 1998~2000 한, 중, 일 간 어업협정 타결 결과 상당 어장 상실[505]
  -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 과다(어장 생산성의 지속 하락)로 감척사업 착수
* 국제: FAO, 제28차 총회에서 책임수산업국제규범(Code of Conduct on Responsible Fisheries) 채택[506]

503)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p. 203.

504)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222쪽.

505)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28쪽.

506)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p. 213.

1995년 북한 3년상 및 유훈통치/ 북한 식량난/ 북한 수해/ 북한 러시아 EEZ 내 어획쿼터 미소진

1월 18~23일 북한 핵연료봉 처리 관련, 북·미 전문가 회담.

1월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수산법 제정·공포**[507]
- 전체적인 내용은 1973년 7월 26일의 '주석명령 1호'를 기본으로 함

1월 24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 북미 기본합의에 따른 미국측 중유 제공분(5만 톤)이 선봉항 도착 및 하선 작업 완료 발표

2월 24일 북한 외교부,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보장 체제 수립문제는 조미간 해결할 문제" 언급

2월 25일 국방부 대변인, 95년 한미 합동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2월 북한 김일성종합대,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출판
- 주요 수록 내용: 나진항, 청진항, 선봉항을 자유무역항으로 규정한 사실과 3개 항만의 시설 현황 등 소개, 철도·도로망 등 관련 인프라 현황,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토지임대법·세관법 등 관련 법규 수록

3월 9일 북한에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
- 한국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미국 갈루치 국무부 핵대사, 일본 엔도 대사를 3국 대표의 설립협정 서명

5월 26일 북한, 일본에 쌀 공급 공식 요청

5월 30일 제86우성호, 서해 백령도 서북방 40km 지점에서 피랍
- 항법 장치 고장설. 남한 어부 3명 사망
- 동년 12월 생존자 5명 석방

6월 17~21일 대북 쌀지원 관련 제1차 북경회담, 쌀 15만 톤 지원 합의
- 합의서 서명 대표: 남측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북측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6월 23일 북·일, 쌀 제공 문제 협상(베이징)

6월 25일 남북, 대북 쌀 제공 계약서 채택(베이징)
- 주요 내용: 계약과 동시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되, 대북 쌀제공 15만톤 전량을 8월 10일 이전까지 북측에 제공, 수송 선박은 5천톤급 이상 남측 선박으로 하되 제3국 선박 이용 가능

6월 29일 **북한 외교부 비망록 형태로 정전 체제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507) 박성준 외, 2009, 60~61쪽

6월 26일 대북 쌀 제공 수송선 씨 아펙스호, 북한 강요로 인공기 게양 후 북한 청진항 입항

6월 29일 통일원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씨 아펙스호 인공기 게양사건 발생 관련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요구**
- 공식 사과 없을 경우 추가 선적과 출항을 중단, 이미 출항한 선박의 회항 지시

6월 30일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 대남 전문을 통해 씨 아펙스호 인공기 게양 관련 공식 사과

6월 중국 외교부 탕자쉬엔 부부장 방북
- 북한의 대타이완 관계 개선 조짐을 경고

7월 3일 통일원 송영대 차관, 대북 쌀 지원 재개 발표

7월 7일 대북 쌀 수송선 3척, 남북 국기 계양 없이 **청진항** 입항
- 쌀 수송선: 돌진호(7. 5.). 이스턴벤처호(7. 6.), 행진호(7. 7.)

7월 21일 재미교포 사업가 김찬구, **가리비 양식 합작**을 위해 북한 청진 방문(후보지로 노창과 낙산 검토)[508]
- 7월 29일, 북한 수산부로부터 「밥조개 양식장 리용을 허가할 데 대하여」라는 허가장 받음

8월 2일 대북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선원의 사진촬영 사건 발생
- 1등 항해사 이양천, 청진항 촬영 중 북한 당국에 적발·억류

8월 13일 북한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삼선비너스호 송환 대남 전문

8월 23일 북한, 유엔에 수재긴급구호 요청

9월 2일 WFP, FAO, UNICEF 등 3개 유엔기구 수해 조사단 평양 도착

9월 7일 미국, 북한에 수해 관련 2만5천 달러 지원 결정

9월 14일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한적 통해 대북 수해 5만 달러 지원 발표

10월 3일 북·일, 대북 쌀 20만 톤 추가 지원 합의(베이징)

10월 6일 **부산-나진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최초 개설**
- **연변항운공사와 한국특수선(남한) 합작, 동룡해운 설립(연룡4호 취항)**[509]

10월 북한 김정일 비서, 김일성 주석 사후 최초로 대대적인 군 인사 실시

12월 6일 **남북한 등 5개국, 두만강개발협정 서명(뉴욕)**
- 환경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도 교환
- 생물다양성 보존(위협종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포함) 명시
- **해양 환경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등 포함**

508) 김찬구, 2005, 119-127.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 추진중 태영수산과 LG가 가리비 합작(나진)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함.

509) "부산-나진 남북 직항로 새해 맞아 더욱 활기." 연합뉴스, 1996. 1. 3.

* 남북: 부산-나진 항로 개설(남북한 최초 정기항로. 동룡해운, 추싱호, 2,283톤 100TEU)
* 북한: 수산성 산하에 무역회사 조선대외어업합영회사 설립(외국회사와 해양자원개발, 수산물 가공, 양식 등에 대한 합자 혹은 합작 추진)
* 북·러: - 1995~1998년, 러시아로부터 3만 톤 어획쿼터 할당받았으나 실제로 7천7백~9천 톤 어획
  - **제9차** 북러 어업공동위 회담
* 중·러: 중·러 국경조약 체결. 양국간 분쟁의 근원이었던 국경문제 해결
* **중국: 해양휴어제도 시행**. 동해(동중국해)의 경우, 매년 6월 15일~9월 15일까지임[510)]

510) 마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 자료.

1996년 북한 3년상 및 유훈통치/ 북한 호우/ 남한, UNCLOS 비준 / 북·러 관계 개선

1월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고난의 행군' 호소[511]

2월 12일 강영훈 한적 총재, 제707 대영호 선원 송환 요구
- 대영호는 95년 12월 26일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 96년 1월 8일 실종

2월 22일 북한 정무원 외교부, 북·미 잠정협정 체결 제의

2월 28일 남한,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 비준일은 1월 29일로 되어 있음
- 이 전까지 한국은 해외 어업에 크게 의존, 경제수역 정책은 소극적[512]

2월 중국, 영해및접속수역법 선포

3월 중국, 변경 소액무역에서 수산물(명태 제외) 세금 우대정책 취소[513]

4월 10~12일 북·러, 제1차 조러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
- 러시아 부총리 비탈리 이그나첸코 평양방문
- 당초 이 위원회는 91년 5월 20일 발족
- 이그나첸코 방문은 러시아측 관계 개선 의지에 따른 것이었으나 김정일 비서 면담은 이뤄지지 않음

4월 16일 김영삼-클린턴 정상회담, 한·미 공동발표문 통해 4자 회담 제의

4월 19일 북한 경비정 2척, 서해 NLL 침범

4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 미국 방문
- 북한에 미국 기업 등 외국인 투자 호소

5월 15일 중국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및 영해기선 선포
- 북·중 해양경계가 있는 북황해의 영해기선 제외[514]
- 28개 기점을 이은 직선기선으로서, 이중 마차이항 등 일부 기점이 중국 해안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EEZ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도됨(모택동 라인과 유사성 지적)[515]

---

511) 와다 하루키의 설명에 따르면, 1938년 11월부터 1939년 3월까지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대 부대가 제7단, 제8단과 함께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100일 남짓 혹한 속에 했던 행군. 여기서 경위대원 및 소년중대원과 김일성 사이에 끈끈한 유대가 형성. '수령의 결사옹위 정신으로 발전.' 와다 하루키, 263쪽.

512) 최종화, 307쪽.

513) 조명철, 57쪽.

514) 연합뉴스, 2008. 6. 13 보도

515) 경향신문, 1996. 5. 17.

5월 21일 북·중, 조중경제기술합작협정 체결

5월 북한 홍성남 정무원 총리 중국 방문, 조중경제기술교류협정 체결
- 향후 5년간 중국이 북한에 매년 식량 50만 톤, 석유 120만 톤, 석탄 150만 톤 제공[516]

6월 7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관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비준, UN해양법협약 비준**

6월 14일 국방부,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연평도 서남방 NLL 침범 발표

6월 19일 **중국 산둥성과 북한 황해남도 행정경제위원회 무역국, 「중국산동성과 황해남도북한해역에서 협력하여 어업하는 것에 관한 협의서」 체결**
- **중국의 북한 서해 수역 지속 조업**[517]

7월 14일 북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일본 도쿄에서 나선 투자 설명회 개최

8월 2일 제프리 데니스 주북한 IFRC 대표, 북한 호우로 47명 사망 언급

8월 8일 **대통령령 제15135호로 해양수산부 발족**
- **수산업 포함 해양수산 행정 일원화**

9월 8일 김영삼 대통령, 대북 수해복구비 35만 달러 지원 표명

9월 13일 북한,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개최
- 남측은 재계 33명, 정부 관계자 8명, 취재기자 8명 등 총 49명 파견 결정(동년 8월 13일 발표)
- 남측 주요 참가 기업: 삼천리자전거, 일진전기, 대농, 주화산업, 세모, 신호상사 등 중견 기업 중심[518]

9월 18일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 침투한 잠수정은 북한의 상어급 특수목적 잠수정
- 소탕 작전 전 북한군 스스로 11명 사살, 13명 투항 거부자들은 남한 군과 대치 및 교전

12월 5일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잠수정 침투에 대한 사과 없이 대북지원 불가 표명

12월 29일 북한 정무원 외교부,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성명 발표

12월 북한 김정일 비서, 김일성대학 50주년 기념식에서 "당 중앙위 일꾼들은 인민군 정치 일꾼과 같은 드높은 혁명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비판[519]

---

516) 조명철, 86쪽.

517) 마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 자료. 한편 중국이 한국, 일본 등 주변해역으로 진출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것은 동력어선의 대형화가 진행된 1980년대 이후임. 즉 이전까지는 어선의 낙후로 해외 어장 원양어업 능력이 없었음을 뜻함(마광).

518) "나진선봉 투자포럼 기업인 등 49명 파견," 경향신문, 1996. 8. 13.

519) 셀리그 해리슨, 128쪽.

* 북·러: – **제10차** 조러어업공동위원회 회담(정확한 일자 미상)
– 연초 러시아 외무장관 코지레프가 북·러 관계 정상화 추구[520]

* 북한: 1996년 말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운수, 체신, 철도 등 각 부문에 군을 투입해 경영 장악, 김정일 정권유지를 위해 무역특권을 군부로 넘김(이 무렵부터 외화벌이 수산물 원천기지와 지사 설립)[521]

520) Joo Seung-Ho, p. 10.

521) 박형중, 2009, 225쪽. 이에 따르면 수산물 원천기지는 군부 무역기관의 산하기관 간판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의 개인 기업에 운영되었고, 개인업자는 자체로 자금 동원, 인력 동원 수출 실무 수행하고 대신, 일정액을 해당 군부대에 상납한 것으로 알려짐. 주성하의 글 "북한에서 수산물 수출 외화벌이의 역사와 전개에 대하여" 인용.

1997년 북한 3년상 탈상 선언 및 김정일 비서의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 북·러 신조약 회담 개시

1월 21~25일 러시아 카라신 외무차관 방북, 북한 외교부 이인규 부부장과 신조약 내용 협의[522]

2월 12일 전 북한 조선로동당 국제담당 비서 황장엽 망명

2월 15일 북한 김정일 비서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피격(1982년 망명)
- 황장엽 및 기타 탈북자에 대한 경고

3월 일본 산케이신분, 요코다 메구미 사건 보도(탈북자 안명진 인터뷰)

4월 20일 전 북한 조선로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남한 도착

4월 타이완, 북한 투자에 관심 표명(대규모 경제사절단 구성, 방문키로)

4월 북한,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신청서 제출
- 일본에 의해 즉각 거부됨[523]

6월 5일 북한 고속경비정, 연평도 부근 NLL 침범
- 1995년 10월 이후 최초의 사건

6월 16~17일 북·러 신조약 체결 논의(모스크바)
- 협상 대표: 러시아측 카라신 외무차관, 북한측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

6월 30일 북한 김정일 비서, 「양어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발표

6월 북한 김정일 비서, 황해도 용연군 양어장 현지 지도

7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일 비서, 탈상 선언 (같은 날 주체 연호 채택)
- '강성대국' 용어도 함께 등장[524]

7월 16일 북한군 14명, 군사분계선 침투(강원도 철원)
- 국군과 1시간 교전

8월 4일 북한 김정일 비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8.4 노작) 발표

9월 국제통화기금 조사단, 북한 방문

---

522) 주간북한동향, 1998. 2.

523) 셀리그 해리슨, 2003, 88쪽.

524) 한국은행 조사부, 7쪽.

10월 8일 **북한 김정일 비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525]

- 선출이 아닌 도당 집회 및 군부 지지를 포함한 '추대' 형식[526]

10월 13~15일 **북·러, 제2차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모스크바) 개최**

- 농업부문, 수의학 및 식물검역 등 3개 의정서 체결, 북한 채무 상환 방식 및 **나진선봉** 논의

10월 14일 **남한 태영수산, 통일원으로부터 북한 내 가리비양식 사업승인 취득**[527]

10월 **북·러, 제11차 조러어업공동위원회(블라디보스톡, 공동 의정서 채택)**

- 북측 대표: 김규락 수산부 부부장

11월 13~14일 **남·북·중, 속초-나진선봉 카페리 항로 개설 실무협의(베이징)**

11월 24일 **한·러 어업공동위원회(서울)**

12월 **한국, 김대중 대통령 당선**

* 중·일: 중일어업협정

* 북·중: 중조해양법비공식협의기구 출범, 4차에 걸쳐 회의

* 북·러: 러시아 연해주 지방과 북한 어민들간 해조류 및 어류가공식품 합작생산 재개[528]

525) 이하 1998년 강화된 국방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장') 재취임 전까지는 '총비서'로 표기.

526) 김정은도 같은 방식으로 총비서에 추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527) 홍성걸·오순택, 2001, 24쪽.

528) 엄선희 외, 2010, 76쪽.

1998년 북한 98년 헌법 및 김정일 체제 공식화 / 김대중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북한 중공업 우선정책

1월 16~22일 북한 김정일 총비서, 자강도 강계시 도착을 시발로 자강도 현지지도('강계정신')[529]

1월 31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방북, 금강산 남북공동 개발 의정서 체결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대북정책 3원칙 천명
- 어떠한 무력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음
- 북한을 헤치거나 흡수 통일하지 않을 것임
- 남북한 화해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 추진

2월 세계은행 조사단, 북한 방문
- 조사단 대표: 세계은행 선임 자문역 브래들리 뱁슨

3월 1일 비행정보구역(FIR) 개방

3월 10~14일 러시아 L. 모이세예프 외무부 아시아1국장 방북, 신조약 협의[530]

3월 13일 김순권 박사, 북한이 20여 만 톤의 비료 지원을 남한에 요청했다고 발표

3월 1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2차 본회담 개막(제네바)

3월 28일 일본 자민당 대표단 방북

3월 북한 김정일 총비서, 성진제강 현지지도('성강의 봉화')

4월 30일 **김대중 정부,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제2차 경협활성화조치) 발표**
- **주요 내용: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추진,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531]**

4월 **러시아의 어업 모선 '블라디보스토크 피오네르'호, 북한 해주 부근에 기항하여 김 채취 및 가공작업[532]**

---

529) 김재호, 『김정일의 강성대국 전략』, 2000, 163~168쪽. 1998년 1월 자강도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 지도에서 따온 것으로, 열화와 같은 수령 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의 노선 관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됨.

530)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8. 3.

531) 이때부터 남북한 공동어로(또는 공동조업)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해양수산부가 공동조업 실시계획을 마련하기도 함.** 동해-북위 38도 15분과 38도 59분 사이, 북방한계선(당시 북방경계선) 기준, 남북 상호간 22마일. 서해-북위 37도 48분과 38도 18분 사이,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상호 15마일, 남북한 동일 규모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권, 1999, 78쪽. (1999년 7월 7일자, "남북한 공동어로 설정검토", 매일신문).

532) "북-러 수산협력 재개," 경향신문, 1998. 4. 29. 피오네르호가 해주 부근 황해에서 최소 5천 톤의 김을 채취하게 된다는 것을 세르게이 타란니코포 러시아 농업부 수산국장의 말을 인용 보도(이타르타스 통신). 피오네르호의 북한 해역 김 채취는 북한 정부와 러시아 '달모레프로둑트'간 협정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측은 김 채취 대가로 북한에 김 가공품 제공. 1994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임.

5월 31일 러시아 수산 당국, 베링해 중앙부의 조업금지 구역(도너츠 홀)에서 조업 중인 13척의 북한 어선을 불법어업 혐의로 나포
- 러시아 어로단속선 Brest호[533]

6월 16일 현대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1차)
- 방북 기간 중 북측과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

6월 22일 강릉 앞바다 북 잠수정(유고급) 좌초
- 꽁치잡이 어선 그물에 스크류가 걸려 표류

6월 26일 중국, EEZ 선포

7월 8일 북·중,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합의서 채택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간 합의서
- 무단 월경(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 친척 방문시 초청장 발급을 엄격히 할 것 등 규정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3원칙 견지 천명

8월 31일 북한, 광명성1호 시험발사(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 북·일 관계 악화 계기로 작용

8월 미 정보 당국, 북한 금창리 핵 의심 시설 및 활동 포착

9월 5일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및 권력구조 개편(최고인민회의 제10기)**
-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 김일성 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
- 기존 국방위원회를 확대개편강화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취임
- 정무원 체제를 다시 내각 체제로 전환
- 이에 따라 외교부는 외무성, **수산부는 수산성으로 명칭 복귀**

9월 17일 북한 로동신문·근로자 공동 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발표
- 중공업 중심 경제발전 노선 재확인 및 기존 경제노선 불변 천명
- 개혁개방 경계
- "경제 사업에는 허세가 있을 수 없다"며 실리주의 천명

10월 27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제2차 소떼방북

10월 29일 현대-북한 아태평화위, 금강산 관광사업 합의서 체결

10월 30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533) 베링해 관련 자료, p. 47.

10월 **북한, 러시아령 쿠릴열도 수역 어로 개시**
- **제11차** 조러어업공동위 의정서에 따른 것임
- 이 부분에 대해 일본측 공식 유감 표명 및 북한의 반박이 있었음[534]

10월 **남한 (주)해주, 북한 민경련 소속 '광명성총회사'를 사업파트너로 하여 '풍어수산합작회사' 설립**[535]

11월 3일 **북·중·러간 두만강 국경수역 경계선 획정 협정 체결 * 1999. 6. 19 발효**
- 자연 변화에 따른 국경변경과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 '3국 국경접촉점' 등에 대한 표식물 설치 및 유지관리 요령
- '3국 국경접촉점'의 좌표(자리표) 등을 규정한 '서술의정서'에 서명[536]

11월 24일 **북·러, 제12차 어업공동위원회 개최(평양) 및 합의서 체결**
- 양측 경제수역에서의 어로 작업 결과 및 어업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공동 판매 등 수산부문 협력사업 논의[537]
- 1999년의 쿼터량 2만5천 톤으로 하향 조정

11월 18일 **현대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 출발, 북한 장전항 입항**
- 금강산관광 개시

11월 28일 **한·일, 신어업 협정 체결**
- 제2조~제6조: 경제수역 내에서의 상호입어(자국 경제수역에서 상대국의 국민과 어선에 허용할 어획할당량 및 입어조건을 상대국에 통보, 상대국은 그 범위 내에서 한국의 입어 희망 국민과 어선에 대한 허가를 한국에 신청[538]
- 일본 영해 외측의 어장 상당 부분 상실
- 이로 인해 제주도 연승어업(갈치), 부산지역 근해연승어업(붕장어), 자망어업(대게) 등에 큰 피해[539]

11월 **한중 어업협정 가서명**
- 1993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 19회 협상
- 한중 어업협정 체결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 출어 불법 어획하는 중국 어선 단속근거가 마련됨

11월 **북한 고속정 서해 강화도 부근 침투**
-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서울 도착 당일 발생, 금강산 관광 개시일

---

534)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러시아와의 북방 4개 도서 영유권 분쟁 탓임.

535) 동년 11월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 신청. 사업방식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홍성걸오순택, 박성준 외 등 참조.

536) 상세한 내용 및 협정 전문은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중조권) 참조.

537)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8. 10.

538) 최종화, 475쪽.

539)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37쪽.

12월 17일 북한 반잠수정 여수 앞바다에서 격침

12월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양어법 제정**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288호

12월 22일 러시아 방송, 캄차카 주변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북한선적 어선('금강산호')을 불법어업(연어조업) 혐의도 나포했다고 보도[540]
- 1998년 들어 세 번째(불법어로 벌금도 93년 이래 납부하지 않고 있음)

* 한·일: 한일 신어업협정

* 중국: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법 통과

* 북·러: 러시아 연해주 보스토크체르메트와 북한측 선박 합작사 설립, 퇴역한 러시아측 선박을 수리해 제3국 판매[541]

* 남북: 남측 수협중앙회가 북측 실무자들과 5차례 회담, 남북공동어장 개발 협의[542]
(협상기간: 1998년 5월 28일~2000년 4월)

540)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8. 12.

541) 이상은 자브로스카야의 논의 참조.

542) 유동운, 2000, 39쪽.

1999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양어장 집중 현지지도 / 북·일 관계 정상화 재시도 / 북·러 수산협력/ 제1차 연평해전

1월 일본 일조국교촉진국민협회(단장: 무라야마 전 총리) 방북

1월 통일부, 부산의 (주)해주를 어로 부문 남북경협 사업자로 첫 승인
- 북한 광명성총회사와 풍어수산물합작회사 설립[543]

1월 22일 **한일 신어업협정 발효**
- **1996년 8월 협상 개시, 1998년 11월 11일 정식 서명**

1월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한일(신)어업협정을 '매국적인 범죄 문서'로 매도[544]

3월 3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545], **단천항 건설장 현지지도(로동신문 보도)**

3월 **북한 양어법 채택**

5월 5~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 시찰

5월 14일 미국 국무부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방북

5월 22일 미국, 북한에 식량 40만 톤 지원 결정 발표

5월 **북한 대외수산, 러시아의 달모레프로덕트와 다시마 채취 및 가공생산 합의서 체결**
- **1만 톤의 다시마 공급 계약 체결도 함께 이뤄짐**
- **5월 말 북한어선 5척, 6월말 20척이 러시아 EEZ수역에서 러시아측 파트너와 공동어로작업**[546]

6월 15일 서해교전(제1차 연평해전)
- 6월 6일, 북한 '남측이 해상경계선 넘어 영해 침범' 주장. 6월 7일부터 NLL 침범

6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중국, 북한에 코크스 40만 톤 제공 약속

8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라효진동무가 일하는 양어사업소 현지 지도**

9월 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차주현동무가 일하는 양어사업소 현지 지도**

9월 2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형식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선포**
- 정전협정 시 획정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 강령반도 끝단 등산곶, 미군측 관할하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미군측 관할하 섬들인

543) 유동운, 2000, 38쪽.

544)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5), 189쪽.

545) 김정일은 사망시까지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등을 유지했으나 이하에서부터는 '국방위원장'으로 통일.

546) 이상의 내용은 연합뉴스, 1999. 5. 17.

서격렬비열도, 소엽 사이의 등거리 점 등을 적용하고, 해상군사분계선의 북측 해역을 '해상군사통제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선포[547]

9월 22~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신흥양어장 현지 지도

10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경남도 금야군 광명성 제염소 시찰

- 북한 동해안 최초 소금 생산(『과학원통보』)

12월 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583군부대 건설 양어장 현지 지도

12월 1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황해남도 용연군 종합농장(신축 양어장 포함)[548]

12월 24~30일 북·러, 제13차 어업공동위 개최(블라디보스토크)

- 협상 대표: 북측 김규락(수산성 부상), 러측 블라디미르 바흐토프(달리예바사[549] 부사장)
- 2000년도 쿼터량 및 조업어선 수, 해양자원 공동탐사 등 협의[550]

* 중국: 자원보호 및 어업안정을 위해 새 수산정책 수립, 시행(전면 하계휴어 강화, 35도 이북 휴어기간을 3개월로 연장, 남중국해에 새로운 금어기 설정)

547) 「조선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1999. 9. 2.

548) 이 양어장은 김정일이 이미 1997년 찾은 바 있음.

549) 러시아 연해주 소재 어업회사. 이 무렵 러시아 수산 행정은 정부가 아닌 어업회사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음.

550)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1999. 2.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2000년대

개관

2000년대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그 어느 시기보다 많았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00년대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사건(2002. 10), 장거리로켓 시험발사(2006. 7) 및 지하핵실험(2006. 10 및 2009. 5) 등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적인 위기 국면이 조성되어 남북 관계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기도 했다.

먼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한의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5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공동선언'('6.15 공동선언')에 담겼으며, 이에 따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다.

이와 같은 남북 관계의 진전은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가속화시켰다.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구성되었고, 2000년 12월에 열린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 당국자간 어업협력 회담'이 합의되기도 했다. 2003년 2월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으며, 동년 7월 남북 협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도 대남 경협을 전담하는 창구로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2004년 5월에는 남북의 장관급 수석대표(남측: 정세현 통일부 장관, 북측: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되었다. 동 합의서는 남과 북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규정하는 한편, 상호개방 항만을 기존의 각각 3개항에서 7개항(남측: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 북측: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으로 확대(제4조 항로개설)했다. 또한 동 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부속합의서'도 교환되었는데, 여기에는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해상항로대 지정, 항행요령,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대한 해상 안전정보의 제공, 상대측 해역 항행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2005년 8월 1일 부로 정식 발효되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남북 교역의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바지락 및 가리비 등 북한산 수산물 반입과 서해에서 북한산 모래의 반입량이 크게 늘기도 했다.

또한 2004년 6월에는 속초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분단 이후

해양수산 분야 남북 협력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온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가 도출되었다. 이른바 '6.4 합의서'로 통하는 동 합의는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것'과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할 것'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해지구 통신선로의 남북관리구역 현장 및 통신연락소의 현대화' 등에 합의했다.

2005년 7월에는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합의(동년 6월 개최)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동 회의는 서해상 일정 수역에서의 공동어로 진행, 서해상 정해지는 수역에서 제3국 불법어선들이 어로활동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수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사업 진행,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개발의 공동추진, 제3국 어장 공동진출 등 6개항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탄생시켰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전례를 따라 양 정상간 공동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0.4 공동선언')을 남겼다. 동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고수 및 적극 구현' '정전체제의 종식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종전 선언 문제의 추진' '경제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 등 8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곧이어 남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북측 김영일 내각총리를 각각의 수석대표로 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2007. 11. 16)에서는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서해상 일정 수역의 평화수역 지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이 회담을 통해 북한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 남포 영남배수리공장 설비 현대화 및 이를 위한 남북 조선및해운협력분과 구성·운영 등이 합의되었다. 또한 동년 12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남북 쌍방은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 수산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 분야의 협력 등 6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되거나 새로 추진키로 합의된 사항들 대부분은 2008년 이후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핵개발 강행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더 이상 실현되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여름 건강이상에 빠지고 이로 인해 권력 세습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으며 2000년대를 마감하게 됐다.

2000년 제4차 남북대화 국면 / 북한, 남북어업협력 공식 제의 / 북러 신조약 / 북한 전방위 외교

1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북 신의주시 소재 낙원기계연합기업소[551] 현지 지도('낙원의 봉화')[552]

- 북한의 대표적인 기계 공장으로 전후복구 시기의 양수기, 이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 굴착기 및 기중기 등을 생산함

2월 9일 북·러, 「조러우호선린협조」조약 서명(신조약)

- 서명 대표: 북한 백남순 내각 외무상, 러시아 이바노프 외무장관
- 주요 특징: '자동군사개입' 및 '고려연방제지지' 조항 빠짐

2월 23일 남한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남북 민간어업 협력합의서' 서명(중국 베이징)

- 주요 내용: 2000~2005년 전어총 어선이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에서 조업(대게, 오징어채낚기 등)
- 정부 사전 승인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불허됨[553]

2월 26일 남한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북측 동해어장 공동어로 합의

- 협상 일시 및 장소: 2. 20.~2. 26. 중국 베이징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을 통해 북한에 경제 지원 약속

3월 23일 북한 해군사령부, 중대 보도 형식을 통해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

- 핵심 내용은 1973년 최초 문제 제기시 주장의 연장선에 있음

3월 30일 북한, 러시아 연해주 최대 수산회사 Dalmoreprodukt와 공동어로 및 수산물 가공생산 늘린다고 발표

- 공동 어획물은 함남 신포 소재 합작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통조림으로 생산[554]

4월 4~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 회의, 북·러간 신조약 비준

- 핵심 쟁점사항이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안보위협 발생시 협의' 조항으로 대체, '고려연방제지지' 문구 삭제 및 '7.4남북공동성명 정신' 대체(추정)

4월 5~7일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제9차, 평양)

- 1992년 8차를 끝으로 결렬된 지 8년 만에 재개

---

551) 굴착기, 회전식 착정기, 자동차 기중기, 대형산소분리기 등 대형 기계와 설비 생산. 1958년 최초 '천리마'호 굴착기 제작.

552)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2000, 173~174쪽.

553) 유동운, 2000 등 참조.

554)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2000. 4.

4월 8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고위급 비밀 접촉(싱가포르)
- 남측 박지원 특사, 북측 송호경(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4월 **러시아 수산회사 달모레프로덕트사 유리 디덴코 사장 북한 방문**
- **1994년부터 확장공사 중인 북한 나진항 상황 파악 목적**[555]

5월 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할 데 대하여」 담화[556]
- **열대메기공장 현지 지도**

5월 24일 북한 금강산 장전항(고성항) 부두 준공식
- 북한 금강총회사에서 현대건설이 이루 공정을 하청해 1999년 4월 착공
- 연인원 8만5천 명의 남북 인력 투입
- 사석 방파제 560m 1rl 및 3만5천톤급 선박 4척의 동시 접안 가능[557]
- 주요 참가 인사: 남측 정몽헌 현대 회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북측 조선아시안태평양평화위원회 강종훈 서기장 등

5월 29~3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남북정상회담 사전협의 (김정일 집권 이후 최초 방중)**
-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과 회담**

6월 13~15일 김대중 대통령 방북, 제1차 남북정상회담
- 6.15 공동 선언

7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북 및 북·러 정상회담
- 11개 조항 '공동선언'

8월 1~2일 북한 김정일 총비서, 함경북도 공업부문 사업소 현지지도 시 청진양어장 포함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 정식 서명

8월 22~24일 북·일 국교정상화 10차 회담(도쿄)

9월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
-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합의

10월 3일 북한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고난의 행군' 성공적 종료를 선언
- 고난의 행군: 1995년 1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14부대(다바솔 초소)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지속

10월 9일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미
- 조명록 방미 결과로 10월 12일 북·미간 「조미공동코뮤니케」 발표

---

555) 한겨레, 2000, 4. 3.

556) 이 담화는 동년 9월 20일에 행한 같은 내용의 담화와 편집되어 대외에 공개됨.

557) "금강산 장전항 현대 전용부두 준공," 연합뉴스, 2000. 5. 24.

10월 17~21일 북·러, 제3차 경제공동위 개최

- 1997년 열린 제2차 경제공동위에 이은 3차 회담으로 북한 대러시아 채무 논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방안 논의

10월 1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메기공장 현지 지도

10월 2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행 방북

10월 30~31일 북·일, 국교정상화 11차 회담(베이징)

11월 30일 북한, ㈜한성선박에 대해 남포항 입항 거부

- 이후 2001. 2. 17. 국양해운, 동일노선 취항

12월 12~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북측이 어업 부문의 상호협력, 남측의 북측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 등을 제의하고 이를 추후 협의할 것 합의[558]

12월 16일 북한,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자간 어업협력 회담' 공식 제의

- 북측, '동해 입어' 제의[559]
- 4개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상사중재,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서명

12월 27~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차 회의(평양)[560]

12월 20일 북·러, 제14차 어업공동위원회 개최(평양)

- 동해 해양 생물자원 공동개발 등 현안 논의[561]
- 2001년 동해상 러시아 EEZ 내에서 북한 어선 50척 꽁치조업, 러시아 달모레프로덕트사 명태쿼터 이용
- 북한, 러시아에 북한 EEZ 내 어류(정어리, 오징어, 꽁치, 고등어 등) 1만7천 톤, 해조류연체동물갑각류 1천 톤 어획쿼터 할당
- 3만7천 톤 수산물 가공능력의 신포 어류가공공장에서 통조림 생산, 70% 일본 수출 합의[562]

---

558) 남정호 외,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II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64쪽 표 참조.

559) 홍성걸·오순택, 2001, 1쪽.

560) 2007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13차례 회의.

561) 엄선희 외, 2010, 76쪽.

562) 이상의 내용은 엄선희 외, 같은 곳.

2001년 북한, 대러, 대중 관계 개선 동시 추구/ 한중어업협정/ 미국 9.11 참사 / 북한 신사고론

1월 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 통해 '신사고'론 및 '단번 도약' 제기
-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 강조
- 첨단 IT 산업을 주력으로 하여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할 것 강조

1월 13일 북한 수산성 담화를 통해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 제안 확인

1월 15~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쩌민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방문
- 상해 방문, '**천지 개벽**' 발언 (미국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5일 전, 취임식 9시간 전 회담)[563]
- 중국 수뇌부(후진타오, 장쩌민, 우방궈, 원자바오, 자칭린 등)와 회담
- 방중 결과는 동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일부 이어짐

2월 17일 **국양해운, 인천-남포간 해운항로 취항**
- 최초 (주)한성선박에 이어 두 번째(단 한성선박 취항은 2000년 거부됨)

4월 1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중흡7연대 수여 제2629 군부대 및 제580군부대 양어장 시찰**

4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승환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 현지지도**

4월 27일 북·러, 2001년 군사협력협정.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협력 분야 협정 체결

6월 4일 북한 선박 대흥단호 서해에서 영해 침입, 제주해협 통과 후 공해 상 퇴거
-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통과, 11시 05분 경 해주항에 들어감
- 같은 날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북한선박이 한국 영해 침범
- 남측 통일부 장관 북측에 추후 강력 조치 경고 및 해운합의 촉구

6월 5일 북한 청천강호 및 대동강호, 남한 영해 우회 후 서해상 NLL 통과 북상

6월 2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983군부대 및 제567연합부대에서 건설한 메기공장 시찰**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 공식 발효**
- 최초 5년간 유효

7월 1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황해북도 범안양어장 현지지도

563)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에는 김영춘(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연형묵(국방위원회 위원), 김국태(당 중앙위 비서), 정하철(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당 중앙위 국제부장), 벅송봉(당 중앙위 제1부부장), 현철해(조선인민군 대장), 박재경(조선인민군 대장)이 수행.

7월 26 ~8월 1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 러시아 극동전권대표 풀리코프스키가 김정일 방문 수행

8월 4일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 완전 정상화 천명

9월 3~5일 중국 공산당 장쩌민 중앙위 총서기 겸 국가주석 북한 공식 방문
- 동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북중 관계 완전 회복 선언)
-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등 '16자 방침' 천명
- 중국, 북한에 식량 20만 톤, 디젤유 3만 톤 제공

9월 11일 미국 9.11 테러 참사

9월 14~1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경남도 현지지도 시 영광청년양어장 방문

9월 15일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
- 동해어장 공동어로 문제 협의

9월 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534군부대 메기공장 현지지도

10월 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제관리개선 조치 필요성 공론화('10.3' 담화)[564]

11월 13~20일 강동수산(홍중표 회장), 현대아산과 함께 수산 협력사업 논의 위해 방북
- 북측 개선무역총회사 총사장 등 면담 및 원산수산사업소 등 방문

11월 18일 북한 경비정, 백령도 서북방 6.5마일 해상에서 NLL 침범

11월 24일 북·중, 국경통과지점및관리제도에 관한 협정[565]
- 양국간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상품검사 등 수속 규정
- 북중 국경에 단둥-신의주, 투먼-남양 등 모두 15쌍의 국경 통과지점 규정
- 국경통과지점 폐쇄의 이유 및 폐쇄 5일전, 긴급시 24시간 전 상대방에 통지 등 규정

11월 러시아 수산회사 달모레프로덕트[566], 북한 도로 보수 작업('우정의 다리')
- 러시아는 이미 이무렵 북한 신포에 220그람짜리 통조림 40만개 수송
- 이 외에 쿠릴섬 시코탄 근해에서 정어리 공동어로에도 합의
- 북한수역에서 오징어 3천 톤 어획 계획

12월 북·러, 제15차 어업공동위원회(공동 조업, 판매 등 논의)

* 북·러: 2001년 최초로 러시아 사할린에 북한 합작기업 설립(건설 분야), 이후 수산업 분야 합작 기업의 설립이 논의됨. 사할린 아니바시에 수산물 가공 합작기업 설립(2003년)[567]

564) 한기범 논문, 12쪽.

565)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p. 455~465.

566) 자브로스카야에 따르면, 달모레프로둑트(DMP)는 96척의 어선을 보유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 기반 수산회사. 자브로스카야, p. 109. "북한은 조업능력 상실,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쿼터를 우리가 사용, 어획가공판매"(DMP 관계자).

567) 코트라 북한경제속보, 2007, 6. 14. 코트라 문건의 자료원은 자브로브스카야임.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점화 / 북한 대외무역 강조 / 김정일-푸틴 정상회담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월 29일 미국 부시 대통령, 테러와의 전쟁 관련 '악의 축' 발언
- 북한을 이란, 이라크 등과 함께 악의 축에 포함

4월 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한 임동원 대통령특사 접견
-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4월 9일 **북한 나선지구에 대흥무역회사(종합수산물가공회사) 조업식**
- **함북 도당 책임비서 홍석형 참석**[568]

4월 15일 북한 무역대표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 대표단 단장: 조찬덕 내각부총리(8일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
- 북러 경협 방안,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북한 연결 등 논의
- 북한 대륙붕 유전 탐사 및 사할린 석유 개발에 북한 참여 등
- 러시아 연해주와 나진항 확장, 수산물 가공 등 제시[569]

4월 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폴리코프스키 접견**
- 북한은 러시아에 사할린 채굴 원유가스의 북한 공급 요청[570]

5월 11~1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방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5월 북한 화물선 군자리호(2만톤급,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진수

6월 14일 북·중, 해상운수협정 체결
- 서명 대표: 북한 육해운성 참모장 나동희, 중국 교통부 부부장 후시지에
- 육상(신의주-단둥, 만포-지안, 남양-투먼), 해상(남포-다롄), 항공(평양-베이징-선양)[571]

6월 29일 **북한 경비정 서해 NLL 침범, 제2차 연평해전**
- 한국 해군 경고에 불응, 사격 개시[572]

7월 1일 **북한, 경제관리개선조치('7.1 경제관리개선조치') 단행**
- 대폭적인 물가 인상 및 급여 인상, 배급제도 변화, 환율 현실화, 공장 및 기업소의 책임 경영 강화, 독립채산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573]

---

568)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569) 이지수. "북한과 극동러시아의 협력관계 연구,"『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570) 코트라 북한경제속보, 2006. 6. 15.

571) 이상 내용은 주간북한동향(2002년 6월 15일 평방 보도 인용).

572) 미치시타는 연평해전 도발 의도에 대해 대미 관계 개선용이라고 해석. Michishita, p. 156.

7월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상 접견

8월 20~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해주 및 러시아 극동지역 비공식 방문(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초청)

- 콤소몰스크나무레 시, 하바로프스크 시 방문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공식 회동(8월 23일)
- TSR-TKR 연결 사업 논의[574]

9월 17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북한 방문, 제1차 북일 정상회담('평양공동선언')

9월 북한, '국방공업 우선론' 선포

- 군수 부문에 우선적 자원보장 등의 내용 포함
- 선군경제노선의 최초 제시

10월 4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 차관보 일행 북한 방문. HEU 프로그램 사건

10월 1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박인철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양어장(안변) 현지지도

10월 26~11월 3일

북한경제시찰단(단장: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남한 방문

- 삼성동 무역센터, 양평동 롯데제과, 용인 에버랜드, 창덕궁, 경복궁, ㈜마니커, 삼성전자 수원공장, 대구 성서공단, 경주 보문관광단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주도 한림공원, 중문관광단지, 여미지 식물원, 월드컵경기장 등 시찰 및 관람
- 총 18명 규모 시찰단 중에 북한 권력 실세로 장성택도 포함[575]

10월 29일 북한 남포시에서 '8월16일대흥수산사업소' 조업식

- 남포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이영복, 남포시인민위원장 방용덕 등 참석
- 서해 수산물을 남포항을 기점으로 어획, 수출하기 위해 설립

11월 2일 북·러 동해선 철도 개건현대화 양해문 체결(평양)

- 서명대표: 북측 김용삼 철도상, 러시아측 게나디 페데에프 철도장관

11월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정령 제3413호로 채택

12월 제16차 북·러 어업회담

573)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인 2000년 6월 김정일은 '내각 중심으로 경제관리 방식 개선'을 지시해 동년 10월 이를 연구하기 위한 상무조인 '6.3 그루빠'가 조직된 바 있음.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바로 이 상무조를 통해 입안됐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 배경에는 '특수 부문 경제의 축소' 의도가 깔려 있음. 이상의 설명에 대해서는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9, 112~118쪽 참조.

574) 우평균 등 일부 전문가는 김정일이 방문기간 중 러시아측 잠수함 건조 공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추측.

575) 『이봉조의 통일수첩』, 2016, 72~73쪽.

2003년 북핵 위기 계속 / 6자 회담 개시 / 개성공단 1단계공사 착공

1월 18일 러시아 북핵 특사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평양 도착(북핵 사태 중재)[576]

1월 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북핵 특사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접견

1월 26일 북한 어선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

1월 27일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임동원(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 방북
- 서행 직항로를 통해 방북
- 주요 방문 목적: 2002년 고농축우라늄(HEU) 관련 제2차 북핵 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해결 방안 모색 및 차기 대통령 당선자측 대북 정책과의 연결

1월 북한, NPT 탈퇴 및 IAEA 사찰요원 추방 및 NPT 탈퇴 선언

2월 20일 북한 MIG-19 전투기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2월 **금강산 육로 관광 시작**

3월 중국, 다칭으로부터 북한에 이르는 15개 송유관 중 13개를 2-3차례 폐쇄(추후 확인됨)

4월 6자 회담을 위한 3자 예비회담

5월 3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후 북상

5월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대북 정책 및 태도 비난 비핵화 책임 전가 보도

5월 26~27일 북한 어선 서해 NLL 침범후 귀환

5월 북한 내각지시 제24호「농민시장을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방향 전환할 것」
- 북한 내각결정 제27호「시장관리운영규정」등 발표

6월 1~2일 북한 어선 서해 NLL 월선

6월 9일 **일본, 니가타 항 입항 예정인 만경봉92호의 운항 취소**
- 동년 1월 중순 이후 운항 중단[577]

6월 1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나효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 현지지도**

576) 한겨레, 2003. 1. 18.

577) 주간북한동향, 2003, 6.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행사 남북 동시 개최
- 남북 도로철도 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철도 연결지점에서 개최
- 경의선 남북 대표: 남측 조명균 통일부 국장, 북측 김병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 동해선 남북 대표: 손봉균 건교부 국장, 박정성 철도성 국장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착공**

7월 10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월선(아군 함정 출동 후 퇴각)

7월 1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정부 특사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부부장 접견

7월 북한, 내각 산하에 대남 경협 창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신설

8월 20일 남북,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상사분쟁해결 및 청산결제 등 4대 경협 합의서 발효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

8월 2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8.23 담화**
-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와 노동력, 설비, 자재, 전력 등을 우선 보장
- 국방공업과 중공업 기반에 맞게 경공업, 농업에 투자 증대 등

8월 26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아군 초계함 경고사격 후 퇴각)

8월 27일 **베이징 6자 회담 개막**

9월 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연방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폴리코프스키** 접견

10월 30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아군 초계함 경고사격 후 퇴각)

10월 러시아 연해주 지사 세르게이 다리킨, 평양 방문
- 러시아측의 나진항 임대 협의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동북지역 노 공업기지 발전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
- 동북3성 발전 전략의 공식 의제화[578]

11월 24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1월 중국 지린성 훈춘시, '훈춘 나선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계획 제시

12월 북·러, **제17차 어업공동위원회(블라디보스토크)**
- 양국 EEZ 내 어획량 확대를 위한 공동탐사 프로젝트 협의

578)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늘품플러스, 2010, 362쪽.

2004년 NLL 문제해결 위한 남북 노력 / 중국의 북한동해 입어 개시

1월 13일 NLL 월선 북한 선박, 기관 수리 후 귀환

2월 9일 북·러, 두만강 국경선 획정 합의

2월 29일 **북한 냉동운반선 서해 NLL 월선**

2월 중국, 북한과 교역총괄 위해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 설립

3월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 개성공단: 2004년 상반기 안으로 시범단지(1만평) 부지조성 완료 및 가동 합의
- 철도 연결: 2004년 안으로 경의선, 동해건 철도 시험 운행 합의
- 기타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

3월 1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 오리농장과 양어장 시찰

3월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 중국 베이징 교외 휴대전화공장 견학

4월 19~2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공식 중국 방문
- 중국 신 지도부와 협력관계 구축 (당 대 당 전통관계 복원)
- 6자 회담 재개 논의

5월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접촉
- 접촉 대표: 일본측 다나카 히토시, 야부나카 미토지, 북한측 정태화, 송일호

5월 22일 제2차 북·일 정상회담(평양선언의 이행 확인)

5월 26일 제1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금강산)
- 회담 대표: 남측 박정화 해군준장(수석대표), 북측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단장)
- 주요 내용: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방안에 대한 상호간 입장 개진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속초),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합의**
- 회담 대표: 남측 박정화 해군준장(수석대표), 북측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단장)
- 주요 합의 내용: 쌍방 경비함 의사소통 위한 깃발 및 발광체 사용 시각신호 제정, 중국어선 어로 단속 관련 정보 교환 등
- 동년 6월 10~12일 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실무대표회담을 통해 국제상선공통망 이용, 쌍방 경비함정간 기류 및 발광신호 운용, 쌍방 관련 군사당국간 불법 조업선박에 대한 정보교환, 새로운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 운영 등의 사항을 담은 '부속합의서' 체결

6월 4일 남북경협추진위 제9차회의(평양)

-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상호 교환[579]

6월 18일 일본 정부,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7월 중국 산둥성 소속 4개 기업 54척이 북한 동해입어(오징어)

7월 5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북한 방문(김정일 접견)

7월 14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7월 18일 북한 선박 1척 서해 NLL 침범

7월 21일 북한 어선 1척 서해 NLL 침범

7월 26일 북한 어선 2척 서해 NLL 침범

8월 3일 **북·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산둥성 룽청(榮成)시 어선 10척이 북한 동해수역에 출어**[580]

8월 14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0월 12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0월 14일 중국-러시아, 우수리강과 부속 섬들에 대한 영토 경계 확정

10월 중국 단둥 동항시 해부수산유한공사, 북한과 합작계약에 서명하고 지사 설립, 가리비 등을 나진선봉 지역 내에서 양식사업 시작

10월 노무현 대통령 방러
- TKR-TSR 연결에 노력하기로 합의

11월 1일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NLL 침범

11월 9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2월 6일 북한 어선 1척 서해 NLL 침범

12월 7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2월 15일 개성공단, 최초 제품 생산 및 남측으로의 반출

12월 21~24일 북·러, 제18차 어업협력공동위(블라디보스토크)
- **협상 대표: 러시아측 수산자원및어업국장 알렉산드르 아호노프, 북한측 대외경제협력부 어업국장 정영호**
- **쿼터 분배, 북·러 경제특구, 해양에너지 자원 이용, 태평양 북동지역 수산자원 보존 등 논의**[581]

---

579) 미치시타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1999년 이래 연속적인 북한의 서해 NLL에서의 도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획득 차원으로 해석(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와 동일 선상). 아울러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해석(대외정책의 국내정치 소스). Michishita, pp. 160~161.

580) 마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자료.

581) 코트라 북한경제속보, 2004. 12. 24.

- 러시아측: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EEZ 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러시아 해양조사단 관계자에 대한 체불임금 상환 등을 요구
- 러시아측: 2005년도 북한에 대해 명태 3천 톤, 꽁치 1만3천톤, 오징어 1만1천8백70톤 어획량 할당
- 북측: 러시아에 대해 심해홍게 5천 톤, 고등어-정어리-꽁치-멸치 및 오징어 8천 톤 포함 총 1만3천 톤의 해양생물자원 할당[582]

12월 29일 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31일 남북 군함 서해 NLL에서 1시간 대치

* 북·중: 북한 처음으로 중국어선에 동해 개방. 중국 동해 입어.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와 북한 상명무역총회사간 어업생산 제휴 프로젝트에 의거, 원산앞바다(50마일 바깥 EEZ 내) 어업 생산
* 북·일: 2004년, 일본 대북 수입 중 바지락(22.27%) 등 어패류가 42.9%[583]
* 기타: 텐진사회과학연구원 왕중원(왕충문)이 『전리흐어관리』(전략과 관리)에 북한 지도부 비판 논문 기고해 파문[584]

58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자료.

583) 미무라 미쓰히로, 63쪽.

584) "북 세습통치 위해 인민박해", 조선일보, 2004. 8. 21.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합의)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1월 24일 북한 무역기관 봉화총국 창립 30돌 기념 보고회 개최
- 주요 참석자: 김중린 조선로동당 중앙위 비서, 김춘단 총국장, 박철남 부총국장 등
- 산하에 제1~6 무역회사를 두고 의류, 농수산물, 금속 등 다양한 제품을 가공·수출 또는 외국기업과 합자 및 합작 사업 추진[585]

2월 10일 북한 핵 보유 선언 및 6자 회담 탈퇴

3월 11일 북한, 남포에 종합적 연안관리 민족시범지 조성 발표

3월 22~27일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 중국 방문, 투자보호촉진협정 및 환경협조협정 체결

5월 13일 북한 경비정 2척, 두 차례 NLL 침범

5월 16~19일 제1차 남북차관회담
- 회담 대표: 남측 이봉조 통일부 차관, 북측 김만길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 회담 결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6.15 통일대축전의 남측 대표단 참가, 북핵 해결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인도적 차원에 의한 대북 비료 20만 톤 제공 등에 합의[586]

5월 북한 내각 총리 박봉주가 조직한 '내각 상무조' 해체
- 동 상무조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이후 박봉주 내각이 경제관리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었음
- 내각 상무조의 해체와 함께 당계획재정부를 신설하여 박봉주와 대립했던 박남기를 임명[587]

6월 15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 합의

6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접견 및 면담

6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설립
- 구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확대·개편
- 삼천리총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등 소속회사 및 단둥 대표부로 구성 운영되어 왔음

6월 27일 북한 어선 1척 서해 NLL 침범

7월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 「북남경제협력법」채택

585)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2005. 1.

586) 『이봉조의 통일수첩』, 2016, 84~85쪽 참조. 당시 차관회담은 10개월간 끊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됨.

587) 한기범, 2009, 280쪽 참조.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 상호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 등 명시
- 남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년 8월 제정)에 대칭적 성격

7월 25~27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 공동이익을 위한 수산협력 방안 등 6개항 합의**

7월 중국 산둥성 위하이 시 북한 동해연안 트롤조업 계획 (중국 농업부 비준)으로 1차 선단 84척이 북한수역에 입어

-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소속 어선도 북한 동해에 진출[588]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정식 발효

- 단 합의서 발효 이후 남한 선박의 북한 항만 입항시 강제 도선, 높은 항만비용 지불, 항만시설 이용의 차별 등 비효율 발생[589]

8월 3일 중국 단둥과 북한 남포항간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개시

- 북한 국사봉해운사 소속 해양1호를 통해 단둥 다퉁항과 남포항간 운항(90해리). 표준 컨테이너 18개 적재 가능

8월 8일 남북해운협력 제5차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채택

-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항로 통과 노선을 추가
- 이를 통해 북한의 동서해 항만간 해상운송시 통행거리 약 230마일, 운송시간 20시간 이상의 단축 효과 발생[590]

8월 13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위한 남북통신연락소 개통

8월 14일 북한, 경제수역 침범한 남한 어선 경고 사격 뒤 돌려보냄

8월 15일 북한 화물선, 제주해협 첫 통과

8월 18~25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점검

- 경의선: 문산역~개성역 구간 27.3km (8.18~20일)
- 동해선: 제진역~금강산역 구간 25.5km (8.23~25일)
- 주요 점검 대상: 선로 부설상태, 일반 구조물 및 교량, 운영 건축물, 신호통신 전력부문 공사 진행 실태 등

8월 21일 북한 경비정 서해 NLL 침범

8월 28일 북한, 동해에서 남한 어선 2척 나포 뒤 돌려보냄

8월 중국 대련해양어업집단, 주산화옹원양어업공사, 주산보타구원양어업공사, 동해안 어업개발(계약기간 5년, 원양어선 총 60척, 6~10월 조업)[591]

---

588) 마광, 해양수산개발원 내부자료. 36쪽. 이 때 어선원에 대해 북한의 해당법률 숙지 등 교육훈련.

589) 최재선 엮음, 『환동해 경제학』, 불루&노트, 2015, 365쪽 및 통일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결과해설자료」(2005. 8.8) 참조.

590) 최재선 엮음, 2015, 424쪽 참조.

9월 5일 미국, 뱅코델타아시아를 북한 불법자금 돈세탁 창구로 지명(미국의 제재 시작)

9월 19일 베이징 6자회담, '9.19' 공동성명

10월 8~11일 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의, 북한 방문

10월 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국무원 우이 부총리 일행과 대안친선유리 준공식 참석

10월 10일 북·중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
- 서명대표: 북측 로두철 내각부총리, 중국측 보시라이 상무부장
- 상호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에 이은 것임

10월 10일 한국 해경 경비함, 표류 화물선 예인 위해 북측 수역 진입

10월 14일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0월 17일 북한 소형 어선(전마선) 1척 서해 NLL 침범

10월 27일 북한 어선 1척 서해 NLL 침범

10월 28~30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북한 방문. '조중 관계 4원칙'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천명
-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

11월 11일 북한 전투기 2대 서해 NLL 침범

11월 13일 북한 어선 9척 및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2월 7일 부산항을 출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러시아 화물선 테르니호, 풍랑으로 무수단 침범, 김책항에 나포
- 영해 침범을 이유로 석방이 늦어짐

12월 1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남배수리공장에 건설된 2호 부두 현지지도

12월 24일 북중해상원유공동개발 협정(북-노두철 부총리, 중-쩡페이엔 국무원 부총리)
- 중조 인접해역에서 자원 공동개발 합의

* 북·러
  - 2005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명태쿼터 3천 톤을 배정받았으나 조업능력 및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명태쿼터 반
  - 제19차 북·러 어업회담

* 북한: "2005년 양어장 면적 5배 이상, 양어물고기 생산량 7배 이상 장성" 주장[592]

591) 조명철,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42쪽 표 및 최수영, 64~65쪽(연합뉴스 기사 및 투자조선 사이트 인용) 참조.

592) 『광명백과사전』18(수산업), 2009, 748쪽.

* 북중
  - 중국, 나진항 사용권 확보
  - "북한이동해역원양어업프로젝트사항에관한통지"를 통해 중국 어선의 농업부 허가후 북한 수역 진출 방식의 북한 입어 허용[593]
  -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동림기업이 나진-원정 도로 개보수를 전제로 나진항 3호부두 운영권(50년) 및 4호부두 신설권을 획득하고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했다고 보도[594]

59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 자료 및 홍성걸 외, 2008.

594) 신화통신을 인용한 주간북한동향 및 본 항목에 대한 원동욱의 검토.

2006년 북한 핵실험 및 대북 제재 국면 전개 / 북중 관계 강화/ 중국 '11.5' 시작년도

1월 10~1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비공식 방문
- 베이징 외에 광동, 우한, 주하이, 선천 등도 함께 시찰
- 박봉주(내각 총리),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노동당 부장), 리광호(노동당 부장), 로두철(내각 부총리) 등 수행
- 광저우 중산대학, 무한시, 장강삼협댐, 광주국제회의전람센터, 주하이컴퓨터단지, 중하이통신화평스마트카드주식유한공사, 삼천화위기술유한공사,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등[595]

2월 중국 길림성 훈춘시 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 북한 나선시 인민위원회와 나진항국제물류합영공사 공동 설립
- 주요 내용: 나진항 3호 부두 이용(50년)과 4호 부두 신설 등

3월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북측-김영철)

3월 남북러 3자 교통장관 회담, 나진선봉 개보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동의

4월 10일 일본,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경제제재 조치 6개월 연장

5월 16~18일 제4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서해 NLL 문제로 난항)

5월 26일 중국 농업부, 「중국어선이 북한이동해역 작업관련 문제에 관한 긴급통지」 통해 2006년 북한 동해 수역입어 계획이 없음을 통보(북한이 입어를 허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임)[596]

6월 1일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계획 중단 선언

6월 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제주 롯데호텔)
- 남북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 데 따라 현물 또는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 상환

6월 8~19일 북한 수산성 류용수 대외협력국장 일행이 노르웨이 수산연구소 연수 참가[597]

7월 5일 북한,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미국 시각으로 7월 4일) 대포동2호
- 일본, 북한 만경봉호 입항 금지
- 대포동2호 외에 미사일 7기도 시험발사

595)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 및 "김정일총비서 중국 비공식 방문," 조선중앙통신 2006. 1. 19 참조.

596) 위 자료. 2006년 7월 북한 무수단리에서 장거리로켓 발사시험. 입어 불허는 이와 같은 배경.

597) 2006북한경제종합평가, 통일부, 2007, p.58 (표 '06년 주요 경제대표단 대외방문').

7월 11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양형섭(김정일의 종매부) 접견
- 후진타오는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강조[598]

7월 일본, 북한 '만경봉-92호' 입항 금지 조치

9월 14일 일본, 북한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예금 인출 및 해외 송금 금지

10월 10일 북한, 제1차 지하핵실험(미국 시각 10월 9일)

10월 11일 일본,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북한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10월 14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

10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탕자쉬엔 국무위원 접견(핵실험 관련)

10월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출범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미 정상회담
-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 핵 폐기후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 남북-미국 3자간 '종전협정'(종전선언) 서명 방안 언급

12월 북한 화물선 용월산호(3천톤급), 철광석 싣고 항해 중 중국 다롄 해역서 침몰

12월 북·러 간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공동실무그룹 제1차 회의

* 북러: 제20차 북러 어업회담

598)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2006. 7. 11.

2007년 6자회담 재개 /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 / 북러 경협활기

1월 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 통해, "품 들여 마련하여 놓은 양어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해야"(양어사업 지속 강조)

1월 15일 연평도 북한 해역에서 남북 선박 충돌

2월 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어랑천1호 발전소와 장연호양어장 현지지도

2월 13일 6자 회담, 2.13 합의

3월 22~23일 제4차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 회의(모스크바. 러시아-콘스탄틴 플리코프스키, 북한-림경만 무역상)
- 승리화학 개보수(가즈프롬) 지원 및 러시아 전력공급 ,북한 채무 방안 논의
- 동 회의는 6년만에 재개된 것임

4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
- 변화된 어황 조건에 맞는 어로 방법과 어구 갱신, 바다나물 양식, 재배업 강화
- 양어 부문에서 양어의 과학화 수준 제고, 기존 양어장 운영의 정상화 등 목표 제시

4월 18~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평양 고려호텔)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채택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5월 8~11일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 회담 대표: 남측 정승조 육군소장(수석대표) 외 4명, 북측 김영철 중장 외 4명
- 5월 17일 예정 열차시험 운행을 포함,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문제 협의
- 서해우발충돌방지 문제 등 논의 가능 의사표시

5월 7일 북·러, 나진-핫산간 철도 시험운행

5월 17일 남북 철도 시험 운행
- 경의선: 남측열차 출발, 문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군사분계선)~판문역~손하역~개성역
- 동해선: 북측 열차 출발, 금강산청년역~삼일포역~감호역~(군사분계선)~제진역
- 시험운행 열차: 디젤 기관차 1량 및 객차 4량, 발전차 1량 등 총 6량

5월 18일 북한 화물선 강성호(1,850톤급), 남포항을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 입항
-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전의 제3국 선박에 의존하던 남북 해상운송을 쌍방의 국적선을 이용하게 된 시발점
- 부산-나진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취항을 위해 감천항에 입항함

- 남북교역 반출입 승인 고시품목 중 북측 생산 농수산물과 남측 생산 공산품이 주요 운송 대상 화물[599]

6월 7일 북한 서해상에서 미사일 2발 발사

6월 24~26일 제6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 회담 대표: 남측 정승조 육군소장 외 4명, 북측 김영철 중장 외 4명
- 주요 의제: 서해상 군사적 충돌방지, 공동어로 실현 및 남북경협의 군사적 보장 문제

7월 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국무원 외교부장 양제츠 면담
- 양제츠는 북한 김영일 내각총리와도 회담

7월 24일 제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 서해공동어로 등 협의, 그러나 NLL 문제 등으로 난항

7월 25일 남한 경공업 원자재 실은 선박, 북한 향해 첫 출항
- 남북 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 합의서(수정보충합의서)에 따라 단섬유 5백톤을 인천항에서 선적, 남포항으로 출항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통일부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600]

9월 26일 중국 산둥성, 원양어업 발전 및 해양어업의 해외진출을 천명한 문서(의견) 발표

10월 2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10. 4. 평양)
- 정상회담: 10월 3일(오전오후 2차례), 10.4 선언 서명: 10월 4일
- 해주평화협력특별지대, 남포안변조선협력 단지, 개성공단 확대, 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에 합의

10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어연구소 현지지도(연어생산 독려 및 가공대책 지시)

10월 19일 부산-나진 컨테이너 항로에 북한 국적선 비파호(1,126톤급) 취항
- 이전의 강성호에서 교체됨

10월 21일 북한 해군사령부, "북한 영해에 대한 무모한 군사 도발 불용" 요지의 보도

11월 14일 한·중 공군 및 해군간 핫라인 설치 합의

11월 14일 북·러, 사할린에서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공동실무그룹회의. 무역경제협조의정서 체결
- 사할린 지역에 북한 근로자 파견 확대, 접경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논의

11월 14~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
-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599) "부산~청진~나진 바닷길 활짝," 동아닷컴, 2007. 5. 21.

600) (사)남북교류지원협회는 2006년 남북 경공업및지하자원 협력사업 등 이른바 '신경협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로 통일부에 의해 설립됨.

- 도로, 철도, 조선 및 해운, 개성공단, 농수산, 보건 6개 분야 협력위원회 설치, 운영 합의

11월 22일 중국 둥강-북한 남포간 컨터이너 정기선 개통(단둥 둥강개발구 해운유한공사)[601]

11월 29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해상불가침경계선 및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협의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합의(그러나 NLL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12월 13일 경공업 원자재 대북차관 상환광물 1차분 도착

- 2007년도 현물차관 제공(8천만 달러)에 대한 대가상환 3% 중 1.5%(120만 달러)에 대당하는 북한산 아연괴 5백 톤을 인천항으로 반입[602]

12월 14~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북측 동해수역 입어/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양식 분야 협력 등에 합의)**

12월 15일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환경기술원자력 감독처장관, 제8차 한러 경제공동위(모스크바)에서, "TKR-TSR 연결을 위한 남북러 3자 협상 동의" 발표

12월 28일 **서해평화특별지대 추진위 1차 남북회담(개성)**

- 해주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 합의

* 북·러: 제21차 북·러 어업회담

* 남북: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남측은 등거리·등면적 주장, 북측은 NLL 이남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고집[603]

601) 김철, 「북한-중국 경제무역 합작현황 분석」, 『북한경제리뷰』, 2008. 5, 59쪽.

602) 남북교류지원협회 2007년 12월 14일 자 배포 보도참고자료.

603) 손기웅 외, 2010, 326쪽 등에 보임.

2008년 북한 "2012 강성대국 진입의 첫해" 주장 / 일본 대북 제제 계속 / 남북관계 악화

1월 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첫해"로 규정

1월 4일 인천항에 경공업 원자재 대북 현물차관 제공에 따른 상환광물 2차분 도착
- 북한산 아연괴 5백 톤으로서 당초 2007년 12월 중 도착 예정이었음[604]

1월 28일 북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NLL은 유령선" 내용의 성명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 발표

2월 미국 뉴욕필, 평양 공연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장관 "북핵문제 타결없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 발언

3월 24일 북한,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측 당국자 철수 요구
- 3월 19일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 비난

3월 27일 **북한, 남한 김태영 합참의장 발언에 대해 사과 요구**
-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공격 대비책 답변을 통해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 발언
- 아울러 김태영 합참의장은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선"이라고 발언

3월 28일 북한,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4월 11일 일본 정부, 각료 회의를 통해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전면 금지 및 북한에서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골자로 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연장 결정

4월 북한과 러시아,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3호 부두 개발에 관한 양자협정

5월 1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책대흥수산사업소 현지 지도**
- **홍석형, 김기남 등 수행**

6월 1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계도 간석지** 건설현장 현지지도
- 김평해 등 수행

6월 1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제 개혁조치의 전면적 철회 선언('6.18 담화')[605]

6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시진핑 부주석 접견

---

604) 이보다 앞서 북한 정촌광산이 생산한 흑연제품 200톤이 남포항을 거쳐 인천항에 반입되었으나 이는 현물차관 상환분이 아니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북한 광명성총회사의 자원개발 합작사업 결과였음.

605) 한기범, 12쪽. 김정일의 '경제관리개선'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 문건은 4건(2001년 10.3 담화, 2005년 1월9일 로작. 2007년의 8월2일 로작. 2008년의 6.18 담화)라고 지적(같은 논문 14쪽).

6월 26일 미국 부시 대통령,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 지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발생**

-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오전 5시 경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 인민군 해안 초소 초병의 쏜 총탄에 맞아 사망
- 이 사건 직후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 출발을 금지시키고, 7월 13일 금강산 관광객 전원을 철수시킨 뒤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킴

7월 중국 다롄의 촹리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를 50년간 임대

8월 3일 북한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 특별 담화를 통해 '남측 인원 추방' 발표

- 아울러 금강산지구 입장 남측인원과 차량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 표명

9월 이명박 대통령, 모스크바 방문

- 9백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거래 성사

10월 7일 북한,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10월 9일 북한 해군사령부, 남측 NLL 정책 비판하며 서해상 충돌 가능성 경고

11월 24일 북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공단 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조치 시행 통보

12월 1일 **북한, 개성공단 (우리측) 상주 체류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남북통행 시간대와 통행허용 인원 축소(12.1 조치)**

- 남북한간 경의선 열차 운행도 중단됨[606]

* 북·러: 제22차 북·러 어업회담

* 남북: 남북한 선박 운항횟수 11,891회를 기록해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606) 2007년 12월 11월 이후 이 때까지 운행 횟수 222회, 수송 실적 78TEU 기록. 박수명, 「남북 철도현황과 협력방안」,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SOC 개발협력 추진방향』(통일준비토론회 자료집), 2014. 11. 25, 33쪽.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대북 제재 강화 / 핵실험 이후 경제주력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발표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합의상 서해 해상군사경계선(NLL) 조항들 폐기 성명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해상 경계선 관련 조항들에 대한 폐기 의미

1월 **북한 수산성 한영일 부국장, 조선신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양어 중시 정책을 통해 올해 신년공동사설의 과업 수행에 주력' 천명**

2월 북한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 서해 지역 관할 4군단장으로 전보

3월 9일 북한, 남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가설됐던 군통신선 차단

3월 북한 김영일 중국 방문

3월 러시아 추코트카해양선박 사의 발주로 북한 원산 조선소에서 여객선 '알렉세이 쉬만스키' 호가 건조되어 인도됨[607]

4월 5일 북한, 장거리로켓(3단계 은하 2호) 발사 시험
- 시험통신 위성 광명성 2호의 운반 목적이라고 주장

4월 9일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출범. **헌법개정**. 국방위원회 강화(장성택, 국방위원회 진입)
-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 조명록(제1부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이상 부위원장),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장성택,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이상 위원)[608]
- 내각: 김영일(총리), 곽범기, 태종수, 오수용총리), 로두철(부총리 겸 국계가계획위원장), 박의춘(외무상), 주상성(인민보안상), 전길수(철도상), 리동희(륙해운상), 김창식(농업상), 박태원(수산상), 박송남(국토환경보호상) 등 임명

4월 1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의장성명' 채택

5월 25일 **북한, 제2차 지하핵실험**

5월 27일 북한 판문점대표부,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 성명

6월 1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1874호 채택
- 주요 내용: 무기금수 대상을 대량살상무기와 중화기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

607) 코트라 북한경제속보, 2010. 4. 1.

608) 로동신문, 2009. 4. 10(3).

대하고, 금수대상 품목 수송 의심선박을 공해상에서 기국동의하에 검색 등 제재 내용 강화

6월 2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 군대 국가 경제기관 실무진과 한 담화
-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것

7월 9일 **북한, 김철을 단장으로 한 수산기술대표단을 중국 스좌장에 파견**[609]
- **자라 양식기술 습득을 주요 목적으로 함**

7월 30일 연안호 GPS 고장으로 동해 NLL 월선, 북한에 나포

7월 제1차 미중전략경제대화

7월 중국 국무원, '개방적 변경'을 핵심으로 한 「랴오닝 발전계획」을 비준

7월 일본, 대북 수출 전면 금지
- 일부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과 한국을 경유, 불법적으로 일본에 유입, 또는 일본 상사의 손에 의해 제3국 경유해 불법 수출됨(사와이케)

8월 5일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북한 방문
- 억류중인 미 언론인 2명 석방 관련

8월 10~17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 개성공단 억류 현대직원 유 모씨 석방 문제 협의
- 판문점 통해 육로 방북(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영접)
-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등 5개항 합의(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원회 공동보도문)

8월 30일 미국 국무부,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이 의심되는 북한 남천강무역회사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

8월 중국 국무원, 동북진흥의 구체화를 위한 「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비준

9월 1일 북한의 12.1 조치 해제에 따라 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9월 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및 김책대흥수산기업소 현지지도**

9월 중·러,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 강요」(2009~2018) 체결

10월 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 북한 방문
- 주요 활동: 경제기술 협정 체결 및 신압록강대교(도로) 신설 합의 등

10월 10~11일 북한 경비정, 어선 50척을 호위하고 NLL 월선

609) 중국 허베이성 어업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水産技術人員..." 이 기사에 따르면 연수 기간은 1개월로 북한측 대표는 김철(정확한 소속 불명)임.

10월 14일 북한, 서해상 제3차 해전 경고

11월 10일 **대청해전**
- 대청해전이라는 명칭은 합참에서 2009년 11월 16일 합참에서 공식화

11월 19일 **중국,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 발표**
- 주요 범위: 길림성 내 장춘시·길림시의 부분 지역, 연변조선족자치주, 료녕성, 흑룡강성과 내몽골자치구 등 지역이 포함
- 전망 기간: 2009~2020년
- 지도 사상: 창춘, 지린, 투먼을 개발개방의 선도구로 삼고, 두만강에 입각해 동북아 지향('창-지-투' 개발 제시)

11월 30일 북한, 화폐개혁 단행

11월 **FAO,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방지협정 채택**[610]
- IUU 어업근절을 위한 항구국의 조치 규정

12월 8~10일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 방문 및 귀환
* "회담 유익했다"

12월 1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나선대흥무역회사(수산물 가공공장) 현지지도**
- 1991년 나선지 경제자유무역지대 지정 이후 최초

12월 21일 북한, 서해 NLL 구역 일원에 해상사격훈련구역 선언

12월 **제23차 북·러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 남북: 북측 선박의 속초항 입항 허용

610) James Harrison, *Making the Law of the Sea*, p. 221.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2010년대

개 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 관계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침몰 사건 및 동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천안함 피격침몰 사건에 대한 우리측 대응으로 취해진 5.24조치는 과거 남북 교류협력의 기본이자 상당 내용을 포함했던 해양수산 분야협력의 전면 중단을 의미했다. 우선 제주해협을 포함 남북해운합의서와 그 부속서를 통해 허용됐던 북한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가 불허되었으며, 남북 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북한산 수산물 반입이 금지됐다.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후계 체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한편, 경제협력 및 북한 경제개발의 중심축을 남북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0년 9월 44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해 김정은을 신설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권력 후계의 시동을 걸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2012년 4월 북한은 다시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잇달아 열어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선출해 후계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2013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로서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의 일익을 담당했던 장성택이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처형될 때까지 북한의 최대 경협 파트너로 중국이 떠올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시켰다. 2004년 시작한 중국 어선의 동해입어 규모는 2010년대 초반 급격히 확대되었고, 2012년 8월에는 나선특구 및 황금평의 공동개발을 본격화하여 중국초상국집단 등 중국 기업들이 나진항 4~6호 부두개발 등 나선특구 개발을 위해 해당지역에 진출하기도 했다. 동년 9월에는 북·중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 공동으로 30억 위안 규모의 '북한투자전문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는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376km의 고속철 사업 및 북한 항만 개발 사업이 포함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하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복원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남한의 노력은 난관에 부딪쳤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2년 12월과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과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3월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종업원 전원을 철수시킴으로서 공단 가동을 중단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남북 당국자간 개성공단 재개 합의까지는 꼬박 4개월이 걸렸다.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를 통해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을 발표하고, 동년 3월 독일을 국빈방문 중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 '동질성 회복' 등 3대 과제를 위한 협력을 북한에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초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 또는 강한 비난을 표명하면서 우리측 제의에 불응했으며, 남북 관계 경색 및 북중 관계 소원의 공백을 대 러시아 접근을 통해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4월 북한 로두철 부총리와 러시아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지역 대통령 특사 회담을 통해 북·러 두나라는 2020년까지 무역량을 연각 1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러시아 연방의회는 북한의 채무 110억 달러의 90%를 탕감하는 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동년 10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알렉산더 갈루쉬카 장관이 북한을 방북해 협력 방안을 협의했으며, 동년 11월 최룡해가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공업·농업·교통운수 등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강화를 협의했다.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해양수산 분야에서 남북한간 어떠한 형식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없었던 반면, 2014년 말부터 나진-하산 시범물류 사업을 매개로 남-북-러 3각 협력 방식의 간접적인 협력이 시도되었다. 2014년 제1차 시범사업에서는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 4만5백 톤이 북측 나진항 3호부두를 경유해 남측 포항항에 시범적으로 운송된 바 있다. 2015년 4월에는 약 12만 톤의 러시아산 석탄이 역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해 나진항으로 수송된 뒤 다시 남측의 당진항, 광양항, 보령항 등으로 시험 수송됐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중국 백두산 부근에서 생산되는 농심 백산수 170톤이 컨테이너에 실려 육로 운송후,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으로 시험 수송되기도 했다.

2010년대 초반 5년은 크게 북한 김정은 후계 체제의 공고화 및 북핵 문제, 남한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중시 입장 등이 대립해 2000년대 이룩했던 화해·협력의 기반이 상당 부분 붕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수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해양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나선특구 개발 및 경제개발구 건설을 추진했으나, 남북기본합의 체제라는 제도적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남북한간 실질적인 협력은 추진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북한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천안함 사건 / 연평도포격/ 북한, 김정은 후계작업 공식화

1월 15일 북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발표(조선 중앙통신)

1월 20일 북한,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경제개발 및 투자유치 목적으로 **조선대풍국제그룹과 국가개발은행** 설립[611]

1월 27일 북한, 서해 NLL 북쪽으로 포사격(~1. 29). 아군 경고 사격

1월 2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경남도 흥남대흥수산기업소와 서중수산사업소 현지지도**[612]

1월 중국 훈춘촹리유한공사,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 국내 화물의 초국경 우회 운송(中外中)을 시작

2월 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의 함경남도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 시찰 보도**

2월 19일 북한, 동해·서해 NLL 북측 수역을 해상 사격 구역으로 설정(2월 22일까지)

3월 15일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세금감면 범위 확대
- 이전까지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1999년, 2005년, 2007년 등 3차에 걸쳐 개정됨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한국 초계함 천안함(1,200t) 침몰('천안함 사건')
- 정부 공식 명칭은 '천안함 피격 사건'
-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PCC-772)가 침몰, 해군 장병 40명 사망, 6명 실종
- 이후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된 것으로 발표

4월 **중국원양어업협회, 북한의 조선공동어획협회와 '조선동부해역어획합작협정' 체결**
- **양 기구를 통하지 않은 기타 어업의 동해수역 출어를 불법화**[613]

5월 3~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지미 카터의 북한 방문 기간 중 진행**
- **체제지원 획득과 외교적 고립 타개 목적**
- **베이징, 다롄, 심양, 톈진(빈하이 신구) 등 방문**
- **김정일, 원자바오에 중국측 기업의 투자 요청**

611) 임강택 외,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0, 192~193 참조. 조선대풍국제그룹 조직도 제시.

612) 정확한 날짜 미상(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즉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함).

613) 이는 2013년 중국 농업부의 유관부문이 동년 5월 29일 밝힌 내용으로서 정확한 협정 체결일은 명시되지 않고 다만 2010년 4월 체결로 나와 있음. 중국 사이트 '투자조선' 웹사이트를 통해 보도된 것임.

5월 4일 북한, 금강산관광단지 내 부동산 동결

5월 24일 이명박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정부, 천안함 피폭에 대해 5.24조치
- 제주해협 포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북한산 수산물 반입 금지 조치 포함[614]

5월 제2차 미중전략경제대화

6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2기 3차 회의
- 내각 총리를 김영일에서 최영림으로 교체
- 국방위원회 장성택을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당 행정부장 직 유지)

6월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간석지 개간역사상 제일 큰 8800정보의 **대계도간석지 건설 완공**" 발표

7월 5일 북한 수산성 어업대표단, 중국 황해연구소 방문
- 수산성 대외경제합작국장 정용호 등 4명이 FAO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황해연구소를 방문해 양식 기술 등 북한 수산업 지원 방안을 협의[615]

7월 1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계도 간석지 및 압록강수산사업소 축양장 및 굴 양식장 방문**

7월 29일 북한 나진항 1호부두 사용권 얻은 중국 촹리그룹, 훈춘 생산 석탄을 상하이로 첫 운송

7월 **중국 다롄 및 단둥 소속 어선 250여 척, 북한 나진 및 청진에서 오징어 조업**[616]

7월 **한·러 IUU 어업방지 협정 체결**

7월 북한, 내각 무역성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확대 개편

8월 15일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러시아측 대표 빅토르 바르사긴 지역개발부장관 평양 방문(경협 지속 및 5차 회담 개최 합의)
- 제5차는 2009년 5월 예정이었으나 북핵 실험으로 연기

8월 26~3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동북 지역) 방문(제6차 방중)
- **장춘 등을 둘러보며 경제지원 획득에 주력**
- **북중간 경협 원칙을 정부 주도로 수정**

8월 27일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장춘 정상회담)
-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를 이은 우호" 강조

---

614)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동일부, 2010. 5. 24.

615) "朝鲜渔业代表团到黄海所参观访问," 中國黃海研究所(http://www.ysfri.ac.cn/Newshow.asp-showid=1841&signid=16.htm)

616) 중앙일보, 2010. 7. 15.

9월 23일 북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내각 부총리에 임명

9월 28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
- 제2차 당대표자회 개최 이후 44년 만에 개최

10월 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폐막 후 미국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확장 억지력 제공' 재확인

10월 9일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 서명 대표: 중국측 왕자루이, 랴오닝성 진희 부서기, 헤이룽장성 두우신 부서기 등

11월 23일 **북한 연평도 포격(민간인 2명 사망) 사건 발생**
- 경위: 국군은 포사격 훈련 중이었으며 11월 23일 북측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포사격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할 경고" 내용의 통지문 보냈으나 국방부는 훈련중단 경고에 불응,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 포사격 훈련 종료 후인 14시 34분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포, 130mm 대구경포 등을 동원, 연평도 군부대 및 민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함
- 피해: 해병대원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 민간인 3명 및 해병대원 16명 중경상, 주택 12동 대파, 25동은 화재 등
- 북한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장 김영철과 4군단장 김격식 책임자로 지목됨

11월 19일 북·중, 나선특구 및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 협정 체결[617]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 중국 상무부와 체결[618]
- 제1차 북중공동지도위원회 개최

12월 1일 미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 NYT에 "Drawing a Line in the Water" 기고, NLL을 현재보다 남쪽으로 재획정 주장

12월 31일 북·중, 중국 단둥시에서 '신압록강대교' 착공식 개최
- 2009년 10월 김정일-원자바오 회담시 합의한 사업
- 양측 대표: 북한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 단장, 중국 리성림 교통운수부장 등[619]

12월 북·중,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작성 및 비준

* 북·중: 중국이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 부두에 대해 북한이 '도문(투먼) 부두'로 명명한 것으로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짐[620]

---

617) 국내에는 2010년 12월 공동개발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일성종합대학 강정남 부교수**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월 19일 체결된 것으로 확인됨.

618) 박형중 외,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1, p. 83.

619) "중북 신압록강대교 착공식 개최," 주간북한동향, 2010. 12.

620) "투먼시 관계자 북 청진항 합작에 적극적… 12월 운항", 연합뉴스, 2010. 10. 11.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은 2009년 7월 청진항 3, 4호 부두에 대한 사용권 확보(연변 하이화무역공사).

2011년 미·중 공동성명 / 6자회담 재개 움직임 / 북한 동해수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월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 채택 및 국가경제개발총국 설립 보도
-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
- 하부구조 건설
- 계획에 따른 실행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

1월 1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협력 강조한 1.19 공동성명 발표

2월 8일 남북,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

2월 19일 북한 림경만 조선로동당 중앙위 위원(나선시 책임비서, 전 무역상), 북러무역경제협력위원회 참석차 모스크바 방문(경협 논의)[621]

3월 28~29일 북한 외무성 리 근(미국국장), 미국 전직 당국자들과 '트랙 II' 토론회

3월 북·중,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지도위원회 설립 합의서」 체결

4월 26일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평양 방문
- 같은 날 중국 우다웨이 서울 방문

5월 10~11일 미·중 제3차 전략경제대화

5월 1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정보기관 대외정보국 미하일 프라드코프 국장 접견
- 6자 회담재개 관련

5월 20~2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베이징 및 동북 지방 시찰**
-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지원 및 정당성 획득이 주요 목표**

5월 3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정령 1673호)
- 범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삼일포, 해금강 및 내금강, 통천군
- 성격 :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대체
- 구성: 통천 자유경제무역개발구, 온천리조트 개발 등[622]
- 당초 북한 제시 '원산-금강산 개발 계획도'[623]

---

621) The Voice of Russia, 2011. 2. 19.

622) 좀 더 상세한 내용은 2011년 9월 26일 자 조선신보 등 참조.

623) 통일뉴스 및 박성준, 『금강산 특구와 연계한 해양기반 남북 경제협력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 이와 함께 2002년 11월 13일 채택된 「금강산관광지구법」폐지

6월 2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비밀접촉 폭로**

6월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관련 정령 발표**

6월 8일 **북·중, 황금평 경제특구 착공식**

- 참석 대표: 북한 장성택(당 행정부장 및 국방위 부위원장), 리 철(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 리만건(평북도당 책임비서), 중국측 천더밍(상무부장) 등

6월 9일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 법규제정과 관련한 보충협정 체결**[624]

- **제2차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6월 10일 **나선특구 착공식 (나진항)**

- 북·중공동지도위원회 주최,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지린성 인민정부 주관
- 정확히는 나진-훈춘간 도로포장 착공식(장성택, 리철, 천더밍 상무부장 일행 등)[625]
- 나선특구 공동개발의 일환으로 북한 원정리-나진항 간 53km 구간의 도로 포장공사 착공식 개최(중국측 훈춘-취안허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 예정)

6월 15일 **국방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 국군 합동참모본부 직할의 합동 사령부로 창설 목적은 서해 5개 도서 방어

6월 30일 **중국 산둥성 셔우캉 시, 북한 동해 출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강화 내용의 통지**[626]

- 교육 선전 강화, 항구 감독 강화, 법규위반 어선처벌 강화

7월 5일 **북한 수산성 대외경제합작국 국장 정용호 등 대표단, 중국 황해수산연구소 방문**[627]

7월 22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남측-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측-리용호 외무성 부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접촉(제1차 남북 비핵화회담)**

7월 28~29일 제1차 북미 고위급 회담

- 회담 장소: 미국 뉴욕
- 회담 대표: 북측-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측-스티븐 보즈워스
- 김계관 일행은 7월 27일 뉴욕 도착

8월 4~8일 **중국 해군 북해함대 원산항 방문**

- 방문 함정: 훈련함 정허호 및 호위함 뤄양호

---

624) "라선경제무역지대법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강정남(김일성종합대), 「신시기도문강구역국제합작정치환경」, 2013. 10.,

625) "황금평 착공식 개최...장성택, 천더밍 참여," YTN, 2011. 6. 9.

626) 허가 없이 출어하거나 불법 조업하는 행위를 대상, 교육강화 항구관리 강화 등 내용. 산둥성 어업국의 2011년 6월 30일 자 통지(중문)를 참조.

627) 중국 황해수산연구소 www.ysfri.ac.cn, 2011. 7. 5. 이 때 북측 정용호는 리지엔 부소장에게 FAO의 국제협력기금의 북한 제공을 통과되도록 중국이 힘써준 데 대해 감사 표시.

8월 20~2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및 중국 방문

- 부레야 수력발전소 등 시찰
- 8월 24일, 울란우데 정상회담
-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협의

8월 30~9월 2일

북한, 해상을 통한 나선-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 주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가관광총국, 나선시인민위원회, 조선대풍투자그룹
- 참가자: 중국 연변자치주 인민정부 부주장, 옌지 투먼 훈춘시 정부 관광사업 관계자, 중국측 여행사 관계자, 기업가, 투자가 및 일반 관광객 1백 여명, 미국 일본 등 외신 기자 약 30명
- 주요 일정: 나진항 출발-장전항-금강산(구룡폭포, 삼일포, 해금강 등)[628]

9월 19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9월 21일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베이징 장안구락부)

10월 24~25일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스위스 제네바)

- 미국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 글린 데이비스도 동참

11월 1일 한국, 러시아 수역 명태 조업쿼터 추가 1만 톤 확보

- 제20차 한러어업위원회(2010. 12) 합의사항 이행 실무회의
- 한국 요구에 의해 확보(총 5만 1천의 명태쿼터 확보-2002년 이래 최대)

12월 7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미 신임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면담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오전 8시30분 중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

12월 22일 북·러, IUU 어업방지 협정에 서명

- 해양생물 자원 어획 타당성 담보 및 확인, 수출 증명서 발행과 검사제도 등 주요 내용
- 러시아 극동 수역의 대게 어획량 등

12월 2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12월 31일 북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발표

628) 조선신보, 2011. 9. 7.

2012년 김정은 시대 개막 / 북중 나선특구 개발 본격화

1월 12일 북한 조선로동당 정치국 결정으로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2.16)로 제정 발표

1월 22일 북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주요 내용: "지난해 경제계획 수행총화와 올해 공동사설 제시 과업(경공업, 농업 및 인민생활 향상) 토의"

1월 30일 **북·러,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정부간 협정 체결(모스크바)**
- 서명 대표: **북한 박태원 수산상, 러시아 안드레이 크라이니 수산청장**
- 해양 생물자원의 무역과 관련, 원산지 증명 확인
- 해양생물 보전 및 어선에 관한 정보 교환 포함.[629]
- 특히 **캄차카해** 등에서의 대게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것.[630]

1월 30일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 등 수정보충 사실 보도

1월 북한, 대풍그룹을 합영투자위원회 산하에 흡수통합

2월 16일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명
- "김일성·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고..."

2월 23~24일 3차 북·미 고위급 접촉(베이징)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및 김정은 체제 이후 최초 북미 고위급 접촉
- 접촉 대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미국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월 29일 북한, 북·미 대화에서 핵 활동 및 미사일 시험 중단 합의('2.29 합의')
- 미국, 식량 24만 톤 지원 약속

3월 16일 북한, 광명성 3호를 4월 12일과 16일 사이 발사한다고 공표

3월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인민군대표회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4월 있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 발표(김정각)

4월 6일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4.6 노작') 발표
- 4월 19일 노동신문 통해 공개
- 당의 유일적 체제 강조, 김정일의 총대중시사상 및 선군혁명 사상, 선군정치 이론 심화발전 강조,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강조, 내각의 경제사령

629) 일본 언론 보도(2012. 1. 31) 참조.

630) http://www.sustainablefish.org/fisheries-improvement/crabs/russian-far-east-crabs 2012년 6월 21일.

부화(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다짐

4월 8일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랴오닝성 선적 소속 선박 3척 불법어업 혐의 나포**
- 랴오단23979, 랴오단23528, 랴오단23536

4월 11일 **북한 제4차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소집,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
-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 남한: 총선 실시

4월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및 김정은 제1비서 취임 기념**

4월 15일 북한, 대규모 군 열병식(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 김정은 제1위원장 첫 공개 연설

4월 27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631],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전달('4.27 노작')[632]

4월 **북한, 수산물 수출 금지 결정(조선로동당 중앙 내부회의)**[633]

5월 3일 북한, 함남 단천항 준공식 보도
- 최영림 내각총리, 곽범기 당 계획재정부장, 로두철 국가계획위원장, 강종관 육해운상 등 참석

5월 중국, "북한 주민 2만 명에 직업 비자 발급" 보도[634]

6월 26일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회견 통해 나선 및 황금평 관련 북중 협력 순조롭게 진행중 발표[635]

6월 27일 **중국 농업부, 북한 동해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관리 강화 통지**
- 북한 동해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의한 과잉어업 및 불법어업 등이 양국간 문제가 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 조업 관리 방침

6월 28일 **북한 '6.28 새 경제관리조치'**

---

631) 김정은은 이후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겸직하지만, 이하에서는 '제1위원장'으로 통일해서 표기.

632) 노동신문, 5월 19일 자에 관련 보도와 함께 전문 게재.

633)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일체 식량은 물론이고 수산물과 과일 등 식품 수출을 금지하고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라" 지시 및 당중앙 내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사)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454호) 인용, 연합뉴스, 중앙일보 보도.

634) 런민르바오 인터넷 영문판, 조선일보 인용 보도(2012. 5. 28).

635) 이는 일본의 교도통신이 황금평 공동개발이 지체되고 있다는 데 대한 중국측 공식 반응. 런민르바오, 2012년 6월 27일 보도.

- 요지: 협동농장에 포전담당제 등 시장요소 도입, 기업자율권 확대
- 농업 부문에서 개인 경작지 확대(기존 30~50평을 400평까지로 확대) 및 개인영농제(포전제) 시범 실시[636]

7월 15일 북한, 조선로동당 정치국회의 통해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를 전격 해임
- 선군 정치 중심에서 당-정-군 균형 및 역할 분담 체제로 전환

7월 17일 북한 인민군 현영철 대장, 차수 승진[637]

7월 17일 **중국 오징어잡이 어선 2척, 러시아 극동 연해주 EEZ 침범 혐의로 나포.**
- 러시아 연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드제르진스키호 경고 사격 및 도주저지 사격[638]

7월 18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에 원수 칭호
-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 '중대보도' 형식

7월 25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결혼 사실과 함께 부인 리설주 공개

8월 13~18일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 중국 방문
- **8월 14일, 중국 천더밍 상무부장과 나선 및 황금평 공동개발을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합의**(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설립및운영에 관한 합의서)[639]
- 8월 17일 후진타오, 원자바오 면담
-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총계획」, 「라진항지구개발총계획」, 「선봉백학지구개발총계획」 등 3건 비준교환[640](홍콩초상국집단 등 중국측 6개 기업 투자확정)[641]

9월 22일 북-중 고위급 회담 개최
- 양국 공동으로 30억 위안 규모 '대북투자전문기금' 조성 계획 발표 (투자기금 10억 위안을 광업, 부동산 개발, **항만 개발**에 우선투입할 것을 밝힘)
- 3대 투자유형(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농업) 제시(인프라 사업에는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376km 고속철 사업**도 포함)[642]

9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소집
- 2012년 4월 개최 후 두 번째의 이례적 사건(통상 1년에 한번 열림)

---

636) 포전제는 김정일 시대인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도입되었으나 2006년 이후 폐지되었던 것을 부활시킨 것임.

637) 현영철 차수는 그 뒤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됐다가 2015년 5월 반역죄로 처형된 것으로 국정원을 통해 알려짐.

638) 런민르바오 인터넷 영문판, 2012. 7. 18 보도(리아 노보스티 보도 인용).

639) 강정남, "라선경제무역지대법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2013. 10.

640) 강정남, "라선경제무역지대법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2013. 10.

641) 북중간 경제기술협조 협정, 라선 항구 및 산업구 투자 기본합의서, 황금평관리위원회 설립양해각서, 황금평기초시설 건설 공정설계 양해각서 등 체결. 한편 리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이 장성택을 수행해 참석. 리용하는 2013년 11~12월 중 장성택에 앞서 공개 처형당함.

642) 이재, "중국, 대북투자 본격화...리스크도 존재," 북한경제정보, 2012. 11. 14.

9월 29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NLL은 유령선" 입장 재확인

11월 8~14일 중국, 제18차 당대회(18전)

- 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 리커창, 장더쟝, 위정셩,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등 7인[643] (전 후진타오 체제 때의 9인 상무위원에서 7인으로 축소)

11월 북한 장성택,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취임

- 조선로동당 김기남 비서 등 당 정 군 고위 간부들은 체육지도위원

12월 12일 **북한, 전격적으로 장거리로켓 발사시험(평북 동창리)**

- **3단계 로켓, 인공위성은 궤도 진입에 성공**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 즈음**
- **12월 19일 한국 대통령 선거**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밝혀짐[644]

- 최룡해는 2012년 4월 차수 승진과 함께 총정치국장에 기용됨

12월 북한 어선의 조업 중 조난사고 기록

-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 인근 바다에서 동해 오징어 조업 중
- 30척 이상 소형 어선 출어, 선원 122명 실종[645]

643) 5세대 지도자와 4.5세대 지도자로 구성됨. 시진핑의 은퇴 예상 연도는 2022년.

644) 이용수, "실세 최룡해 밀어내고 김정은 옆에 선 인물은 누구?" 조선일보, 2012. 12. 17.

645) 데일리 NK 기사(2012. 12, 18). 어선의 낙후성 및 무리한 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

2013년 북한 3차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북한 경제개발구법 채택 / 북한 장성택 처형

1월 7일 북한 로동신문,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정론에서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 시기 '쪽잠과 궤기밥'으로 이어가며 북한 인민과 고락을 함께 했다고 주장[646]

1월 7일 빌 리처드슨(미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구글회장) 북한 방문

1월 8일 북한, 김정은 생일 맞아 어린이들에게 간식 선물

1월 22일 북한, 내각 전원확대 회의
- 2012년 경제계획 수행총화와 올해 공동사설 등에 제시된 과업에 대해 토의

1월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2087호 채택(현지 시간 1월 22일)**

2월 7일 중국 인터넷 사이트 투자조선, 나선 특구에 중화상업은행 설립 인가 보도[647]
- 중국 훈춘신문 인용 보도

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
-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
- **지진파 분석 결과, 지진 규모 4.9, 위력 6~7kt 규모로 분석**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천명

3월 7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2094호 채택**
- 2월 12일 3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결의안 1718, 1874, 2087호 위반에 대한 우려 표명)

3월 11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황해도 룡정 양어장 현지지도**[648]

3월 27일 북한,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된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3월 30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북한)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3월 31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3월 전원회의')**
-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도[649]
-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 시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

---

646) 윤일건, "북 김정은도 '쪽잠과 궤기밥'...대 이은 우상화 표현," 연합뉴스, 2013. 1. 7.

647) www.idprkorea.com (2013. 2. 7)

648) "북러 수산대표단 양식장 교차 방문," 라디오프리아시아, 2013. 8. 2.

649) "김정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 전문," 조선중앙통신, 2013. 4. 1.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Online Series CO 13-11, 2013에서 재인용.

- **국가우주개발국 창설 결정**
-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4.1 핵보유 법령'**) 채택(최고인민회의)

3월 러시아, 「2025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
- 새로운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및 네트워크의 대규모 건설로 광역 인프라 구조의 선행적 발전, 극동 바이칼 지역과 아태지역 국가들(남북한, 중, 일 등) 간의 현저한 증대 등을 포함[650]

4월 1일 북한, 새 내각총리에 박봉주(전 당 경공업부장) 임명[651]

4월 1일 북한 로동신문, 사설(「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통해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며 마련한 강력한 핵억제력은 나라의 자주적 존엄을 고수하고 강성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 주장[652]

4월 8일 북한 조선로동당 통전부장 **김양건**, 개성 공단 방문 '개성공단 종업원 전원 철수' 담화
- 개성공단 123개 입주 기업들 긴급 전체 회의.
-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개성공단 조성 및 공장 설립에 1조원 투자

4월 9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전원 불출근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제의

4월 25일 정부, 개성공단 사태 해결 위한 실무회담 개최 제의

4월 26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개성공단 실무회담 거부

4월 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국민 보호 위해 잔류 인원 전원 귀환 결정" 정부 성명

5월 5일 **북한, 동해수역 조업 중인 중국 어선 나포 (벌금 97,800 달러 부과)**[653]

5월 14~17일 일본 관방참여 이지마 히사오[654] 방북
- 표면적인 방북 이유는 '납치 문제 해결'(김영일 국제담당 비서 및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 회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
- 남한 정부, 대북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는 요지의 성명 발표

---

650) 자세한 내용은 성원용 외,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62~68쪽 참조.

651) 2003년 총리에 기용됐다가 2007년 봄 해임.

652) 조선로동신문, 2013. 4. 1.

653) "China Bans Its Fishing Fleet from Waters off Eastern North Korea," Bloomberg, July 8, 2013.

654) 고이즈미의 보좌관임.

5월 22일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방중**
- **한반도 긴장 고조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대북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정세 변화를 꾀하고,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됨**[655]

5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경제개발구법 정령** 채택(6월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의함
- 지방급 경제개발구 및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
-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는 법 적용 제외
- 만포경제개발구(자강도), 어랑농업개발구(함북) 등 총 13개
- 하부구조건설 부문 및 첨단과학기술 부문 투자 장려[656]

6월 6일 북한 조평통, 개성공단·금강산·이산가족·6.15 등을 의제로 한 남북대화 제의(특별담화)

6월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6월 12일 서울 장관급 회담 제의 (북한 제의에 따른 역제의)

6월 7일 **북한 신의주 특구 착공식 보도**
- **신의주-개성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포함
- 홍콩 대중화그룹(회장 황스짜이)과 북측 조선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광근) 공동개발 논의[657]

6월 9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집)
- 대표: 남측- 천해성통일정책실장, 북측- 김성혜 조평통 부장

6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 무산
- 북측, 남측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회담 대표단 명단 거부

6월 16일 북한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 형식으로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
- 회담 의제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658]

6월 27~30일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과 회담
- 시안[659] 방문, 진시황릉 병마용 관람

---

655) "북 최룡해 방중, 한반도 긴장완화 가능성...개성공단은" 동아일보, 2013. 5. 22.

656) 이상 '북 경제개발구법 제정...경제특구 확대 추진' 연합뉴스, 2013. 5. 18.

657) 이상 김치관, "북, 신의주특구 착공식 임박," 통일뉴스, 2013. 6. 7. 시사N 인용.

658) "북, 고위급 북미회담 전격 제안...미 '말보다 행동'" 연합뉴스, 2013. 6. 17.

659) 시안은 시진핑이 중국 혁명 원로로서 문혁 당시 숙청된 아버지 시중쉰과 함께 7년을 보낸 정치적 고향임.

6월 28일 중국 농업부 어업국, 북한 동해수역에서 자국내 어선의 조업 금지[660]
- 배경: 북한이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중유를 중국 어선에 되팔기 위해 이전까지 중국 어선단이 자체 조달하던 연료유를 북한이 일괄 공급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치

6월 북한 당국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 경제건설 구호로 '마식령 속도' 제창(로동신문, 6월 13일 자)

7월 6일 남북,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 남측-서호(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661]

7월 10일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논의 위한 2차 실무회담(개성공단)
- 개성공단 내 남측 물자의 반출 허용에 합의

7월 16일 표류 북한 어선, 러시아 함정에 구조[662]
- 동해상에 표류 중,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보급함에 의해 구조(나호트카항으로 예인)

7월 25일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
- 결정적인 결렬원인은 재발방지 관련(북측 합의서안은 일부 양보 형식,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재개조건으로 공동책임, 공동담보 입장 고수).[663]

7월 말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북한을 방문한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면담
- 3차 핵실험 및 한반도 전면전 위협에 대해 유감 표명
- 리 부주석의 숙소를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짐 (북중 관계 복원 노력)

7월 러시아 수산 대표단, 북한 방문 및 북한 양식시설 시찰
- 주요 시찰 시설: 원산 연어부화장, 북청 송어양식장, 평양메기공장 등[664]

8월 7일 북한, 개성공단 협상 재개 표명 및 실무회담 재개 제의(8월 14일)

8월 16일 남북 개성공단 재개 합의
-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234개 업체 피해액은 1조566억원으로 신고됨

8월 23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갖기로 합의(기간: 9월 25~30일)

9월 17일 북한 조선중앙방송,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발표[665]
- 조선경제개발협회: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서비스 제공 기능 민간기구[666]

---

660) "China Bans Its Fishing Fleet from Waters off Eastern North Korea," *Bloomberg*, July 8, 2013; 중국,"자국어선 북한 동해 조업 금지는 대북 제재," 노컷뉴스, 2013. 7. 12.

661) 2013년 7월 13일 자로 남측 대표는 김기웅 정세분석국장으로 교체(7월 12일 자 보도).

662) "표류 북한 어선 러시아 함정에 구조," 자유아시아방송, 2013. 7. 16.

663) 연합뉴스, 2013. 7. 25. 북한이 공개한 남북당국실무회담합의서(안)가 실려 있음.

664) "북러 수산대표단 양식장 교차 방문," 라디오프리아시아, 2013. 8. 2.

665) "북 '김정은식 경제개발 시스템' 속속 구축...성과는." 연합뉴스, 2013. 10. 17.

9월 21일 러시아 선적 7백톤 급 어선 '알타이'호 북한 경비함에 피격
- 새벽 1시경 동해 공해상에서 어획물 15톤 싣고 동해항으로 향하던 중

9월 22일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완료 및 개통식[667]
- 1435mm 표준궤와 1520mm 광궤의 혼합선, 교량 18개, 수체관 12개, 터널 3개(총 연장 4.5km)
- 현대적인 신호, 련동(연동), 폐색설비 설치

10월 16일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중심으로 **경제특구 관련 대규모 국제 세미나 개최**
-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국제 토론회 개최. 리철석 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와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각국 경제 전문가 참가[668]

11월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압록강경제개발구 등 경제개발구 13개 공식 확정 보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1월 중국 나선특구(나진항) 투자회사 쟈오상쥐(초상국)집단, 나선특구 철수 발표

12월 4일 북한 장성택 실각설 보도
- 측근 2명(리용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 및 장수길 부부장) 공개 처형

12월 8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도중 장성택 체포
- 북한 조선인민군 호위사령부 군인에 의해 체포
- 체포 명분: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12월 12일 북한, 장성택 처형
-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및 국가전복음모 혐의('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 행위')

12월 16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제313군 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 현지지도

12월 26일 북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대회 개최 (북한 건군 이래 최초)

12월 31일 북한 김정일 제1위원장,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 시찰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강석주, 김양건, 한광상, 전일춘,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마원춘, 박명철 수행

666) "국내 단위와 외국기업들의 연계를 실현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연구 토론회와 투자 설명회 등 특수경제지대 개발에 관한 소개 및 선전 사업 진행"(조선신보 보도 내용을 CBS노컷뉴스가 인용 보도. 2013. 11. 29).

667) 2015년 4월 현지 방문 일본 NTV 기자가 입수한 북한 자료.

668) "북한, 경제특구 개발 위한 민간단체 '조선경제개발협회' 출범," 연합뉴스, 2013. 10. 16.

2014년 북한 수산물 증산 독려 / 북일 관계 개선조짐 / 북러 관계 진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신년사**[669]에서 수산부문 발전 및 해양자원 보호 강조

-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 관철하여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 전투를 힘있게 벌여 포구마다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닷가 양식도 대대적으로 해야..."**
-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통해 "통일은 대박" 발언[670]

-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1월 7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인민군 제534군부대 수산물 냉동시설 시찰**

- **수산물 공급 수산사업소 건설 지시**
- **2012년 수산물 수출액은 1억240만 달러(KOTRA)**[671]

2월 12일 남북 고위급 접촉

- 회담 장소: 판문점 평화의 집
- 남측: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수석대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배광복 통일부회담기획부장, 손재락 총리실 정책관, 김도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 북측: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단장), 리선권 국방위 서기실 정책부장, 박기용 인민군 대좌,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

2월 20~22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1차). 금강산호텔

2월 23~2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2차)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경제혁신3개년 계획) 및 **통일준비위원회** 구상 발표

---

669) 2012년까지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형태로 신년사를 발표. 2013년부터 김일성 시대처럼 김정은의 신년사로 대신함

670)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671) 연합뉴스 인용 보도, 전년대비 23.0% 증가.

- 취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 모색

3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중 드레스덴 선언**
-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
- 보건복지, 농어업, 산림녹화, 교통물류 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안

3월 **북한 나진항 3호 부두의 수력구조물과 야적장 구역 개건공사 완공**[672]
- **나선국제짐합수송합영회사 전용부두 운영 개시**

3월 러시아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 북한 방문, 경제개발 의정서 조인
- 서명 주체: 러시아 갈루시카 장관, 북한 리용남 대외무역상
-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천연 자원, 고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
- 러시아측 대표들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의향도 밝힘[673]

4월 12일 북한 국방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강하게 비난

4월 26일 캐나다 박경애 교수 등 방북 해외 경제전문가들, 북한 경제개발구 시찰[674]
- 주요 시찰 지역: 청진, 어랑(함북), 남포, 신평(황북), 원산 경제개발구 및 나선특구

4월 29일 **북한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러시아 유리 투르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지역 대통령 특사 회담**[675]
- **양국간 결제방식을 루블화로 대체하는 방안에 합의**
- **한편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리용남 무역상은 경제개발 의정서에 서명**
  무역량을 2020년까지 연간 1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
- **같은 날, 북한 차관 탕감 협약 비준안 통과(러시아 연방의회) 110억 달러**

5월 1일 북한, 황병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최룡해의 후임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사실 확인
- 황병서는 2013년 최룡해 다음으로 김정은을 많이 수행
- 최룡해는 조선로동당 비서로 임명됨

5월 1일 **북한, 1월8일수산사업소 완공**
- 1월8일은 김정은 생일

672) 2015년 4월 현지 방문 일본 NTV 기자가 입수한 북한 자료.

673) NKNews, "Russia signs economic development protocol with North Korea," April 3, 2014. http://www.nknews.org/2014/04/russia-signs-economic-development-protocol-with-n...

674) "UBC 박경애 교수, 지난해에 이어 북한 경제개발 토론회 진행," 중앙일보, 2014. 5. 16.

675) 이하의 내용은 "북-러 무역경제 협력 결제통화로 루블화 사용키로," 통일뉴스, 2014. 4. 30.

5월 2일 **북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제2회 북한 경제개발구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UBC)(박경애 교수) 및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공동 주관
- 민간투자 방식으로 BOT 방식 검토와 다국가 사례 소개(해외 참가자들)
- 캐나다 UBC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 일환

5월 3일 **북·중, 베이징에서 동해 북한수역 조업협정 체결**
- **동년 6월 중순~10월말까지 중국 어선 1100 척의 조업 허용**

5월 5일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 북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참관**
- 동 수산사업소는 군부대 소속, 원산 부근인 것으로 추정됨
- 당시 원산의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도 참관

5월 5일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의 소리,' "**나진항**에 출입하는 (러시아) 대형선박 안전확보와 국제어선 유치를 목적으로 (북-러) 양측이 러시아 함대의 나진항 주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 보도[676]

5월 5일 **북·러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6차회의(블라디보스톡)**
- 갈루시카 국동개발부 장관, 회담후 "러시아 차관 탕감조치 해결."
- 김책제철소 리모델링, 러시아의 북한 금광채굴 참여, **러시아 타이프사의** 북한 진출, **나진항 출입 대형선박 안전 확보와 국제어선 유치를 목적으로 예인선, 재급유선, 크레인선, 준설선을 포함하는 러시아 함대주둔 가능성 검토 등에 합의**[677]

5월 26~28일 북일 정부간 회담에서 납치자 문제 조사 합의(스웨덴 스톡홀름)
- 특별조사위 구성 합의. 인적 왕래 규제조치, 북한국적선박의 일본입항 금지조치 등 해제

5월 30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경제 관련 담화(「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발표('5.30 담화')**
-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 경영권 부여
- 농업부문 경영 단위의 축소 범위를 확대

6월 11일 **북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공식 발표**
-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등으로 구성[678]

6월 16일 **북한 어민, 동해 상 표류 중 남한 당국에 구조**
- 소형 오징어잡이 배. 정부 합동신문과정에서 남측에 귀순 의사 표시

---

676) 김성만, "중-러 '해상협력 2014'' 군사훈련이 주는 위협과 대책," KONASnet, 2014. 6. 7 보도.

677) "북한-러시아 대규모 경제교류 합의...내용은?" CBS노컷뉴스, 2014. 7. 21.

678) 5월 2일 경제개발전문가토론회에서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 발표. '북, 원산-금강산관광지대 공식 발표," 통일뉴스, 2014. 6. 12. 원래 '원산-금강산지구' 개념은 2011년 5월 금강산특구법 채택시 보임.

- 6월 13일 독도 동북쪽 60km 해상 침몰중인 북한 소형 어선 발견
- 5월 31일 울릉군 관음도 북방 0.8km 해상 엔진고장 표류 중 어선 선원 구조[679]

6월 17일 **북한 로동신문 '주목되는 동서해의 어황 전망' 통해 어획고 증가 전망[680]**
- 동해 곱사연어, 서해 꽃게잡이 철 연장 등 보도
- 서해의 경우, 몽금포 중심어장에서 집중적인 물고기잡이 전투 높은 생산실적 등[681]

6월 19일 **북한,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개칭**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6월 18일)[682]

6월 26일 **북한, 인민무력부장을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
- 김정은 체제 이후 4번째 인민무력부장 교체 (교체시기 6월 4일~6월 25일로 추정)

6월 27일 **북한 관영 매체, 박봉주 내각총리가 신포 원양어업연합기업소 시찰한 것으로 보도**

6월 29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원산 갈마식료공장 현지 지도[683]**
- 명랑젓, 창란젓, 말린 명태, 말린 낙지(오징어) 등 수산물 가공공장

6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를 국가경제개발위원회에 흡수(해체)**

7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정부간 회담 진행**
- 회담 대표: 북한 송일호(북일회담 담당대사), 일본 이하라 준이치(아시아대양주국장)[684]
- 북측, 납치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

7월 15일 **정부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국책연구 기관장 위원으로 참여

7월 18일 **북한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 공사 준공식**
- 북측: 전길수 철도상, 러측: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 사장
- 러시아측은 3호부두 준설 및 크레인용 레일설치 등에 모두 90억 루블(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주장

---

679) "북 어민 또 조난...무리한 수산물 확보탓." 2014. 6. 23.

680) "북 '올해 어황 전망 밝다'...수산업 증산 독려," 연합뉴스, 2014. 6. 17.

681) 통일뉴스가 노동신문 인용 보도.

682) "북 무역성 합투위 국가경제개발위 통합한 대외경제성 신설," 통일뉴스, 2014. 6. 19.

683) "김정은 제1위원장, 신설 갈마식료공장 시찰," 통일뉴스, 2014. 6. 29.

684) 통일뉴스가 조선신보를 인용 보도(2014. 7. 2).

7월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경제개발구 등 6곳 추가지정 보도[685]**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진도수출가공구(남포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평양), 청남공업개발구(평남), 숙천농업개발구(평남), 청수관광개발구(평북) 등

7월 25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통해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비난**
- 통준위 출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첫 공식 반응
- "민족을 전쟁의 재난 속에 빠뜨릴 체제통일 망상의 발로로서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을 일일천추로 열망하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우롱모독하는 정치협잡행위" 주장

7월 29일 **유엔,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운영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제재**
- 청천강호는 14,000dwt 화물선으로 2013년 7월 파나마에 의해 나포
- SA-2 지대공 미사일 체계 및 미그-21 엔진 등을 밀수
-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686]

8월 21일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 시 나카무라 가쓰지 시장, 나진항 시찰**
- 중국 지린성 훈춘시가 제의해 중국을 경유, 하루 일정으로 왕복[687]

9월 6일 **일본 조총련 의장 허경만, 일본의 대북 제재 이후 최초 평양 방문**
- 일본 지지통신 인용 보도 내용(2006년 최고인민회의 참석 이래 8년만의 방문)

10월 4일 **북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조선로동당 비서, 김양건 조선로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인천 방문**

10월 10일 **러시아 알렉산더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5일간 실무형식으로 북한 방문**

10월 15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 회담 대표: 남측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 및 북측 김영철 정찰총국장, 이선권 국방위 정책국장, 곽철휘 국방부 정책부국장 등

10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포베다(승리)' 프로젝트 가동**
-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11월 12일 **북한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 부총국장 윤영석[688], 경제개발구 소개 및 해외 투자자 관심 강조**
- "북한 해당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이나 투자가 사이의 합영기업 및 단독기업 설립 방식으로 개발사업 추진"

---

685) 매일경제, 2014. 7. 24. 및 조선일보 2014, 7. 25.

686) John Gallaher, "UN bans North Korean Vessel Fleet," IHS Maritime 360, July 29, 2014. 이에 앞서 싱가포르는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싱가포르 대리인 회사 친포해운을 형사 기소함. 이에 대한 간략한 기사는 "싱가포르, 북한 청천강호 연루 해운사 기소," 북한전략센터, 2014. 6. 11 참조.

687) "일 지자체 시장 방북...경제특구 라진항 시찰," 통일뉴스, 2014. 8. 22.

688) 윤영석은 당초 합영투자위원회 소속이었으나 합영투자위원회 해체와 더불어 국가경제개발총국으로 자리를 옮김.

11월 17~24일 **북한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 방문**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로광철 조선인민군 부참모장, 리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등 수행
- "오랜 친선협조의 전통" "두 나라 사이의 호혜적인 협조 적극 탐구" 등 강조
- 11월 18일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 면담, 김정은 친서 전달
- 11월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상과 회담(전승절 경축행사 성대히 조직)
-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회담**
- 최룡해 특사 일행 21일부터 하바롭스크주 및 연해주 방문
  (공업, 농업, 임업, **교통운수**, 체육, 문화 등 지역간 협조와 교류 강화 논의)

11월 24일 **제1차 나진-하산 시범물류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탄 4만5백톤 TSR 경유, 북한 나진항 도착**

- 화주: 포스코, 나진항 출발: 11월 27일. 포항 신항 도착: 12월 1일 오전

11월 27일 **북한 어선, 일본측 동해 (노도반도 북서 약 370km 지점의 일본 EEZ 부근 조업**

- 일본 수산청 및 해상보안청은 2011년 15척, 2012년 80척, 2013년 110척에 이어 2014년 1월~11월까지 총 400척이 조업한 것으로 확인[689]

12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평양 메기공장 현지지도**(12. 23 중통. 일시 미상)[690]

- "평양 메기공장을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꾸리는 것이 당의 결심."
- "물 온도 보장이 중요...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버림물 이용률을 높일 것...태양열 물 가열기를 받아들일 것" 지시
- "농산, 축산에 힘을 넣으며 바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함께 양어사업을 벌림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써온 김일성과 김정일의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689)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 인용.

690) 이하의 내용은 월간 북한동향, 12월호 참조.

2015년

1월 3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신년사**
-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 위력' 등 3대 정책 방향 제시
-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 주장
- 경제 분야에서는 농축수산을 3대축으로 식생활 수준 높일 것 주문
-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및 '우리 기술, 우리 자원의 활용' 강조

1월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13개 경제개발구 개발총계획 작성**[691](1.14 중통 보도)
- 경제개발구(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 공업개발구(흥남, 현동, 위원), 관광개발구(온성섬, 신평), 수출가공구(송림, 와우도), 농업개발구(어랑, 북청)
- 건물, 도로건설 및 전기, 통신 보장 등을 반영

2월 12일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한 공동구호 발표**
- 경제사회 분야: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현시기 우리 당의 중요한 과업"
- 그 외 **원산항의 세계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경제개발구사업 적극 추진 등[692]
- 2월 10일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결정서 채택(농, 축, 수산 동일)의 연장선

3월 7일 **북한 내각,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산림복구를 힘 있게 벌이기 위한 결정」 채택**
- 산림조성 10개년 전망계획에 맞게 자재 설비 자금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을 통해 계획화
- 임업성, 농업성 및 국가계획위원회 등과의 협력 강조

3월 14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5월27일 수산사업소 건설장 현지 지도**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발기한 사업
- 총면적 5만5,140여 ㎡에 부두, 방파제, 호안, 냉동시설, 가공장, 합숙소, 문화회관, 살림집 등 조성
- 같은 날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그물, 밧줄, 양식뗴 등) 현지지도
- 덤장, 호망, 자망 등 어구 생산 강조
- "수산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유족하게 하며, 군인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토의, 결정했다는 것)

691) 월간 북한동향, 통일부, 2015. 1

692) 월간 북한동향, 통일부, 2015. 2.

3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어분사료 공장 현지지도**(일자 미상, 3.24 중앙통신)
- 공장 규모: 부지 면적 2만5천㎡, 연간 생산능력 2,000여 톤
- "건뎅이, 까나리, 멸치, 도루메기 등으로 철갑상어, 칠색송어, 룡정어 사료를 비롯한 각종 어분사료 생산하는 것은 좋은 일"(김정은 발언)

3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서해안 금산포 젓갈가공공장 및 능금도 수산물 가공기지 건설장 현지 지도**(3.27 중통)
- 김정은의 직접 발기에 따라 건설하는 젓갈 가공공장
- 능금도는 황해남도 은률군에 소재

4월 17~23일 **나진-하산 물류사업 2차 시범운송 대표단 18명, 나진항 방문**
- 나진항 3호부두 운영 **지분 구조: 러시아 36, 한국 34, 북한 30 (합의만 했고 지분 인수는 미결정)**

4월 24~5월 10일
나진-하산 2차 시범사업 (약 12만 톤 석탄 수송)
- 4월 24일. 나진-하산 2차 시범사업 (나진-당진항) * 동서발전(연료탄), 잉하우호
- 4월 24일. 나진-하산 2차 시범사업 (나진-광양항) * 포스코. 잉푸호. 4만톤
- 5월 10일. 나진-하산 2차 시범사업 (나진-보령항) * 중부발전(연료탄), 잉푸호
- 한편 북한이 받는 항만사용료는 7억7천만~15억4천만원 수준 예상
- 러시아산 석탄은 서시베리아 쿠즈바스 탄전에서 생산된 것임

6월 **중국 훈춘-북한 나진항-중국 상하이간 컨테이너 노선 개설**[693]
- 6월 24일 훈춘에서 컨테이너 38를 운송, 나진항에서 선적후 6월 27일 상하이 도착

8월 22~23일 **북한 나선특구 홍수 발생**
- 폭우를 동반한 태풍 고니가 나선특구를 강타하면서 사망자 80여 명, 51만 1,000 명 이재민 발생
- 특히 선봉 지역은 도로·철도 등이 유실됨
- 제5회 나선특구 국제무역박람회 기간 중 발생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공동보도문(6개 항) 합의**
- 회담 대표: 남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694], 김양건 조선로동당 통전부장
- 6개항 합의 사항: 1.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 개최 2. 북측,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 표명 3. 남측, 비정상적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 4. 북측, 준전시상태 해제 5. 추석 이산가족 상봉 6.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693) 이와 같은 사실은 동년 7월 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의 관련 보도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함으로써 알려짐.

694)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등 겸직.

9월 3~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추진 동방경제포럼 개최(블라디보스토크)**
- 한, 중, 일, 인도 등 24개국 정부 대표와 기업인들 참가
- 러시아측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및 선도경제개발구 홍보 및 투자 유치 활동
- 러시아측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투르드네프 총리,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 소콜로프 교통부장관 등 정부 요인들 다수 참석

9월 10일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 완성 단계라고 주장**

9월 17일 **투먼(중국 지린성)-남양(북한 온성군) 간 교각 건설 계획 발표**

9월 20일 **중국 단둥-옌지서역 기차 개통**
- 소요 시간: 과거 25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대폭 단축

9월 20일 **중국 훈춘 고속철(창춘-지린-훈춘) 개통**
- 중국측은 이와 함께 창춘-훈춘 고속철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장을 러시아 측에 제안

10월 5일 **내외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류윈산의 북한 방문 예정 보도**

10월 **북한, 경원경제개발구를 새로 지정**
- 2013년 13개, 2014년 6개, 2015년 1개(경원경제개발구) 등 총 20개가 됨
- 중앙급 경제특구로는 기존의 나선특구 등 4대 특구 외에 무봉국제관광특구(2015년 4월 신규 지정), 신의주특구 등 6개 특구 등 존재

12월 7일 **농심 백산수,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 입항**
- 컨테이너 화물이 나진항 통해 들어온 것은 2010년 5.24 대북 조치 이후 처음
- 과거: 백산수 생산공장(이도백하)-대련항-평택항/부산항 루트
- 새 루트: 백산수 생산공장(이도백하)-훈춘-원정리-나진항(3호 부두)
- 수송 물량: 컨테이너 10개 물량(170t 규모)

12월 11~13일 **박근혜 정부 하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개성공단)**
- 12월 13일 최종 결렬
- 회담 대표: 남측 황부기 통일부 차관, 북측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12월 29일 **북한 김양건 조선로동당 대남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참고문헌

참고 문헌

북한 대외 관계, 대외 경제, 해양수산 일반

1. 국문

1) 단행본(번역본) 및 보고서(박사학위 논문 포함)

강태호 외. 『북방루트 리포트』, 돌베개, 2014.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I), 선인, 2007.

개번 맥코맥(박성준 옮김),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이카루스미디어, 2006.

기무라 미쓰히코 외(차문석 외 옮김) 『북한의 군사공업화』, 미지북스, 2008.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 외교의 선택』, 백산서당, 2002.

김동욱.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상겸.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김영봉·이문원·조진철.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6.

김찬규.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국토통일원, 1977.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연세대출판부, 2010.

김학준. 『북한 50년사: 우리가 떠안아야 할 반쪽의 우리 역사』, 동아출판사, 1995.

나탈리아 바자노바(양준용 옮김). 『기로에 선 북한경제-대외협력을 통해 본 실상』, 한국경제신문사, 1992.

남북회담사무국,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통일원, 1995. 12.

남덕우.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노재봉 외. 『동북아 세력균형 구조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979.[695]

마이크 치노이(박성준 옮김), 『북핵 롤러코스터』, 시사인, 2010.

미첼 B. 러너[696](김동욱 옮김), 『푸에블로호 사건』, 높이깊이, 2011.

민경태. 『서울평양 매가시티』, 미래의창, 2014.

박창권 외.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0.

박형중 외.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1.

배제식, 『현 휴전협정체제에서 본 서해5도서의 문제점 발생원인 및 대책』, 국토통일원, 1977.

백학순 외. 『북한의 당·국가 기구·군대』, 한울아카데미, 2007.

보리스 I. 트카첸코(성종환 옮김).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북국경』, 동북아역사재단, 2010.

세종연구소, 『북한의 대외관계』, 한울, 2007.

695) 부록1로 한반도 주변정세 사건표I(71.1~78.12)가 있으며, 출간 이후 1990년대 초반에 1990년까지의 사건표를 추가로 정리한 한반도 주변정세 사건표II(1978~1990)가 작성되어 수록(일부 편집).

696)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진행해온 냉전사 프로젝트 고문.

셀리그 해리슨(이홍동 외 옮김). 『코리안 엔드게임』, 삼인, 2003.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서양원.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 매일경제신문사, 2013.
안드레이 란코프(김광린 옮김),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오름, 1995.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카니즘』, 서울대출판문화원, 2001.
양성철·강성학 편, 『북한외교정책』, 도서출판서울프레스, 1995.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내가전쟁을 하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7), 기아경제연구소, 1999.
와다 하루키(서동만 외 옮김). 『북조선』, 서울: 돌베개, 1998.
외교부. 『한국 외교 40년 1948-1988』, 1990.
엄선희 외. 『북한 수산부문의 대외협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유동운. 『현대수산경제론』, 태화출판사, 2000.
유호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 생각의나무, 2004.
윤영관 엮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한울, 2008.
이동준 편역.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삼인, 2016.
이봉조(이봉조유족회 엮음). 『이봉조의 통일수첩』, 옹기장이, 2016.
이상철. 『NLL북방한계선: 기원 위기 사수』, 선인, 2012.
이석우·신창훈. 『북중 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이정환 외. 『해양 정책 미래: 세계 해양경영과 해양한국의 비전』, 블루&노트, 2010.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이창주.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산지니, 2014.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 한울아카데미, 2005.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선인, 2009.
이재기·서정익, 『신북한 경제론』, 신론사, 2007.
이홍구 외. 『북한과 오늘의 세계-80년대의 대외적응』, 법문사, 1986.
임강택·박형중·손승호·이종무·장형수·조봉현. 『북한 경제개발 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0.
임동원. 『피스메이커』, 중앙북스, 2008.
전홍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6.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선인, 2005 (박사학위 논문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의 개정보충판)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토지, 1999.
조동호 외.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2.

조명균. 『북한 경제 개관』,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조명철 편.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 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지철근. 『시련기의 수산업사』, 한국수산신문사, 1998.
최재선 엮음. 『환동해 경제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동해연구 시리즈III, 블루&노트, 2015.
최종화. 『현대 한일어업관계사』, 세종출판사, 2000.
하영선·조동호 공편. 『북한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EAI, 2010.
한국은행 조사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2000. 8.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 대학원, 2009. 12 (박사학위 논문)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선인, 2007.(경남대 박사학위 논문의 증보판).
홍익표 외.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홍현표 외. 『동해안 어업정책의 평가와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7.
황만익 외. 『북한 주요 산업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개방지역에 관한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5.

2) 논문 및 기타

나카가와 마사히코, 「북한 연합기업소의 형성」, 『KDI 북한경제리뷰』, 2003. 3.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배종렬.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 2010년 여름호.
백승주. 「김정일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 성격과 대외정책 방향 전망」, 『정책연구』 통권 15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가을.
서보혁. 「북한의 산업화와 철도 근대화 정책」, 『고려대 평화연구논집』, 제14권 1호, 2006 봄.
서 훈. 「북한의 외교정책결정체계에 대한 연구」, 『국제문제연구』, 2007, 여름호.
유호열. 「북한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국제정치논총』, 34집 2호, 1994.
이훈재. 「북한의 해사소송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북한법연구회 제169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11. 9. 29.
서종원.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KDI북한경제리뷰』, 2010. 3.
성상환,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 구 동독외무성 외교사료 해제」, 서울대 통일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발표 자료, 2009. 2. 5.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Online Series CO 13-11, 2013.
지그프리트 슈라이베. 「기로에 선 북한의 사회경제: 실상과 전망」, 북한문제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민족통일연구원, 1991. 6.

최정윤·최종화.「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수산경영론집』, Vol. XXX, No. 2, 한국해양수산경영학회, 1999. 12.

최종화.「중국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한국수산경영학회』, 제24권 1호, 1993.

2. 영문 및 기타

1) 단행본 및 보고서

Armstrong, Charles. *Two Koreas*, Routledge, 2007.

Armstrong, Charles.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Armstrong, Charles, et al., ed. *Korea at the Center: Dynamics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New York: M.E. Sharpe, 2006.

Berchovitch, Jacob, et al., ed., *Conflict Management Security and Intervention in East Asia: Third-Party Mediation in Regional Conflict,* Routledge, 2008.

Buzo, Andrian. *The Guerilla Dynasty: Politics and Leadership in North Korea,* Westview Press, 1999.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W.W.Norton& Company(2nd edition), 2005.

Cumings, Bruce.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The New Press, 2004.

FA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Fisheries Development Program Mission*, Nov. 1998.

Fravel, M. T.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08.

GTI. *Integrat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Cross-Border Facilitation Study for the Trans-GTR Transport Corridors,* 2013.

Goncharov, Sergei N., et al.,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93.

Harrison, James. *Making the Law of the Sea: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 The Risks of War in the Yellow Sea*, Asia Report No. 193, Dec 2010.

Jacques, Peter et al., *Ocean Politics and Policy*, ABC-CLO, 2003.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1976.

Kim, Samuel S. *The Two Koreas and the Great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Kim, Samuel S.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Kim Sunpyo.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im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New York: Martinuns Nijhoff Publishers, 2004.

Koh, Byung Chul, ed.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Seoul: IFES, 2002.

Kraska, James. *Maritime Power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2011.

Narushige, Michishita. *North Korea: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8*, New York: Routledge, 2010.

Paris MOU, *Port State Control: Making Headway(Annual Report2008)*, 2008.

Pritchard, Charles L., et al.,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4,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2010.

Smith, Hazel, ed. *Reconstituting Korean Security: A Policy Primer*,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7.

Valencia, Mark J., *A Maritime Regime for Nor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1996.

Wit, Joel S. *U.S.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Rebuilding Dialogue and Engagement*, US-Korea Institute, SAIS, October 2009.

季國興.『中國的海洋安全和海域管轄』, 上海: 人民出版社, 2008.

林今淑,『朝鮮經濟』,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0.

浜 勝彦 編.『經濟開放下のアジア社會主義諸國』, アジア經濟研究所, 1985.

小牧輝夫.『經濟から見た北朝鮮』, 明石書店, 2010.

世界經濟情報サ-ビス.『北朝鮮-經濟·貿易の動向と見通し』, 世界經濟情報サ-ビス, 1992.

『日朝關係: その 歷史と現在』,『世界』, 岩波書店, 567號1(임시증간), 1994. 4.

日中經濟協會.『中國お 中心に 見る. 國際關係』, 1986.

吉田敬市.『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2) 논문

Akaha, Tsuneo.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Fishery Relations in the Sea of Japan,"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1, No. 2, Summer 1992.

Armstrong, Charles. "Juche and North Korea's Global Aspirations," Working Paper No. 1, NKIDP, September 2009.

Axelrod, Robert, et al.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y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Vol. 38, No. 1, Oct., 1985.

Boxer, Baruch.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the Seas of Japan and Okhostsk,"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0, 1989.

Hong, Seonggeol, et al. "Fisheries Cooperation and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between North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해양정책연구』, 2001 여름.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Jan., 1978.

Ji Guoxing,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Three China Sea: Options for Equitable Settlement,"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Kim, Samuel S.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World*,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pril 2007.

Lee, Sangsoo et al.,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flections on the Nordic Experience," Asia Paper, 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June 2011.

Levin, Norman. "Global Detente and North Korea's Strategic Relation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Issue 1, 1990.

Menon, Rajan et al. "The Balance of Power and U.S. Foreign Policy Interests in the Russian Far East," *NBR Analysis*, Vol. 11, No. 5, December 2000.

Park, Choon-Ho. "Fishing under Troubled Water: The Northest Asia Fisheries Controvers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 Issue 2, 1974.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ummer 1988.

Scobell, Andrew. "Projecting Pyongyang: the Future of North Korea's Kim Jong Il Regim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2008.

Simonia, Nodari A. “Russia in the Asia-Pacific: The Beginning of a New Era?” *Asia-Pacific Review*, Vol. 13. No. 1, 2006.

Smith, Hazel. “North Korean Shipping: A Potential for WMD Proliferation?” East-West Center, No. 87, February 2009.

Toloraya, Georgy. "Continuity and Change in Korea: Challenges for Regional Policy and U.S.-Russia Relations," Brookings Institution, Feb 2009.

Valencia, Mark J. "Ocean Management Regimes in the Sea of Japan: Present and Future," paper presented at the ESENA Workshop, Tokyo, July 11-12, 1998.

Van Dyke, John. "Northeast Asian Seas-Conflicts, Accomplishments, 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7, No. 3, 2002.

Wada, Haruki.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IFES, March 28-29, 1998.

Zou, Keyuan. "Law of the Sea is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States," *Ocean Developments and International Law*, Vol. 39, 2008.

북중 관계 및 북중 해양수산관계

1. 국문

1) 단행본 및 보고서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옮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I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박동구 옮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김병로·신상진·장경섭.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과거 현재 미래의 한중관계』, 늘품플러스, 2010.

이동진. 『중국 동북연구: 방법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 중심, 2000.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2011.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근섭·김은수·박여진.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2007.

홍성걸 외. 『북한 수산업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2) 논문

김 철. 「북한-중국 경제무역 합작 현황 분석」, 『KDI북한경제리뷰』, 2008. 5.

안드레이 란코프.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현황과 향후 전망」, 내부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1. 7.

오용석.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전략: 그 변화와 전망」, 『북방경제연구』, 제7호, 1996.

이영훈.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KDI북한경제리뷰』, 2011. 4.

이종림. 「중국의 대북투자 리스크와 대응방안」, 『KDI북한경제리뷰』, 2013.2.

주장환.「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구상:'36호' 문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27호, 2006. 7.

최종화.「중국 영해제도의 국제법상 합법성 검토」, 수산경영론집, Vol. 24, No. 1, 1993. 6.

추이즈잉.「북핵 문제의 새로운 발전 추세와 중국의 대응」,『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2008년 가을.

코트라.「최근 북중관계 조망-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위협론 해부」, 2006. 7.

2. 영문 및 기타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The University Press of Carolina Press, 2001.

Freeman, Carla and Drew Thomson, "The Real Bridge to Nowhere: China's Foiled North Korea Strategy," USIP, April 22, 2009.

Glaser, Bonnie S., Billingsley Brittany, Haggard Stephen, Noland Marcus, and Snyder Scott. *Reordering Chinese Prior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CSIS, November 2012.

Glaser, Bonnie.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Chinese Views of Economic Refor and Stability in North Korea," USIP-CSIS, January 3, 2008.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 Report, No. 112, February 2006.

Lewis, John Wilson and Xue Litai, *China's Strategic Sea Power: The Politics of Force Modernization in the Nuclear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Li Dunqiu.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Policy Forum Online*, August 23, 2006.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970Li.html〉

Ryan, Mark A. et al., *Chinese Warfighting: The PLA Experience since 1949*, M.E.Sharpe, 2003.

Scobell, Andrew.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2004.

Thomson, Drew.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US-Korea Institute (SAIS), February 2011.

Xinhua News Agency, *China's Foreign Relations: A Chronology of Events (1949-1988)*,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89.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2001.

Zhihua Shen and Yafeng Xia, *China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61, NKIDP, May 2012.

「朝鮮半島周邊漁業資源及經濟合作現狀」, http://tieba.baidu.com/p/2185143064, 2013. 2. 27.
錢其琛,『外交十記』, 世界知識出版社, 2003.
日中經濟協會,『中國の對外開放政策と國際關係』, 1985.3.
日中經濟協會,『中國をめぐる國際關係』, 1986.4.
張万年, 『當代世界軍事與中國國防』, 軍事科學出版社, 1999,
『中國漁業年鑑』, 中國農業出版社, 2005~2010 (각년호)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 條約法律司 編, 『中華人民共和國 邊界事務條約集』(中朝卷), 2004.

북러 관계 및 북러 해양수산 관계

1. 국문

김학기.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와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한 시사점」, 『KIET산업경제』, 2015. 2.
성원용·이성규·오영일·Pavel Minakir.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우평균. 『푸틴시대 러시아정치외교와 극동개발』, 한국학술정보, 2008.
엄선희 외. 『북한 수산부문의 대외협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이석우·신창훈. 『북중·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이지수. 「북한과 극동러시아의 협력관계 연구」, 『국가전략』, 2004년 제10권 1호.
조명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2. 영문 및 기타

Amirov, Viachenslav B. “Russia's Posture in and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Russia's Prospects in As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Dzurek, Daniel J. "Deciphering the North Korean-Soviet (Russian) Maritime Boundary Agreement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3-1. 1992.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 Strained Friendship," Asia Briefing, No. 71, December 4, 2007.
Joo, Seung-Ho. "North Korea and Russia: Dynamic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nvironment,"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49th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arch 26-29, 2008.
Pautzke, Clarence G., "Russian Far East Fisheries Management," North Pacific Fishery Management Council, Sept. 30, 1997.
Simonia, Nodari A., "Russia in the Asia-Pacific: The Beginning of a New Era?" *Asia-Pacific Review*, Vol. 13, No. 1, 2006.

Weathersby, Kathryn. "Dependence and Mistrust: North Korea's Relations with Moscow and the Evolution of Juche," Working Paper Series, US-Korean Institute, December 2008.

Weathersby, Kathryn.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Nov. 1993.

Weitz, Richard. "Russia and the Koreas: Past Policies and Future Possibilities," Academic Paper Series Vol. 5, No. 2., Korea Economic Institute, Feb 2010.

Zabrovskaya, Larisa V., "Economic Contacts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ar East: 1992-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中國をめぐる國際關係』, 日中經濟協會, 1986.4.

북일 관계 및 북일 해양수산관계

1. 국문

기미야 다다시.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통일과 평화』, 3집 1호, 2011.

미무라 미쯔히로. 「최근의 일본-북한간 관계 변화와 과제」, 『KDI북한경제리뷰』, 2008. 5.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민족통일연구원, 1998.

백충현. 『일·북괴 민간어업협정 체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1997.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오름, 2004.

와다 하루키. 「재일 상공인 전진식씨가 말하는 북한, 일본, 그리고 재일동포」, 『월간해외동포』, 67호, 1994. 10.

윤수현. 『일본과 북한과의 무역현황 고찰』, 국토통일원, 1974.

외교안전보장조사회(나미나 옮김). 「일본의 대북외교 현황」, 『KDI북한경제리뷰』, 2011. 11.

이찬우.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9년 가을호.

정원순 외.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대응방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2. 2.

현대경제연구원.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대응방안』, 1992.

홍성걸 외.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 어업협력 연구』, 2010.

2. 영문 및 기타

Akaha, Tsuneo.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Fishery Relations in the Sea of Japan,"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1, No. 2, Summer 1992.

Schoff, James L. *Political Fences & Bad Neighbors: North Korea Policy Making in*

Japan &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Project Report by the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June 2006.

Morris-Suzuki, Tessa.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 War*, New York: Rowan & Little field, 2007.

小牧輝夫, 『經濟から見た北朝鮮』, 環日本經濟研究所, 2010.

『日朝關係: その歷史と現在』, 世界(임시증간본), 1992.

남북 해양수산

1. 국문

1) 단행본 및 보고서

강종희·남정호·최성애·김정봉·김수진·이헌동·황진회·심기섭.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국토통일원. 『20개 대북 시범사업 세부실천방안』,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1982.

국토해양부. 『남북관계 변화대비 해운수송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 2012.

권태진·김영훈·남민지. 『남북한 농수산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김상무·김기수·김남두·김영식. 『남북한 어업협력 방향과 어업인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2. 9.

김영봉·이승복·김은정.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국토연구원, 2008.

김영윤·나희승·황진회.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7.

김준회. 『북한의 어로실태 조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2.

김현용·박광범. 『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 수협경제연구원, 2006.

남정호·근형·이구성·김종덕.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III), 해양수산개발원, 2007.

남정호·장원근·신철오·최지연·육근형·최희정·이구성·이지선·이원갑.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II), 해양수산개발원, 2006.

남정호·강대석.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박삼옥·허우긍·박기호·박수진.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 지리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박성준. 『남북한 수산협력 연구: 북한의 협력동기 변화를 중심으로』, 2013. (고려대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성준·이성우·홍성걸·황진회·육근형·전형모·한덕훈·김은우·윤인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북한 개발협력 중점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박성준·이성우. 『동북아 북방물류의 변화와 국제협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박성준·홍성걸·유호열. 『나진선봉특구와 연계한 해양수산 남북 협력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박성준·홍성걸·이봉조. 『금강산 특구와 연계한 해양기반 남북 경제협력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박성준·홍성걸. 『남북 수산협력의 장애요인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박성준·홍성걸·최수정·김장근·남성욱. 『해양포유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남북합의서 추진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박성쾌. 『북한 수산물 반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박 진 외.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한국개발연구원, 1998.

박춘호·유병화. 『해양법』, 민음사, 1986.

배제식. 『현 휴전협정체제에서 본 서해5도서의 문제점 발생원인 및 대책』, 국토통일원, 1977.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편,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향』, 도서출판논문의집, 2002.

_____, 『남북(부산-북한) 수산교류협력 방안』,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2004.

북한경제포럼 편, 『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오름, 2008.

손기웅·김동성·김영봉·김정수·원동욱·이영길·정지웅·정회성·차무현·최수영·허문영·Bernhard Seliger.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방(III): 정책제안』, 통일연구원, 2010.

손희두.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신영태·류정곤·최영애·정명생·강종호·이언경·이헌동·마창모.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양문수·김갑식·신지호·이영훈·임강택·오승렬·조영기·최기춘.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양태진. 『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예나루, 2011.

원동욱·안병민.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8.

윤여창·박동균·박종화·전효택·최종근·허은녕·윤순진.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이병기·박영호·최종화.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3.

이병기. 『남북한 공동어로수역-모델 설정과 운용방안』, 국토통일원, 1990.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 한국국방연구원, 2011.

이상준·김천규·이백진·이건민·배은지·김 흠·임강택·장형수·김경술·나희승·김의준.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국토연구원, 2013.

이상준·김천규·이백진.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2012.

이상준·김천규·박세훈·신혜원.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국토연구원, 2012.

이상준·김천규·박세훈·신혜원.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국토연구원, 2011.

이석기·오영석·조윤애·박 훈·홍진기·박정수·김석진·이원빈·송우경.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산업연구원, 2007.

임동원. 『피스메이커』, 중앙북스, 2008.

정봉민 외.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I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정출조. 『20개 대북시범사업 세부실천방안』,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1982.

정회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제성호. 『남북한 관계론』, 집문당, 2010.

하정열. 『상호주의 전략』, 오래, 2012.(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 수산업의 산업적 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1993. 12.

한국항만기술단. 『북한 주요항만 사업의 투자가능성과 효율적인 개발방향』, 2008. 11.

한국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과학기술처, 1993. 9.

해양수산부. 『통일대비 한반도 항만개발 구상 연구』, 2000.

홍성걸·남성욱·박성준·최수중. 『북한 동해수역 남측어선 입어사업 남북합의서 추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홍성걸·박민우·안철민·박성준·양용수. 『북한 동해 종묘배양장 시범사업 추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홍성걸·성기백·박성준·성숙경. 『동해 연어부화장 남북기술협력 시범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홍성걸·최수정·김정봉·양용수. 『금강산의 정치망 시범사업』(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홍성걸·이헌동·장학봉. 『남북수산협력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홍성걸·임경희. 『북한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사업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홍익표·강유덕·이종운·김지연·지만수·성한경·이석기·김석진·김계환·이두희.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2011.

황만익·이기석. 『북한 주요산업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개방지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황진회·엄선희·허소영 외.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국토해양부, 2010.

2) 논문 및 기타

강무현. 「해양수산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강원비전 포럼, 2001. 4.

고용권. 「남북한 교류와 어업협력 방안」, 『현대이념연구』, 제14집, 1999. 12.

김기수·정형찬.「남북한 공동어업정책의 과제-EC 공동어업정책을 기초로」, 『수산경영론집』,

Vol. XXIV, No. 1, 1993. 6.

김범중.「한반도 주변 환경과 북한 항만개발 방향」,『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89호, 2008. 10.

김범중.「북한 항만개발과 남북한 항만교류 협력방안」,『월간해양수산』, 통권 제219호, 2002. 12.

김영봉.「한강하구 및 서해남북접경수역의 평화적 활용방안」,『국토연구』, 통권 295호, 2006. 5.

김정봉.「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 수산협력 방안」,『농촌경제』, 제16권 제4호, 1993. 12.

김 철.「북한-중국 경제무역 합작 현황 분석」,『북한경제리뷰』, 2008년 5월호.

남성욱.「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협력 방안」, 북한경제전문가100인포럼 자료, 2006. 3. 15.

남성욱.「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향후 남북수산 협력방안」, 남북수산협력 세미나, 통일농수산포럼, 2001. 4. 24.

박성준.「중국-타이완 수산협력 현황과 시사점」,『계간 해양수산』, Vol. 2, 2011. 5.

배종렬·이상만.「대북 투자 분석과 투자 활성화 방안」,『동북아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2009. 4.

서주석.「한반도 정전체제와 NLL: 서해사태의 배경과 의미」,『서해평화와 동북아협력』(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 6.

성원용.「TKRTSR연결의 의의와 파급효과」,『동북아경제연구』(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14권 제3호, 2002.

송경석.「WTO/DDA 수산부문 협상과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부, 2003.

신영태.「남북한 어업협력 방안」『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8. 11.

_____.「북한 수산업의 구조와 실태」,『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 9.

안병민.「나진-하산 교통물류사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KDI북한경제리뷰』, 2014. 2.

유동운.「남북한 민간어업 협력 합의의 의미와 과제」,『통일경제』, 2000. 4.

이광남,「남북한 수산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활성화 방안」,『북한경제논총』(북한경제포럼), 통권 제7호, 2001.

이성우·박성준·김은우·김세원.「북방 물류시장과 나진항 연계 가능성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현안분석), 2015. 4.

이철우.「한반도 철도네트워크의 미래와 그 의미: 대륙횡단철도와 해상네트워크의 비교」,『고려대학교 평화연구논집』, 제14권 1호, 2006 봄.

장창익,「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해양정책연구』, 제8권 제2호, 1993.

정봉민.「해운항만 부문 남북협력 과제」, 남북해양수산협력포럼 발표자료집, 2008. 8.

최상근.「북한 수산업의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2007. 10. 10.

홍성걸·오순택.「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수산협력 발전방안」,『식품유통연구』, 제18권 제1호, 2001. 3.

홍순직.「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01. 11. 15.

홍중표.「북한 수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방안」, 통일농수산세미나 발표문, 통일농수산포럼, 2006. 5. 24.

황진회.「북한 주요 항만의 개발동향과 시사점」,『수은북한경제』, 2010년 겨울호.

2. 영문 및 기타

Clayton, Matthew. "The NLL: Moving from Negotiation and Confrontation to a Lasting Peace," *North Korea Review*, Vol. 9., No. 1, Spring 2013.

Ducret, Cesar. "Hub Dependence in Constrained Economies: the Case of North Korea,"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 35, Issue 4, 2008.

Dyke, Van, et al., "The North/South Korea Boundary Dispute in the Yellow (West) Sea," *Marine Policy*, Vol. 27, No. 2, March 2003.

Hong Seong-gul, Lee Sung-woo, and Park Sungju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ogistics Market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 *North Korea Review*, Vol. 10, No. 2, Fall 2014.

Hong, Seong-gul and Park, Sung-jun, "Future Tasks and Strategy for Inter-Korean Fisheries Cooperation," *North Korea Review*, Vol. 8, No. 2, June 2012.

Lewis, John W.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Special Report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Stanford University, March 1986.

Park, Sungjun. "Revisiting Changing Patterns of North Korea's Fisheries Production," *KMI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ol. 4, Issue 1, June 2012.

Roehring, Terrence, "North Korea and the Northern Limit Line," *North Korea Review*,

Schaefer, Bernd. "Overconfidence Shattered: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1971-1975," Working Paper No. 2, NKIDP, December 2010.

Valencia, Mark J. "Preparing for the Best: Involving North Korea in the New Pacific Communi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8, No. 1, Spring 1994.

신문, 화보집, 자료집, 기타 기록물

1. 국내

국방부.『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방부정책홍보관실, 2007(개정판).

국토통일원.『북한경제 개관』, 1989.

국토통일원.『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V), 2001.

국토통일원.『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Ⅳ), 1997.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Ⅲ), 1993.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Ⅱ)(증보판), 1991.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Ⅰ)(증보판), 1990.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소련과 북한의 관계 1945~1980』, 1988.
김근식·김연철·김갑식·정영철. 『통일·남북관계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김봉규. 『분단 한국』, 눈빛, 2011.
김형기 외. 『207개 개념어로 풀어쓴 남북관계 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2.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해설서』, 2005.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연차보고서』(2008년도), 2008.
농수산부. 『수산통계 연보』, 1980.
대한항공. 『북한의 교통현황』, 조사개발시리즈 제28호, 1992.
리만근(안해룡 엮음). 『북녘 일상의 풍경』, 현실문화연구, 200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SOC 개발협력 추진방향』(통일준비 자료집), 2014. 11. 25.
백승종.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 효형출판, 2000. *사진집
「북한 노동당 주요 중앙조직의 기능과 회의개최 현황」, 『북한경제리뷰』, 2010년 7월호.
신동삼. 『신동삼 컬렉션: 독일인이 본 전후 복구기의 북한』, 눈빛, 2013.
「정전이후 북한의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건 일지」, 『남북대화』, 11호, 1976. 11.
조선일보사. 『서울사람 평양사람』(1989 월간조선 신년호 별책부록), 1989.
조지 풀러(신광수 엮음). 『끝나지 않은 전쟁』, 눈빛, 1996.
최현규 외. 『북한 과학기술 연구』(제8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 2015.
통계청.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2011. 3.
통일부. 『2011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11.
통일원.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95논문발췌집), 1995.
통일원. 『김정일 주요 논문집』,1993.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한반도 평화체제문제 관련 주요 문건집』, 1996. 6.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1948년~20011년』, 2011. 12.
통일연구원 편. 『독일지역 북한 기밀문서집』, 선인, 2006.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1991. 10.
한국국제문화협회(국토통일원), 『남북대화』, 각호.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원양어선30년사』, 1990.
해양수산부, 『2005년 어업생산통계』, 2005.

『경향신문』
『노컷뉴스』
『데일리NK』
『동아일보』
『문화일보』
『북한경제속보』, 코트라
『수은 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시사인』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KDI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통일뉴스』
『통일부』
『한겨레』

2. 해외

Fischer, Hannah.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CRS, April 20, 2007.

IHS. *Ports & Terminal Guide 2009-2010.*(http://www.ihs.com)

Lloyd's List. *Lloyd's List Ports of the World 200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Chinese Prime Minister Zhou Enlai and North Korean Prime Minister Kim Il Sung, *P.R.C. Foreign Ministry Archives*, Document 204-00064-0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PRK Perspectives on Korea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e,* E-dossier #10, Woodrow Wilson Center, 201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After Detente: The Korean Peninsula 1973-1976*, Woodrow Wilson Center, 2011.

Ostermann, Christian F., and James F. Person, eds.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11.

Person, James, ed., *New Evidence on North Korea*, NKIDP, June 2010.

Tucker, Nancy B. *China Confidential: American Diplomats and Sino-American Relations, 1945-199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1.

Xinhua News Agency, *China's Foreign Relations: A Chronology of Events*

(1949-1988),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89.

The Voice of Russia 〈http://english.ruvr.ru〉

中國黃海水産研究所 〈http://www.ysfri.ac.cn〉

『2007中國海洋年鑒』, 海洋出版社, 200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 人名簿 2012』, 財團法人 ラジオプレス, 2012.

松本 巖 編, 『日本近代漁業年表』(戰後編), 水産社, 1980.

環日本海學會 編, 『東北アジア事典』, 國際書院, 2006.

3. 남북 공동성명, 공동선언, 합의서 및 발표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10. 4, 평양) * 10.4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 11. 16. 서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서명, 서울. 1992. 2. 19 발효)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남북 농수산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15. 개성)

「남북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5. 7. 27. 개성)

「남북해운합의서」(2004. 5. 28. 평양)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04.5.28. 평양)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1988. 7.7. 서울) * 7.7 선언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 6.3~4. 속초) * 6.4 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2000. 6. 25. 평양)

「7.4 남북공동성명」(1972. 6. 29 서명, 1972. 7. 4 남북한 동시 발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1973.6.23. 서울) * 6.23 선언

북한 문헌

1. 단행본

강근조 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2), 사회과학출판사, 1987.

강응주 외. 『조선지리전서-함경북도』, 교육도서출판사, 1990.

강필순 외.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교육도서출판사, 1988.

김동진 외. 『조선수산사3』(현대편-2), 공업종합출판사, 1991.
김리태 외. 『조선동물지(어류편3)』, 과학기술출판사, 2008.
김리태 외. 『조선동물지(어류편2)』, 과학기술출판사, 2007.
김리태 외. 『조선동물지(어류편1)』, 과학기술출판사, 2006.
김수연. 『국토관리사업에서의 위대한 변혁』, 사회과학출판사, 1992.
김영철 외. 『현대국제법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김익성 외. 『조선지리전서-공업지리』, 교육도서출판사, 1989.
김일성. 『민족 대단결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6),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4-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김일성.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일성종합대학,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남기훈 외. 『광명백과사전18-수산업편』, 백과사전출판사, 2009.
문중범.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앙양과 운수 문제』,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박근순 외. 『조선수산사3』(현대편-1), 공업종합출판사, 1991.
박우일.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적 리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박우일 편. 『생태기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서재명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손동광 외.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엄국현. 『6.15 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평양출판사, 2007.
오희석 외. 『섭조개 양식과 가공』, 공업종합출판사, 1991.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편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장석규 외. 『조선지리전서-강원도』교육도서출판사, 1990.
최기환. 『6.15 시대의 민족공조』, 평양출판사, 2004.
『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1960.

Kim Il Sung, *For the Independent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International Publishers Co., 1975.

2. 논문

강정남.「나선경제무역지대 법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두만강논단2013논문집』, 2013. 10.

강종철.「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제도의 특징과 그 운영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경제연구』, 제2호, 2011.

김강석.「집중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54권 제3호, 2008. 7.

김미옥.「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대상융자업」,『경제연구』, 제4호, 2012.

김시호.「수송은 인민경제의 선행관」,『근로자』, 제3호(503), 1984.

김일성.「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70. 11. 2),『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3』,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원, 1988.

김정일.「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할 데 대하여」,『김정일선집15』,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김 혁.「현시기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근로자』, 제12호, 1989.

리순근.「기술장비의 현대화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근로자』, 제11호, 1985.

리명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경위와 그 전망에 대한 연구」,『두만강논단2013논문집』, 2013. 10.

리승준.「경제특구와 그 발전방향」,『경제연구』, 제4호, 2012.

박근식.「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보람찬 사업」,『근로자』, 제9호, 1987.

박학수.「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과 그 위험성」,『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제58권 제2호, 2012.

윤두선.「3대 수송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수송혁명 수행의 기본방도」,『근로자』, 제8호, 1989.

정해남.「해상짐함수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2권 4호, 2006. 10.

최복연.「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 앞에 나선 중요한 경제건설과업」,『근로자』, 제7호, 1988.

한수길.「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 나서는 절실한 요구」,『근로자』, 제4호, 1991.

3. 공식 발표문 및 기타

『로동신문』

『조선중앙연감』

『수산』,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시행세칙」,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지시 제1호,

2011. 11.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 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결정 제160호, 1978. 8.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 (2011. 12. 3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항만법」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1999. 9. 2.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함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중대 보도(2000. 3. 23), 조선중앙통신.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2011)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부 록

부록 1 정전협정(1953.7.27.) ····· 265
부록 2 7.4 남북공동성명(1972.7.4.) ····· 282
부록 3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 284
부록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 285
부록 5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 선언', 1973.6.23.) ····· 288
부록 6 북한 조국통일 5대 방침(1973.6.23)(발췌 및 요약) ····· 291
부록 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7.7선언', 1988.7.7.) · 292
부록 8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1991.12.13) · 295
부록 9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298
부록 10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301
부록 11 남북해운합의서(2004.5.28.) ····· 307
부록 12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04.5.28.) ····· 312
부록 13 남북해상 항로대(남북해운합의서 이행부속합의서 수정보충 합의서) ··· 321
부록 1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 ····· 322
부록 15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5.7.27.) ····· 324
부록 1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11.16.) ····· 325
부록 17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12.15.) ····· 331
부록 18 북한「조선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1999.9.2.) ····· 333
부록 19 북한「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명의의 중대보도, 2000.3.23.) ····· 335
부록 20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1)337

부록1 정전협정(1953.7.2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

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한다.

제 2 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

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 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윤환임시임무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경외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윤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윤환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윤환은 1인 대 1인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1개월 내에 윤환정책하에서 한국경외로부터 3만5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누계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윤환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처리정황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기재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 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귀향협조 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적대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후비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흥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이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각기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을 선정하며 월경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

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 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彭德懷)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부록2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부록3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부록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부록5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6.23 선언', 1973.6.23.)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兩斷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 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8·15선언'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 요소를 남겨둔 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 문제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 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나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주된 주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 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 통일이 단시일 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 통일이라는 미족 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화곡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

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은 대외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 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1973년 6월 23일

대통령 朴正熙

부록6 북한 조국통일 5대 방침(1973.6.23) (발췌 및 요약)

1. 오늘 조선의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한다.

...무력 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제기...

2.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고류를 실현...

...마땅히 우리나라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리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합작을 실현...

3.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

4.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5. 우리는 분렬이 고착되여 우리나라가 '두개의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

...우리는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부록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7.7선언', 1988.7.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숱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 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召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 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 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 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 자존의 길이며 민족 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처를 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成員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 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988년 7월 7일

대통령 盧泰愚

부록8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1991.12.13)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부록9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1992.9.17)

남과 북은"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 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 지역과 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 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인 무력 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 재해나 항로 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 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 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같은 분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 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 집단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 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 분야의 모든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쌍방 군사 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 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 수단으로 문서 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 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 기구

제16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 합의서 제12조와"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부록10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1992.9.17)

남과 북은"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 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1. 남과 북은 물자 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 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 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 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규모, 물자 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 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4.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 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 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5.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 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6. 교류 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 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7. 남과 북 사이의 **물자 교류는 상호성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8. 남과 북 사이의 물자 교류에 대한 대금 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다라 다른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 통화 선정 등 대금 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10. 남과 북은 물자 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 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11. 남과 북은 경제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 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12. 남과 북은 경제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13.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 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1.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정보 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 연구 및 조사, 산업 부문의 기술 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 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1.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 왕래와 물자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 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4.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5. 남북 사이의 **교류 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 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7.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8.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 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 절차, 교통 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1.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4.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5.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1.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여러 국제 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경제 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 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제1장 경제 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 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1.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 자료와 목록 등 정보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2.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 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4.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 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1. 남과 북은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 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2. 민족 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이 방문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 안전 및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8.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1.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여러 국제 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구 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제2장 사회문화 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 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3.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 문제를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5.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 처리, 유골 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 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실천은 적십자 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기 : 쌍방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 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 문제를 남북 화해 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부록11 남북해운합의서(2004.5.28.)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

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내 각 책 임 참 사 권 호 웅

부록12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04.5.2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

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2004년 5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내 각 책 임 참 사 권 호 웅

【 부록 제1호 양식 】~【 부록 제3호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별표 1 】

해상항로대

1. 외곽항로대

가. 외곽항로대 참조점

번호	참조점	번호	참조점
①	41-29-00n, 130-14-00e	⑦	35-02-00n, 129-22-00e
②	40-00-00n, 130-10-00e	⑧	34-19-00n, 128-58-00e
③	37-10-00n, 130-00-00e	⑨	33-55-00n, 128-25-30e
③-1	38-23-00n, 129-05-00e	⑩	32-42-00n, 126-41-00e
③-2	38-57-00n, 128-40-00e	⑪	32-42-00n, 126-00-00e
③-3	39-13-00n, 128-28-00e	⑫	34-00-00n, 124-41-00e
③-4	39-36-00n, 128-54-00e	⑬	36-00-00n, 124-25-00e
④	36-08-00n, 130-00-00e	⑭	36-48-00n, 124-19-00e
⑤	35-29-00n, 130-00-00e	⑮	38-03-10n, 123-57-00e
⑥	35-13-00n, 129-40-00e	⑯	38-43-00n, 125-00-00e

나. 외곽항로대 폭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좌우 2.5마일씩 5마일로 한다.

2. 입·출항 항로대

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

개설항구	항 로 대
나진항	참조점 ①과 42-07-15n, 130-15-24e점을 연결한 선
청진항	참조점 ①과 41-41-00n, 130-04-00e점을 연결한 선
흥남항	참조점 ③-3와 39-46-15n, 127-39-00e점을 연결한 선
원산항	참조점 ③-3과 39-15-00n, 127-52-20e점을 연결한 선
고성항	참조점 ③-2와 38-47-30n, 128-14-00e점을 연결한 선
속초항	참조점 ③-1과 38-11-25n, 128-37-22e점을 연결한 선
포항항	참조점 ④와 36-08-00n, 129-33-00e 및 36-04-17n,129-28-52e점을 연결한 선
울산항	참조점 ⑥과 35-24-16n, 129-24-52e점을 연결한 선

개설항구	항 로 대
부산항	참조점 ⑦과 35-04-11n, 129-08-47e점을 연결한 선
여수항	참조점 ⑨와 34-40-51n, 127-55-42e점을 연결한 선
군산항	참조점 ⑬과 35-56-56n, 126-25-53e점을 연결한 선
인천항	참조점 ⑭와 36-53-54n, 125-48-00e점과 37-04-40n,126-16-05e점을 연결한 선
남포항	참조점 16과 38-43-06n, 125-00-24점을 연결한 선

나. 입·출항 항로대 폭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를 기준으로 좌우 0.5마일씩 1마일로 한다.

3. 남측 해역에서 속초항, 고성항, 원산항 또는 흥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과 각 참조점 ③-1, ③-2 또는 ③-3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고,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에 입항하거나 속초항을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③-1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나진 또는 청진항에서 출항하여 고성 또는 원산항에 입항하거나, 고성 또는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흥남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거나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흥남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4, ②, ①과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한다.

4. 입·출항시 항계내 통항은 해도상에 표시된 수로를 이용하여 통항 한다.

5. 항로대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를 기준으로 한다.

부 록

(생 략)

부록13 남북해상 항로대(남북해운합의서 이행부속합의서 수정보충 합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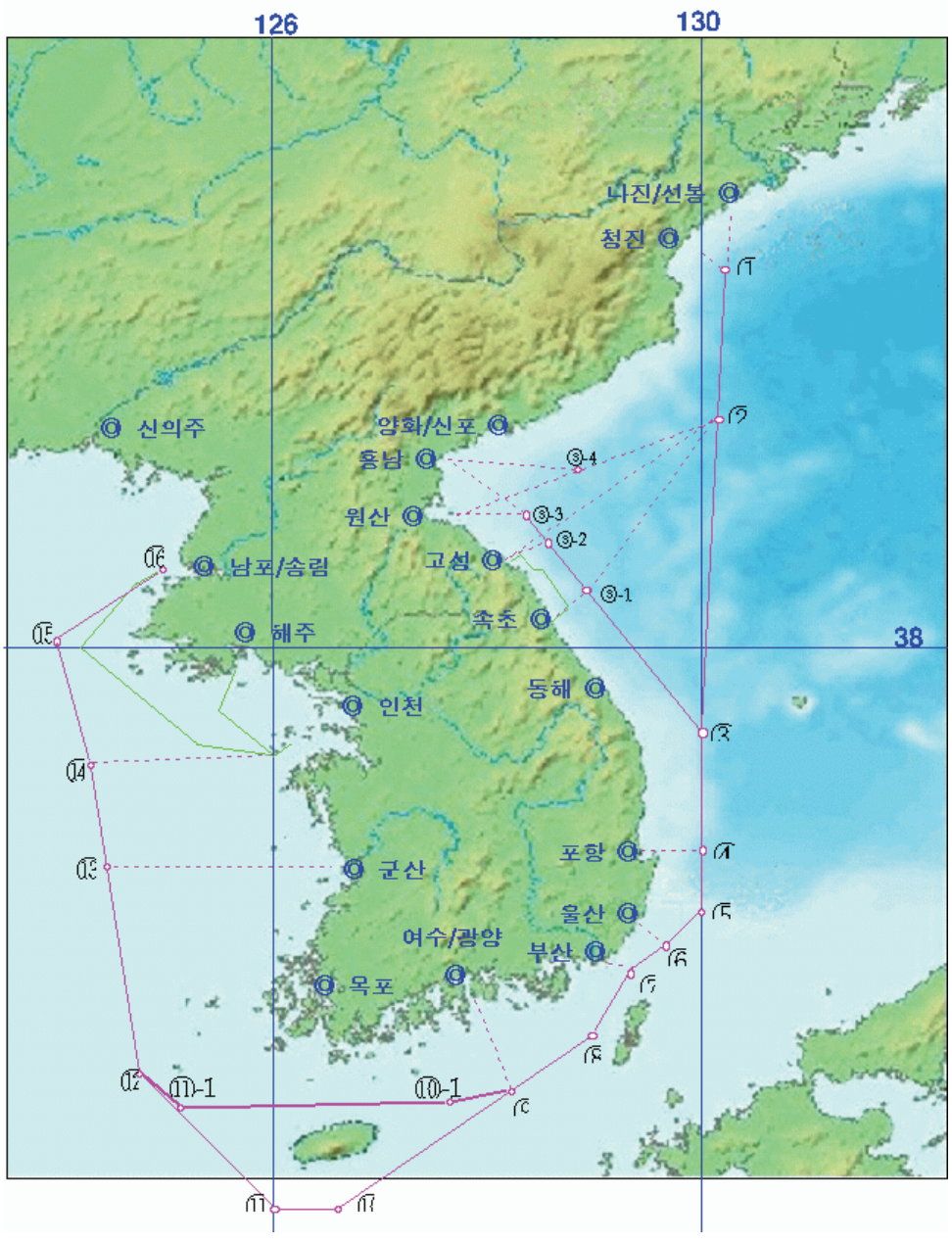

부록1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

* '6.4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준 장 박 정 화	소 장 안 익 산

부록15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5.7.27.)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 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의 원칙에서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를 진행하기로 한다.
   - 공동어로 수역과 공동어로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 공동어로에서의 어로기간, 어선 수 및 어구이용, 입어료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서해상의 정해지는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수산물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 나가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해 우량품종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어장진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 영 건

부록1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11.16.)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 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 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 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부록17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12.15.)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 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

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박 현 출

북남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리 만 성

부록18 북한「조선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1999.9.2.)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군사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지난 6월 15일 서해해상 교전이 있은 이후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서해해상 충돌이 있은 직후 우리는 문제의 수역에서 충돌의 재발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섯 차례의 조-미군부 장령급회담을 주동적으로 소집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특히 우리는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근본원인이 적대 쌍방이

서로 다른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는데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포착하고 쌍방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우리는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 참가성원과 접촉형식 등 구체적인 세부 절차안까지 미군측에 제기하고 그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심지어 정전협정 체결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문제 토의에 관여하였으면 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의향까지 고려하여 그들도 실무접촉에 참가할 수 있다는 아량을 보여주었다.

그럼으로 미군측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제안과 실무접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안에 호응해 나와야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정전협정과는 배치되게 이 문제 토의를 외면하고 가동되지도 않고 있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 미루면서 실무접촉을 거부하였으며 제놈들이 우리 영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은 미군측이 조선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영해안에 그어놓은 비법적인 선이다.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남의 집 마당 한복판에 슬그머니 금을 그어놓고 그것을 제집 마당이라고 우겨대는 것과 같은 날강도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군측의 주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더욱이 문제 토의에서 회피하려는 미군측의 처사는 조선정전협정에 따라 주어진 자기들의 권한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미군측이 끝내 문제토의를 외면하고 비법적이고 강도적인 북방한계선문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당당한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다.

1.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선인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 가-나선의 가선과 우리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미군측 관할하의 섬인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위 37도 18분 30초, 동경 125도 31분 00초, 우리측 섬인 옹도와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인 서격렬비도, 소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위 37도 1분 12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그리고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 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4도 32분 30초를 지나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 선의 북측 해상수역을 조선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

2. 조선 서해해상 우리의 영해 안에 제 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포한다.

3.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사될 것이다.

주체 88년(1999) 9월 2일 평양

부록19 북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함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명의의 중대보도, 2000.3.23.)

1. 우리 영해에 있는 미군측 관할하의 5개 섬들 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 수역을 제1 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로, 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한다.

   i) 제1구역의 북쪽 계선은 북위 38도선으로 하고, 동쪽과 남쪽, 서쪽 계선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영해 기산선으로부터 2km 폭으로 평행되게 그은 선으로 한다.

   ii) 제2구역의 북쪽 계선은 북위 37도 41분 24초선으로 하고, 동쪽과 남쪽, 서쪽 계선은 연평도의 영해기산선으로부터 2km 폭으로 평행되게 그은 선으로 한다.

   iii) 제3구역 계선은 우도 영해기산선으로부터 2km 폭으로 평행되게 연결한 선으로 한다.

   iv) 제1, 2, 3 구역 안에서의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우리측에 적대적인 통항이 아닌 이상 통항의 자유를 가진다.

2.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하여, 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 통하여서만 통항할 수 있다.

   i) 제1수로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상의 북위 37도 10분 03초, 동경 125도 13분 19초 지점과 대연평도의 제일 높은 고지정점을 연결한 선을 축으로 하여 좌우 1마일 폭을 가진다.

   ii) 제2수로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상의 북위 37도 31분 25초, 동경 125도 50분 38초 지점과 대연평도의 제일 높은 고지정점을 연결한 선을 축으로 하여 좌우 1마일 폭을 가진다.

   iii) 원칙적으로 우리측 영해에 있는 미군측 관할 하의 섬들에 비행기들이 드나들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모든 비행기들은 이 수로 상공을 통하여서만 비행할 수 있다.

3. 제1, 2, 3구역과 제1, 2 수로들에서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공인된 국제 항행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 및 비행기들이 지정된 구역과 수로를 벗어나는 경우, 그것은 곧 우리측 영해 및 군사통제수역과 영공을 침범하는 것으로 된다.

5. 제정된 수로통항시 우리측의 행동에 그 어떤 위협이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 수로들과 통항구역이 우리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의 통항을 가로막는 구역이나 수로로 될 수 없다.

6. 이번에 제정한 통항구역과 수로는 어디까지나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이 우리측 영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이 구역과 수로가 미군측 수역으로는 될 수 없다.

부록20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20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2010년 12월 체결)에 따라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 작성

제1편 계획배경과 총개발목표

제1장 계획배경과 범위

(1) 조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으며 깊은 전통적인 친선을 가지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쌍방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협조를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있다.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며 친선을 도모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정신에 따라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호혜공영의 경제무역협조를 확대심화시키는것은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합의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적인 념원과 장기적인 리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2)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합의를 관철하며 조중경제무역협조의 차원과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으로 략칭한다.)에 따라 본 계획요강을 공동작성하는바 공동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작성을 지도하며 기업투자를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본 계획요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약 470㎢, 최종면적은 조선측의 현존 행정구역에 따라 확정한다.)와 황금평경제지대(약 16㎢, 최종면적은 조중 쌍방이 공동측량한후 확정한다.)를 포함한다.

중국측 전문가소조가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위화도지구의 수문지질, 시공조건이 복잡하여 개발건설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연구와 론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가능한 개발방안을 확정한 다음 개발총계획요강의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한다.

제2장 총개발목표

(4) 조중 쌍무경제무역협조를 기초로 하여 두 나라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국제협조공간을 개척하고 다원적인 협조환경을 마련하며 조선국내외의 두 시장을 상대로 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및 주변지역의 독특한 지정학적우세, 생산요소의 상대적우세를 충분히 발휘한다.
〈총체적인 계획, 단계별 실시, 정부인도, 공동개발, 기업위주, 시장운영, 우세의 호상보충, 호혜공영〉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공업화수준과 인민생활수준을 높이고 조선제품의 수출외화획득능력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조선의 인력, 토지, 광물 등 자원우세를 경제우세로 전환시킨다.
생태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중시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건설을 조선대외교류의 시험지역으로, 강성대구의 선구지역으로, 조중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 건설한다.

(5)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린접국들인 중국, 로씨야와 륙로와 해상으로 모두 련결된 지대적인 특성을 잘 발휘하며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과 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고효률농업의 6대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점차 조선의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한다.
황금평경제지대에서는 조선 신의주, 중국 단동과 린접하여 있는 지대적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조선의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한다.

제2편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요강

제3장 산업발전방향과 산업배치

(6) 동북아지역에 위치하고 조선국내의 두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두만강류역에 위치한 지리적우세, 조선국내의 로동력과 자원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국제자본, 기술장비와 관리경험을 끌어들이고 원유화학, 야금, 건재 등을 주체로 한 원자재공업, 조선업, 배수리, 자동차 등을 주체로 한 장비공업, 콤퓨터, 통신설비제조, 가정용전기제폼 등 전자공업을 주체로 한 첨단기술산업, 농수산물가공 및 일용소비품, 피복을 주체로 한 경공업, 창고보관 및 물류, 관광 등을 주체로 하는 봉사업, 농업새품종, 새기술, 새장비시범도입, 농업생산체계창조를 주체로 한 현대고효률농업 등 6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7) 적지배치, 산업집약, 대상집중의 원칙에서 자원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특색을 갖추고 긴밀하게 련관된 〈1대, 4편, 10구역〉 의 산업배치를 형성한다. 즉

라진지역에 창고보관 및 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피복 및 식료가공 등 4대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선봉지역에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부산물가공 등 4대공업단지를 건설하며 웅상지역에 종합적인 목재가공단지를 건설하고 굴포지역에 현대적인 고효률농업시범구를 건설하여 라진-선봉--웅상-굴포에 이르는 연해복도형식의 산업대를 형성한다.

제4장 산업발전중점

(8) 원자재공업

- 원유화학공업: 원유원천과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당면하게는 현존원유가공공장의 생산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는 원유원천과 시장이 확보되는데 따라 원유가공능력을 더욱 확대하며 화학섬유, 화학건재, 화학일용품 등 원유화확공업을 발전시킨다.
- 야금공업: 수심이 깊은 대형항구와 토지자원 등 기초조건에 의거하고 조선국내 광물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자원개발 및 가공기지를 건설한다.
- 건재공업: 건설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조선국내의 원자재에 의거하여 세멘트, 유리, 건축도자기 등 건재제품을 발전시킨다. 현존 세멘트공장의 이설을 결합하면서 신형의 건조법공정에 의한 세멘트생산선을 건설한다. 조선국내의 석영모래 등 자원에 기초하여 부법유리생산선을 건설하고 건축형유리를 기본으로 생산하면서 자동차유리 등 공업용제품도 동시에 발전시킨다. 라선경제무역지대 및 주변지대의 도자기흙자원에 기초하여 건축타일과 위생자기생산선을 건설한다.
- 산림공업: 조선국내외의 목재자원 및 웅상지역의 항구조건을 리용하여 목재가공공장, 제지공장, 가구공장, 연필공장, 합판공장 등을 건설하며 점차 종합적인 목재가공공업구를 형성한다.

(9) 장비공업

- 자동차 및 기계: 선봉지역에서 자동차, 기계 등 장비제조업을 발전시킨다. 단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조립공장을 건설하며 점차 일용금속제품, 건설용금속자재, 자전거 등 경공업기계제품을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는 불도젤, 굴착기 등 공정기계와 뜨락또르 등 농업기계도 념두에 둔다.
- 조선업 및 배수리: 단기적으로는 라진지역의 라진조선소와 창평배수리공장의 기술개조를 완성한 기초우에서 수만t급 도크건설을 계획하며 주요하게는 산적화

물선, 잡화화물선 등 상용선박 및 어선의 수리, 제조업무를 진행한다.

(10) 첨단기술산업

- 전자공업: 콤퓨터, 통신설비, 가정용전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전자공업을 발전시킨다. 콤퓨터제조업에서는 개인용콤퓨터제품조립으로부터 시작한다. 통신설비제조업에서는 일반전화기조립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손전화기제조 등 업무로 발전시킨다. 가정용전기제품업의 첫 단계에서는 세탁기조립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점차 랭동기, 천연색텔레비죤, 소형가정용전기제품 등 제품생산으로 발전시킨다.
- 생물의약 등 첨단기술산업: 조선의 풍부한 인삼, 록용 등 자원우세에 의거하여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며 고려약기술의 연구개발과 전통적인 우세품종의 심도있는 개발을 강화하고 생물의약보건제품가공대상을 건설한다. 동시에 약초재배기지를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는 해향, 재생가능에네르기 등 산업을 발전시킨다.

(11) 경공업: 임가공, 위탁가공, 보상무역, 현지자원갱신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투자를 절약하고 효과가 빠른 경공업제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먼저 경공업산업기초를 형성하여 조선국내에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수출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 방직피복: 수출과 조선국내수요를 동시에 대상하여 피복, 신발, 모자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점차 피복자재 등 방직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 식품가공업: 농산품, 림산품, 수산품, 축산품에 의거하여 입쌀기공, 잡곡가공, 버섯가공, 과일남새가공, 수산물가공, 축산물가공, 주류 및 샘물생산 등을 적극 발전시킨다.

(12) 봉사업

- 창고보관 및 물류: 라진항이 조선동해에 면하여있고 동북아지역의 두만강하류, 조, 중, 로 협조개발지역에 위치한 유리한 지리적조건과 조중, 조로수송통로와 련결된 편리한 조건을 충분히 발휘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내의 물류, 수출입물류, 동북아지역의 중계무역물류를 다같이 발전시킬것을 고려한 항구린접지역에서의 창고보관업 및 물류업을 발전시킨다.
- 관광: 단기적으로 조, 중, 로 국경교차지역의 민속문화, 바다가해안선, 섬 및 백사장, 숲 및 강, 호수, 인문관광 등 관광자원에 기초하여 다국적관광과 두만강출해관광을 개발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내에 호텔, 휴양지, 광관도로 등 관광기초시설을 새로 꾸려 동북아국경관광명승지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조, 중,

로, 일, 남조선 해상관광을 개발하여 중국 연변, 조선 라선, 청진, 칠보산, 금강산, 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와 싸할린, 일본 니이가다, 아끼다, 사뽀로, 남조선 속초, 부산 등 관광목적지코스로 개발하며 최종적으로는 세계의 이름난 관광경제권을 형성한다.

(13) 현대고효률농업

- 굴포지구에 현대농업시범구를 창설하여 기지화양식을 발전시키며 현존하는 기슭, 비탈, 분산적인 농경지들을 충분히 리용하고 구릉지대를 적극 개간하여 남새, 림업, 과수업을 발전시킨다. 축산품을 개발연구하고 축산품의 종류를 늘이며 수산물양식단지를 꾸리고 표준화된 수산양식을 진행하면서 그 규모와 질을 부단히 높인다. 새품종, 새기술, 새장비를 도입, 응용하고 시범을 창조하여 국내의 여러 지역에로 적극 확대보급한다. 시범구내에서 선진적인 농업생산체제를 창조하고 농가와 시장의 효과적인 련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투자, 경영관리, 리익분배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한다.

제5장 기초시설건설

(14) 〈1중추, 3방향, 5통로〉의 개방식, 국제화된 대교통망을 구축: 즉 라진, 선봉, 웅상항을 중추로 하여 북으로는 중, 로와 련결되고 남으로는 조선의 청진과 접하며 동으로는 조선동해로 향해있는 유리한 조건에 맞게 중국 훈춘, 도문, 로씨야 하싼, 조선 청진과 통하는 륙상통로 및 조선동해의 해상통로를 구축한다.

(15) 항구: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해안선자원을 충분히 리용하며 라진항개발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선봉항, 웅상항을 보조로 하여 점차 지역적교통운수중추를 형성한다.

- 라진항을 짐함 및 산적화물 등을 처리하는 종합적인 항구로 건설한다. 현존 라진항의 1~3 호부두시설을 적당한 시기에 개조하는데 기초하여 단기적으로 5만t급 혹은 그 이상의 선박을 댈수 있는 다용도배자리를 새로 건설하며 점차 짐함 등 전용배자리를 건설한다.
- 선봉항은 원자재공업건설과 배합하여 현존 배자리에 대한 기술개조와 확장을 진행함으로써 화학제품, 산적화물항으로 건설한다.
- 웅상항은 부두개조, 설비갱신, 수로준첩, 통과능력제고 등을 진행하여 산적화물항으로 건설한다.

(16) 도로: 단기적으로 원정-라진, 선봉, 웅상항도로망 및 원정-권하 중조국경인도교

를 개조하여 통과능력을 높이며 관광도로로 개조한다. 앞으로는 라진-원정고속도로, 라진-청진고속도로, 라진-두만강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한다.

(17) 철도: 단기적으로 라진-선봉-남양철도를 기술개건하고 부분적구간 및 설비에 대하여 적당히 기준을 높인다. 항구건설요구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항구역내의 현존철도를 항구역밖으로 이설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훈춘-조선 훈륭철도를 건설하며 라진-남양철도, 라진-청진철도능력을 확장한다.

(18) 비행장: 장기적으로 청진시 삼해리에 민용비행장을 계획하며 라진-청진고속도로를 통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련결시켜 본 지역민항운수의 수요를 해결한다.

(19) 전력: 당면하게는 석탄을 리용한 전기 및 열생산용발전소를 건설하여 최대한 선봉화력발전소의 중유발전기를 대신하도록 한다. 앞으로는 100만kw발전능력을 조성하며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 새 에네르기의 가능성도 연구한다. 개조 및 신설을 결합하는 원칙에서 단기적으로 부하중심지역에 110kv변전소 및 해당 송전선로를 배치하고 적당한 시기에 건설할것을 계획하여 110kv 전압등급의 골간전력망을 구성한다. 장기적으로는 부하증가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220kv변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여 점차 220kv위주의 송전망을 건설한다. 또한 주변전력망과의 련계를 강화한다.

(20) 급수: 점차적으로 수원능력확보 및 관망갱신개조를 밀고나가 급수체계를 완성하며 급수관망수압을 높이고 직접급수지역범위를 확대하며 옥상물탕크의 수량을 줄인다. 급수능력, 수질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21) 정보 및 통신: 단기적으로 고정전화망, 이동전화망, 수자전송망 등 통신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여 초보적으로 전지역을 뒤덮는 통신망을 형성한다. 점차적으로 빛섬유망호상련결운영, 관리쎈터 등 망기초시설을 건설하며 순서있게 국제출구를 개발하고 국제호상련계를 실현한다.

제3편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요강

제6장 산업발전방향과 발전목표

(22) 조선경제무역협조중심지대에 위치한 지리적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쏘프트웨어 주문봉사를 기초로 한 정보산업, 조선민족문화창작과 공연, 만화, 휴식, 물건사기 등을 주체로 한 관광문화산업, 이름난 복장, 복장장식품생산을 주체로 한 가공업, 우량종자육종, 물절약농업, 온실재배를 주체로 한 현대시설농업 등 4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23) 단기적으로 공동시장, 피복가공 등 측면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보면서 동시에 상업쎈터 및 정보,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구건설을 틀어쥐고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4대산업의 번영발전을 이룩한다.

제7장 산업배치와 발전중점

(24) 〈기능화와 집적화〉의 원칙에 따라 〈1중심, 4단지〉의 산업공간배치를 형성한다. 즉 상업쎈터 및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의 4대단지이다.

(25) 상업쎈터건설: 단기적으로는 중조 공동시장을 발전시키는것을 시작으로하여 해당 봉사 및 오락시설을 건설하며 점차 물건사기,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 등이 하나로 일치화된 첨단상업쎈터로 발전시킨다.

(26) 정보산업: 황금평경제지대와 중국 단동시의 정보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조선측의 프로그람 작성에서의 비교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쏘프트웨어주문봉사를 기초로 하는 정보산업을 건설한다.

(27) 관광문화산업: 조선민족문화와 인재자원을 리용하여 아리랑 등 주제의 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의 설계, 전람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는 민족문화와 관계되는 복장, 완구, 모형, 장식품 등의 생산을 더욱 발전시킨다.

(28) 현대시설농업: 우량품종을 육종하고 알곡작물우량품종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알곡생산량을 늘인다. 분수식관개, 방울식관개 등의 시설을 리용하며 고효률물절약농업시범기지를 건설한다. 현대적인 태양에네르기온실, 남새, 과일, 화초생산기지를 건설한다. 현대 농업기술연구교류쎈터를 건설한다.

(29) 피복가공업: 피복기업을 적극 끌어들여 공장을 건설하고 주문생산, 유연성생산 등 령활한 방식을 취하며 이름난 피복과 장식제품생산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자체의 피복상표를 가지며 제품의 부가가치와 외화획득능력을 더욱 높인다.

제8장 기초시설건설

(30) 항구: 황금평과 신의주사이의 려객 및 화물운수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려객 및 화물부두를 건설하며 중국 단동 대동항을 리용하여 화물의 수상운수수요를 만족시킨다.

(31) 도로: 황금평경제지대안에 그물형식의 도로망을 건설한다. 황금평에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여 중국 단동신구와 련결하며 또한 린접의 압록강새다리통과능력을 리용하여 황금평지대와 조선사이를 오가는 수요를 만족시킨다.

(32) 기타: 중국단동비행장을 리용하여 대외항공교통을 실현한다. 중국 단동에서 직접 해당한 전력선로를 끌어들여 배전망을 건설한다. 개발방도에 따라 급수, 가스공급, 열공급능력을 증가한다. 오수, 오물처리시설을 건설한다.
인터네트망, 고정통신망, 이동통신망을 건설한다.

제4편 관리 및 정책보장

제9장 협조체계

(33)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이하 두 경제지대라고 한다.)의 개발건설은 조중 두 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각 기업들이 〈신용, 실무, 효률〉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참여할것을 필요로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 협조지도체계, 두 경제지대 공동관리체계, 개발경영체계의 세단계로 개발협조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34) 정부간 협조지도체계: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협정〉 집행과정에 생기는 중대한 정책과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협상과 조정을 진행한다. 이들 거리안에서 두 나라의 해당 성, 도(시)사이의 공동사업위원회를 내오고 정상적인 의사기구로 하여 개발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한다.

(35) 공동관리체계: 쌍방의 해당 지방정부들로 구성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관리위원회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개발관리위원회는 조선측이 두 경제지대개발협조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제정한 법률(이하 두 지대법으로 략칭한다.)과 공동지도위원회의 해당 결정에 근거하여 본 계획요강 및 상세한 계획의 실시를 책임지며, 두 경제지대 투자, 개발, 건설, 운영과 관계되는 투자유치, 대상심사비준, 기업설립, 환경보호 등 관리권을 행사하며 토지의 1급개발, 상업개발, 기초시설개발운영방안을 심사결정

하며 쌍방 정부가 합의한 기타 행정관리직책을 행사한다.

(36) 개발경영체계: 공동관리위원회가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개발공사와 황금평경제지대 투자개발공사에 위임하여 각 지대내에서 토지와 해안선의 1급개발, 상업개발을 책임지도록 하며 동시에 상응한 투자권, 경영권, 수익권을 향유하도록 한다.

제10장 정책적지지

(37) 적극적인 지지정책을 제정하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며 세계각국의 인원, 물자, 자금, 정보를 끌여들여 두 경제지대내에 고도로 집중시키고 합리적으로 류동되게 하여 두 경제지대의 개발건설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지지정책은 다음과 같은것을 포함하면서도 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8) 세무정책: 두 경제지대에서는 일정한 기한의 세금반환정책을 실시하여 지대내 기초시설건설에 쓸수 있다. 지대내 기업의 개발건설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는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지대내에서 가공한 제품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기업과 개인소득세는 최대특혜세률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한내에 감면을 하여준다. 기초시설건설과 관계되는 세금 및 비용은 감면한다. 외국투자가와 개인의 합법적수입은 자유로 송금되며 세금에서 면제된다. 두 경제지대와 중국사이를 오가는 인원, 물자, 차량은 통행비와 해당 세금 및 비용을 감면한다.

(39) 토지정책: 두 경제지대내의 토지는 특혜적인 사용정책을 실시하며 전략적이고도 집약적으로 사용한다. 1차계약한 기업용지 및 해안선의 개발사용은 최대년한이 〈협정〉에 규정한 년한과 일치하며 확정된 사용기한내에는 법에 따라 양도, 임대, 재임대, 청부, 저당, 상속을 할수 있다.

(40) 금융정책: 두 경제지대내에서는 기업이 인민페와 조선원, 또는 두 경제지대법에서 규정하는 화페로 결제하는것을 허용한다. 외국투자가가 두 경제지대내에서 단독은행, 합영은행, 기타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두 경제지대법에 따라 공동개발관리위원회의 비준범위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것을 허용한다. 두 경제지대내에 설립한 은행과 기타 대부능력을 가진 금융기구가 조선의 현행 대부리자를 집행기준상에서 차이부동을 실시하는 권한을 허용한다.

(41) 인원정책: 두 경제지대개발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중국측 상업, 조사, 설계, 시범, 기술, 생산, 관리 인원들의 두 경제지대출입에 편리를 제공한다. 두 경제지대 개발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조선측과 기타 제3국인원들의 출입의 편리를 제

공한다. 두 경제지대내에서 투자협조의 필요상 장기거주해야 할 중국측과 기타 제3국인원들에게 장기거주의 편리를 제공한다. 두 경제지대의 로동시장을 마련하며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로동계약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로동자간의 자주적인 호상선택을 실현한다.

(42) 통관정책: 두 경제지대내에 설립한 세관, 검사, 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두 경제지대에 출입하는 화물과 인원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국내의 무역화물선이 라진항에 입항하여 중국 국내의 무역화물을 싣고 부리우는것을 허용하며 또한 중국 국내 무역화물선들이 조선연해항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국국내화물과 대외무역화물의 통관에 편리를 제공한다.

(43) 투자보호정책: 외국투자가가 두 경제지대내에서 투자, 구입한 자산, 공업소유권, 투자소득의 리윤, 기타 합법적권익은 두 경제지대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따라 양도, 상속할수 있다. 외국투자가의 투자와 기타 자산은 국유화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법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부문이나 기구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로 더 비용항목을 내오거나 비용기준을 따로 제정할수 없다.

(44) 산업입주허가정책: 두 경제지대에서는 업종별 입주허가정책을 제정한다. 두 경제지대에 들어온 외국투자기업은 투자령역과 업종에서 두 지대법과 산업입주정책에 명백히 금지시킨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경제지대내의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과 관련한 자원개발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한다.

(45) 기업경영정책: 기업은 자금, 현물자산, 무형자산으로 출자하여 단독, 합영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기업경영과정에서 로동력채용과 해고, 제품의 국내외판매비률, 가격의 확정, 병합재조직, 파산, 청산 등 행위는 기업이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보장조치

(46) 쌍방 중앙 및 지방정부는 최대의 노력과 조치를 다하여 본 계획요강의 실천에 전력함으로써 두 경제지대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47) 조선측은 상술한 정책에 기초하여 두 경제지대에 적용할 법률을 전문적으로 제정하며 중국측은 해당 기술과 자문봉사의 제공을 희망한다.

(48) 조선측은 두 경제지대밖의 해당 기초시설건설을 다그치며 외국측 인원들에게 자유롭고 원활한 고정통신, 이동통신, 방가입 등 봉사를 제공한다.

(49) 쌍방은 두 경제지대건설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경제특구계획, 개발, 건설, 관리 등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응용하는것을 지지한다. 중국측은 중국 기구와 기업이 두 경제지대관리기구에 해당한 경제관리쏘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50) 쌍방은 각 기업과 금융기구가 두 경제지대에 와서 투자개발하는것을 지지장려하며 투자개발 및 건설과정에서 중국의 해당 기술기준과 설계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51) 쌍방은 적당한 시기에 계획요강실시정황에 대한 중기평가를 진행하며 실지 정황에 따라 제때에 조절수정하는데 동의한다.

(52) 쌍방은 해당 기구들이 최대한 빨리 본 계획요강에 근거하여 두 경제지대개발건설과 관련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추동한다.

(53) 쌍방은 투자보호, 국경통과수송, 무역편리 등 해당 협정을 따로 수정체결한다.

(54) 두 경제지대의 토지자원으로써는 구체적인 대상개발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 조선측은 기타 적합한 발전용지를 선택하는것을 고려하며 동시에 두 경제지대의 해당 정책을 향유하도록 한다.

(55) 호상간의 산업협동과 무역왕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쌍방 지방정부들은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협조체계를 세우는것을 연구하도록한다.

(56) 본 계획요강은 조선어와 중국어로 작성되였으며 두 나라정부의 비준을 거친후 실시한다.

남북 해양수산 70년 1945~2015

2016年 12月 29日 印刷
2016年 12月 31日 發行

편집겸
발행인 양 창 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전 화 051-797-4800 FAX :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 · 인쇄 : (주)디자인월드 Tel : 051-916-1533

〈비매품〉